

Military Hi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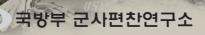
## 2020.12. 제117호



- $6 \cdot 25$ 전쟁기 거제 포로수용소의 음악
- 백마고지 전투 간 국군 제9사단의 화력운용 고찰
- 66년 케스티우스 갈루스(Cestius Gallus)의 전략 분석
- 일본 학계의 唐代 軍制史 研究 動因과 논점
- 대몽전쟁기 西海道 · 北界에서의 海島入保策 추진 양태와 군사적 성격
- 1958년 한반도 전술핵무기 배치 요인 재고찰
- 유엔사령부의 국제법적 위상에 관한 재조명
- 한국의 앙골라 PKO 부대 파병정책 결정과정 고찰

## [세 펭]

 대한민국임시정부 '광복군'의 국방사적 의미와 세계 군사강국으로서 대한민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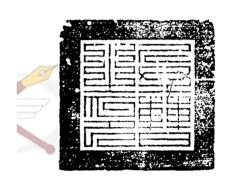






第117號 2020. 12.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 Contents | 2020. 12. 제117호

1	▶ 6 · 25전쟁기 거제 포로수용소의 음악 - 냉전이데올로기와 노래	이경분
47	<ul><li>▶ 백마고지 전투 간 국군 제9사단의 화력운용 고찰</li><li>- 포병운용을 중심으로</li></ul>	조남준
93	▶ 66년 케스티우스 갈루스(Cestius Gallus)의 전략 분석	배은숙
129	▶ 일본 학계의 唐代 軍制史 硏究 動因과 논점	이기천
173	► 대몽전쟁기西海道·北界에서의 海島入保策 추진 양태와 군사적 성격	강재광





## Contents | 2020. 12. 제117호

215 ► 1958년 한반도 전술핵무기 배치 요인 재고찰 - 미국의 대일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김민식
259 ▶ 유엔사령부의 국제법적 위상에 관한 재조명	송승종
305 ▶ 한국의 앙골라 PKO 부대 파병정책 결정과정 고찰	김정기
[서 평] 343 ▶ 대한민국임시정부 '광복군'의 국방사적 의미와 세계 군사강국으로서 대한민국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김승기/최정준 공제),	박상철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김승기/최정준 공저), 『국방 100년의 역사 1919-2018』	



본 저작물은 정부예산으로 발간하였으므로 기관(부대) 자산으로 영구보존하시기 바라며, 보관이 불가능할 경우 당 연구소로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0, No. 117, pp. 1-46 https://doi.org/10.29212/mh.2020..117.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6 · 25전쟁기 거제 포로수용소의 음악\*

- 냉전이데올로기와 노래 -

이경분\*\*

- 1. 들어가며
- 2. 거제 포로수용소 개관
- 3. 포로들이 남긴 음악 활동의 흔적
- 4. 포로들의 노래
- 5. 거제 포로수용소에서 노래의 역할
- 6. 거제 포로수용소에서 '투쟁 무기'가 된 노래
- 7. 끝맺으며

## 1. 들어가며

2018년에 개봉된 강영철 감독의 영화 〈스윙키즈〉는 6·25전 쟁 당시 거제도 포로수용소를 배경으로 한 것이다.¹) 포로들의

<sup>\*</sup>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B5A02041840)

<sup>\*\*</sup>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교수

탭댄스 활동과 스토리는 영화적 상상의 날개를 펼친 것이지만, 실제 수용소 내에서 댄스단원이 있어서 탭댄스를 하였고<sup>2)</sup>, 음악, 미술, 연극, 스포츠 등 교양, 오락 취미 활동도 다양했다. 제1차대전과 제2차대전의 다른 외국 포로수용소에서도 포로들이 음악, 연극, 스포츠 등의 문화활동을 했었는데, 거제 포로수용소도 예외가 아니었다.

물론 전쟁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포로수용소의 성격상, 지금까지 6·25전쟁기 거제 포로수용소에 대한 연구가 주로 수용소내 좌우대립의 폭력적이고 정치적인 사건에만 집중되었던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실제로 6·25전쟁은 포로의 '협상전쟁'3) 또는 '포로전쟁'4)이라 칭해질 정도로 포로의 문제는 휴전협상의핵심 쟁점이었다.

하지만, 전쟁이 나면, 포로가 생기고, 포로가 생기면 포로수 용소가 필요하다. 포로수용소에는 어디든 전쟁 종료까지 철조 망 안에서의 지루한 시간과의 싸움이 있었고, 제한적이나마 일상이 있었다. 포로들 간의 스트레스나 불안감, 긴장감으로 자살률이 높거나 사망률이 높아지면 곤란한 일이었다. 더욱이 포로는 적과의 협상에서 중요한 카드가 되고, 포로가 된 아군을 돌려받을 수 있는 막대한 교환가치를 가진다. 또한 포로를 많이 생포할수록 적군의 병력은 약화되므로, 유엔군사령부의 입장에서는 피난민보다 포로들을 우선적으로 안전한 곳에 수

<sup>1) 1993</sup>년 개봉된 토마스 카터 감독의 할리우드 영화 〈스윙키즈〉도 있다. 여기서는 나치 지배하에서 금지된 재즈와 스윙이 일종의 저항문화로 여겨졌던 제2차대전 시기의 독일 상황을 다루었다.

<sup>2)</sup> 오세희. 『65포로수용소』, 대구: 만인사 2000. 211쪽.

<sup>3) [</sup>제67주년 6·25전쟁 특집다큐] "피란과 포로의 땅, 거제도", 국방TV https://www.youtube.com/watch?v=aV\_2NaSUIL4 (검색일 2020. 9.10.)

<sup>4)</sup> 김학재, 「진압과 석방의 정치-한국전쟁기 포로수용소와 국민형성」, 『제노사이드 연구』 5, 2009, 45쪽.

용하여 잘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거제 포로수용소는 격렬한 폭동과 폭력과 이념전쟁으로 그 이전의 포로수용소에 서는 보기 힘들 정도로 포로간의 갈등이 고조되었고, 미군 수용소 소장이 '포로의 포로'가 되는 전대미문의 사건도 발생한곳이었다.

냉전의 첫 대리전으로 치러진 6·25전쟁과 거제포로수용소에 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연구가 있지만, 포로들의 스포츠, 연극, 음악 등 문화활동에 대해서는 지금껏 소홀하게 연구되어 왔다. 이 논문은 포로들의 문화활동 중에서도 음악활동에 집중하고자 하는데, 음악 중에서도 노래의 다양한 이용가치에 주목한다. 포로들의 이데올로기 전쟁 속에서 노래는 그 이전의 다른 포로수용소에서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적극적으로 활용되었고, 강력한 투쟁의 수단이 되었다. 이 논문의 목적은 포로들의 노래투쟁이 냉전의 첫 열전의 결과로 탄생한 거제 포로수용소의 특징 중 하나로 볼 수는 없는지 탐구하는 것이다. 그 결과는 곧6·25전쟁에서 냉전 이데올로기와 음악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될 것이다. 먼저 거제 포로수용소의 외형적 구조와 일상을 그려보고, 포로들의 음악적 활동 중 노래에 대해 집중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 2. 거제 포로수용소 개관

#### 가. 거제포로수용소에 대하여

맥아더의 인천상륙 성공 이후, 북한군포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어나는 상황에서 이들을 집중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포로수용소 가 1951년 초 거제도에 건설되었다. 5) 1954년 기준으로 유엔군이 관할한 포로는 북한군 110,641명, 중국군 23,097명, 남한에서 징집된 남한출신'의용군', 빨치산, 피난민, 어린 소년병 등 민간인 억류자 48,358명 중 사망자 실종자 제외하고 총 177,779명이었다. 6) 이들 포로들의 집결지로서 거제 포로수용소는 1951년 12월 말까지 약 17만명의 포로를 수용하여 7) 6·25전쟁 동안 최대 포로수용소가 되었고, 그때까지 동아시아의 단일 포로수용소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였다. 뿐만 아니라, 포로들의 구성도 제2차대전의일본 포로수용소나 연합군 포로수용소 또는 나치 집단수용소, 미국의 독일군 수용소의 경우보다 훨씬 복잡하고 무작위적이었다. 8)

부산 포로수용소를 비롯하여 인천과 평양의 포로들이 모두 집결한 후를 기준(1952년 1월)으로 거제포로수용소의 약 17만 명의 포로는 총 4개의 구역수용소(Encloser)에 나누어 수용되었다. 남한 의용군출신이 모인 제6구역은 제60-69수용동, 인민군이 주로배정된 제7구역은 제70-78수용동, 제8구역은 제81-86수용동, 제9구역은 제91-96수용동까지 있었다. 즉, 총 31개의 수용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9)

<sup>5)</sup>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의 성공 이후 포로수는 급증하여 1950년 12월 말까지 총 137,212명이었다. 조성훈, 『한국전쟁과 포로』, 선인 2010, 78쪽. 거제도는 부산에 가까운 섬으로 포로가 탈출하기 힘든 곳으로 지형상 유리했다.

<sup>6)</sup>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쟁 포로, 평화를 말하다」, 민속원, 2018, 17쪽.

<sup>7)</sup>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의 책, 30쪽. 거제포로수용소는 1951년 1월부터 건설되어 1955년 3월 폐쇄되므로, 약 4년간 존재했다. (조성훈, 『한국전쟁과 포로』, 85쪽) 1951년 2월 말까지 53,839명이 이송되었고, 4월 중순까지 93,776명이 수용되었다. 조성훈, 같은 책, 80쪽.

<sup>8)</sup> 거제 포로수용소에는 아이와 엄마들도 있고, 소년들이 약 3천 명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애육원과 소년들을 위한 학교도 운영되었다. 조성훈, 『한국전 쟁과 포로』, 64쪽.

<sup>9)</sup> 제64수용동은 야전병원이었다. 1952년 미군의 캠프지도에는 여성포로들(300여 명) 의 수용소는 번호없이 '여성 포로 캠프(Female prisoner camp)'로 되어 있다. 조성훈, 『한국전쟁과 포로』, 82쪽 재인용.

각 구역수용소에는 취사장, 의무실, 숙소, 학교, 예배당. 영창, 교육 및 여가활동 건물이 있었고, 수용소의 중앙에 연병장이 있어서 각 구역수용소의 포로들이 축구나 달리기를 할 수 있었다. 10) 배구장, 배드민턴코트, 소프트볼 코트, 축구장, 복싱장, 테니스코트 등 유엔군 경비병을 위한 여가시설은 따로 있었다. 11)

거제 포로수용소의 외형은 그리 특별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포로수용소에 학교가 있는 것도 이미 제1차대전이나 제2차대전의 포로수용소에서도 볼 수 있었다. 제1차 대전 때 칭다오 전쟁에서 일본군의 포로가 된 독일·오스트리아 포로들은 철조망 속의 지루한 일상을 견디어내기 위해 자체적으로 포로학교(칼리지)를 만들어 어학코스나 기술, 문화예술 등을 배울 수 있게 했다. 12) 또한 제2차대전 시기, 북아프리카나 프랑스에서 포획되어 미국 본토에 수용된 독일군 포로들도 자체적으로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지리, 화학, 수학, 경영 등을 가르치고 배웠다. 일부 포로는 미국의 대학 교육을 방송으로 이수하였고, 귀환 후에는 독일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받았다. 13) 미 헌병감실에서도 독일군의 재교육을 위한 특별프로젝트(Special Projects Division)를 은밀하게 실시하였지만, 소수에 국한되었고 큰 효과가 없었다. 14)

하지만, 거제 포로수용소에서 포로학교는 포로들의 자체적 활동

<sup>10)</sup> 축구 외에도 농구, 복싱, 배구, 야구 등도 했다. 조성훈, 『한국전쟁과 포로』, 140쪽.

<sup>11) 1952</sup>년 2월 1일자의 미국문서에 의한 것임. 조성훈, 앞의 책, 83~84쪽 재인용.

<sup>12)</sup> 習志野市教育委員会編,『ドイツ兵士の見たニッポン. 習志野俘虜収容所 1915-1920』, 東京: 丸善ブックス 2002, 58~59平.

<sup>13) &</sup>quot;German Prisoner of war", *Handbook of Texas*, Texas State Historical Association, https://www.tshaonline.org/handbook/entries/german-prisoners-of-war (검색 일 2020,11,11.)

<sup>14)</sup> 주 4회 이상 상영되는 영화가 독일군의 재교육에 더 효과적이었다. "German POWs in North America", https://uboat.net/men/pow/recreation.htm (검색 일 2020.11.11.)

기구가 아니라, 수용소 정책으로서 수백 명의 민간정보교원을 고용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15) 수용소 당국은 직업교육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이데올로기 교육과 체제선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16)

#### 나. 수용소의 일상

포로들의 일상은 북한군 출신 반공포로 송관호에 따르면, 아침 6시 기상하여 아침 식사 후 점호를 하고 나면 점심까지 소일거리로 보내다가, 저녁 식사 후, 20시 마지막 점호를 마치고 취침하였다.17) 이런 일과는 시기와 장소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전 반적으로 5-6시 기상, 취침 20시-21시, 세 끼 식사 사이에 점호와 체육 및 소일하는 시간으로 채우는 것은 다른 포로수용소에서도 비슷했다.18)

포로들은 제3차 포로처우에 관한 제네바협정(1949)에 따라 수 용소 건설을 위해 투입되거나 보급품, 장비 하역하는 일 등의 수 용소와 관련된 일 외에는 노동에 동원되지 않았다. 그래도 미군은

<sup>15)</sup>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상호, 「한국전쟁기 미군의 공산포로 '미국화 교육'」, 「역사와 현실」 78호. 한국역사연구회, 2010, 421-449쪽 참고.

<sup>16)</sup> 포로재교육을 혜택으로 여겼던 반공포로들과 달리, 친공포로들은 이를 '노예교육'으로 규정하고 거부하며 저항했다.

<sup>17)</sup> 김정운 정리, 『전쟁포로 송관호 6·25 전쟁수기』, 서울: 눈빛출판사 2015, 142~ 144쪽. 송관호는 처음에는 친공이 지배하는 제76수용소에 배치되었다가 나중에 우익 수용소인 제82수용소로 전출되었다.

<sup>18)</sup> 전갑생은 오전 5시 30분 기상과 아침 식사, 6시 30분 집합점호, 7시 오전 일과 시작, 11시 30분 점심식사, 오후 1시 작업 인원집합, 오후 4시 오후 일과 종료, 오후 5시 저녁식사, 오후 8시 소대별 점호 후 취침으로 서술한다 (전갑생, 『한국 전쟁과 분단의 트라우마』, 207~208쪽). 제1차대전의 일본의 포로수용소도 비슷한데, 6시에 일어나 점호하고 아침식사, 12시 점심, 오후 자유시간, 저녁식사 6시, 9시에 취침하였다. Maike Roeder (ed.), "Alle Menschen werden Brüder ...". Deutsche Kriegsgefangene in Japan 1914-1920. Begleitheft zur Ausstellung der OAG. Tokyo: PrintX Kabushikigaisha, 2005, pp. 39~40.

포로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노동수용소 설치 방안을 모색하였으나, 이익보다 행정과 보안 등 부담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포기하였다. 19) 따라서 강제노동에 동원되지 않았던 포로들은 수용소 시설보수나 울타리 설치, 신축 포로막사 건축, 지붕작업 및 농사 등의 수용소 유지를 위한 작업을 하는 정도였으므로, 시간이 많았다. 수용소 당국은 포로들의 일상을 자치에 맡기고 수용소내 친공이나 반공의 충돌 투쟁에도 무관심하여 간섭하지 않았으므로, 친공포로가 장악한 수용소의 내무반 일상은 군대식으로 재편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북한군 장교들이 모여있는 제66수용동에서는 하루 5차례 군가와 구호를 불렀고, 아침·저녁에는 정치학습이 있었으며, 저녁마다 자아비판 시간을 가졌다. 20이러한 제66수용동의 일상은 1951년 6월 초에 시작되었는데, 21이휴전협상 전에 이미 공산주의 활동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하지만, 포로들 간의 이데올로기적인 갈등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게되는 것은 1951년 7월 휴전협상이 시작하면서부터였다.

#### 다. 친공 vs 반공의 첨예한 갈등

제2차 대전까지만 해도 포로는 일률적으로 '적국의 군인'으로 노획되었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적군과 아군이 외적으로 분 명하게 구분되었다. 제1, 2차대전의 포로 중에도 사회주의적 성향 이 있거나, 보수적 성향이 있었지만, 포로 개인의 이념적 차이는 수용소생활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sup>22)</sup> 미국 본토에 수용된

<sup>19)</sup> 대신, 결과적으로 더 경제적인 한국 민간인을 고용하였다. 조성훈, 『한국전쟁과 포로』, 136쪽.

<sup>20)</sup> 주영복, 『내가 겪은 한국전쟁』 제2권, 서울: 고려원. 1991, 260쪽.

<sup>21)</sup> 주영복, 앞의 책, 256~260쪽.

<sup>22)</sup> 제1차대전 중 일본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었던 독일·오스트리아 포로 중 사회주의 자나 국수주의자의 대립보다, 오히려 이탈리아가 중립국에서 1915년 5월 연합군

독일군 포로 중에 바펜SS(Waffen-SS)나 나치추종자들이 반대파를 위협하고 살해하는 일이 있었지만, 미군은 이들을 재빨리 격리시켰으므로, 친나치 vs 반나치의 대대적인 충돌은 없었다.<sup>23)</sup>

하지만, 이념이 중요해진 한국전쟁에서 사상전에 무지하고 책임의식이 부족했던<sup>24)</sup> 수용소 당국은 포로들을 북한군이냐 남한출신이냐와 같은 형식적인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포로간의 살인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 만약 국군이 포로문제를 책임졌더라면, 국군 낙오병을 비롯하여 경찰관, 우익청년단원 115명이 포로로 수용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sup>25)</sup> 하지만, 국군은 포로에 대한 잔인하고 폭력적인 태도로 인해 국제적 비난을 받게되어, 한국문화와 언어를 알지 못하는 유엔군이 포로를 책임지게 되었다. 그 결과 '적군인지 아군인지 불분명한' 포로들이 대거 포함되었다. 북한지역에서 치안대 활동을 하던 반공주의자들이 미군의 포로가 되었고, 황해도 구월산 반공청년들이 미군과지휘권 갈등으로 포로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sup>26)</sup> 즉, 이는 포로가 된 국군이나 반공주의자들이 적군인 인민군 포로들과 같은 막사 생활을 하였음을 의미하였다.<sup>27)</sup> 예를 들어 제95수용소처럼

편으로 넘어갔으므로, 오스트리아군 포로 속의 이탈리아 출신은 갑자기 적군이 되어 오스트리아 포로에게 구타를 당하거나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경우가 있었다. 大津留厚,『青野原俘虜収容所の世界:第一次世界大戦とオーストリア捕虜兵』,東京:山川出版社 2007, 74-78쪽,

<sup>23)</sup> Michael Campisi: Camp Ruston: German p. O.W.'s in Louisiana, *Louisiana Public Broadcasting*, 2007. https://www.youtube.com/watch?v=EjcbeKd4Y2s (검색일 2020.11.11.)

<sup>24)</sup> 조성훈, 『한국전쟁과 포로』, 110쪽. 독일군 포로들 중에서 골수나치를 일찌감치 골라내었던 미 당국의 적극적인 태도는 이데올로기 전쟁인 한국전쟁에서 오히려 소극적인 자세를 취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sup>25)</sup> 조성훈, 『한국전쟁과 포로』, 64쪽.

<sup>26)</sup> 조성훈, 『한국전쟁의 유격전사』,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3, 272쪽.

<sup>27)</sup> 주영복은 제66수용동의 국군장교가 인공기를 들고, 인민군 장교(반공)가 태극기를 들고 싸우는 모습을 아이러니한 현실로 묘사했다. 주영복, 『내가 겪은 한국전쟁』 제2권. 297쪽.

피난민이 400명, 전 국군이 150명, 북한군 장교 108명, 북한군 사병이 함께 편성되어 일상에서 잦은 갈등이 있었다.<sup>28)</sup> 그래도 아직 이념대립이 본격적으로 표출되지 않았던 거제 포로수용소 생활 초기에는 그런대로 내부갈등이 그리 크지 않았다.

하지만, 살육전으로 표출된 포로들의 친공 vs 반공의 분열은 연합군측이 '포로자동송환'이 아닌 '자유송환'을 주장하면서부터 본격화되었다. 29)실제로 휴전협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1951년 7월 전후부터 1952년 6월 포로의 분리 수용까지 약 1년간 포로들 간의 이데올로기 대립은 전쟁터를 방불할 정도로 심하게 격돌하였다. 거제 포로수용소의 포로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을 끌었을 정도로 심각하게 드러났던 것은 1952년 5월 7일 도드(Francis Dodd) 수용소 소장이 포로의 포로가 되는 납치사건이었다. 이후 미군측은 수용소 통제의 실패를 무력진압으로 무마하고자 했다. 미군의 수용소 정책은 처음부터 갈팡질팡했고30〉, 보트너(Haydon L. Boatner) 소장의 주장대로 "거제도 사건의 대부분 원인은 미군의 낮은 질"에도 이유가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전투부대와 보급부대 및 본부에서 거절당한 자들이었다"고한다 31〉

제네바협약에 위배되는 미군측의 '자유송환원칙'은 복잡한 포로 구성으로 인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냉전이라는 체제경쟁의 프레임 안에서 미군의 이념적 승리를 위한 것이었다.

<sup>28) 1951</sup>년 10월의 미국문서(Command Report, 4980/407), 조성훈, 『한국전쟁과 포로』, 98쪽 재인용.

<sup>29)</sup> 김정운 정리, 『전쟁포로 송관호 6 · 25 전쟁수기』, 168쪽.

<sup>30)</sup> 한국의 문화나 언어에 대한 지식이 없었지만, 소통을 위한 통역요원도 턱없이 부족하여 미군의 포로 분류작업의 시행착오로는 포로송환 때까지도 포로의 신원이 일치하지 않는 부정확한 경우가 많았다. 조성훈, 『한국전쟁과 포로』, 100~101쪽.

<sup>31)</sup> 조성훈, 『한국전쟁과 포로』, 92쪽.

이로 인해, 각 진영의 포로들은 '생존을 위해' 더욱 치열한 투쟁을 해야 하는 매커니즘이 형성되었다. 32) 즉, '빨갱이'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몸에 태극기 문신을 새기거나 혈서를 쓰는 것은 반공 포로에게는 당연한 일이었고 33), 친공포로는 친공포로대로 귀환후 살아남기 위해서 반공포로와 미군에게 목숨을 걸고 저항해야했다. 귀순하여 미군에 협조적이었던 이학구가 1년 후, 전대미문의 수용소 소장 납치사건을 주도한 친공포로의 대표단장이 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34)

친공포로와 반공포로들이 분리 수용되기 전까지 밤이 되면 무법천지가 되는 포로수용소에서 죽이지 않으면 죽게 되는 살벌한일상이었다. 이런 무질서한 상황에서 일상은 어떻게 유지되었는가. 이런 때일수록 심리적 불안과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해 오락과 문화가 중요했다. 반공포로로 우익측 신문 '거제신문사'에서일했던 이한은 "긴장에 지친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술이며 오락은 무엇보다도 큰 위안을 주었다"고 강조하였다. 35) 또 다른 반공포로 오세희는 폭동으로 골머리를 썩이던 수용소 당국이 "포로들의 오락과 정서에 호소"하는 의도로, 연극공연과 미술전시회를 개최하게 하고, 신문을 만들게 하는 등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며" 노력을 기울였다고 회고한다. 36) 그럼에도, 포로의 문화·오락활동은 지금까지 포로들의 회고나 구술자료 및 포로 연구에

<sup>32)</sup> 이선우, 「한국전쟁기 거제도수용소 내 '친공포로'의 딜레마와 폭동」, 『역사문제 연구』 38호 2017, 317~356쪽.

<sup>33) [</sup>제67주년 6·25전쟁 특집다큐] "피란과 포로의 땅, 거제도"의 생존 반공포로들은 모두 문신을 했고, 손가락을 깨물어 싸인을 했다고 증언한다.

<sup>34)</sup> 자세한 것은 이선우, 「한국전쟁기 거제도수용소 내 '천공포로'의 딜레마와 폭동」, 317-356쪽. 주영복의 증언에 따르면, 이학구는 미군이 공산측의 포로가 된 딘 소 장을 구출하기 위해 귀순한 자신을 오히려 북한으로 돌아가도록 밀어내었음을 알 고 있었다. 주영복, 『내가 겪은 한국전쟁』제2권, 224쪽.

<sup>35)</sup> 이한, 『거제도 일기. 釋放된 捕虜의 血의 記錄』, 89쪽.

<sup>36)</sup> 오세희, 『65포로수용소』, 241쪽.

서 부각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포로들이 남긴 음악활동의 흔적을 살펴보자.

## 3. 포로들이 남긴 음악 활동의 흔적

포로수용소의 일상에서 대체로 장기, 바둑을 포함한 스포츠가 포로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었지만, 도구가 필요 없는 이야기꾼의 스릴 넘치는 탐정 이야기나 눈물 나는 로맨스 이야기도 포로들에게 영화를 본 듯한 즐거움을 선사했다. 37) 또한 까다로운 도구가 필요한 연극과 미술전시회 그리고 기악음악도 수용소의 오락과 교양에 중요한 장르였다. 본 논문이 주목하는 거제 포로수용소의 음악은 독창에서부터 합창과 악기연주까지 즉흥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수용소 일상과 이념대결에서 활용되었다

포로들의 음악활동은 비단 거제 포로수용소만의 현상은 아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세계 어떤 수용소에서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제1차대전 중 독일·오스트리아군을 수용한 일본이나 영국의 포로수용소에서는 포로 오케스트라가 있어서 바그너, 베토벤 등의 수준 높은 음악 연주가 있었다. 38) 또한 태평양전쟁 중 태국의 콰이강 다리 건설에 강제노역을 해야 했던 연합군 포로들도 노래와 악기연주를 했던

<sup>37)</sup> 평양의 중학교 교사였던 한 북한군포로는 밑천이 떨어진 적이 없는 재능 많은 이 야기꾼으로 인기가 높았다. 오세희, 『65포로수용소』, 172쪽.

<sup>38)</sup> 특히 제1차대전 중 칭다오에서 일본의 포로가 된 독일, 오스트리아포로들 4,700여 명은 1914년부터 1920년 귀환할 때까지 오케스트라를 조직하여 심포니 음악을 직접 연주하였다. Schmidt, Hans-Joachim (2002), *Die Verteidiger* von Tsingau und ihre Gefangenschaft in Japan (1914 bis 1920). http://www.tsingtau.info (검색일 2020. 2.1.)

흔적이 있다.<sup>39)</sup> 더욱이 아우슈비츠와 같은 나치의 살인공장이라 할 수 있는 강제 집단수용소(KZ)에도 소녀오케스트라, 남성오케스트라 등 여러 개의 오케스트라가 조직되어 시체 타는 악취를 덮는 죽음의 향수 같은 역할을 했다.<sup>40)</sup> 뿐만 아니라, 미국의 독일군 포로들도 캠프오케스트라, 브라스밴드, 댄스오케스트라, 합창단 등을 조직하여 연주했다.<sup>41)</sup>

각 수용소마다 음악이 연주된 배경은 다르다. 42) 잦은 폭동과 피를 부르는 투쟁이 첨예했던 거제 포로수용소에서 음악은 앞의 외국 수용소와는 달리 이데올로기와 결합되는 양상을 보였다. 우선,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배경을 접어두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제 포로수용소의 음악 활동만을 찾아보면, 포로의 음악연주 흔적은 여기저기서 발견된다. 포로들은 깡통으로 직접 트럼펫이나 얼후를 만들었고, 케이크 상자와 맥주캔 등을 사용하여 기타를 만들기도 했다.

<sup>39)</sup> 다비드 커닝햄(David L. Cunningham) 감독의 영화 〈전쟁이 끝날 때까지 To the end of wars〉(2001)에도 포로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 영화는 실제로 살아남은 영국 포로의 체험담을 기록한 어네스트 고돈(Ernest Gordon)의 『콰이강의 기적 Miracle on the River Kwai」(1977)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sup>40)</sup> 아우슈비츠에서의 음악은 가해자에게는 기분전환을,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로와 마음의 평화를 주거나, 연주자에게는 생존의 기회를 주는 매우 모순적인 매체였다. Christiane Tewinkel, "Gedenkkonzert für Opfer des Holocaust: So achtsam wie nie", Der Tagesspiegel (2015. 1. 29).

<sup>41)</sup> Jeff Roberts, "POW Camps in World War II", *Tennessee Encyclopedia*, https://tennesseeencyclopedia.net/entries/pow-camps-in-world-war-ii/(검색일 2020.11.11.); "German POWs in North America", https://uboat.net/men/pow/recreation.htm (검색일 2020.11.11.)

<sup>42)</sup> 제1차대전의 일본포로수용소의 음악에 대해서는 이경분, 「일본 포로수용소에서의 음악과 평화 -반도와 구루메를 중심으로」, 「人文論叢』73/2, 서울대 인문학연구소 2006; 아우슈비츠의 음악에 대해서는 Gabriele Kanpp, Das Frauenorchester in Auschwitz. Musikalische Zwangsarbeit und ihre Bewaeltigung, Hamburg: Bockel, 1996. 참고.

〈사진 1〉 직접 제조한 트럼펫(좌)43), 직접 제조한 얼후를 연주하는 중국군 포로(우)44)





이한의 『거제도 일기』에 따르면, 원래 국군 특무상사였는데 착오로 유엔군의 포로가 된 전직 국군 포로는 기타를 직접 만들었다. 기타의 앞과 뒤판에는 케이크 상자의 오동나무를 이용하고, 옆의 운두는 맥주 깡통을 잘라서 만들었으며, 기타의 가는 줄은 가는 철사를 이용한 반면, 굵은 선은 미군을 통해 마련하여, 약1주일 걸려 완성했다. 45) 뿐만 아니라, 그는 깡통을 이용해서 퉁소를 만들었고, 생선껍질을 말려서 북도 제작했을 정도로 다재다능했다. 이런 악기들로 슈베르트의 〈세레나데〉나 알베르트 케델비(Albert Ketelbey 1875—1959)의 〈페르시아의 시장에서 In a Persian Market〉 선율도 연주했다고 한다. 46) 다른 한편, 중국군 포로는 쥐 가죽을 햇볕에 말린 후, 알루미늄 통에 붙여 얼후를 만들었다고 한다. 47)

<sup>43)</sup> 출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쟁 포로, 평화를 말하다』, 77쪽,

<sup>44)</sup> 이 사진은 1952년 3월 20일 만들어진 것으로 되어 있다. 출처: Record Group 111: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Chief Signal Officer, 1860 - 1985 문서번 호 C7259 (국사편찬위원회 디지털 사료관)

<sup>45)</sup> 이한. 『거제도 일기. 釋放된 捕虜의 血의 記錄』. 92쪽.

<sup>46)</sup> 이한, 『거제도 일기. 釋放된 捕虜의 血의 記錄』, 93쪽.

<sup>47)</sup> 알루미늄 통은 막사 기둥의 이음매에서 잘라 내었다고 한다. 장택석, 『중국군 포로의 6·25전쟁 참전기』(손준식 옮김), 서울: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2009, 153쪽.

〈사진 2〉 얼후연주단(좌)48)와 제93수용동 포로들이 만든 기악단의 공연 모습(우)49)



〈사진 2〉의 좌측 사진은 중국군 포로의 얼후 연주단으로, 전통 악기로만 되어 있다. 맨 앞자리 포로가 연주하는 6각형 얼후를 제외하고, 모두 깡통으로 직접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우측 사진은 북한군 포로의 합주단으로 다른 포로들을 즐겁게 해주는 연예단인 듯하다.50) 자신이 제조한 장구, 피리, 통소 등의 전통악기와 클라리넷, 기타 등 서양악기가 혼합되어있다. 팻말에는 '93여단 합창단', '93여단 교향악단' 등이 적혀 있어서 제93수용동의 포로들은 여러 개의 음악단체를 만들어 운영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1951년 12월 11일 촬영된 이 사진은 우익수용소인 제93수용동에서 개최된 것으로, 포로들을 위한 민간정보교육국(Civilian Information & Education Division, CIE)의 재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포로학교 (CIE)를 내걸고 연주하는 제81수용동 악단의 모습도 영상에 남겨져 있다.

<sup>48)</sup> 손구원. 『거제도에서 판문점까지』, 통일안보증앙협의회, 2001, 278쪽.

<sup>49)</sup> 출처: Record Group 111: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Chief Signal Officer, 1860-1985, 문서번호 SC-386459 (국사편차위원회 디지털 사료관)

<sup>50)</sup> 이 사진에 대한 영어 해제는 "Using instruments they have made themselves, members of the band entertain other POW's during program held at the 93rd POW Compound 9th POW enclosure, Koje-do Island, Korea"로 되어 있다.



〈사진 3〉 제81수용동의 포로악대51)

〈사진 3〉은 포로운동회를 위한 행사에서 촬영되었는데, 실외에서 연주하는 만큼 서양악기인 북, 트럼펫, 클라리넷, 오보에 등관악기가 눈에 두드러진다. 포로들은 직접 만든 악기 외에도 밤의 암거래시장을 통해서, 국군헌병, 한국인 민간정보교육(CIE) 요원들을 통해서, 또는 미군을 통해서도 악기를 구할 수 있었다. 52)



〈사진 4〉 대중음악을 연주하는 포로들53)

<sup>51)</sup> 출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쟁 포로, 평화를 말하다』, 87쪽.

<sup>52)</sup> 연극을 공연할 때, 미군이 구해준 악기로 악극단이 연주했다고 한다. 오세희, <sup>65</sup> 포로수용소<sub>1</sub>, 215쪽.

<sup>53)</sup> 출처: RG 306: Records of the U.S. Information Agency, 1900-2003. 문서번호: 53-11740.

〈사진 4〉의 영어해제는 이 음악가들을 '포로 오케스트라'<sup>54)</sup>로 칭하고 있다. 여기서 오케스트라는 악대를 의미한다. 악기는 바이올린, 비파, 아코디온, 기타, 트럼펫, 트럼본, 클라리넷, 호른 등의 구성으로 요즘 생각하는 정식 오케스트라의 악기구성과는 거리가 멀다. 이 밴드 반주에 보컬리스트가 대중음악을 노래하는 장소는 방송 스튜디오일 가능성이 크다.

## 4. 포로들의 노래

이처럼 전통음악이든, 서양음악이든, 악대의 음악연주가 포로들의 오락을 도왔지만, 포로들의 인터뷰나 회고록과 일기 등을 보면, 이런 음악 연주에 대한 언급은 그리 많지 않다. 반면, 거의모든 포로들의 회고록에는 군가를 비롯하여 노래에 대한 기록은자주 발견된다. 포로들뿐 아니라, 국군경비병이나 미군부대 근무자, 주변의 거제도 주민들의 증언에도 군가와 노래에 대한 기억이훨씬 강하게 뇌리에 남아있는 듯하다.55)

포로들이 수용소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 물론 거제 포로수용 소만의 특징은 아니다. 독일의 나치시기 다하우(Dachau)나 부헨 발트(Buchenwald), 작센하우젠(Sachsenhausen) 등의 나치 집단 수용소(KZ)에서도 포로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 일터로 갔다가

<sup>54)</sup> 영어해제는 "A young prisoner of war orchestra playing popular Western tunes"로 되어 있다. 하지만 문서에 'Koje'가 아니라'Korea'로만 되어 있어서 거제 포로수용소의 악대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sup>55) 1952</sup>년 5월 돗트 준장 납치사건 이후, 포로들의 소단위로 분리수용하는 정책이 세 워지고, 수용소 주변의 마을 주민들에게 소개령이 내려졌다. (주영복, 『내가 겪은 한국전쟁』 제2권, 328쪽) 그전까지 수용소 근처 마을 사람들은 포로들의 노래 소 리를 들을 수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돌아올 때 행진곡을 부르면서 걸어야 했다.<sup>56)</sup> 하지만, 그곳에서는 반나치적인 가사의 노래를 공개적으로 부르는 것은 곧바로 죽음을 의미했으므로, 나치에 저항하는 사회주의자를 비롯한 반파시즘 수감자들은 은밀한 방식으로 철자나 악센트를 바꾸어 나치들을 비웃고, 자신들끼리의 연대를 표현하는 정도였다.<sup>57)</sup>

또한 제2차대전 시기 일본군의 포로가 된 싱가포르 연합군의 여성들이 수마트라 수용소에서 노래를 통해 힘든 포로생활을 견 디어낼 수 있었다. 여성포로의 노래활동에 대해서는 실제 당시 포 로였던 오스트레일리아 간호원의 책을 원작으로 1997년 개봉된 브루스 베레스포드(Bruce Beresford) 감독의 영화 〈파라다이스 로드〉(Paradise road)에 잘 그려져 있다. 58) 수마트라의 열악한 수용소에서 여성포로들은 아카펠라의 '목소리 오케스트라(voice orchestra)'를 만들었다. 포로들의 구성은 식민지 본토 여성과 서 양 백인 여성이 섞여 있어서 언어와 문화와 계급적 차이로 인한 포로간의 불화가 잦았고, 이로 인해 안 그래도 힘든 수용소 생활 을 더욱 힘들게 했다. 지친 포로들은 서로 한 맘이 되어 살아남 는 일에 집중하고자 '목소리 오케스트라'를 만들었다. 아름다운 합 창음악 덕분에 포로들은 서로 연대하게 되어 위로와 용기를 얻었 고, 일본군마저도 청중이 되게 만들었다. 수마트라 여성포로수용 소에서 노래는 피부색과 언어가 다르고, 이전의 사회적 계급이 달 랐던 사람들을 단결시키는 역할을 했다.

<sup>56)</sup> Gabriele Knapp, Das Frauenorchester in Auschwitz. Musikalische Zwangsarbeit und ihre Bewaeltigung, pp. 111~112.

<sup>57)</sup> Stephan Stompor, *Jüdisches Musik- und Theaterleben unter dem NS-Staat,* Hannover: Europaeischer Zentrum für Jüdische Musik, 2001. pp. 236~248. 나치는 노래가 저항적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되면 바로 금지했다.

<sup>58)</sup> 원작은 Betty Jeffrey, White Coolies, Sydney: Eden Paperbacks, 1954. 영화에 대해서는 https://en.wikipedia.org/wiki/Paradise\_Road\_(1997\_film) (검색일 2020.11.6)

거제 포로수용소에서의 노래도 포로들에게 위로를 주고, 단결하 도록 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포로들이 친공과 반공으로 이분되어 싸웠기 때문에, 위로와 단결은 같은 진영의 포로들에게만 해당되 는 것이었다.

6·25전쟁 이전의 전쟁에서 포로와 수용소 당국은 1대1의 관계로 비교적 단순했다. 제1차 대전 중 독일·오스트리아군 포로가 약 4천7백 명이 수용되었던 일본 포로수용소에서도 포로들의 자치제가 허락되었고, 독일군이나 오스트리아군의 군대 계급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59) 여기서는 포로간의 분열은 없었다. 적어도 수용소 당국에 저항할 때, 포로들끼리는 같은 편이었다. 60)

또한 나치강제수용소에서도 포로들 중에 염탐하는 첩자가 있었고, 포로이지만 수용소에서 특별업무를 가진 카포(Kapo)<sup>61)</sup> 및 특권층의 포로들이 다수의 일반 포로를 억압하는 위계질서를 바탕으로 운영되었지만, 정치적 이념이 달라서 포로가 양분되어 투쟁하는 일은 없었다. 서로 이권을 두고 포로들끼리 다투는 일은 자주 발생했지만, 나치수용소의 권력에 저항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으므로,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 저항자체가 드물었다.<sup>62)</sup>

<sup>59)</sup> 이경분, 「일본 포로수용소에서의 음악과 평화 -반도와 구루메를 중심으로」, 『人文論叢』73/2, 서울대 인문학연구소 2006, 461쪽.

<sup>60)</sup>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일본 포로수용소에서도 오스트리아군으로 입대했던 이탈리아인이 1915년 이탈리아가 동맹에서 탈퇴하여 연합군에 가담한 후, 독일·오스트리아 포로들과 적대적인 관계로 변했으므로 폭행을 당한 사례가 있지만, 이는 예외였다. 또한 전쟁이 끝나자, 원래 동아시아에서 살았던 독일 포로들은 본국독일로 귀환하지 않고, 일본이나 상하이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의미는 없었다.

<sup>61)</sup> 카포는 각 코만도를 관리·감독하는 십장(什長)과 같은 기능을 하면서 자신은 노동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수용소 내 신분의 위계질서에서 볼 때, SS의 하수인으로 일반 수감자들 위에 군림했다.

<sup>62)</sup>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실제 무력저항운동은 1944년 11월 7일 아우슈비츠의 시체처리반 유대인들이 화약과 무기로 시체를 태우는 소각로를 폭파했던 사건이었다.

물론, 제2차 대전 시기 연합군에게 잡혀 미국 본토의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었던 독일군 포로 가운데 나치추종자들이 반나치동료포로를 살해했던 경우가 있었다. 63) 수용소 당국은 나치와나치추종자들을 골라내어 따로 격리시켰으므로, 포로전체의양분이나 폭동의 배경이 되지 못했다. 무엇보다 약 700개의미국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약 40만 명의 독일포로들은 미국의 산업체나 농장 또는 벌목을 위한 노동력으로 투입되어 종일 일을 해야 했다. 64) 포로들은 일당 8센트의 임금을 받았으며, 의식주도 양호해서 만족스러운 조건이었다. 65)

반면, 훨씬 열악했던 조건의 거제포로수용소에서 투쟁 구도는 수용소 관리측 vs 친공포로측 vs 반공포로측이 삼각관계를 이루는 훨씬 복잡한 상황이었다. 한국전쟁이 이데올로기 전쟁이라는 자각이 없었던 수용소 당국이 무간섭 원칙으로 뒷짐을 지고 있는 동안<sup>66)</sup> 포로들 간의 살육전쟁이 벌어졌고, 시위와 폭동이 끊이지 않았다.

실패로 끝난 이 저항운동으로 은밀하게 도왔던 4명의 여성수감자들은 공개 교수형에 처해졌고, 총 450여 명이 살해되었다. Shmuel Krakowski. "Der unvorstellbare Kampf", Barbara Distel (Hrsg.): *Frauen im Holocaust*, Gerlingen: Bleicher Verlag 2001, pp. 289~300.

<sup>63)</sup> 오클라호마의 통가와(Tonkawa) 수용소에서 그런 폭동이 있었다. 주영복, 『내가 겪은 한국전쟁』 제2권, 255쪽. 미국 정부는 반나치 포로동료를 살해한 14명의 나치 포로 들을 종전 후 사형에 처했다. https://en.wikipedia.org/wiki/German\_prisoners\_of\_war\_in\_the\_United\_States#Prisoner\_resistance (검색일 2020,11,9.)

<sup>64)</sup> Nazi Prisoner in America - Out of the War (WW2HRT\_32-02)https://www.youtube.com/watch?v=HcQcfv9jXUI (검색일 2020,11,10,)

<sup>65)</sup> 독일군 포로들은 미군 병사와 같은 수준의 음식배급을 받았다. 한 독일 포로는 포로생활 2년 동안 몸무게가 57파운드(25,8Kg) 늘었다고 한다. Lewis H. Carlson, We were each other's prisoners, New York: Basic Books, 1997, p. 208.

<sup>66)</sup> 미군들은 "A red dog bit the other one" 정도로 바라보았는데, 주영복은 이를 미군 당국의 큰 실책으로 보았다. 주영복, 『내가 겪은 한국전쟁』 제2권, 227~ 233쪽.

특히 친공측 포로들은 반공측 포로들과도 싸워야 했지만, 동시에 수용소 당국에도 저항해야 했다. 반공측 포로의 포섭뿐 아니라, 수용소의 정책에 반대하는 노래도 필요했으므로, 노래 레퍼토리의 수요는 매우 컸다고 하겠다. 어떤 포로수용소이든 행진을 위해서 또는 위로와 격려와 오락을 위해서 노래가 불려졌지만, 거제포로수용소의 복잡한 구도에서 포로들의 노래는 어떤 특별한 점이 있었는가. 노래가 거제 포로수용소의 특징 중 하나가 될 수있는지 살펴보자.

## 5. 거제 포로수용소에서 노래의 역할

#### 가. 노래를 통한 오락과 위로와 화해

적군의 노래와 아군의 노래을 구분하는 것은 음악장르나 스타일자체보다 가사와 그 노래가 연주되는 맥락에 있을 것이다. 음악이 흥겹거나 슬픈 인간의 감정을 표현해 주고, 우울한 기분을 밝게 해주거나 센티멘털하게도 만드는 것처럼, 포로들은 노래를부르면서 철조망에 갇힌 처량한 신세를 잊고 명랑한 분위기가 되기도 한다. 반공포로 이한에 따르면, 좌익포로들과 분리된 후(1952년 6월), 우익포로들만 있었던 곳에서는 훨씬 자유롭고 명랑한 분위기였는데, 노래를 잘하는 별명이 '노다지'라는 포로가인기를 독점하였다고 한다. 67) 그의 간드러진 목소리로 달밝은 가을밤에 기타 반주에 맞추어 〈타향살이〉를 부르면, 고향을 그리워하며 슬피 우는 동료포로들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가도

<sup>67)</sup> 노래 잘하는 사람은 인기가 높아서 특별대우를 받았고, 늘 좋은 양담배 등을 피웠다. 이한, 『거제도 일기. 釋放된 捕虜의 血의 記錄』, 89~93쪽.

"비단장사 왕서방... 띵호와 띵호와"의 중국 왕서방 흉내를 내는 익살스런 노래가 웃음바다로 만들었다.<sup>68)</sup> 이런 일은 거의 모든 포로수용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제65수용소의 오세희도 거제 포로수용소의 노천극장 가설무 대에서 합창단이 "민요에서 가곡까지 일류로 공연"하여 포로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였던 것을 회고한다. <sup>69)</sup> 천여 명의 포로 청중들은 남·북한 4중창의 멋진 노래에 갈채를 보냈다. 아마도 아직 좌우대립이 살벌한 수준으로 치닫기 전의 초기 수용소 시절이었던 것 같다. "포로들은 하나같이 즐거운 표정이었고, 인간생활에 예술의 필요성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해준 공연은 남북한 출신이 잠시나마 사상적 논쟁을 잊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한다. <sup>70)</sup>

노래를 통해서 적과 적이 잠시 적대 감정을 잊고 친구처럼 평화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는 거제포로수용소만의 경험은 아니었다. 유럽의 제1차 대전 중 독일군과 프랑스군이 참호전투를 벌였던 1914년 크리스마스 때에도 있었다. 독일군 측의 유명한 오페라 가수는 크리스마스를 참호 속에서 보내야 했던 독일군을 위로하기 위해 노래를 불렀다. [71] 그런데 그의 노래소리는 다른 편 참호 속의 프랑스군들의 귀도 사로잡았다. 노래가 끝나자, 프랑스 군인들은 환호하며 박수를 쳤고, 앙코르까지 요청하였다.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프랑스 감독 크리스티앙 카리옹 (Christian Carion)의 〈메리 크리스마스 Joyeux Noël〉(2005)이

<sup>68)</sup> 이한, 『거제도 일기. 釋放된 捕虜의 血의 記錄」, 90~91쪽.

<sup>69)</sup> 오세희, 『65포로수용소』, 211쪽.

<sup>70)</sup> 물론 이때 합창뿐 아니라, 〈놀부전〉 공연과 댄스그룹의 탭댄스 공연도 있었다. 오세희, 『65포로수용소』, 211쪽.

<sup>71)</sup> 노래 불렀던 성악가는 테너 발터 키르히호프(Walter Kirchhoff 1879-1951)로 유명한 바그너 오페라의 가수였다. https://de.wikipedia.org/wiki/Walter\_Kirchhoff (검색일 2020,11.6)

다. <sup>72)</sup> 실제로 이 사건은 크리스마스 다음 날, 각국의 사령관에게 전달되었고, 평화적인 포로들은 다른 전선으로 차출되었고, 재발되지 않도록 제재가 가해졌다. <sup>73)</sup> 노래를 통한 제1차대전 초기의 평화사건은 점점 끔찍한 전쟁으로 치닫던 후기에는 다시 발생하기 힘들었다.

다른 한편,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거제 포로수용소에서 친공 측과 반공측이 노래를 통해, 적대감을 잠시 잊는 사건은 오히려 자주 일어났으리라 추측된다. 적색(친공) 수용소의 친공 포로는 백색(반공) 수용소를 전복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동원했다. 그중에 하나가 군가 부르기였다. 1952년 출판된 이한의 『거제도일기』에는 특히 달이 밝고 고요한 밤중에 멋지게 부르는 북한 군 군가가 일반 포로들의 심리적 동요를 일으켰다고 보고한다. 74) 북한군 출신 합창단의 뛰어난 노래 실력은 수용소 내에서 유명했다.

친공 포로들이 다양한 레퍼토리로 노래에 힘을 쓰고 있었던 반면, 포로들의 일기나 회고록에서 반공 포로들의 레퍼토리는 빈약해 보인다. 〈애국가〉, 〈전우〉, 〈대한반공청년단가〉, 〈삼일절 노래〉 등이 언급되는 정도이다. 75) 이에 비해 회고록에서 언급되는 친공 포로들의 군가 레퍼토리는 〈적기가〉, 〈인터내셔널〉, 〈김일성장군의 노래〉, 〈스탈린 대원수의 노래〉, 〈봄노래〉, 76) 〈조선유격

<sup>72)</sup> https://en.wikipedia.org/wiki/Joyeux\_No%C3%ABI (검색일 2020.11.6)

<sup>73)</sup> https://de.wikipedia.org/wiki/Merry\_Christmas\_(Film) (검색일 2020.11.11)

<sup>74)</sup> 이한, 『거제도 일기. 釋放된 捕虜의 血의 記錄』, 61쪽.

<sup>75)</sup> 반공측에서는 항상 안익태의 〈애국가〉를 대표곡으로 불렀던 반면, 친공측은 김 워균이 작곡한 북한의 〈애국가〉보다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더 애창되었다.

<sup>76)</sup> 여성 포로 합창단이 불렀던 〈봄노래〉는 1952년 작곡되었는데, 가사 "1. 푸른산 기슭에 기름진 들가/황철나무 한그루 비껴선 마을에/백두산의 정기담아 맑은 샘물 솟나니/여기는 내 마을 사랑하는 내 조국. 2. 맑고맑은 이 샘물엔 사연도 많아라/조국으로 진군하던 빨찌산 대원들/이 마을을 지나다가 이 샘물을 마셨나니/여기는 내 마을 사랑하는 내 조국. 3. 빨찌산의 이야기 담겨진 이 샘

대 전투가〉, 〈빨치산의 노래〉, 〈의용군 행진곡〉, 〈인민해방군 행진곡〉, 〈8.15〉 노래 등 훨씬 풍부하다.77)

제66수용동의 친공 포로는 건너편에 있는 반공수용소 제68수용동의 일반포로들에게 마음의 동요를 불러일으키고자 밤이건, 새벽이건 수시로 노래했다. 78) 이에 반공측 포로는 이런 청각적 공세에 맞대응하여 북한군의 노래를 방해하고자 했으나 역부족이었던 것 같다. 반공포로 이 한은 '군가투쟁'이 친공측에 여러 모로 유리했던 것은 산을 등지고 놓인 친공수용소 막사의 위치 때문이라고 하지만 79), 실제로는 밤이건 새벽이건 시간을 가리지 않고 거침없이 노래 공세를 펼칠수 있는 친공 포로들의 역량 때문이었으리라 추측된다. 친공측 포로들의 노래 공세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반공측 포로들은 수면 부족에 시달릴 정도였다. 80) 노래 대결에서 친공포로가 우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남한 출신 의용군이나 반공포로에 비해 친공측 북한군은 전쟁 이전에도 평소 음악소조활동을 통해 노래 훈련이 조직적으로 잘 되어 있었던 까닭이다 81)

물/이 마을의 젊은이들 마시며 자라서/장군님의 전사로 용감하게 싸웠나니/여기는 내 마을 사랑하는 내 조국"이라는 내용으로 보아 빨치산의 노래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UaHOyy0BPKo (검색일 2020, 9,30,)

<sup>77)</sup> 주영복은 부산포로수용소 시기, 북한군 장교들이 일본 민요와 일본 유행가, 러시아 민요와 중국 노래도 불렀다고 한다. 다만 일본군가는 자제했다고 한다. 주영복, 『내가 겪은 한국전쟁』 제2권, 211쪽.

<sup>78)</sup> 이한, 『거제도 일기. 釋放된 捕虜의 血의 記錄』, 60-61쪽.

<sup>79)</sup> 이한, 『거제도 일기. 釋放된 捕虜의 血의 記錄』, 61쪽.

<sup>80)</sup> 이한, 『거제도 일기. 釋放된 捕虜의 血의 記錄』, 61쪽.

<sup>81) 1949</sup>년 북조선 직업총동맹 군중 문화부에서 발행한 〈음악써클원 수첩〉(1949)을 보면 북한에서 일반적으로 음악훈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해외 한국 관련 기록물 Item #1-108. 음악 써클원 수첩(군중문화 총서 6), RG 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Doc. No. SA 2012.(국립중앙도 서관)

반면, 반공측 북한군 포로는 남한 노래와 남한 군가를 새로 배워야 했으므로, 친공포로들의 단련된 노래 실력과 풍부한 레퍼토리에는 상대가 되지 못했다. 북한군 출신의 반공포로였던 송관호는 남한에 와서 가장 먼저 배운 노래가 1952년 3월 1일에 불렀던 〈삼일절 노래〉였고, 그 외에도 〈전우〉를 비롯하여 남한 군가를 새로 배웠다고 한다. 82) 특히 유호 작사, 박시춘 작곡의 〈전우〉(1950)83)는 남한 군가 중에서 가장 애창되는 곡으로서 북한군 반공포로 주영복도 서정적 가사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고백한다. 84)

군가투쟁은 30분에서 2시간 가량 지속되었다. 이 한은 군가 부르기로 양쪽 모두 기진맥진해질 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기진맥진해지면 욕설도 나오고 유행가도 나온다. 〈아 신라의 달 밤이여〉를 이쪽에서 부르면, 저쪽에서는 〈양산도〉(양덕멩산 흐르고 나리는 물...)를 끄집어낸다. 내종에 서로 흥에 겨워 합창이되고 '잘한다' 하는 찬사가 막 터져나오니 이게 동족의 비극이 아니고 무엇이라... 언어가 같고 풍속이 같고 얼굴이 같고, 핏줄기가 같은 족속들끼리. 이러다가 막판에 이르면 어느쪽에서 먼저 '오-이 저녁 먹구 합세'라고 고함치면 '저녁 먹고 또 기다리네' 하고 댓구를 한다."85)

<sup>82)</sup> 김종우 정리. 『전쟁포로 송관호 6 · 25 전쟁수기』. 163쪽.

<sup>83)</sup> 정확한 제목은 〈전우야 잘 자거라〉이고, 가사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낙동강아 잘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원한이 피에 맺힌 적군을 무찌르고 꽃잎처럼 떨어져 간 전우야 잘 자거라"이다. 이 노래는 국방부에서 정식제정한 군가가 아니고, '진중가요'에 속한다. 황문평, 전우야 잘 자거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49550 (검색일 2020.11.9.) 박목월 작사, 나운영 작곡의 대한민국 육군군가 〈전우〉(1973)는 다른 곡이다.

<sup>84)</sup> 주영복, 『내가 겪은 한국전쟁』제2권, 315~316쪽.

체제선전을 위해 힘겨루기로 시작했던 군가투쟁이 노래로 흥이 고조됨에 따라, (원래 무엇을 하고자 했는지를 잊고) 즐거운 오락으로서의 노래대결 또는 노래자랑이 되어버린 듯한 현상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사 내용으로 적의 진영을 뚜렷하게 나누는 군가와 달리, 유행가나 민요는 포로들이 이념과 상관없이 서로 공유하는 노래장르였다. 86) 군가투쟁은 공산측의 폭동이 심해짐에 따라 더욱 맹렬하게 전개되었는데, 친공포로의 노래가 얼마나 위력적이었던지, 반공포로 이한은 "쏘낙비 같이 쏟아져 나오는 붉은 군가"와 "우렁차게 부르짖는 스로간"이 수용소를 "휩쓸어버리는" 현상을 보고 "조직화된" 친공포로의 군가투쟁이나 구호투쟁을 저지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여겼다고 1952년『거제도 일기』에 기술하고 있다. 87)

#### 나. 포로간의 신호, 심리전의 도구로서의 노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는 노래는 심리적 전략으로 효과적인 수단이다. 친공포로들은 다른 수용소의 포로들이 작업 나가는 때를 맞추어, 포로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기 위해 노래를

<sup>85)</sup> 이한, 『거제도 일기. 釋放된 捕虜의 血의 記錄』, 62쪽. 판문점을 교차점으로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트럭에서 북한군과 국군이 적이 아니라 동족으로서 서로 "수고했다"라며 손을 흔들었다는 보고도 있다. 박진홍, 『돌아온 패자』, 역사비평사, 2001, 188-189쪽.

<sup>86)</sup> 이런 현상에서 포로 이한은 언어와 풍속이 같고, 얼굴과 핏줄기가 같은데, 서로 싸워야 하는 "동족의 비극"을 한탄하였다. 이한, 『거제도 일기. 釋放된 捕虜의 血의 記錄』, 62쪽.

<sup>87)</sup> 이한, 「거제도 일기. 釋放된 捕虜의 血의 記錄」, 77쪽. 반공포로였던 이한에게 "깊은 밤 하늘에 뜬 총총한 별이며 뺀짝이는 거제 앞바다 고요한 물결이 비최일 때 어데서인지 산넘어 붉은 군가의 멜로디"는 불안감을 불러일으켰다. 이한, 같은 책. 79~80쪽.

불렀다. 또 1952년 3월 말, 제71수용동<sup>88)</sup> 수용소의 중국군 친공 포로들이 투쟁조직을 계획했으나 밀고되어 주동자 7명이 반공포로가 장악한 제72수용동에 끌려가서 고초를 당할 때였 다. 친공포로 동료들이 매일 아침, 점심, 저녁, 3번 운동장에 모 여서 고문당하는 포로들이 끝까지 버티도록 노래로서 심리적 지 원을 했다.<sup>89)</sup>

또한 노래는 수용소 막사 내에서 상대 포로가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영보기 위한 탐색수단으로서도 이용되었다. 뛰어난영어실력으로 부산 포로수용소에서 통역관으로 활약했던 친공측 중국군 포로 장쩌스(張澤石)는 거제도로 이송되어, 제86수용동에 배정되었다. 그는 포로 중에 누가 자기편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해방구의 하늘〉, 〈단결이 힘이다〉, 〈가자 마오쩌퉁을 따라서〉등 중공군의 군가를 나지막하게 흥얼거렸다.90) 하지만, 반공포로가 득세하고 있던 제86수용동에서 선뜻 아군임을 드러내는 포로는 없었다. 반면, 장쩌스를비롯한 친공포로들이 제86수용동의 반공포로들에게 시달리다결국 친공포로들이 장악한 제71수용동으로 이동하게 되었을때, 〈인민해방군행진곡〉의〉을 불렀는데, 우측 철조망(제73수용동) 쪽에서 약 100명의 중국군 포로들이 아군임을 드러내는표시로 함께 노래했다 92)

<sup>88)</sup> 장택석의 책에는 제70수용동으로 되어 있으나 오류일 가능성이 크다. 장택석, 『중국군 포로의 6·25전쟁 참전기』, 167쪽.

<sup>89)</sup> 장택석, 『중국군 포로의 6·25전쟁 참전기』, 168쪽. 도드 장군에게 7명의 친공포 로를 제71수용동으로 보내달라는 항의편지를 쓰는 작업도 병행했다.

<sup>90)</sup> 장택석, 『중국군 포로의 6·25전쟁 참전기』, 87쪽. 장쩌스는 반공 포로 및 미군의 친공포로에 대한 비인도적 행위를 국제적십자나 유엔당국에 알리는 문서를 영어로 번역하는 중대한 역할을 했다.

<sup>91) 〈</sup>인민해방군행진곡〉은 정률성이 작곡했다. 광주출생인 정률성이 1938년 작곡한 〈옌안송〉은 중국에서 당대의 최고 유행가로 인정받았고, 1939년 작곡된 〈팔로군행 진곡〉은 중국국가로 여겨졌다.

노래는 동질성을 확인하며 자기편끼리 뭉치는 데에도 중요 한 도구였다. 매일 아침마다 유엔군의 국기 게양식이 있는 시간에. 한편에서는 인공기를 올리며 〈김일성 장군의 노래〉 를 부르면, 다른 편에서는 태극기를 올리며 〈애국가〉를 부르 면서 각자 진영의 동질성을 확인하였다. 93) 포로들이 수용소 내에서 각 진영의 국기를 게양하고 국가를 부르는 광경은 한 국전쟁 이전의 다른 포로수용소에서는 보기 힘든 것이었다. 포로들의 노래가 수용소 내에서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는 신 호가 된 것은 이데올로기 전쟁이 가져다주었던 거제 포로수용 소의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소위 "붉은 소굴"94)로 불 렸던 제62수용동에서 어느 날, '붉은 군가' 대신, 국군의 노 래 〈전우〉가 울려 퍼지는 일이 발생했다. 노래는 반공세력이 쿠데타에 성공하였음을 즉각적으로 알리는 신호였다. 물론 제62수용동는 곧 역쿠데타가 일어나서 붉은 군가가 다시 울 려 퍼졌다. 한국어를 모르는 미군 병사도 바뀐 노래를 통해 제62수용동이 누구의 세력하에 놓였는지를 구별할 수 있었을 정도였다 95)

#### 다. 폭력을 은폐하는 도구로서의 노래

포로들이 노래를 통해 위로를 받거나 음악 자체에 빠져 화해의 순간도 경험하고, 같은 편으로서 동질성을 느끼는 것, 그리고 노 래로 시위하며 자신들의 요구를 표현하는 것은 다른 수용소에서

<sup>92)</sup> 장택석, 『중국군 포로의 6 · 25전쟁 참전기』, 128쪽.

<sup>93)</sup> 문화방송 시사교양국, 2004, 『MBC 스페셜 이제는 말할 수 있다』85화, 한국전쟁과 포로2: 철조망 속의 전쟁 (배종엽의 증언).

<sup>94)</sup> 이한, 『거제도 일기. 釋放된 捕虜의 血의 記錄』, 80쪽.

<sup>95)</sup> 이한, 앞의 책, 82쪽.

도 있는 일이었다. 뿐만 아니라 노래는 폭력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했는데, 이것도 다른 외국수용소에서 자주 있었다. 특히 아우슈비츠에서 음악은 SS가 수감자에게 폭력을 가할때 발생하는 소음과 비명소리 등을 희석하고, 은폐하는 데 이용되었다. 96) 또한 가스실이 아닌 야외에서의 학살이 자행될때 SS는 항상 스피커 음악을 틀어놓았다. 루블린의 마이다네크 (Majdanek) 수용소에서 1943년 11월 3일 1만8천 명의 유대인을학살하는 동안에, 또는 소비보르(Sobibor) 수용소 근처 숲속에서의 학살해위 때에도 트럭의 스피커에서는 음악이 쉬지 않고 흘러나왔다. 97)

거제 포로수용소에서도 음악(노래)이 살인을 은폐했던 일이 있었다. 제66수용동 북한군 장교수용소에 소속이었던 주영복은 귀순 장교로서 요주의 인물로 감시를 받고, 특별천막에 갇혀 있으면서 다음과 같은 일을 체험하였다.

"어느 날 밤 이기준의 천막에서 언쟁소리가 났다(...) 음성이 점점 더 커지더니 마구 치는 소리가 나고 급기야 으악, 으윽! 하는 비명이 들렸다. 이때 그 주변 천막에서 일제히 군가소리가 울려이기준 천막 내의 아우성 소리는 어둠 속의 노래소리에 묻혀 사라지고 말았다. 망루의 경비병도 군가에 시달려 그런지 주의를 돌리지 않았다. 그 우렁찬 김일성 노래와 인민군 노래 속에서 광란한 적색 군관들이 (...) 이기준을 때려 죽였다."98)

<sup>96)</sup> Gabriele Knapp, Das Frauenorchester in Auschwitz. Musikalische Zwangsarbeit und ihre Bewaeltigung, p. 87.

<sup>97)</sup> 볼프강 벤츠, 『홀로코스트』(최용찬 옮김), 지식의 풍경, 2002, 148쪽.

<sup>98)</sup> 주영복, 『내가 겪은 한국전쟁』 제2권, 302쪽.

노래 소리가 비명과 구타소리를 뒤덮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런 행위는 영화에서도 자주 반영된다. 세르조 네오네(Sergio Leone) 감독의 영화 〈석양의 무법자〉(1966)에서 북부군이 포로가된 남부군에게 폭력을 가할 때, 포로 음악밴드를 연주하게 하여폭력의 소음을 희석하게 하는 장면이 그렇다.

## 6. 거제 포로수용소에서 '투쟁 무기'가 된 노래

유엔군과 국군의 지원을 받았던 북한군 출신 반공포로들은 대한 반공청년단을 결성했고(1951.8.7.), 북으로의 귀향을 거부했다.99) 반면 친공포로들은 해방동맹을 조직하여 이에 맞섰다. 대한반공청년 단은 '자원송환'을 위한 포로들의 심사가 시작하자 북한을 자원하는 친공포로들에게 테러를 가하며 위협했고, 친공쪽은 이에 대항하고 보복하는 등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했다.100) 친공포로들은 보다 많은 포로가 북한송환을 선택하도록 철저하게 반공포로와 싸우면서 망설이는 포로들을 포섭해야 했다. 또한 이것은 귀환 후에 북한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투쟁과 직결되었다.101) 이런 배경에서 친공포로들은 노래를 적군의 이데올로기에 대항하거나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지키는 '총성 없는 무기'로서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하고자 했다

<sup>99)</sup> 이들도 한광호 작시, 김정석 작곡의 〈대한반공청년단가〉를 만들어 불렀다. 대한반공청년단에는 문예종교국 산하 예술단이 있었고, 연극단, 음악단, 미술 인단으로 세분화되었다. 노래의 악보는 손구원, 『거제도에서 판문점까지』, 525쪽.

<sup>100)</sup> 문화방송 시사교양국, 2004, 「MBC 스페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85화, 한국전쟁과 포로2: 철조망 속의 전쟁. 이런 분위기에서 1952년 5월, 제76수용동의 친공포로들(대표: 총좌 이학구)이 도드 준장을 납치하는 사건이 벌어져서 국제적 관심을 받게 된다.

<sup>101)</sup> 이선우, 「한국전쟁기 거제도수용소 내 '친공포로'의 딜레마와 폭동」, 351쪽.

물론 태평양전쟁 시기에도 음악은 '군수품'이라 선전되었고, 국민가요, 행진곡 부르기 등이 강조되었다. 102) 또한 당시 학생들에게 실시한 음감 훈련은 적군과 아군의 전투기가 내는 소리를 구분하는 능력으로서 장려되었으며 103), 상이군인을 위로하는 음악회나 전선을 돌며 병사들을 위한 위문 공연 등도 전쟁 수행을 돕는 행위였다. 아군의 사기를 북돋운다는 의미에서음악은 소리로 지원하는 군수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거제 포로수용소의 포로에게 노래는 군수품의 차원을 넘어 훨씬 직접적인 투쟁 도구였다. 진짜 무기가 허락되지 않았던 104) 포로들에게 노래는 투석전에 사용하는 돌과 같은 무기였다. 1951년 6월 19일 제72수용동에서 포로들은 식사를 거부하며 노래를 부르고 깡통을 두드리며 시위했고, 포로가 던진 돌에 미군 장교가 다치자 이 시위는 무력으로 진압되었다.105)

친공측 포로의 노래는 폭동과 시위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지만, 금지된 노래를 불러 수용소 당국의 폭력진압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1951년 8월 15일 해방 기념일 저녁에 금지된 해방기념일 노래 ⟨8.15⟩를 제창했다고 하여, 친공포로들을 무력으로 진압한 노래제창사건도 발생했다. 106) 미군장교 터커(Cary S. Tucker) 중령의 진술에 따르면, 8월 15일

<sup>102)</sup> 계정식,「음악시평: 음악은 軍需品이다」,「新時代』3권 6호, 1943/6, 129쪽. 음악을 '군수품'으로 칭한 사람은 일본해군 대좌 히라이데 이데오(平出 英夫 1896-1948)였다. 임동혁,「音樂の一年」,「新時代』3권 12호, 1943/12, 74쪽.

<sup>103)</sup> 조선총독부 산하 조선교육회에서 발간한 일어잡지 『문교의 조선(文教の朝鮮)』 1941년 11월호는 음감교육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sup>104)</sup> 실제로는 반공측 포로나 친공측 포로는 각각 직업교육을 이용하여 은밀하게 무기를 만들어 살인에 이용하였고. 미군에 저항하기도 했다.

<sup>105)</sup> 전갑생, 『한국전쟁과 분단의 트라우마』, 215~216쪽. 이 절식투쟁에서 노래는 밤늦게까지 계속되었다고 한다. 조성훈, 『한국전쟁과 포로』, 187쪽.

<sup>106)</sup> 전갑생, 『한국전쟁과 분단의 트라우마』, 218~219쪽.

저녁 9시 반 노래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사격이 계속되었는데, 이로 인해 8명의 북한포로를 비롯해 총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107) 반면, 북한문서는 "8월 15일을 기념하는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미 헌병과 국군 보안대원들이 북한군포로들에게 발포하여 "44명 사망, 86명이 심각한 부상, 101명이 경상을 입었다"고 보고한다. 108) 북한문서와 미군의 문서가 같은 사건에 대해 다르게 보고하고 있어서 정확한 것을 판단할 수 없지만, 친공포로의 노래에 대한 수용소 당국의 예민한 반응은 그만큼 친공포로의 노래가 위협적으로 여겨졌다는 반증이다. 다시 말해, 친공포로들은 노래를 일종의 무기로이용하였고, 수용소 당국은 이런 맥락에서 '진짜 무기'로 대응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전선의 전투에서 진짜 무기의 수요가 컸듯이, 수용소의 이념 투쟁에서 '노래 무기'의 수요도 컸으리라 생각할 수 있다.

수용소 당국에 저항했던 중국군 친공포로들도 현장감 있는 노래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0여개의 노래를 직접 만들었다. 〈거제도〉, 〈누가 철이고 누가 강인가〉, 〈우리는 평화를 너무 사랑해〉, 〈3대 의무의 노래〉, 〈일어나라, 친애하는 전우들이여〉, 〈사랑스런 조국〉, 〈그 말 듣지 않아〉, 〈10월 1일의 홍기가 하늘 높이 휘날리네〉, 〈만가〉, 〈승리는 반드시 우리 것〉 등이 거제 포로수용소 현장에서 시시각각 필요한 투쟁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109) 예를 들어, 류전지아 작사·모어페이 작곡의 〈누가 철이고누가 강인가〉는 수용소 당국을 겨냥한 반미 노래이다.

<sup>107)</sup> 전갑생, 앞의 책, 219쪽.

<sup>108)</sup> 북한측의 보고는 미군측 사상자 숫자보다 거의 8배 많은데, 과장되었을 수 있다. 전갑생, 『한국전쟁과 분단의 트라우마』, 218~219쪽.

<sup>109)</sup> 모어페이 작사·작곡의 〈거제도〉와 장쩌스 작시, 뤄싱이 작곡의 〈만가〉 두 곡을 제외하고, 모두 수용소·당국과의 투쟁에서 자신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노래한 것이다. 장택석. 『중국군 포로의 6·25전쟁 참전기』, 369~374쪽.

"보라 누가 철(鐵)이고 누가 강(鋼)인지 여기는 반제국주의의 제철소. 보라 누구의 철이 단단하고 누구의 강이 강한지 제국주의를 향해 발사하라. 우리는 결단코 그들과 한판 겨루어야 한다네. 우리는 철이고 우리는 강이네. 그것이 철을 녹이는 제철소임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의 철은 단단하고 우리의 강은 강하네. 제국주의를 행해 발사하라. 우리는 결단코 그들을 완전히 소멸해야만 한다네!"110)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 수용소 당국을 향해서 포로들이 "발사"할 수 있는 것은 구호와 노래와 투석 정도일 것이다. 이 노래들이 알려지게 된 것은 포로작곡가 모어페이(莫非)가 부상병으로 귀국할 때, 의족에다 〈포로수용소가곡집〉을 숨겨서 왔기 때문이었다.[111] 중국군 친공포로 진영에서는 모어페이같은 중국인 포로작곡가가 노래를 현장에서 만들어내어 투쟁했다면, 북한군 친공포로들은 북한 총정치국에서 만든 '노래집'을 지원받았으리라는 정황이 있다.

중국군의 전투참여가 결정된 후인 1950년 10월에 신설된 북한의 총정치국<sup>112)</sup>이 1951년 6월 전투에 투입되는 북한군

<sup>110)</sup> 장택석, 『중국군 포로의 6·25전쟁 참전기』, 369쪽.

<sup>111)</sup> 장택석, 앞의 책, 362쪽,

<sup>112)</sup> 총정치국에는 출판부, 협주단 등도 신하 조직에 들어 있다. 이신재,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설치 배경에 대한 연구 - 한국전쟁 시기 북중(北中) 갈등을 중심으로」, 『군사』 8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51쪽; 총정치국의 출판부와 협주단은 1948년 조직된 문화훈련국의 신하부서였다. 고재홍, 「6·25 戰爭期 北韓軍 總政治局의 位相과 役割」, 『군사』 53, 2004, 146쪽 참고,

병사들에게 〈전투원들에게 주는 노래집〉을 배포하였다. 이는 그만큼 병사들의 전쟁수행에서 노래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113) 총 15곡이 수록된 이 노래집은 숫자를 음으로 표기한 숫자보로 되어 있다. 숫자보는 1=도, 2= 레, 3=미, 4=파, 5=솔 등의 원칙만 알면 쉽게 노래 부를 수 있다. 이 15곡 가운데, 중국군과의 연대를 의미하는 곡으로 〈영원한 친선〉이 한 곡 들어 있다.

이 노래집이 발간된 시기는 유엔군측의 선전삐라와 대형스피커 방송에 영향을 받아 북한군의 전투 의지가 흔들렸고, 총 15여 만 명의 포로가 거제포로수용소에 수용된 상황이었다.<sup>114)</sup> 1950년 10월 12일부터 귀순한 사람의 80%가 선전방송의 영향을 받았을 정도로 미군과 국군 측의 선전 효과는 컸다.<sup>115)</sup>

그런데, 의미심장한 것은 1951년 11월 〈전투원들에게 주는 노래집〉 제2권의 발간이다. 1951년 10월에는 전선이 고착되면서 38선을 중심으로 고지를 뺏고 빼앗기는 소모전으로 빠져들어 양쪽 모두 지친 상황에서 어느 쪽도 승리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양쪽 모두 체제경쟁에서 심리전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치열하게 전개하는 때였고, 동시에 12월 18일 포로명단 교환에 앞서 포로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116 더욱이 친공

<sup>113)</sup> 중국군의 참전을 전후로 북한의 군대체제에 변동이 생기는데, 박헌영을 국장으로 하는 총정치국이 1950년 10월 21일 군대 내에 설립되어 병사들을 위한 노래집 이나 시집 등을 발가하였다. 이신재. 앞의 글, 59쪽.

<sup>114) 6·25</sup>전쟁 중 전체 북한군 포로(약 15만 명)의 84%가 이미 이때 유엔군의 손에 들어갔다. 조성훈, 『한국전쟁과 포로』, 32. 선전물의 15%는 미 8군 사령부가, 85%는 극동사령부가 제작했는데 매주 1,400만 여장을 뿌렸다고 한다. 이임하, 『적을 삐라로 묻어라: 한국전쟁기 미국의 심리전』, 철수와 영희, 2012, 9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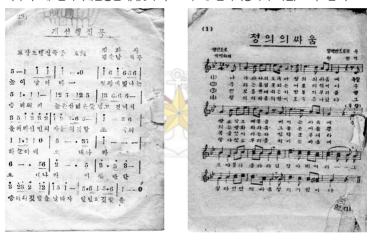
<sup>115) 1952</sup>년 1월 초까지 유엔군은 8억 6천만 매의 전단을 살포했다. 조성훈, 『한국전 쟁과 포로』, 50~51쪽,

<sup>116)</sup> 전갑생, 『한국전쟁과 분단의 트라우마』, 257쪽.

포로들이 거제도를 '제2의 전선'으로 여기며 본격적인 폭동을 전 개하고 있던 상황에서 〈전투원들에게 주는 노래집〉 제2권이 발간된 것이다.

특이한 점은 제1권이 단선율로 된 노래들이고, 간단한 숫자보로 되어 있어 병사들이 쉽게 부를 수 있도록 했던 반면, 제2권은 다 수의 노래가 2성부, 또는 3, 4성부로 되어 있어서 합창까지 가능 한 오선보 버전이다.

〈악보〉제1권의〈개선행진곡〉(숫자보)117)와 제2권의〈정의의 싸움〉118)(오선보)



왼쪽 〈악보〉에서 보듯이, 임화 작사·김순남 작곡의 〈개선행진 곡〉은 숫자보로 되어 있다. 반면, 오른쪽 제2권의 〈정의의 싸움〉 은 오선보로 되어 있어서 악보를 읽을 줄 알고, 화음을 넣을 수

<sup>117)</sup> 조선인민군총정치국, 〈전투원들에게 주는 노래집 1〉, 1951.6. RG 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Doc. No. SA 2012. 해외 한국관련 기록물 Item #9-7.1

<sup>118)</sup> 조선인민군총정치국, 〈전투원들에게 주는 노래집 2〉, 1951.11. RG 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Doc. No. SA 2012. 해외 한국관련 기록물 Item 8/35.

있는 음악적 병사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이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소련 노래의 높은 비중과 중국 관련 노래의 부재이다. 제1권에는 그나마 중국과의 연대를 암시하는 노래가 한 곡 들어있었지만, 총 20곡으로 되어 있는 제2권에는 (중국군이 참 전하여 많은 희생을 치르며 북한군을 돕고 있었지만) 중국 노래는 한 곡도 들어있지 않다. 반면, 첫 번째 노래〈정의의 싸움〉을 시작으로 소련 노래가 총 9곡이 수록되어 있다. 알렉산드르 바실리예비치 알렉산드로브(Александрр Васильевич Александров 1883—1946)가 작곡한〈정의의 싸움〉119)은 삼박자 계열에다 g단조로 되어 있는 서정적이고 강인한 느낌을 주는 선율이지만 행진곡은 아니므로, 행진하며 부르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증오야 불타 올라라 심장아 뛰어라. 그렇다 인민의 싸움 정의의 쌈이다"로 되어 있는 후렴구는 멋지게 화음을 넣을 수 있어 전투를 위한 심리적 효과가 탁월한노래이다.120)

〈전투원들에게 주는 노래집〉은 제1권이든 제2권이든, 생포된 북한군 포로를 통해 거제 포로수용소에 흘러 들어갔거나, 빨치산 을 통해서 전달되었을 것이 틀림없다. 실제로 1951년 말 북한의 인민군전사(pvt) 포로로 위장한 북한 특수공작대원 박상현이 거제 포로수용소에 잠입하였다. 121)

이런 정황을 고려해 볼 때, 평양의 총정치국이 전선에서 싸우는 병사들을 위해서 〈전투원들에게 주는 노래집〉 제1권을 숫자보로 출간했다면, 제2권은 거제 포로수용소의 시위와 노래투쟁을

<sup>119)</sup> 알렉산드르 바실리예비치 알렉산드로브는 소련국가도 작곡하였다.

<sup>120)</sup> 장쩌스는 소련 노래가 영혼의 고통을 덜어주었다고 한다. 장택석, 『중국군 포로 의 6·25전쟁 참전기』, 298쪽.

<sup>121)</sup> 박상현에 대한 유엔보고서(1953.1.)는 특수공작대원으로 거제 포로수용소에 잠입한 최고핵심인물로 규정한다. 박상현은 이후 수용소 내의 포로 시위와 폭동을 총지휘하였다. 이선우, 「한국전쟁기 거제도수용소 내 '친공포로'의 딜레마와 폭동」, 333쪽 재인용.

지원하기 위해서 음악적인 수준을 더 반영한 오선보로 출간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가사는 현지 상황에 맞게 바꾸어 부를 수 있도록, 음악적으로 서정적인 소련 노래를 풍부하게 담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가설은 지면상 추후 연구할 것이다. 122)

## 7. 끝맺으며

거제포로수용소는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면, '노래로 시끄러운 수용소'였다. 시위와 폭동과 슬로건 외침으로도 시끄러웠지만, 매일 아침, 저녁 친공포로 수용동에서는 인공기를 올리고 내리면서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불렀고, 반공포로 수용동에서는 태극기를 올리고 내리면서 친공측에 질세라 〈애국가〉를 불렀다. 친공수용소에서 탈출하여 거제도 장승포의 중계수용소에서 대기 중이었던 반공포로 주영복은 그곳의 저녁 노랫소리를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오른쪽 천막은 인민군노래, 왼쪽 천막은 국군노래, 뒷 천막은 중공군노래, 국민당군 노래가 울린다. 어떤 천막에서는 노래에 맞추어 퉁퉁 퉁강 퉁강 퉁퉁... 북과 드럼통을 두드리고, 어떤 천막에서는 숟가락으로 후라이팬과 깡통을 두드려대서 귀가 멀 정도였다."123)

<sup>122)</sup> 이정아의 논문「'전투원들에게 주는 노래집'에 나타난 북한 전시가요의 특징」 (『韓國音樂史學報』62, 2019, 259-294)에는 노래집 발간 배경에 대한 언급이 전 혀 없다.

<sup>123)</sup> 주영복, 『내가 겪은 한국전쟁』 제2권, 314쪽.

거제 포로수용소에서는 새벽이고 깊은 밤이고 어디선가 노래소리가 흘러나왔다. 낮에는 낮대로 다른 수용동의 포로들에게심리적 영향을 미치고자 노래를 불렀고, 목이 쉴세라 '군가투쟁'을 통해 상징적이고 심리적인 힘겨루기를 했다. 포로들은기회만 있으면 노래를 하였고, 수용소 당국은 8.15 해방기념일에 금지했던 노래를 부른다는 빌미로 무력 진압하는 일도 발생했다.

오세희의 회고에 따르면, 1951년 봄, 포로들이 부산 포로 수용소에서 거제도로 이송될 때만 하더라도, 미군헌병은 시가지에서 〈김일성 장군〉를 제창하던 좌익포로들을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좌익포로들을 구타하던 국군헌병을 제지했다. 124) 하지만, 휴전회담에서 포로의 자유송환 문제가 친공 vs 반공의 체제경쟁으로 치달으면서 노래에 대한 수용소 당국의 반응도 달라진 것이다. 노래를 투쟁 무기로 여겨 금지하거나, 노래를 저지하기 위해 소총과 기관총으로 발포하기까지 했다.

6 · 25전쟁 이전의 다른 포로수용소에서 노래가 포로간의 투쟁에서, 그리고 수용소 당국과의 투쟁에서 이런 정도로 전투력을 가지고 '총성없는 무기'로 사용된 경우는 드물 것이다. 거제 포로수용소의 포로들에게 노래는 항상 언제, 어디서라도 쉽게 동원될 수 있어서 포로들의 요구와 애환과 불만과 저항을 표현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편리한 수단이었던 것이다. 또한 '군가투쟁' 중에 노래에 집중하다가 잠시 이데올로기를 잊는 순간도 있었지만, 포로송환문제가 이슈가 될수록 각자 생존을 위하여

<sup>124)</sup> 이에 좌익포로들은 더욱 신나게 〈빨치산의 노래〉, 〈적기가〉 등을 불렀다고 한다. 오세희, 『65포로수용소』, 210쪽.

반대측 포로를 살해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이때 노래는 폭력과 살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희석하고 은폐하기 위해서도 이용되었다.

특히 반공측 포로들보다 수용소 당국의 정책에 저항해야하는 불리한 위치에 있었던 친공측 포로들에게 노래는 더욱 중요한 수단이었다. 노래실력이나 레퍼토리에서 우세했던 친공 포로들에게 노래는 반공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방패였고, 수용소 당국의 정책에 반대하는 무기와 같은 것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의 총정치국이 1951년 11월 거제 포로수용소의 친공 포로들의 노래투쟁을 지원하기 위해〈전투원들에게 주는 노래집〉제2권을 발간했다는 가설도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냉전의 첫 열전의 결과로 탄생한 거제 포로수용소는 포로간의 투쟁과 수용소 당국과의 투쟁에서 노래를 적극 활용했던 수용소로서, 그 이전의 다른 포로수용소에서는 보기 드물게 노래로 시끄러웠던 수용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6 · 25전쟁에서 냉전 이데올로기와 음악이 결합하면서 나타난 하나의 현상이라 할수 있다.

(원고투고일 : 2020, 10, 13, 심사수정일 : 2020, 11, 13, 게재확정일 : 2020, 12, 2,)

주제어: 6.25전쟁, 포로들의 노래, 군가, 거제도 포로수용소,

<전투원들에게 주는 노래집>, 냉전, 음악

## 〈참고문헌〉

- 1. 국사편찬위원회 디지털아카이브의 미국의 국립문서기록관리청 (NARA) 자료
- Record Group 111: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Chief Signal Officer, 1860 1985, 문서번호 SC-386459.
- \_\_\_\_\_, 1860 1985, 문서번호 C7259.
- RG 306: Records of the U.S. Information Agency, 1900 2003. 문서번호: 53-11740.
- 2.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 자료
- 북조선직업총동맹 군중문화부, 1949. 〈음악 써클원 수첩〉(군중문화총서 6), RG 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Doc. No. SA 2012. 해외 한국관련 기록물 Item #1-108
- 조선인민군총정치국, 1951. 〈전투원들에게 주는 노래집1〉, 1951.6. RG 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Doc. No. SA 2012. 해외 한국관련 기록물 Item #9-7.1
- 3. 잡지 1차 사료
- 계정식. 1943. 「음악시평: 음악은 軍需品이다」,『新時代』3권6호, 1943/6.
- 임동혁. 1943. 「音樂の一年」、『新時代』3권 12호, 1943/12.

- 4. 2차 사료
- 고재홍. 2004. 「6·25 戰爭期 北韓軍 總政治局의 位相과 役割」, 『군사』 53, 군사편찬연구소, 143-180. http://uci.or.kr/G901:A-0001984842
- 김종운 정리. 2015. 『전쟁포로 송관호 6·25 전쟁수기』, 서울: 눈빛출판사. http://uci.or.kr/G901:A-0006565245
- 김학재. 2009. 「진압과 석방의 정치-한국전쟁기 포로수용소와 국민형성」, 『제노사이드 연구』제5호, 45-100. http://uci.or.kr/G901:A-0002692132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18. 『전쟁 포로, 평화를 말하다』, 민속원. http://uci.or.kr/G701:D-00114880809
- 박진홍. 2001. 『돌아온 패자』, 역사비평사. http://uci.or.kr/G701:C-00056992712
- 볼프강 벤츠, 2002, 『홀로코스트』(최용찬 옮김), 지식의 풍경,
- 성강현. 2016, 「거제도포로수용소의 9·17폭동 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 구』86호,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240. https://doi.org/10.19162/KNM.86.2016.3.06
- 손구원. 2001. 『거제도에서 판문점까지』, 통일안보중앙협의회.
- 오세희. 2000. 『65포로수용소』, 대구: 만인사.
- 이경분. 2016, 「일본 포로수용소에서의 음악과 평화 반도와 구루메를 중심으로」,『人文論叢』73/2, 서울대 인문학연구소. 459-490. https://doi.org/10.17326/jhsnu.73.2.201605.459
- 이상호. 2010. 「한국전쟁기 미군의 공산포로 '미국화 교육'」, 『역사와 현실』 78호, 한국역사연구회, 421-449. http://uci.or.kr/G704-000054.2010..78.011
- 이선우. 2017, 「한국전쟁기 거제도수용소 내 '친공포로'의 딜레마와 폭동」, 『역사문제연구』38, 역사문제연구소, 317-356. http://uci.or.kr/I410-ECN-0101-2018-911-001493046

- 이신재. 2012.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설치 배경에 대한 연구 한국전쟁 시기 북중(北中)갈등을 중심으로」, 『군사』 83, 군사편찬연구소, 35-66.
  - https://doi.org/10.29212/mh.2012..83.35
- 이임하. 2012, 『적을 삐라로 묻어라: 한국전쟁기 미국의 심리전』, 서울: 철수와 영희, http://uci.or.kr/G901:A-0006408758
- 이정아. 2019, 「'전투원들에게 주는 노래집'에 나타난 북한 전시가요의 특징」, 『韓國音樂史學報』62. 한국음악사학회, 259-294. http://uci.or.kr/I410-ECN-0102-2019-600-001695846
- 이 한. 1952, 『거제도 일기. 釋放된 捕虜의 血의 記錄』, 부산: 국제신보 사 출판국.
- 장택석. 2009. 『중국군 포로의 6·25전쟁 참전기』(손준식 옮김), 서울: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http://uci.or.kr/G901:A-0006293388
- 전갑생. 2011, 『한국전쟁과 분단의 트라우마』, 서울: 선인 http://uci.or.kr/G901:A-0006325803
- 조성훈. 2003, 『한국전쟁의 유격전사』, 서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http://uci.or.kr/G901:A-0006075440
- \_\_\_\_\_, 2010, 『한국전쟁과 포로』, 서울: 선인.
- Carlson, Lewis H. 1997. We were each other's prisoners, New York: Basic Books.
- Knapp, Gabriele. 1996. Das Frauenorchester in Auschwitz. Musikalische Zwangsarbeit und ihre Bewaeltigung, Hamburg: Bockel.
- Krakowski, Shmuel. 2001. "Der unvorstellbare Kampf", Barbara Distel (Hrsg.): Frauen im Holocaust, Gerlingen: Bleicher Verlag.

- Roeder, Maike (ed.). 2005. "Alle Menschen werden Brüder ...".

  Deutsche Kriegsgefangene in Japan 1914–1920. Begleitheft zur Ausstellung der OAG. Tokyo: PrintX Kabushikigaisha.
- Stompor, Stephan. 2001. *Jüdisches Musik- und Theaterleben unter dem NS-Staat*, Hannover: Europaeischer Zentrum für Jüdische Musik.
- 習志野市教育委員会編. 2002. 『ドイツ兵士の見たニッポン 習志野俘虜収容 所1915-1920』、東京: 丸善ブックス.
- 大津留厚(2007), 『青野原俘虜収容所の世界:第一次世界大戦とオーストリア 捕虜兵』,東京:山川出版社,
- 5. 구술 자료 및 영상, 인터넷 자료
- 거제포로수용소 포로들의 체육활동영상공개:

https://www.youtube.com/watch?v=owNm\_JuP1UQ

국방TV, 2017, [제67주년 6·25전쟁 특집다큐] 『피란과 포로의 땅, 거제도』.

https://www.youtube.com/watch?v=aV\_2NaSUIL4&t=2 667s (2020,11,18.)

- 국사편찬위원회 디지털 아카이브. http://archive.history.go.kr 군사편찬연구소. 2014. "거제도포로수용자DB"
  - http://www.imhc.mil.kr/user/indexSub.action?codyMenuSeq =70400&siteId=imhc&menuUIType=sub
- 문화방송 시사교양국, 2004, 『MBC 스페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특집 3부작 한국전쟁과 포로』: 1부 철조망 속의 지배자들, 2부: 철조망 속의 전쟁, 3부: 철조망의 안과 밖. https://www.youtube.com/watch?v=uK3bnKMxM5w (검색일 2020,11,18.)
- 〈봄노래〉, https://www.youtube.com/watch?v=UaHOyy0BPKo (검색일 2020, 9.30.)
- Carion, Christian, (Joyeux Noël) (2005).

- https://en.wikipedia.org/wiki/Joyeux\_No%C3%ABl (검색일 2020.11.6.)
- Campisi. Michael. 2007. "Camp Ruston: German p. O.W.'s in Louisiana", *Louisiana Public Broadcasting*. https://www.youtube.com/watch?v=EjcbeKd4Y2s(검색일 2020,11.11.)
- "German POWs in North America".

  https://uboat.net/men/pow/recreation.htm(검색일 2020.11.11.)
- "German Prisoner of war".

  https://en.wikipedia.org/wiki/German\_prisoners\_of\_
  war\_in\_the\_United\_States#Prisoner\_resistance(검색일
  2020. 11.9.)
- "German Prisoner of war", *Handbook of Texas*, Texas State Historical Association, https://www.tshaonline.org/handbook/entries/german-prisoners-of-war (검색일 2020 11 11)
- Kirchhoff, Walter, https://de.wikipedia.org/wiki/Walter\_Kirchhoff(검색일 2020.11.6.)
- "Nazi Prisoner in America Out of the War"
  (WW2HRT\_32-02)
  https://www.youtube.com/watch?v=HcQcfv9jXUI(검색일
  2020.11.10.)
- Roberts, Jeff. "POW Camps in World War II", Tennessee Encyclopedia, https://tennesseeencyclopedia.net/entries/pow-camps-in-world-war-ii/(검색일 2020.11.11.)
- Schmidt, Hans-Joachim, 2002. Die Verteidiger von Tsingau und ihre Gefangenschaft in Japan (1914 bis 1920).

#### 44 | 軍史 第117號(2020, 12.)

http://www.tsingtau.info(검색일 2019. 2.1.)

Tewinkel, Christiane, "Gedenkkonzert für Opfer des Holocaust: So achtsam wie nie", *Der Tagesspiegel* (2015. 1. 29). http://www.tagesspiegel.de/kultur/gedenkkonzert-fuer -opfer-des-holocaust-so-achtsam-wie-nie/11295344. html(검색일 2019. 2.2.)



(Abstract)

### Music of 'Geoje' POW Camp during the Korean War

- Focused on the songs of prisoners -

Lee. Kyung-boon

There is no war without any POWs and then POW camps are needed. If there is a camp for POWs, there must be always their routines with sports, theater and music etc.. The Geoje POW camp during the Korean War was no exception. However, so far, the music of prisoners in Geoje POW camp has not been researched, though the Geoje POW camp was such a noisy singing camp that it was hardly to see in any other POW camps of previous wars.

The Geoje POW camp was noisy with demonstrations, riots and slogans, but the prisoners sang whenever they had the chances to sing. For prisoners, songs can always be easily mobilized anytime, anywhere, making them the simplest and most convenient instruments of expressing their demands, joys, grievances and resistance.

Especially for pro-communist prisoners, singing was important as a means of struggle against anti-communist ideology and against the policies of the camp authorities. In this context,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second volume of "The Songs for the Soldiers" published in November 1951 reflects the intention of the General Political Bureau in Pyeongyang to support the song struggle of pro-communist prisoners at the Geoje POW camp.

This paper explored the songs of the prisoners of Geoje POW camp which have not been studied so far. In conclusion, the diverse value of the song in the Geoje POW camp was hard to imagine in other POW camps of previous wars, which can also be seen as a characteristic of the Geoje POW camp, which was born as the first result of the Cold War period.

Keywords: Korean War, Prisoner of War, military songs, Geoje POW camp, The Songs for Soldiers, Cold War and music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0, No. 117, pp. 47–92 https://doi.org/10.29212/mh.2020..117.47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백마고지 전투 간 국군 제9사단의 화력운용 고찰

- 포병운용을 중심으로 -

조남준\*

- 1. 서 론
- 2. 백마고지 전투 전 상황과 양측의 준비 및 계획
- 3. 백마고지 전투경과
- 4. 국군 제9사단의 화력운용 분석
- 5. 결 론

## 1. 서론

"역사적 사례는 모든 것을 명확하게 밝혀주며 경험과학 분야에서 최선의 증거력을 지니고 있다. 다른 분야에 비해 전쟁술에서는 더욱 그러하다."<sup>1)</sup>라고 클라우제비츠가 얘기했듯이 전쟁사를

<sup>\*</sup>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과 석사과정 / xojoxo@naver.com

<sup>1)</sup>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 류제승 역, 『전쟁론』(서울: 책세상, 1998), p. 144.

연구하는 것은 미래의 전쟁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하지만 부주의한 연구로 잘못된 결론을 도출한다면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특히 승리의 경험에 도취되어서 성공한 경험에 안주하게 된다면 더욱 파멸적일 것이다. 이는 제1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프랑스의 영웅, 포슈 원수가 "장차전은 이 전쟁이 종결된 형태로 시작될 것이다."<sup>2)</sup>라고 한 말에서 잘 알 수 있다. 이 말처럼 프랑스는 자신들이 강점을 보였던 전차와 항공기에 대한 부분은 경시한 채, 다음 전쟁도 제1차 세계대전과 같은 참호전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마지노선을 건설하였으며, 독일군의 주공도 벨기에 쪽을 지향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아르덴 숲을 돌파한 독일의 강력한 전차군단 앞에 세계에서 가장 강한 패권국 중 하나였던 프랑스는 불과 7주만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이처럼 과거 승리한 역사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각 요소들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은 중요한 일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을까? 우리 국군이 승리한 대표적인 전투인 백마고지 전투를 살펴보자. 백마고지 전투는 철원 북방의 백마고지를 확보하고 있던 국군 제9사단이 중국군 제38군의 공격을 받아 1952년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10일 동안 뺏고 빼앗기는 사투를 벌인 끝에 고지방어에 성공한 전투였다. ③)이 전투의 결과 중국군은 약 1만여 명이 전사상 또는 포로가 되었고 국군 제9사단은 3,500여 명의 사상자를 내었다. 그리고 국군은 철원평야를 확보할 수 있었고, 유엔군의 전체적인 작전 주도권 확보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국군의 명예를 드높이고 신뢰도를 회복하여 국군의 증강과 발전에 크게 기여

<sup>2)</sup> 칼 하인츠 프리저, 진중근 역, 『전격전의 전설』(서울:일조각, 2007), p. 513.

<sup>3)</sup>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제10권: 휴전회담 고착과 고지쟁탈전 격화』 (서울: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p. 396.

하였다.4)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백마고지 전투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들은 다루고 있으나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한 분석은 부족하다. 이는 특히 화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러하다. 화력과 관련하여 제2차 세계대전 시 독일군의 전술교리는 "화력에서 우위를점하라. 그러면 전투의 나머지 부분은 알아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며 화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5) 대한민국 육군 야전교범1 『지상작전』은 "화력기능은 작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적의 핵심능력을 파괴시켜 작전수행간 주도권을 확보하고 유지하는데 기여한다.", "화력기능은 타 전투력에 비해 전투력 지수가 매우높고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다."이고 하여 전투에서 화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는 전투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인화력에 대하여 기존 연구들이 백마고지 전투에 대해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다.

먼저 국방부 공간사에서는 전투의 배경, 과정과 의의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전투 간 전술적 행동들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고 있으며, 화력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사실들을 나열하였을 뿐 별다른 평가는 하지 않았다. 그리고 화력운용의 결과만 기술되었을 뿐 긍정적 결과, 부정적 결과들의 원인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화력계획의 경우 포병부대들의 전투편성만 나와 있을 뿐 생략되어 있다.7)

국방부의 또 다른 공간사인 한국전쟁전투사 중 『백마고지전투』는 전투상보의 화력계획을 기술하고 전투과정에서의 화력운용에 대해

<sup>4)</sup> Ibid. pp. 429~430.

<sup>5)</sup> 스티븐 배시, 김홍래 역, 『세계의 전쟁2: 노르망디 1944』(서울:도서출판 플레닛미디 어, 2006), p. 25.

<sup>6)</sup> 육군교육사령부, 『지상작전』(대전:육군본부, 2019), p. 4-36.

<sup>7)</sup>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2012), pp. 396~430.

서도 충실하게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연합자산에 대한 운용이나 지휘통제 체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며, 한국군 전투상보를 기초 로 작성한 한계로 인해 미군의 화력운용에 대해서 기술이 일부 미 비하다.<sup>8)</sup>

온창일의 『한민족 전쟁사』는 국군 제9사단이 강력한 화력지원 과 적절한 부대교대 및 예비대 적시 투입을 통해 백마고지 전투를 승리로 마감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화력에 관련된 기술은 특정 시점에 발사한 포탄의 발 수 정도이다. 평가 역시 '강력한 화력지원' 정도로만 표현되었을 뿐 어떠한 화력계획이 있었고 어떻게 실시되었는가는 기술되어 있지 않다.9)

나중남의 "백마고지 전투의 재조명: 국군 제9사단의 향상된 전투수행 능력 분석을 중심으로"에서 국군 제9사단의 전투 효율성의 측면에서 백마고지 전투를 살펴보며 정보, 기동과 화력 등 전장의 제 요소를 효과적으로 결합한 작전수행방식을 구사했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전투는 기동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다. 대신결과 분석시 피아 포병 사격을 비교하고 아군 항공 지원에 대한부분을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그리고 일자별 탄약 소모량을 제시하여 얼마나 적극적으로 화력운용이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화력운용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은 누락되어 있다.10)

육군 포병학교의 『포병 전투사례집』은 화력에 중점을 두고 기술을 하였다. 하지만 전투 실시간 내용은 국방부 공간사의 기술을 그대로 가져왔다. 그리고 결과 분석의 경우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의미를 도출한 것이 아니라 결과를 현재의 교리를 토

<sup>8)</sup>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전투사: 백마고지 전투』(서울: 국방부 전사편찬 위원회, 1984), pp. 42~258.

<sup>9)</sup> 온창일, 『한민족 전쟁사』(경기도: 집문당, 2011), pp. 986~988.

<sup>10)</sup> 나종남, "백마고지 전투의 재조명-국군 제9시단의 향상된 전투수행 능력 분석을 중심으로-", 『군사』(2017, 제105호). pp. 45~93.

대로 추측하였기 때문에 근거가 부실하다. 또한 화력계획에 대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sup>11)</sup>

Bryan R. Gibby의 "The battle for White Horse Mountain september—october 1952"은 미군 관측장교의 증언을 바탕으로 전투 간 화력운용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미군측 자료 위주로 작성된 한계로 인해 전투 간 화력은 한국군이 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의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또한 전투 초기에 대한 내용만 상세할 뿐 후반부 내용은 부실하다.12)

이처럼 현재까지 백마고지 전투에 대한 연구들은 기동을 중심으로 전투를 분석하고 있으며 화력과 관련한 부분은 누락되거나다루더라도 사용한 탄약량을 바탕으로 한 분석 정도만이 존재하고 있다. 화력에 대해서 비교적 충실하게 기술한 연구들도 한국 또는 미국 중심으로만 기술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화력운용에 대한 분석은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전투 간 화력운용에 대해서 분석한다면백마고지 전투의 진정한 실체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1952년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국군 제9사단과 중국군 제38군의 전투를 12차례에 걸친 각공방전을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전투에 영향을 끼친 화력운용을 중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백마고지 전투의 진실에 한 걸음더 다가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문헌 분석의 방법을 사용한다. 문헌은 1차 사료인 국군의 『전투 상보』, 미 9군단의 특별보고서와 미 군사고문단의 보고서, 참전용사들의 증언들이 담긴 『포병과 6·25전쟁 증언록』 과 2차 사료 중 공간사인 국방부의 『백마고지 전투』와 『6·25전

<sup>11)</sup> 육군 포병학교·화력센터, 『포병 전투사례집』(전라남도: 육군 포병학교·화력센터, 2014), pp. 259~272.

<sup>12)</sup> Gibby, Bryan R., "The battle for White Horse Mountain september-october 1952", *Army History* (Fall 2013, vol. 89), pp. 26~47.

쟁사』를 중점적으로 활용한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전투에서 제9사단의 화력운용을 분석한다. 이러한 부분을 잘 표현하기위해 서술 방식은 시·공간적으로 제한된 상태에서 특정한 유형의 폭력이 상호 작용한 전투사를 재구성하기 적절한 서술의 구조인 내러티브 방식을 사용한다. [13] 연구 범위는 395고지(백마고지)에서 1952년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총 10일간의 전투를 그 범위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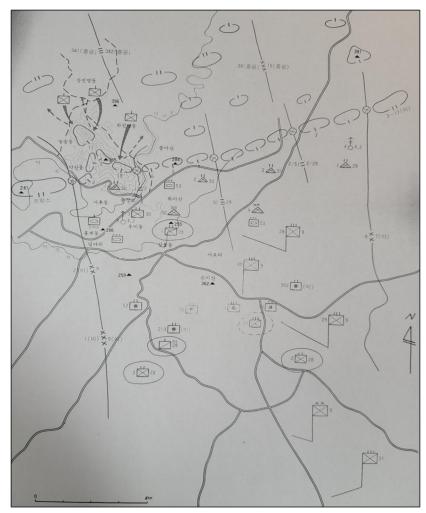
# 2. 백마고지 전투 전 상황과 양측의 준비 및 계획

백마고지는 철의 삼각지 좌측, 철원평야의 개활지에 위치한 395m 높이의 고지이다. 그리고 역곡천이 고지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감아 돌면서 서쪽으로 흐르고 있었다. 10월 6일부터 15일까지의 작전기간 중 철원의 날씨는 대체로 청명하여 기상으로인한 화력운용의 제한은 없었다. 국군 제9사단은 1951년 10월 17일 미 제3사단의 작전 지역을 인수하며 철원에 투입되었다. 그 뒤 1년간 소규모 전투만 있었을 뿐 큰 변화가 없었다. 14) 하지만 1952년 6월 14일 중국군 제38군이 중국군 제42군과 교대하여 이 지역에 투입된 3개월 뒤부터 공격징후가 식별되기 시작하였다. 결정적으로 전투 3일 전인 10월 3일, 중국군 군관이 귀순하면서 중국군의 공격계획이 확인됨에 따라 국군 제9사단은 본격적인 전투준비에 들어가게 되었다. 15)

<sup>13)</sup> 손경호, "전투사 연구의 발달을 위한 제언: 클리오의 기초적 마르스 읽기", 『세계 역사와 문화 연구』(2019, 제50호). p. 237.

<sup>14)</sup>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1984), pp. 18~33.

<sup>15)</sup> G3 Section, Headquarters IX Corps, Special after-action-report Hill



⟨상황도 1⟩ 전투전 피·아의 대치상황¹6⟩

<sup>395(</sup>White Horse Mountain) 6–15 October 1952 (Kansas: Headquarters IX Corps, 1952), pp. 6~7.

<sup>16)</sup>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1984), p. 부록 상황도 제2호.

사단의 대비책을 살펴보기에 앞서 제9사단의 배치 상황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395고지부터 중강리에 이르는 12km의 정면에 좌로는 제30연대, 우로는 제29연대를 배치하였고 제28연대는 예비로 철원 부근의 양촌에 위치하였다. 그리고 경보병연대인 제51연대가 사단에 배속되어 있었다. 이러한 배치 상황을 도식하면 위의 〈상황도 1〉과 같다.17)

사단장 김종오 소장은 적의 공격이 임박했음을 확인하자 10월 3일 긴급히 소집한 연대장회의에서 작전명령 제85호를 하달했다. 그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먼저 395고지를 담당한 부대인 제30연대로 하여금 현 진지를 보강하고 2개 전차중대를 통합지휘하여 적의 공격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예비연대인제28연대를 북상시켜 역습을 준비하고 예하 각 부대로 하여금 현 임무를 계속 수행하며 제30연대와 긴밀한 협조하에 전투태세에 임하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사단장은 이 밖에 적이 역곡천을 범람시킬 경우를 대비하여 1주일분의 식량과 탄약을 395고지로미리 추진하고 공병 1개 중대와 노무대원 300명을 지원하여 진지를 더욱 보강하도록 조치하였다. 18)

그리고 제9사단은 이 상황을 군단에 보고하여 추가적인 지원을 획득하였다. 하지만 이때, 군단으로부터 지원받은 포병에 대해서 사료별로 상이한 내용이 확인된다. 먼저 제9사단의 전투상보는 백마고지 전투 간 지원받은 포병에 대해서 사단은 사단포병인 제 30포병대대, 제1포병단 예하의 제51, 52포병대대, 그리고 추가로 지원받은 제50포병대대, 미 제213, 955포병대대, 그리고 제9중 박격포 중대, 총 6개 포병대대와 1개 박격포 중대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19) 그리고 전투 중간에 8인치 곡사포로 무장한 미 제

<sup>17)</sup> Ibid, p. 36.

<sup>18)</sup> Ibid, pp. 37~41.

<sup>19)</sup>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한국전쟁사료: 전투상보 58권(9사단)』(대전: 육군본부 군사

49포병대대에게 지원받은 기록이 있다. <sup>20)</sup> 전투 초기 제1포병단장을 역임하였던 예비역 대장 노재현 역시 제1포병단이 한 · 미 포병 6개 대대의 사격을 지휘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sup>21)</sup> 미 군사고 문단의 보고서 또한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sup>22)</sup> 국방부의 공간사 역시 이러한 내용을 동일하게 따르고 있다. <sup>23)</sup>

하지만 미 제9군단의 전투 후 특별보고서를 확인하면 다른 내 용이 식별된다. 문서에서 전투에 참가한 포병은 먼저 제1포 병단 예하 제51. 52포병대대와 사단 포병이지만 제1포병단에 작전통제된 제30포병대대. 후에 작전통제된 제50포병대대. 미군에서 작전통제된 미 제2로켓포대. 제2화학 박격포 대대 "A" 중대, 제36 공병 탐조등 중대의 두 개 반이 있었다. 그리 고 제9사단에 지원된 포병으로 8인치 곡사포로 무장한 미 제 17포병대대 "B" 포대를 작전통제하는 155mm 곡사포로 무장 한 미 제213포병대대가 제1포병단을 일반지원 및 화력증원 하고 있었고, 8인치 곡사포로 무장한 미 제424포병대대 "A" 포대를 작전통제하는 155mm 평사포로 무장한 미 제937포병 대대가 사단을 일반지원 하고 있었으며, 155mm 곡사포로 무 장한 미 제955포병대대가 10월 13일까지 제1포병단을 일반지원 및 화력증원 하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미 제49포병 대대에 대한 기록은 없다. 다만 이 보고서는 최초 편성만을 기 록하고 전투 간 최소의 변경이 있었다고 하여 미 제49포병대대

연구실, 1987), p. 580.

<sup>20)</sup> Ibid, p. 532.

<sup>21)</sup> 신기철, 하보철, 『포병과 6·25전쟁 증언록』(대전: 육군 군사연구소, 2012), p. 174.

<sup>22)</sup> Department of Defense. Department of the Army. The Adjutant General's Office, Non Organic Units, USMAG, Korea, AYUT-8202, Narrative w/supp. Docs, Box No.5802, Command Report, Oct. 1952, ROKA Combat Units, KMAG, 9th ROK Division, etc. (10 of 11), p. 20.

<sup>23)</sup>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1984), p. 43.

가 참가하였을 여지는 충분히 두고 있다. <sup>24)</sup> 그리고 당시 제30포 병대대 작전주임을 역임했던 예비역 소장 전주식이 16개 포병대대 를 지휘하였고 외국 연락장교가 약 10여 명이 지휘소에 같이 활 동했다고 증언하였다. <sup>25)</sup>

그렇다면 어떤 전투편성이 정확한 것일까? 먼저 전주식의 증 언의 경우 제9사단 전투상보의 기록과 미 제9군단의 특별보고서 의 기록, 그리고 백마고지 전투 간 제1포병단의 작전보좌관으로 활동했던 예비역 준장 신정균이 전주식의 증언이 과장되었다고 생각된다고 한 증언 등을 통해 볼 때 일부 부정확한 측면이 있 다. 26) 하지만 전주식이 사단의 사격지휘를 담당했다는 것을 고 려하면 6개 대대보다 더 많은 규모의 부대들이 활동했을 것이라 고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미 제9군단의 군수 기록에서 미 제49 포병대대가 제51연대의 직접지원으로 전투편성이 변경되는 10월 9일 이후에도 8인치 포탄의 사용량이 1개 대대규모의 155mm 평사포 포탄의 사용량과 비슷하다는 점은, 각 미군 포병대대에 작전통제된 8인치 곡사포들이 운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리고 4.5인치 로켓탄의 소모가 군수기록에 있다는 것은 4.5인치 로켓포대가 활동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할 때 백마고지 전투 간 참여한 포병의 규모는 미 제9군단의 특별 보고서가 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7)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원 인은 국군 제9사단과 미 군사고문단은 사단이 직접 통제한 포병 들만 기록하였지만. 미 제9군단의 경우 사단의 요청으로 군단이 지원했던 부대들까지 기록하였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했다고 판 단된다.

<sup>24)</sup> IX Corps(1952), pp. 29~30.

<sup>25)</sup> 신기철, 하보철(2012), pp. 413~414.

<sup>26)</sup> Ibid. p. 246.

<sup>27)</sup> IX Corps(1952), p. Enclosure "B"-1.

이러한 곡사화기들 뿐만 아니라 미 제9군단은 미 제73전차대대 "C" 중대와 미 제140방공포대대의 4연장 50구경 대공포반을 국군 제9사단에게 작전통제 함으로써 측면을 방호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적의 포진지, 전차, 집결지, 보급품 집적소와 병참선등 기계획된 표적에 대해 공중폭격을 실시함으로써 적의 기도를 파괴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미 제3사단 제7연대를 주간 4시간, 야간 2시간 내에 백마고지로 투입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함으로써 제9사단을 지원하였다. 28) 지금까지 확인한 국군 제9사단의지원 및 배속부대의 전투편성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고국군 제9사단의 포병들을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sup>28)</sup> Ibid. pp. 7~8.

부 대	비고
제51연대	경보병연대, 제9사단에 배속
제1포병단	제9사단 직접지원 <sup>29)</sup>
제30포병대대	105mm 곡사포, 제9사단 사단포병, 제1포병단의 작전통제 <sup>30)</sup>
제51포병대대	105mm 곡사포, 제1포병단의 포병
제52포병대대	105mm 곡사포, 제1포병단의 포병
제50포병대대	105mm 곡사포, 10월 7일 12:00부터 제1포병단의 작전통제
미 제2로켓포대	M16 4.5인치 로켓포, 제1포병단의 작전통제
미 제2화학박격포 대대 "A" 중대	4.2인치 박격포, 제1포병단의 작전통제
미 제213포병대대	155mm 곡사포, 미 제17포병대대 "B"포대 작전통제, 제1포병단 일반지원 및 화력증원 <sup>31)</sup>
미 제937포병대대	155mm 평사포, 미 제424포병대대 "A"포대 작전통제, 미 제9군단 일반지원 <sup>32)</sup>
미 제955포병대대	155mm 곡사포, 제1 <mark>포병단</mark> 일반지원 및 화력증원 (10월 13일까지)
미 제49포병대대	8인치 곡사 <mark>포, 10월</mark> 7일 12:00부터 제1포병단 화력증원, 10월 9일 08:00부 제51연대 직접지원으로 변경 <sup>33)</sup>
미 제36공병 탐조등 중대 2개 반	제1포병단의 작전통제
제9중박격포중대	4.2인치 박격포, 제9사단 배속
제53전차중대	M36 구축전차, 제9사단 배속
미 제73전차대대	M46 전차, 최초 "C"중대가 제9사단의 작전통제, 전투 간 중대를 지속적으로 교대함
미 제140방공포 대대 1개 반	4연장 50구경 대공포, 제9사단 작전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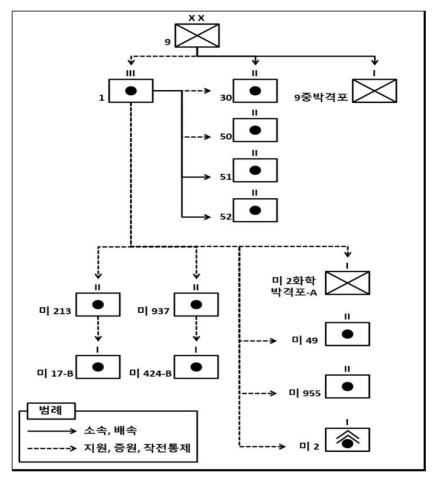
〈표 1〉 국군 제9사단 지원 및 배속부대 전투편성

<sup>29)</sup> 포병부대가 특정 작전부대가 요구하는 화력지원을 즉각 제공하는 임무를 부여하는 표준 전술적 임무의 한 형태, 이 경우 제1포병단은 제9사단이 원하는 화력지원을 즉각적으로 제공함. 육군교육사령부, 『군사용어사전』(대전: 육군본부, 2012), p. 538.

<sup>30)</sup> 작전계획이나 작전명령 상에 명시된 특정임무나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정기 간에 지휘관이 행사하는 권한을 말하며, 이 경우 제9사단이 제30포병대대에 대한 권한을 제1포병단에게 인계한 것임. Ibid, p. 407.

<sup>31)</sup> 포병부대가 작전부대 전 지역에 포병화력을 제공하면서 2차적으로 타 포병부대의 화력을 증강하는 임무를 부여하는 표준 전술적 임무의 한 형태, 이 경우 미 제9군 단 전체에 화력을 제공하면서 제1포병단의 화력을 증강하는 것임. Ibid, p. 385.

<sup>32)</sup> 포병부대가 작전부대 전 지역에 포병화력을 제공토록 하는 임무를 부여하는 표준



〈그림 1〉 국군 제9사단 포병 전투편성

이렇게 충분히 증원된 전력을 바탕으로 국군 제9사단은 395고지에 대해서 강화된 방어계획을 작성하고 실행하였다. 우선 기동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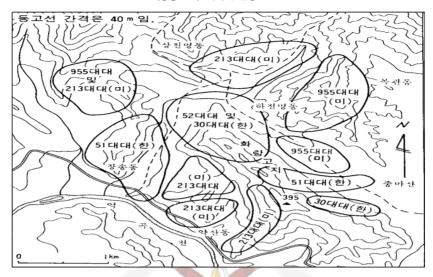
전술적 임무의 한 형태, 이 경우 미 제937포병대대는 미 제9군단 전체에 화력을 지원하며 제9사단에서 군단에 요청시 제9사단에게 화력을 지원함. Ibid, p. 385. 33) 육군본부 군사연구실(1987), p. 532,

으로 제30연대의 예비대대인 제3대대를 395고지로 진출시켜 그 동쪽 능선의 일부 진지를 인수했다. 이로써 395고지에는 사실상 2개 대대가 배치되었다. 제3대대는 예하 3개 중대 중 1개 중대만 주저항선에 배치하였고, 제11중대는 전초로 395고지 북쪽의 화랑고지로 추진 배치하였으며, 제9중대는 예비로서 남쪽의 충성교 부근에 대기시켰다. 제2대대는 395고지 동쪽의 284고지 일대에 배치함으로써 연대의 예비는 제9중대 1개 중대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병력을 더욱 보강한 제30연대는 다시 공병과 노무대의 지원을 받아 4일 새벽 04:20까지 철야작업으로 진지와 장애물을 증설 및 보강하였다. 하지만 불행히도 전투 때는 중국군의 포격으로 인해 장애물들은 무위로변하고 말았다.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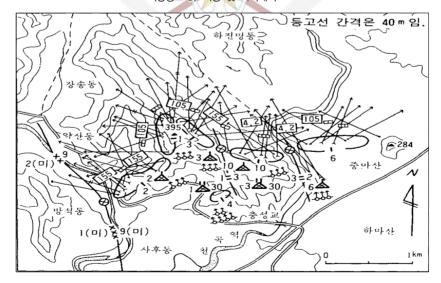
이러한 기동계획과 더불어 진지 조정과 추가된 화력자산을 바탕으로 화력계획 또한 새롭게 수정되었다. 제9사단은 추가적으로 배정된 화력자산들을 배분하여 곡사화기, 직사화기, 기동과장애물이 통합되어 운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작성하였다. 기동계획과 화력계획, 그리고 화력대 할당표는 다음 〈상황도 2, 3〉과 같다.

<sup>34)</sup>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1984), pp. 47~48.

〈상황도 2〉화력대 편성도35〉



### 〈상황도 3〉 기동 및 화력계획<sup>36)</sup>



<sup>35)</sup> Ibid, p. 49.

<sup>36)</sup> Ibid, p. 42.

그리고 원활한 화력지원을 위해서 추가적인 준비들도 두 가지가 이루어졌다. 첫째, 유선 매설이었다. 당시 무선은 소통이단절되는 경우가 있었고 유선도 적 포탄에 의해서 단절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제9사단은 유선을 포병탄피를 이용하여 30cm 이상 깊이로 연대와 대대의 관측소까지 매설하였다. 이작업은 전투 전까지 전방 2개 연대, 4개 대대 관측소가 완료되었다. 물론 이 과정은 매우 힘들어 작업을 담당한 제30포병대대의 작전주임의 동기였던 황 중위는 울기까지 하였다. 하지만이 덕분에 전투 간 유선단절 없이 원활한 화력지원이 이루어질수 있었다. 37)

둘째, 사격지휘소(Fire Direction Center, FDC)와 사격진지에 대한 강화였다. 당시 포병들은 포병진지의 유개화 개념이 희박했고 개활지에서 방열 및 사격을 하였다. 하지만 백마고지 전투에서의 포병들은 포진지는 1.5m 이상 모래주머니를 이용하여방호벽을 만들었고, 사격지휘소는 8mX15m 크기 2m 깊이로 파고 가로 세로로 몇 겹을 모래주머니를 쌓아 강화했다. 그 결과전투 셋째 날 사격지휘소에 직격탄이 2발 떨어졌음에도 지휘소상부의 흙만 일부 파였을 뿐 지휘소 인원피해는 없었다. 38)

그리고 화력자산의 눈이 될 관측반의 배치 또한 이루어졌다. 백마고지를 담당했던 제30연대는 제52포병대대가 직접지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관측반은 사단포병이었던 제30포병대대에서 지

<sup>37)</sup> 신기철, 하보철(2012), p. 413. 여기에 대해 포병학교의 포병 전투 사례집은 통신 망이 단절되어 기동부대 진출에 따른 화력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목표로 진격하던 기동부대는 아군 포병부대 사격으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주장에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근거가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다. 둘째, 사격선이 단절되었다는 말은 사료상에 보이지 않는다. 셋째, 오폭과 관련해서 4장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통신으로 인해 오폭이 발생했다는 증거는 어떠한 사료에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sup>38)</sup> Ibid, pp. 414~415.

원을 나가고 나중에 지원부대 관측반을 일부 지원받아 내보내기도 하였다. 39) 미군도 미 제213포병대대에서 2개의 관측반을 지원하였다. 이들은 각각 백마고지 정상의 관측소와 백마고지 동측의 284고지의 관측소에서 관측을 하였다. 미군은 이 관측소들을 각각 OP(Observation Post) Love(백마고지), OP Roger(284고지)로 불렀다. 40)

이러한 포병화력뿐만 아니라 전차에 대한 준비 또한 진행되었다. 제9사단은 배속받은 제53전차중대에 소속된 3개 소대가운데 2개 소대를 백마고지 남쪽의 판교리로 추진하고 1개소대는 사단 관측소인 254고지 부근에 예비로 대기시켰다. 그리고 사단을 지원하기로 한 미 제73전차대대 "C" 중대와도 긴밀하게 협조하여 우인접 사단인 미 제7사단 지역에 집결, 대기하도록 조치하였다 41)

국군 제9사단이 이러한 준비를 하는 동안, 중국군 역시 그들이 1952년 추계 전술 반격 작전의 제2단계 작전 중 가장 큰 규모인 백마고지에 대한 공격 준비를 하고 있었다. 42) 국군 제9사단과 대치한 중국군은 장융후이(江擁輝)가 지휘하는 제38군이었다. 중국군 제38군은 예하 제112사단, 제113사단, 제114사단 등 3개 사단 약 36,000명 규모였다. 중국군 제38군은 천덕산 서쪽의 금계곡에서 철원 평야의 북단의 외풍동 부근까지 도상 거리로 24km의 전투정면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중 서반부를 제113사단이 맡고, 그 동반부에는 114사단이 배치되어 있었다. 제112사단은 효성산 북서쪽의 대전리 골짜기에 예비로 집결보유하고

<sup>39)</sup> Ibid. pp. 415.

<sup>40)</sup> Gibby, Bryan R., (2013), p. 33.

<sup>41)</sup>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1984), p. 44.

<sup>42)</sup>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권』(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p. 418.

있었다.<sup>43)</sup> 이러한 중국군 제38군은 1개 포병단이 증원되어 산 포·야포·유탄포 116문, 자동 추진포 4문, 탱크 8대의 지원을 받았다.<sup>44)</sup>

중국군의 전투준비와 관련하여 그들은 백마고지에서 패배한 이유가 너무 급하게 작전을 전개해 준비가 부족하였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45) 중국군 제38군은 상급부대의 지침에 맞추어 충분한 준비와 사전연습을 한 뒤 백마고지를 공격하였다. 중국군 제38군의 준비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1952년 9월 14일 23:20부 하달된 덩화(鄧華), 양더즈(楊得志), 박일우, 간쓰치(甘泗淇), 장원저우(張文舟)의 연명으로 된 전술적 반격 명령을 알아야 한다. 그 명령에서 강조한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46)

첫째, 반드시 준비가 철저한 상태에서 공격하라. 반복적인 정찰을 통해 적을 철저하게 파악한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세우고비슷한 지형을 선정하여 연습을 실시하며 인원, 무기, 탄약 물자를 조정하라. 둘째, 전투 중 보병과 포병의 합동작전이 승부에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 그래서 반드시 주도면밀한 합동작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셋째, 각 군에는 일정 수량의 전차가배속되어 있다. 각 부대는 지형조건에 따라 전차의 기동 공격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보병의 돌격을 지원하거나 혹은 적 측후방을 우회하여 적의 도주로를 끊고 적의 보병과 전차의 지원을 차단하며 우리의 젊은 전차부대를 단련시켜라. 넷째, 공격이 성공한 후 반드시 적의 연속 반격을 격퇴할

<sup>43)</sup>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1984), pp. 30~34.

<sup>44)</sup>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2005), p. 419.

<sup>45)</sup>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2005), p. 420.

<sup>46)</sup> Ibid, p. 406.

준비와 반복적인 공방전을 며칠 더 전개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적의 인적 전력을 소모시킬 좋은 기회이며 진지전방에서 섬멸전을 진행할 수 있다. 47)

이러한 지침을 바탕으로 중국군 제38군은 백마고지에 대한 공 격 준비를 했다. 우선 백마고지에 대한 정찰을 통해 국군의 배 치를 확인했다. 이는 10월 6일 아침에 포획된 중국군 포로의 진 술을 통해 알 수 있다. 그 포로는 중국군이 공격 며칠 전부터 포획한 유엔군 포로들로부터 고지에 배치된 한국군 규모와 배치 상태 등을 확인했다고 하며, 1개 대대 규모가 방어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sup>48)</sup> 또한 중국군은 유 엔군의 공중폭격에 대비하여 포진지를 요새화했다. 이는 유엔군 의 항공정찰과 수색대의 정찰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중국군의 야포 진지 22개소. 대공포 진지 19개소 등 총 41개의 포진지가 골짜기와 능선마다 배치되었으며, 보병진지와 같이 유개화 하였 거나 포구만 내밀고 사격할 수 있도록 튼튼히 구축되어있는 것 이 발견되었다. 49) 그리고 중국군은 철저한 사전연습을 실시하였 다. 귀순한 군관의 증언에 따르면 중국군 제340연대는 유사한 지형에서 4주간 공격작전에 대한 사전연습을 실시했다. 또한 각 중대마다 철조망과 지뢰를 파괴하기 위한 파괴통을 60개씩 확보 하고 각종 실탄을 충분히 지급하는 등 공격물자 준비를 철저히 하였다 50)

중국군은 이러한 준비를 바탕으로 백마고지를 공격할 계획을 세 웠다. 우선 공격 직전 평강 서쪽의 봉래호 수문을 개방하여

<sup>47)</sup> Ibid, pp. 407~408.

<sup>48)</sup> IX Corps(1952), pp. 6~7.

<sup>49)</sup>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1984), pp. 31~32.

<sup>50)</sup> Ibid. pp. 34~35.

백마고지를 감아 돌아 흐르는 역곡천을 범람시켜 백마고지에 대한 증원과 역습을 방해하고자 하였다. 51) 그 뒤 제114사단 제340연대의 6개 중대와 별도의 2개 소대를 동원해 각종 화포 120문, 전차 8대의 지원하에 다섯 방향으로 나누어 백마고지를 공격하여 점령하고 자 하였다. 52) 이렇듯 국군과 중국군 양측이 모두 충분한 준비를 한상태에서 결전은 피할 수 없게 되었고 승패는 전투에서의 실시간지휘 및 운영에 달리게 되었다.

# 3. 백마고지 전투경과

10월 6일 06:30, 중국군은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국군추산 2,067발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공격준비사격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제9사단은 사전준비 덕분에 비록 장애물과 참호들은 무력화되었지만 인원피해는 많지 않았다. 그리고 제9사단은 중국군 포병에 대한 강력한 대 포병사격을 실시하였다. 제9사단은 미군의항공정찰과 중국군 귀순자 등을 통해서 중국군의 포진지 위치를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53) 국군이 확인한 중국군의 위치는 아래 〈표 2〉와 같다. 이를 바탕으로 제9사단은 대 포병사격 계획을 작성하였으며 이를 군단과도 공유하여 국군뿐만 아니라 미군포병대대들도 10월 5일까지 대 포병사격 계획을 수령 받아 사격을 준비하고 있었다.54) 이러한 계획된 표적 이외에도, 적의 포격에 대해서 단후분석을 하여 추가 확인된 적 포병들에 대해서도

<sup>51)</sup> Ibid, p. 35.

<sup>52)</sup>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2005), p. 419.

<sup>53)</sup>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1984), pp. 45~50.

<sup>54)</sup> IX Corps(1952), p. 29.

#### 강력한 제압사격을 하였다.55)

(표 2) 중	국군 포진지	위치56)
---------	--------	-------

지점	목표성질	지점	목표성질
CT 371433 CT 371463	야포진지 4개	CT 356473	대공포진지 2개
CT 368471 CT 366472	야포진지 6개	CT 353472	대공포진지 2개
CT 358459	야포진지 6개	CT 352471	대공포진지 2개
CT 365436	야포진지 2개	CT 351468	야포진지 4개
CT 359471	대공포진지 2개	CT 365475 CT 375472 CT 353468	대공포진지 7개

중국군은 국군의 대 포병사격으로 방해를 받으면서도 끝내 공격준비사격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공격에 돌입하였다. 중국군은 봉래호제방을 개방하여 백마고지의 아군을 고립시킨 다음 제114사단 제340연대가 19:00부터 공격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중국군의 공격은제9사단이 강력한 화력으로 저항함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공중에서 유엔군 항공기들이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중국군의 포진지, 집결지, 전차등을 끊임없이 폭격하였고 야간에는 상공에 조명탄을 투하해 주었다. 지상에서 장사거리인 미군의 155mm, 8인치 화포들이 중국군의 포진지, 접근로 및 예상 집결지 등 종심지역을 집중적으로 강타하였고, 근거리에 접근한 중국군들은 관측반에의해서 유도되는 국군 105mm 화포들의 포탄세례를 받았다.57) 또한, 야간에 장병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10분 단위로 조명탄을 사격하여 제9사단의 전투를 도왔다.58) 그리고 고지의 좌, 우 측면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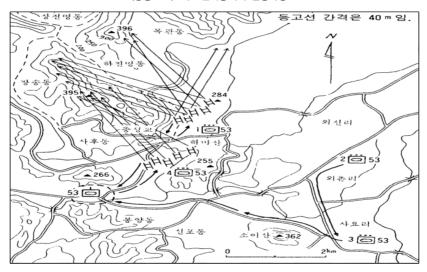
<sup>55)</sup>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1984), pp. 50~51.

<sup>56)</sup> 육군본부 군사연구실(1987), p. 489.

<sup>57)</sup>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1984), pp. 51~60.

<sup>58)</sup> 신기철. 하보철(2012), p. 299.

국군 제53전차중대, 미 제73전차대대 'C' 중대, 미 제140방공포 대대 1개 반의 4연장 50구경 대공포가 쉴새 없이 중국군을 강타하였다. 특히 전차들의 사격은 측면을 공략하려고 시도하였던 중국군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 제53전차중대는 아래〈상황도 4〉와 같이 우측면에서 중국군을 타격하였고 미 제73전차대대 'C' 중대는 사후동쪽에서 서측면에서 중국군을 타격하였다. 고지까지 도달한 중국군은 3차례에 걸쳐 제30연대와 공방전을 벌였지만 이미 화력으로 큰 타격을 받아 1시간 만인 20:15에 결국 격퇴되었다. 59)



〈상황도 4〉제53전차중대의 활동사항60〉

제1차 공방전에서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군은 부대를 제112사단 예하 제334연대로 교체하여 25분만에 재공격을 실시했다. 공격은 고지 우측을 지향하였다. 국군 제9사단장 김종오

<sup>59)</sup>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1984), pp. 51~60.

<sup>60)</sup> Ibid. p. 58.

소장은 사단 예비인 제28연대에 출동 준비를 명령하고 이 지역에 화력을 집중했다. 국군의 집중적인 포화에도 불구하고 중국군은 계속해서 고지로 접근했다. 결국 최후저지선에서 치열한 사격전과 수류탄전이 벌어졌고 22:00에 결국 제10중대 제2소대의 왼쪽 진지 일부가 돌파당했다. 61) 하지만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제9중박격포 중대가 빛을 발했다. 보병들이 진지에서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의 관측병 1명이 현지의 동굴 속에 남아 무전으로 중국군의 상황을 정확히 보고하여 효과적인 진내사격을 실시했다. 제9중박격포 중대는 8문의 포 가운데 6문이 망가질 정도로 적극적인 화력지원을 실시했다. 62) 이렇게 적의 예봉이 꺾이는 동안사단장은 역습을 결심하고 사단 예비인 제28연대 1대대와 사단수색중대를 제30연대에 배속시켜 역습을 실시했다. 역습은 자정무렵 성공하여 제9사단은 주진지를 완전히 회복했고, 화랑능선과제30연대 제3중대 정면을 공격하던 중국군도 주공의 패주와 함께후퇴했다. 63)

두 차례에 걸친 공격에서 패배했음에도, 중국군은 다시 제340 연대로 부대를 교체하여 40여분 뒤인 7일 00:40에 공격을 재개했다. 이 공격은 제1차와 같이 1,000여 발의 공격준비사격 후실시되었고, 2개 대대 규모의 병력을 집중적으로 백마고지에 투입하였다. 제9사단장은 즉시 전술공군을 요청하는 동시에 전 포병의 화력을 주진지 전면에 집중시켰다. 중국군은 백마고지의 주봉과화랑고지 사이의 중간 부분에 돌파구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제1, 2차 공방전 때와 마찬가지로 국군과 유엔군은 공군과

<sup>61)</sup>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2012), pp. 402~403.

<sup>62)</sup>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1984), p. 74. 망가진 박격포에 대해 사단은 장비 보충을 건의하였고 신형 포 12문이 춘천에서 헬리콥터 편으로 공수되어 8일부터 전투 종료까지 활용되었다.

<sup>63)</sup>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2012), p. 403.

포병, 그리고 전차 및 대공포의 집중포화를 중국군에게 집중하였다. 결국 중국군은 이를 견디지 못하고 05:10부터 물러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중국군 중 일부가 주봉과 화랑고지 사이와 주봉 서쪽의 무명고지를 점령하였다. 사단은 화력을 집중하여 이들을 몰아내고자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결국 제3차 방어 작전은 이렇게 마무리되었다. 64)

제9사단은 제3차 공방전까지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주봉과 화랑고지 사이에 위치한 중국군으로 이들의 병력이 증원된다면 화랑고지가 고립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사단은 무명고지의 중국군 2개 중대를 격퇴하기 위해 14:00에 제30연대의 예비인 제3대대를 투입하여 역습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중국군은 국군의 역습에 대해 포격을 동반하여 강하게 저항하였고, 결국 3대대는 역습에 실패하고 17:15에 철수하였다. 한편 화랑고지의 제30연대 제11중대는 실탄과 식수의 부족으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19:00부터 중국군의 포위망을 뚫고 백마고지 남쪽으로 철수하였다. 65)

전초기지인 화랑고지가 중국군에게 피탈되면서 백마고지 방어도 위기에 처하였다. 중국군은 다시 제334연대로 부대를 교체하여 20:00에 주봉을 향해 공격을 실시하였다. 약 2시간의 치열한 교전 끝에 주봉에서 제1중대가 철수하면서, 전투가 시작된 이후 최초로 백마고지가 중국군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다. 사단장은 제30연대로 하여금 돌파구 확대를 저지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제28연대를 역습에 투입하여 진지를 회복하고자 했다. 66) 이때 백마고지 정상의 미군 관측소의 아담스(Joseph C. Adams Jr) 중위의 관측반은 미처 철수하지 못하고 벙커에 위치하고 있었다.

<sup>64)</sup> Ibid, pp. 405~406.

<sup>65)</sup>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1984), pp. 93~97.

<sup>66)</sup>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2012), p. 408.

그들은 상황이 파악되자 미 제213포병대대에 자신들의 병커를 표적으로 하여 진내사격을 요청하였다. 미 제213포병대대는 한국군 포병에 추가 화력을 요청하여 155mm 곡사포와 작전통제된 8인치 곡사포, 한국군의 105mm 곡사포를 고지에 집중하였고 고지의 중국군은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67) 결국 중국군은 돌파구를 확대하지 못하였고 제9사단 제28연대는 8일 00:40을 기하여 역습을 개시하였다. 그리고 약 2시간의 전투 끝에 02:40에 백마고지의 주봉을 탈환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와 동시에 그동안의 전투로 지친제30연대와 제28연대를 교대하면서 제4차 공방전은 종료되었다.68) 이때 공격 간 화력에 의한 우군피해 방지를 위해 향도가 대공포판을 메고 올라가면 그 전방에 포탄사격을 하고, 전진하면 다시 연신하는 방법으로 사격을 하였다.69)

8일 새벽 중국군은 백마고지 일대에 깔린 안개를 이용하여 그동안 야간공격만을 하였던 것에서 벗어나 05:30경 여명에 공격을 실시하였다. 그들은 화랑고지, 장송고지를 발판삼아 3면에서고지를 공격하였다. 제28연대 제2대대는 최선을 다해 싸웠지만짙은 안개와 유엔 공군기의 오폭으로 인해 08:10에 정상을 빼앗겼다. 이에 사단은 28연대 3대대로 역습을 실시하기로 하고 17:00에 공격을 개시하였다. 중국군도 그동안보다 2배의 포격을가하며 강하게 저항하였다. 이에 제9사단의 포병과 유엔 공군은이전 전투와 같이 적의 포진지, 집결지, 진지 등에 집중적으로화력을 퍼부었다. 70 이때의 화력지원에 중국군은 큰 피해를 입었는데 유엔군이 감청한 중국군의 통신에서 그들은 "상황이 나쁘다. 증원이 없으면 얼마 버티지 못할 것이다. 7, 8중대는 병력이

<sup>67)</sup> Gibby, Bryan R.(2013), pp. 36~37.

<sup>68)</sup>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2012), pp. 410~411.

<sup>69)</sup> 신기철, 하보철(2012), p. 415.

<sup>70)</sup>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2012), pp. 411~414.

매우 적다. 포병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였다.<sup>71)</sup> 역습은 중국군의 강한 저항으로 주춤하기도 하였지만, 위와 같은 각종 화기의 집 중적인 지원 아래 제28연대 제3대대는 23:00에 고지 정상을 탈환하였다.<sup>72)</sup>

다섯 차례의 공방전을 거치며 중국군은 2개 연대가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제114사단 제342연대를 새롭게 투입하며 1시간 30분만인 9일 00:20에 공격을 실시하였다. 중국군은 이전과 동일하게 강력한 공격준비사격 이후 대대적인 공격을 실시하였다. 이에 제28연대 제3대대는 적의 포격이 멈추는 것과 동시에 대피호에서 나와 대대의 전 화기를 동원하여 최후 저지사격을 실시하였다. 특히 제30포병대대가 접근신관을 활용하여 포탄을 공중에서 폭발시켜 진지 전방을 살상지대로 만들면서 중국군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73) 결국 중국군은 큰 사상자를 남기고 40분 만에 후퇴했다. 하지만 중국군은 완전히 물러나지 않고 포격을 재개하기 시작했고 국군도 이에 대응하며 1시간 동안 치열한 포격전이 벌어졌다. 74)

02:00경 포격이 종료되고 02:05에 중국군이 진지 전방에 나타나며 치열한 근접전이 벌어지게 되었다. 제28연대 제3대대 장병들은 최선을 다해 싸웠지만 계속되는 전투에 점점 지쳐갔고, 03:00경 적이 병력을 증강하여 집중적으로 고지를 공격하자 더이상 버티지 못하고 혼란에 빠지며 철수하였다. 중국군은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돌파구를 넓히며 전진하였고, 고지 남쪽 700m까지 진출하며 국군 제9사단은 전투이래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

<sup>71)</sup> Gibby, Bryan R.(2013), p. 38.

<sup>72)</sup>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2012), p. 414.

<sup>73)</sup> 신기철, 하보철(2012), p. 414. 국방부 공간사에서는 시한신관으로 설명하고 있지 만 사격지휘를 담당했던 제30포병대대 작전주임 전주식은 VT신관, 즉 접근신관이 라고 증언하였다.

<sup>74)</sup>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2012), pp. 414~417.

다. 이에 제9사단은 가용 모든 화력을 동원하여 중국군의 추가 증원을 차단하고, 돌파구 확대를 방지하며, 그들을 현 위치에서 고착하고자 하였고, 결국 중국군은 06:00에 저지진지를 돌파하지 못하고 공격을 중지하였다. 75) 사단은 약화된 제28연대를 대신하여 제29연대를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9일 10:00에 역습을 개시하였다. 제29연대는 연대에 작전통제된 전차중대가 중국군의 직사화기를 제압하고, 공군과 포병이 중국군의 포진지를 제압하며 전진하였다. 제29연대는 15:05경 8부 능선까지 진출한 뒤, 자정까지 총 4차례에 걸친 돌격 끝에 00:30에 주봉을 탈환하였다. 76)

제6차 공방전에서 큰 타격을 받은 중국군 제342연대는 재편성을 끝내자마자 10일 04:30경 짙은 농무를 이용하여 반격을 개시하였다. 이러한 짙은 안개로 인해 국군의 전차와 항공기, 포병은 정확한 화력지원이 불가능하였고, 이에 따라 계획된 탄막사격만으로 화력지원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제한사항으로 인해 제29연대 제1대대는 전력을 다했으나 적을 격퇴하지 못하고 9부 능선으로 후퇴하였다. 이후 병력을 수습한 제1대대는 제2대대의 지원군과 함께 역습을 개시하여 06:30에 정상을 탈환하였다. 77)

중국군 제342연대는 제6차, 제7차 두 차례에 걸친 공방전에 많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08:00에 다시 공격을 감행하였다. 안개는 아침까지도 걷히지 않아 제9사단은 중국군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항공기와 전차의 지원도 여의치않았고 이에 전투는 수류탄전으로 시작되어 곧 백병전으로 변하였다. 이 무렵 미 제213포병대대의 155mm 포탄이 고지 북쪽 능선을 타격하다 제29연대 제3대대 진지까지 떨어지며 큰 혼란

<sup>75)</sup>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1984), pp. 143~145.

<sup>76)</sup>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2012), pp. 417~418.

<sup>77)</sup> Ibid. p. 421.

이 야기되었다. 이 피해에 제3대대는 고지의 9부 능선까지 밀리게 되었다. 제3대대는 병력을 수습하여 09:40 역습을 개시하여 50분 동안 세 차례의 공격을 실시했다. 하지만 정상을 탈환하지 못하자 연대장은 특공대를 선발하여 12:00에 재공격을 감행했다. 특공대가 육탄돌격을 통해 중국군의 기관총 진지를 파괴한후 13:20경 제3대대는 정상을 다시 탈환하며 제8차 공방전은 끝났다. 78)

제8차 공방전 이후 사단장 김종오 소장은 아군 전초기지들을 다시 탈환하고자 30연대로 하여금 역습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중국군은 포기하지 않고 전투력을 상실한 제342연대 대신 제112사단 제335연대를 다시 투입하여 18:00에 공격을실시하였다. 중국군은 교전 45분만에 제7중대의 진지를 돌파하였고 제29연대 제2대대는 무질서하게 후퇴하였다. 공격은 갈수록 더욱 거세지며 3대대 지역까지 확대되었고 11일 04:00까지사투가 이어졌다. 사단은 화력 자산들을 활용하여 돌파구 확대를 저지하고 중국군을 현 위치에 고착시켰다. 그리고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감에 따라 역습계획을 수정, 제29연대와 제30연대를 동원하여 주봉과 서쪽의 장송고지를 점령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사단의 반격이 실시되었고, 제29연대는 12:04에 주봉을 탈환하였고 제30연대는 뒤이어 장송고지를 점령하였다. 79)

고지를 다시 점령한 제29연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중국 군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 중국군은 15:30부터 포격을 시작하다 16:20에 공격을 개시하였고, 17:40경 고지 정상으로 쇄도하여 순식간에 고지 정상을 점령하였다. 고지 정상의 제1대대가 후퇴

<sup>78)</sup> Ibid. pp. 421~423.

<sup>79)</sup> Ibid. pp. 425~426.

하자 제2대대와 제3대대도 각 진지에서 물러났다. 사단은 다시 금 화력으로 돌파구의 확대를 저지하며 적의 증원을 막기 위해 노력하였고 병력을 수습한 제1대대로 20:00에 역습을 가하였다. 하지만 역습은 12일 01:50경 9부능선에서 일진일퇴를 거듭하였다. 이에 사단은 제30연대로 하여금 역습을 실시하기로 하고, 제29연대는 공격을 중지하고 현 진지 확보에 주력할 것을 명령하여 전투를 중지하고 원 진지로 돌아가게 되었다. 제30연대는 제1대대를 주공으로 하여 08:00에 포병과 유엔공군, 전차의 지원하에 공격을 시작했다. 하지만 8부 능선에서 적의 기관총에 의해 고착되며 전진이 지연되었다. 이에 10:00경 연대장의 명령으로 제2대대와 제3대대를 제1대대의 양측방으로 진출시켜 제1대대의 공격을 엄호토록 하였다. 그리고 제1대대 제1중대 제3소대의 강봉우 소위 등 3명이 수류탄으로 기관총 진지에 대해 육탄돌격을 하여 진지를 폭파하였다. 그 후 13:20에 정상탈환에성공하며 제10차 공방전이 마무리되었다.80

역습에 성공한 제30연대는 임무를 전환하여 제29연대와 진지를 교대하였다. 하지만 14:40경 중국군 제335연대는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역습을 실시하였다. 이때 진지 교대 중이던 제29연대와 제30연대는 진지교대를 중단하고 동시에 역습에 대항하기시작했다. 그 결과 중국군은 1시간 10분 동안 교전에서 많은 손실을 입고 후퇴하였다. 제30연대는 17:30경 제29연대로부터 진지 인수를 완료하였고 이렇게 제11차 공방전이 끝났다. 81)

12일 주간 공격이 실패하자 중국군 제335연대는 19:30부터 13일 03:35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야간공격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제30연대는 각종 화기들을 동원하며 완강하게 진지를 고수하

<sup>80)</sup>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1984), pp. 197~212.

<sup>81)</sup>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2012), pp. 427~428.

여 이를 격퇴하였다. 제30연대의 승리가 확실해지자 사단장 김종오 소장은 13일 02:00를 전후하여 제28연대에게 화랑고지를 공격하라고 명령하였다. 제28연대는 제30연대와 임무를 교대하여 15일까지 격전을 벌인 끝에 화랑고지를 점령하였다. 이어 제29연대가 화랑고지 선상의 전초기지를 탈환함으로써 중국군을 완전히 격퇴하였다. 큰 피해를 입은 중국군 제38군은 예하 사단을 축차적으로 철수시켜 전선에서 물러났다. 82) 결과적으로 국군제9사단은 10월 6일부터 중국군 제38군의 3개 사단 예하 7개연대의 공격을 받아, 10여 일간 12차례의 쟁탈전을 반복하며, 7번이나 고지의 주인이 바뀌는 격전 끝에 백마고지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83)

# 4. 국군 제9사단의 화력운용 분석

지금까지 화력을 중심으로 백마고지 전투의 준비와 경과를 살펴보았다. 이 중 백마고지 전투에서 나타난 여러 화력과 관련된 요소들을 확인한다면 국군 제9사단의 화력운용에 대해서 분석할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 살펴볼 요소들은 지휘통제, 연합작전, 대포병 사격, 오폭에 대한 부분 등이다. 화력운용의 적극성과 관련된 부분은 기존 연구들에서 잘 규명되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제외한다. 84) 이러한 요소들을 분석함으로써 국군 제9사

<sup>82)</sup> Ibid. pp. 428~429.

<sup>83)</sup> Ibid, p. 428.

<sup>84)</sup> 나종남(2017), pp. 80~82에 포탄 사격량, 항공기 출격횟수와 투하한 폭탄량 등이 잘 제시되어 있고 같은 시기 미군의 전투와 비교하며 화력운용의 적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단의 화력운용 능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지휘통제이다. 많은 사람들이 백마고 지 전투를 다루면서 화력분야의 지휘통제에 대한 부분은 크게 신 경쓰지 않았다. 하지만 백마고지 전투에서 화력을 원활하게 운용 하기 위한 지휘통제에는 난점이 많았다. 국군 제9사단은 이때까지 제30포병대대 1개 대대만으로 작전을 수행해왔었다. 하지만 군단 에서 각종 화력자산들이 투입되면서 지휘통제가 굉장히 복잡해졌 다. 단순히 포병만 두고 보았을 때도 약 8개 대대로 증가하였고 화포도 5가지 종류로 다양하였다. 그리고 항공기도 유엔군 공군 뿐만 아니라 해군 항공기도 지원이 되며 지휘통제의 복잡성이 증 가하였다. 혹자는 제1포병단이 사단을 직접지원하니 제1포병단의 지휘통제 기능을 활용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반문할 수도 있 다. 하지만 제1포병단은 1952년 1월 21일 창설된 부대로 창설된지 9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신편 부대였다. 그리고 전투 도중 노재 현 단장이 대령으로 진급하며 지휘관이 박병주 중령으로 교체되기 도 하였다.85) 더욱이 국군은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사단급 화력지 원협조소(Fire Support Coordination Center, FSCC)를 운용해 본 경험이 없었다.86)

따라서 제9사단은 효과적인 화력지원을 위해 약간의 융통성을 가미해 지휘체계를 구성하였다. 우선 제1포병단은 화력관련 사단의 최상위 부대로서 사단 전체의 화력을 통제하며 사단의 화력지원협조소를 구성하였다. 하지만 제9사단과 연계하여 작전한경험이 적고 인력 및 능력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보병과 연계된근접지역에 대한 부분은 사단포병인 제30포병대대에게 맡겼다. 그리고 제1포병단은 전체적인 자산 배분과 군단의 자산을 활용

<sup>85)</sup> 신기철, 하보철(2012), pp. 172~174.

<sup>86)</sup>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1984), p. 56.

한 종심 깊은 지역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공군과 해군의 항공자 산들에 대한 부분을 맡았다. 제1포병단은 작전주임인 이연호 대 위를 중심으로 5명의 보좌관이 주·야간으로 임무를 수행했 다.87) 아울러 효과적인 항공화력 운용을 위하여 미 공군에서 무 전기를 장착한 지프차와 공군연락장교를 화력지원협조소에 위치 시켜 이를 통해 항공화력을 운용하였다.88)

보병과 연계된 근접지역에 대한 화력은 제30포병대대가 중심이 되어 지휘하였다. 화력계획과 관련해서 근접지역의 화력집중점들은 제30포병대대가 계획하여 연락장교들을 통해 대대별로분배하여 통제하였다. 관측장교들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제30포병대대에서 우선적으로 파견되었기에 근접표적에 대한 부분들은제30포병대대로 우선 접수되었다. 제30포병대대의 사격지휘소에는 작전주임 전주식 중위를 중심으로 수평계산병, 수직계산병, A, B, C포대 계산병이 위치하여 사격지휘를 수행했다. 그리고10여명 가량의 미군을 포함한 각 포병대대의 연락장교들은 사격지휘소에 위치하여 제30포병대대가 분배해주는 사격임무를 소속대대로 전파하였다. 이처럼 보병과 직접 연관된 화력운용은 제30포병대대에서 수행했기에 제28연대장, 제29연대장, 제30연대장은 작전간 화력과 관련된 불만사항을 제1포병단이 아닌 제30포병대대로 와서 호소하였다.89)

이러한 이중적인 지휘구조는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으나 전투 간 대체로 원활하게 작동하였다. 이는 중국군이 정상을 빼앗고 도 진내사격을 포함한 강력한 화력운용으로 인해 돌파구를 확대 하지 못하고 번번이 국군의 역습으로 다시 정상에서 물러났던 것에서 알 수 있다. 그리고 준비단계에서 보았듯이 사전에 통신

<sup>87)</sup> 신기철, 하보철(2012), p. 246.

<sup>88)</sup> Ibid. p. 299.

<sup>89)</sup> Ibid. pp. 413~414.

선로를 깊게 매설하고 전투 간 무선통신망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통신분야는 지휘통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었다. 결론적으로 제9사단의 지휘통제는 많은 난점들이 있었으나, 융통성 있는 조치와 사전준비를 통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연합작전에 대한 부분이다. 국군은 처음으로 사단급화력지원협조소를 운용했을 뿐만 아니라 연합자산을 처음으로 직접 통제하였다. 제9사단은 미 제9군단 예하의 4개 포병대대, 3개 포병포대, 1개 중박격포 중대와 각종 항공자산들을 활용하였다. 이렇게 거대한 규모의 연합자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제9사단은 우선 연락장교들을 활용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제30포병대대의 사격지휘소에는 미 포병대대에서 파견 온 연락장교들이 약 10여 명 위치하고 있었다. 제9사단은 이들을 통해 사격계획과 표적을 하달하여 화력지원임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사단에서 하달하진 않았고 제4차 공방전에서처럼 미군을통해 확보한 표적에 대해서 한국군이 지원을 하기도 하는 등 상황에 맞춰서 융통성 있게 운용되었다. 또한 사단장의 요망사항을 군단의 포병이 원활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미 제9군단 포병단장 콜컨(Colkern) 준장은 군단의 포병 연락장교 1명을 사단장 차량에 동승시키기도 하였다.90)

연락장교들 뿐 아니라 미 군사고문단의 고문들도 연합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고문들은 포병대대까지 파견되어 각종 사항들을 지원하였다. 고문들은 각종 조언을 할 뿐만 아니라 연막탄이나 백린 연막탄 등의 특수탄 사용에 대한 승인권한이 있었다. 제30포병대대의 경우 고문관인 스미스 소령은 대대원과 숙식을 같이하며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특수탄 사용에

<sup>90)</sup>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1984), p. 76.

대해서도 언제든지 승인해주었다.<sup>91)</sup> 하지만 이렇게 좋은 관계만 있는 것은 아니어서 사단의 경우 고문관들이 탄약 1일 사용량을 언급하며 사용량을 제한하려고 하였다. 이에 사단장은 군단장에게 해당 사항을 보고하여 고문관을 교체하기도 하였다.<sup>92)</sup>

이렇게 제9사단은 연락장교들과 고문관들을 통해서 미군과 적극적으로 소통했고 비록 몇몇 마찰음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연합작전은 원활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작전기간 동안 700소티가 넘는 항공지원과 수 만발의 미군 포병대대의 사격량을 통해 알 수 있다. 특히 중국군에게 고지의 정상을 빼앗겼을 때, 한국군과 미군의 화력을 집중하여 돌파구를 봉쇄하여 역습을 발판을 마련했던 것들에서 잘 나타난다.

세 번째로 확인할 사항은 대 포병사격이다. 대 포병사격은 공군이 지상군을 지원하기 전 공중우세를 먼저 달성하는 것처럼, 포병이 기동부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화력의 우세를 달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매우 중요한 임무이다. 이는 현재뿐만 아니라 6 · 25전쟁 때도 중요했다. 야전포병의 전술적 임무에 대해 다룬 1944년 발간된 미군 교범 FM 6-20, Tactical Employment는 공격임무와 방어임무 모두 첫 단계로 대 포병사격을 실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방어임무 시 군단 포병의 임무로 우선 대 포병사격을 설명한 후 사단 포병에 대한 지원을 말하고 있다. 93)

이러한 개념과 정찰 및 귀순자를 통한 정보를 바탕으로 10월 5일까지 대 포병사격에 대한 자세한 계획이 작성되고 각 포병대 대에게 분배되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중국군이 공격을 시작함

<sup>91)</sup> 신기철, 하보철(2012), p. 414.

<sup>92)</sup>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1984), p. 75.

<sup>93)</sup> United States War Department, FM 6-20 1944 (OBSOLETE): War Department field manual, field artillery, tactical employment (Washington, DC: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44), pp. 43~52.

과 동시에 실행되었다. 다음 〈표 3〉은 전투 간 미 제9군단의 일 반지원 포병들의 일자별 사격량이다. 해당 자료에서 대 포병사 격, 임기표적에 대한 사격, 기타 파괴 임무에 대한 사격을 묶어 서 기타로 표기하여 정확한 대 포병사격을 위한 사격량을 파악 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보고서와 교범에서 일반지원 포병은 대 포병사격이 주 임무라고 밝히는 것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 기타 임무로 발사한 사격량인 178,760발 중 상당량이 대 포병사격을 위하여 사용되었고, 이는 총 발사탄수인 392,189발과 비교하면 약 45%로 이 중 일부가 다른 임무의 사격이었을지라도 대 포병 사격을 위해 상당히 많은 포탄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94)

<sup>94)</sup> IX Corps(1952), pp. 29~Enclosure "B"-1. 백마고지간 사용된 포탄량에 대해서 는 기록마다 내용이 상이하다. 한국군 전투상보와 미 군사고문단의 보고서는 전투 간 4.2인치 박격포를 제외한 포병탄이 총 203.477발이 사용되었다고 기록하고 있 다. 반면 미 제9군단의 특별 보고서는 총 392.189발이 사용되었다고 기록하고 있 다. 하지만 앞서 전투편성에서 사단과 미 군사고문단은 사단이 통제한 부대만 고 려하여 기록했고 탄의 사용 역시 직접 통제한 부대의 탄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흥미롭게도 〈표 3〉의 일반지원 부대의 탄 발사량인 187.999발을 미 제9군단 특별보고서의 총 사용량 392.189발에 감하면 204.190발이 나오는데 이는 제9사단 전투상보와 미 군사고문단의 기록과 713발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다만 105mm 곡사포의 경우 모두 사단에서 통제하였기 때문에 105mm 포탄의 사용량은 두 기록이 일치해야 하지만 사단 전투상보에 총 145.749발을 사용하였다고 기록되어있는데 미 제9군단의 특별보고서에는 268.918 발이 사용되었다고 기록되어있다. 155mm 곡사포의 경우에도 사단 전투상보에 기 록된 미 제213포병대대와 미 제955포병대대 2개 대대만 참가했기 때문에 두 기록 이 일치해야 함에도 사단 전투상보에는 58.337발로 기록되어있고 미 제9군단 특 별보고서에는 92.526발로 기록되어있다. 만약 사단이 자신들이 지시한 임무를 기 준으로 포탄 사용량을 기록하였고 미 제9군단은 군수기록을 바탕으로 기록하였다 면 차이가 설명되나 이 주장을 뒷받침할 사료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백마고지 에서 사용된 포탄 총사용량은 미 제9군단의 자료가 맞을 가능성이 더 크나 명확 한 입증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일 자	요란사격(발)	기 타(발)	총 계(발)
5일~6일	934	1,249	2,183
6일~7일	633	18,795	19,428
7일~8일	403	11,848	12,251
8일~9일	202	30,900	31,102
9일~10일	1,228	17,994	19,222
10일~11일	977	22,478	23,455
11일~12일	1,425	17,515	18,940
12일~13일	1,098	21,925	23,023
13일~14일	1,458	17,129	18,587
14일~15일	881	18,927	19,808
총 계	9,239	178,760	187,999

(표 3) 미 제9군단 일반지원 포병 사격량<sup>95)</sup>

위의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전투 간 대 포병사격은 지속적이며 적극적으로 실시되었다. 또한 대 포병사격은 실시간 획득되는 정보에 따라 계획을 계속 수정하면서 실시하였다. 전투 초기에는 중국군의 포병들이 유개화 진지에 배치되어 단기간만 제압할 뿐 큰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사격을실시함으로써 중국군 포병은 타격을 입기 시작했고, 8일 이후부터 포병의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었다. 이는 일자별 중국군의 사격량을 나타난 아래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sup>95)</sup> Ibid, p. 31.

일 자	사격량(발)	
5일 18:00 ~ 6일 18:00	1,468	
6일 18:00 ~ 7일 18:00	10,980	
7일 18:00 ~ 8일 18:00	2,226	
8일 18:00 ~ 9일 18:00	12,024	
9일 18:00 ~ 10일 18:00	4,474	
10일 18:00 ~ 11일 18:00	4,340	
11일 18:00 ~ 12일 18:00	3,430	
12일 18:00 ~ 13일 18:00	5,467	
13일 18:00 ~ 14일 18:00	5,768	
14일 18:00 ~ 15일 18:00	4,631	
초계	5/1 8/18	

〈표 4〉 중국군의 일자별 사격량%

이처럼 제9사단은 사전에 확인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교한 대 포병사격계획을 만들고 전투 간 적극적으로 이를 실행했다. 그 리고 전투 중 계획을 지속 보완함으로써 중국군 포병에게 지속 적인 출혈을 강요하였다. 그 결과 진지공사를 통해 강력한 방호 력을 보유하고 있던 중국군 포병이었지만 결국 큰 피해를 입고 8일 이후부터 전투력이 감소하여 효과적인 화력지원이 불가능해 지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제공권을 장악한 미군에 비해 절대적으로 취약한 중국군의 작전지속지원 능력 등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다는 반론과 전투 초기 공격준비사격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화력을 운용하였기 때문에 후기에 발사량이 적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명확한 중국측의 피해자료가 없는 상황

<sup>96)</sup> Ibid. pp. 30~31.

에서 미 공군의 작전결과에 작전지속지원과 관련된 것은 4대의 차량파괴만 있다는 것을 볼 때, 중국군의 작전지속지원능력에 대한 항공타격이 중국군의 포병능력 감소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에는 의문이 생긴다. 97) 또한 제5차 공방전 이후 중국군이 무전으로 포병이 더 필요하다고 호소하였던 점과, 제9사단의 가장 큰 위기였던 제6차 공방전이 진행중이던 9일 00:20부터 10일 00:30 사이중국군 사격량이 감소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중국군은 초기뿐만 아니라 후기에도 포병지원이 필요했으나 능력이 부족하여 사격하지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미 제9군단은 보고서에서 모든 결과를 종합할 때 대 포병사격이 중국군의 포병 효과성 감소에 영향을 주었다고 결론짓고 있다. 98) 따라서 효과적인 대 포병사격이중국군의 포병에 타격을 주었고 이것이 전투승패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오폭에 관한 부분이다. 앞선 연구들은 모두 백마고지 전투 간 제9사단의 화력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만 평가하였다. 하지만 관련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모든 것이 다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제5차 공방전 간 있었던 유엔 항공기의 오폭으로 인한 고지 상실과 제8차공방전 간 있었던 미 제213포병대대의 오폭으로 인한 고지 상실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오폭들에 대해 분석한다면 백마고지전투의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오폭들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큰 난점이 하나 있다. 그것은 이 오폭들이 미군에 의해서 발생했지만 미군 기록에는 오폭에 대한 내용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특히 항공기의 오폭 같은 경우에는 한국군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자료들도

<sup>97)</sup> Ibid. p. 38.

<sup>98)</sup> Ibid. p. 31.

제한된다. 따라서 당일 안개가 짙었던 기상과 혼전이 반복되던 상황 속에서 조종사의 실수로 인한 오폭이었다고 추측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미 제213포병대대의 오폭 같은 경우 최초 화력계획 을 통해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사거리가 짧은 화포는 아군 기동부대와 근접한 지역을 지원하고 사거리가 긴 화포는 종심 깊은 지역의 적을 타격하기 위해 운용된다. 이는 미군 포병교범에도 방어전투 간 경포의 대부분은 주방어지대와 아군쪽 종심으로 이어지는 방어지역, 그리고 역습을 위해 준비해야 하며, 사거리가 긴 화포는 대 포병사격, 차단사격, 요란사격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99) 하지만 〈상황도 2〉를 보면 편성에 의문이 생긴다. 미 제213포병대대의 화력대가 고지 서측 부분의 근접한 지역에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리어 한국군의 105mm 화포들이 그보다 더 먼 곳에 화력대가 편성되어있다. 즉 사거리가 더긴 미 제213포병대대의 화력대를 근접한 지역에 설치함으로써오폭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미 제213포병대대의 화력대를 근접한 지역에 설치함으로써오폭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미 제213포병대대의 화력대를 근접한 지역에 설치한 이유에 대해 명확히 설명한 문건은 없지만, 화력이 더 강한 대구경포를 적극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했다고 추측된다.

여기에 더불어 제8차 공방전 간 화력지원을 위한 상황도 어려웠다. 오폭은 08:00에서 09:00 사이에 일어났는데 그날 기상은 짙은 안개가 11:00까지 걷히지 않아 시계가 불량하였다. 100) 그리고 제4차 공방전 이후 고지 정상의 미군 관측소는 철수하였고, 고지 2km 동쪽의 284고지의 관측소에만 미군 관측반이 있었기 때문에 악화된 기상상황 하에서 정확한 화력을 유도하는

<sup>99)</sup> United States War Department(1944), p. 49.

<sup>100)</sup>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2012), p. 421.

것이 제한되었다. 101) 그리고 미군 포병대대였기 때문에 한국군 기동부대와의 연락수단도 없었으며 오폭에 대해서 빠르게 조치하는 것도 제한되었다. 따라서 오폭은 한국군 기동부대와 의사소통이 제한되는 미군의 장사정 화포를 근접지역 화력지원 임무에 배정한 것과 악기상으로 관측자가 정확한 화력유도를 하기어려운 상황이 겹치면서 발생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5. 결론

지금까지 1952년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철원 북방의 395고 지에서 10일 동안 12차례에 걸친 치열한 공방전을 치르며 중국 군 제38군에게 승리한 국군 제9사단의 백마고지 전투를 살펴보았다. 특히 기존에는 깊은 관심을 갖지 않았던 화력운용의 측면에서 국군 제9사단이 어떻게 전투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백마고지 전투 간 제9사단은 국군 최초로 사단급 화력지원협조소를 운용하며 연합자산을 포함하여 8개 포병대대, 3개 포병포대, 2개 중박격포 중대 그리고 각종 항공자산들을 통합 운용하였다. 그리고 전투 전에 획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면밀한 대포병사격 계획을 세웠으며, 그동안 경시하였던 중국군의 화력에

<sup>101)</sup> Sobieski, Anthony, A Hill Called White Horse (Indiana: AuthorHouse, 2009), pp. 195~208. 백마고지 전투에 참가했던 미군 관측장교 아담스 중위(1st Lt Joseph C. Adams Jr.)와 컬러웨이 중위(1st Lt Jack G. Callaway)의 증언록에 오폭에 대한 내용은 없으나 고지 정상의 아담스 중위가 제4차 공방전 이후 대대로 복귀하고 교대자가 없었으며 컬러웨이 중위는 계속 284고지에서 임무수행했다는 것을 통해 오폭 당시에도 284고지에서 화력을 유도했다는 것을 유추할수 있다.

대비하여 생존성을 보장하고 통신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였다. 전투 실시간에는 계획 간의 실수로 인해 오폭을 유발하기도 하는 등 실수도 있었지만, 짧은 시간에 융통성 있게 지휘조직을 구성하였고 미군과의 원만한 연합작전을 통해 효과적인 화력운용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 모든 노력들이 더해지며 고지점령을 위해 4주간 준비를 한 3배가 넘는 규모의 중국군과 싸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과거 연구에서 관심을 갖지 않던 화력 분야를 중심으로 백마고지 전투를 재고찰 함으로써 기존과 는 다른 6·25전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었다. 또 한 전투에 대한 구체적인 사료 분석을 통해 전투에 참가했던 포 병 부대의 규모 등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낼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도 전투에 대해서 규명되지 않은 부분들은 많이 남아있다. 특히 작전지속지원과 관련된 부분으로 병참과 보급과 관련된 사 항들, 특히 사단과 군단의 상이한 포탄 사용량에 대한 부분 등 에 대해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앞으로 다양한 요 소들에 대한 연구가 더해진다면 그동안 우리가 미처 몰랐던 6·25전쟁의 또다른 모습들에 대한 연구가 풍성해질 것이다.

(원고투고일: 2020, 9, 25, 심사수정일: 2020, 11, 10, 게재확정일: 2020, 12, 2,)

주제어: 국군 제9사단, 백마고지 전투, 화력운용, 포병

#### 〈참고문헌〉

- 1. 1차 사료
- 신기철, 하보철, 『포병과 6·25전쟁 증언록』, 대전: 육군 군사연구소, 2012
-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한국전쟁사료: 전투상보 58권(9사단)』, 대전: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1987.
- Department of Defense. Department of the Army. The Adjutant General's Office, Non Organic Units, USMAG, Korea, AYUT-8202, Narrative w/supp. Docs , Box No.5802, Command Report, Oct. 1952, ROKA Combat Units, KMAG, 9th ROK Division, etc. (10 of 11) , 출처: 국사편찬 위원회
  - (http://archive.history.go.kr/catalog/view.do?arrangement\_cd=ARRANGEMENT-0-A&arrangement\_subcode=HOLD\_N ATION-0-US&provenanace\_ids=00000000034&displaySor t=&displaySize=50&currentNumber=1&system\_id=0000000 52936&catalog\_level=&catalog\_position=-1&search\_positio n=9&lowYn=)(접속일: 2020, 6.7).
- G3 Section, Headquarters IX Corps, Special after-action-report Hill 395(White Horse Mountain) 6-15 October 1952, Kansas: Headquarters IX Corps, 1952,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https://www.nl.go.kr/NL/contents/search.do?srchTarget=total&pageNum=1&pageSize=10&kwd=hill+395#!)(접속일: 2020, 6.7).
- United States War Department, FM 6-20 1944 (OBSOLETE): War Department field manual, field artillery, tactical employment, Washington, DC: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44,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https://www.nl.go.kr/NL/contents/search.do?srchTarget=total&pageNum=1&pageSize=10&kwd=fm+6-20)(접속일: 2020. 6.7).

#### 2. 2차 사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3권』, 서울: 국방부 군사 편찬연구소, 2005.

http://uci.or.kr/G500:1310377-02012047136110

\_\_\_\_\_\_, 『6·25전쟁사 제10권: 휴전회담 고착과 고지쟁탈전 격화』,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http://uci.or.kr/G901:A-0006441219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전투사: 백마고지 전투』, 서울: 국방 부 전사편찬위원회, 1984.
- 나종남, "백마고지 전투의 재조명: 국군 제9사단의 향상된 전투수행 능력 분석을 중심으로", 『군사』105호(2017):45~93. https://doi.org/10.29212/mh.2017., 105.45
- 온창일, 『한민족 전쟁사』, 경기도: 집문당, 2011. http://uci.or.kr/G701:B-00047957351
- 육군 포병학교·화력센터, 『포병 전투사례집』, 전라남도: 육군 포병학교· 화력센터, 2014
- Sobieski, Anthony, A Hill Called White Horse, Indiana: AuthorHouse, 2009.
- Gibby, Bryan R., "The battle for White Horse Mountain september—october 1952", Army History, vol. 89, (Fall 2013):26~47.

#### 90 | 軍史 第117號(2020. 12.)

#### 3. 기타 참고자료

손경호, "전투사 연구의 발달을 위한 제언: 클리오의 기초적 마르스 읽기", 『세계 역사와 문화 연구』50호(2019):219~244.

https://doi.org/10.32961/JWHC.2019.03.50.219

스티븐 배시, 김홍래 역, 『세계의 전쟁2: 노르망디 1944』, 서울:도서출판 플레닛미디어, 2006.

http://uci.or.kr/I410-ECN-2-2008-08-146053-4 육군교육사령부, 『지상작전』, 대전: 육군본부, 2019.

\_\_\_\_\_, 『군사용어사전』, 대전: 육군본부, 2012.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 류제승 역, 『전쟁론』, 서울: 책세상, 1998. 칼 하인츠 프리저, 진중근 역, 『전격전의 전설』, 서울: (주)일조각, 2007.



(Abstract)

## A Study on the Fire employment of the 9th ROK Infantry Division in the Battle of White Horse Hill

- Focused on artillery employment of the 9th ROK Infantry Division-

Cho, Nam-joon

The study attempts to research the Fire employment of the Battle of White Horse Hill, in which the 9th ROK Infantry Division won against the 38th Corps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 Army in October 1952. Although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fficially and academically on the battle, however most of them are the study of analyzing the battle centered on maneuvers, whereas the role of firepower had been accepted less interests, in some cases, to extent of the just amount of ammunition that used during the battle. Even the numbers of artillery units participating are different based on studies. In this regard, this study analyzes the strength of firepower mobilized, operational plans, command and control systems, and actual performance of those units, based on primary historical records, like combat situation reports(sitreps) from the 9th ID, special reports from the IX U.S. Army Corps, reports from the U.S. Military Advisory Group, and testimonies from veterans.

According to the study, the 9th ID put more firepower assets into the battle than previously known, even though the 9th ID operated the division—level fire support control center for the first time in the ROK Army, it smoothly commanded and controlled huge amount of firepower assets through flexible measures and pre—preparation. Although there were also negative incidents such as misfires during the battle, they carried out the battle in a variety of ways in the joint operation with the U.S. military.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se fire employment was well illustrated by the 9th ID's success to dispel incoming Chinese troops through the front lines by rapid

#### 92 | 軍史 第117號(2020. 12.)

fire employment. In conclusion, by using firepower effectively and efficiently, the 9th ID was able to win the Chinese troops three times more than themselves.

Keywords: The 9th ROK Infantry Division, The Battle of White Horse Hill,

Fire Employment, Artillery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0, No. 117, pp. 93-127 https://doi.org/10.29212/mh.2020..117.93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66년 케스티우스 갈루스(Cestius Gallus)의 전략 분석\*

배은숙\*\*

- 1. 머리말
- 2. 원군 파견의 시점 분석
- 3. 가바오 전투 패배의 원인 분석
- 4. 베스호론 전투 후 전략적 철수
- 5. 맺음말

# 1. 머리말

로마가 유대 지역에 관여하게 된 것은 기원전 1세기 하스모네 아(Hasmonea) 왕조에서 왕위 경쟁이 발발한 이후였다. 기원전 63년 폼페이우스(Gnaeus Pompeius)가 예루살렘을 장악했으나

<sup>\*</sup> 이 논문은 2020년 계명대학교 연구기금으로 이루어졌음.

<sup>\*\*</sup> 계명대학교 타불라라사 칼리지 조교수(je.js@kmu.ac.kr)

기원전 40년 파르티아(Parthia)의 비호 아래 하스모네아 왕가가 재건되어 유대인들의 환영을 받았다. 이후 로마가 예루살렘을 공격했고, 그 결과 기원전 37-기원후 4년 로마에 예속적인 헤로데스(Herodes) 왕이 옹립되었다. 6년 아우구스투스(Augustus) 황제의 개혁으로 유대는 기사계급이 총독으로 통치하는 로마의직접 지배를 받는 속주가 되었다. 41-44년 아그리파 1세(Herodes Agrippa I)가 유대 왕으로 통치했지만 이후 유대는 다시 로마의속주가 되었다.1)

64-66년 유대 지역의 총독이었던 플로루스(Gessius Florus) 의 폭정은 유대인들의 분노를 유발했다. 유대인들은 유대 총독보다 상위에 있던 시리아 총독인 케스티우스(Cestius Gallus)에게 상황을 전했지만 케스티우스는 플로루스를 교체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플로루스가 그리스인이 소유한 유대인 회당을 구매하게 해 달라는 유대인 지도층 인사들에게 뇌물만 받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12명의 유대인 지도자들이 플로루스에게 호소했으나 그는 오히려 이들을 체포, 투옥했다. 이런 상황에서 플로루스가 "황제의 필요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예루살렘 신전금고에서 17탈란톤을 가져가자 유대인들의 분노는 폭발했다. 2)

플로루스가 카이사레아(Caesarea)에서 2개 대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했으나 유대인들의 저항은 만만찮았다. 반란이 유대 전역으로 퍼지면서 페레아(Perea), 키프로스(Kypros), 마카이루스(Machaerus) 등 로마군의 전략적 거점들이 유대군의 수중에 들어갔다. 이에 케스티우스는 로마군의 권위를 회복하기

Dio, 55,28.1; p. Bilde, "The Causes of the Jewish War according to Josephus", Journal for the Study of Judaism in the Persian, Hellenistic, and Roman Period 10.2, 1979, 179–202; E. Paltiel, "War in Judaea: After Herod's death", Revue belge de Philologie et d'Histoire 59, 1981, 107–136.

<sup>2)</sup> Josephus, Bellum Judaicum 2.280-288.

위해 유대 지역으로 갔다.<sup>3)</sup> 케스티우스는 66년 9월 가바오(Gabao) 전투와 11월 베스호론(Beth Horon) 전투를 이끌었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후퇴했다.

67년 베스파시아누스(Flavius Vespasianus)가 유대 군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5-6월 유대인들의 거점이었던 요타파타 (Jotapata), 야파(Japha), 요파(Joppa)를 점령했다. 가을에 접어들어 베스파시아누스와 티투스는 티베리아스(Tiberias), 가말라(Gamala), 타보르(Tabor) 산, 기스칼라(Gischala) 등을 차례로 점령해 나갔다. 68년 로마군은 페레아, 이두메아(Idumea), 예리코(Jericho)에서 전쟁을 지속했다. 69년 로마의 내전에서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로 옹립되자 유대 전쟁의 지휘권은 그의아들 티투스(Flavius Titus)에게 넘어갔다. 70년 티투스는 공성전을 펼쳐 예루살렘을 장악했고, 71년 유대 전쟁의 승리를 기념했다. 73-74년 유대 반란군의 마지막 거점이었던 마사다(Masada)가 로마의 군사령관 실바(Flavius Silva)에게 넘어가면서 1차 유대 전쟁은 종결되었다.

유대 전쟁의 과정은 요세푸스(Josephus)가 쓴 『유대 전쟁 (Bellum Judaicum)』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는 갈릴리 (Galilee) 유대군의 군사령관으로서 전쟁을 지휘하다가 요타파타 공성전 후 로마군의 포로로 잡혔다. 전쟁 후 그는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집에 기거하다 로마 시민권을 받았다. 그는 75-79년에 완성한 『유대 전쟁』을 베스파시아누스와 티투스에게 바쳤다.4)이런 관계로 인해 요세푸스의 글이 이들 부자의 지휘 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서술되는 경향이 없지 않다.5)

<sup>3)</sup> Josephus, Bellum Judaicum 2.318-499.

<sup>4)</sup> Josephus, Vita 423.

<sup>5)</sup> B. W. Jones, "Titus in Judaea, A.D. 67", *Latomus* 48, 1989, 127–134; Z. Yavetz, "Reflections on Titus and Josephus", *Greek, Roman, and Byzantine* 

66년 전쟁을 지휘했던 케스티우스에 대한 요세푸스의 글은 비난 일색이었다. 요세푸스가 전쟁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현대 학자들도 그의 주장을 지지하는 경향이 많다. 발코크바(B. Bar-Kochva)에 따르면, 전투에서 진 것은 적이 용감했다기보다 지휘관의 부주의에 기인한다는 요세푸스의 글은 냉철한 군사적 판단이었다. 블룸(J. J. Bloom)도 "경험 없는 케스티우스가 유대 공격에서수많은 실수를 했고, 이것이 결국 제12군단의 파멸로 이어졌다."라고 강조했다. 학자들은 케스티우스의 우유부단한 성격, 전략적 실패. 병참선 미확보 등을 패인으로 거론했다.6)

학자들은 케스티우스의 군사적 능력에 관한 판단을 요세푸스에게 의존하는 편이었다. 하지만 요세푸스의 글 자체는 베스파시아누스와 티투스의 군사적 능력을 강조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프라이스(J. J. Price)의 주장처럼 요세푸스의 글에서티투스의 군사적 실책이 상당수 발견되나 그보다는 티투스가 로마군을 구한 것이 더 강조되어 있다. 7) 이는 케스티우스의 군사적

Studies 16, 1975, 411–432; T. Rajak, Josephus: The Historian and His Society, London, 1983, 203–207; J. J. Bloom, The Jewish Revolts against Rome, A.D. 66–135: A Military Analysis, Jefferson: McFarland & Company, 2010, 69–176; Si. Sheppard, The Jewish Revolt AD 66–74, Oxford: Osprey Publishing, 2013, 20–38.

<sup>6)</sup> B. Bar-Kochva, "Seron and Cestius Gallus at Beith Horon", Palestine Exploration Quarterly 108, 1976, 13-21; J. J. Bloom, The Jewish Revolts against Rome, A.D. 66-135, Jefferson: McFarland & Company, 2010, 69-80; G. M. Paul, "The Presentation of Titus in the Jewish War of Josephus: Two Aspects", Phoenix 47, 1993, 56-66; F. Millar, The Roman Near East, 31 B.C.-A.D. 337,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3, 71-79; J. R. Curran, "The Jewish War: Some Neglected Regional Factors", Classical World 101, 2007, 75-91.

<sup>7)</sup> J. J. Price, Jerusalem under Siege, Leiden: E. J. Brill, 1992, 127–135; G. M. Paul, "The Presentation of Titus in the Jewish War of Josephus: Two Aspects", Phoenix 47, 1993, 56–66; B. W. Jones, "Titus in Judaea, A.D. 67", Latomus 48, 1989, 127–134.

능력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티투스를 칭송하기 위해 케스티우스를 비교, 활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러 전투 사례와 비교하면서 케스티우스의 전략과 그 군사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케스티우스의 군사적 장단점을 분석하는 것은 유대 전쟁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2. 원군 파견의 시점 분석

요세푸스는 유대 전쟁이 빨리 종결될 수 있었는데, 전쟁이 장기화한 것은 케스티우스의 책임이 크다고 하였다. 8) 케스티우스가유대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했다면 반란이 더 확대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전쟁의 조기 종결이 가능했던 첫 번째 기회는케스티우스가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유대인들이 플로루스의 폭정을 중지시켜 줄 것을 간청한 때였다. 케스티우스는 플로루스가 앞으로 자비롭게 통치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플로루스가유대인들을 응징하기 위해 공격하자 유대 역시 병력을 동원했다. 플로루스는 싸움을 시작하게 된 책임을 유대인에게 뒤집어씌우는 거짓 보고를 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도 케스티우스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는 서신을 보냈다. 9)

이런 상황에서도 군대를 파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블룸은 케스티우스가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 민간 행정가이다 보니 사태 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sup>10)</sup> 하지만 케

<sup>8)</sup> Josephus, Bellum Judaicum 2,531, 539.

<sup>9)</sup> Josephus, Bellum Judaicum 2,280-281, 333-335.

<sup>10)</sup> J. J. Bloom. The Jewish Revolts against Rome. A.D. 66-135, 74.

스티우스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는 이 문제를 협의할 관료 회의를 개최했다. 당시의 상황은 무턱대고 군대부터 파견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다. 오히려 섣부른 군대 파견은 유대인들의 반발심만 조장할 뿐이었다. 당시 일부 젊은 이들은 싸움을 벌이고자 했고, 카이사레아인들도 소요가 발생하도록 계략을 짜 놓은 상태였기 때문이다.<sup>11)</sup> 따라서 케스티우스가 즉각적인 군대 파견이 아니라 회의를 통해 최상의 방책을 논의한 것은 상황에 적합한 처사라고 볼 수 있다.

케스티우스는 관료 회의에서 명확한 사건 경위를 알아야 하니 조사관을 파견하여 유대 상황에 관한 믿을만한 보고를 받아야 한다는 조언을 들었다. 조사 후 폭동이 일어난 것이 사실이라면 징벌을 내려야 할 것이고, 유대인들의 충성심이 여전하다면 신의를 다져야 한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실제 조사관이 파견되었고, 조사관은 유대인으로부터 자신들은 잔혹한 플로루스에게 반대할 뿐다른 모든 로마인에게는 복종한다는 말을 들었다. 또 로마에 대한 전쟁은 무모하고 끔찍하다는 아그리파 2세의 연설에 유대인들이 설득되자 사태는 진정되는 듯했다. 로마 전체에 대한 반란이 아닌 상황에서 로마군을 파견하여 강제 진압에 나선다면 사태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었다. 따라서 케스티우스의 조사관 파견은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볼 수 있다. 12)

전쟁의 조기 종결의 두 번째 기회는 아그리파 2세에게 설득되고 난 후 전쟁을 일으키고자 했던 유대인들이 마사다를 점령하고, 로마 경비병을 죽였을 때였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사절을 보내 나중에는 폭동을 진압하기 어려우니 예루살렘으로 와서 반란을 미리 진압하라고 요구했다. [13] 이때 케스티우스가 군대를 빨

<sup>11)</sup> Josephus, Bellum Judaicum 2,289-290.

<sup>12)</sup> Josephus. Bellum Judaicum 2,333-335.

<sup>13)</sup> Josephus, Bellum Judaicum 2,419-421.

리 파견하지 않아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것이 요세푸스의 주장이다. 블룸은 상황이 심각한 데도 케스티우스는 플로루스가 원정군을 모집한다는 보고를 받은 지 3개월 동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있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유대인들이 플로루스의 폭정을 고발한 것은 네로 통치 12년, 아그리파 2세 통치 17년이 되던 해인 66년 5월 중순이었다. 유대군이 아그리파 궁전을 공격한 것은 9월 중순이었다. 케스티우스가 군대를 모집하여 갈릴리에서 안티파트리스(Antipatris)로, 리다(Lydda)로 진군한 것은 9월 하순이었다. <sup>14)</sup> 상황 인지에서 군대 파견까지의 기간을 5월 중순에서 9월 중순이라고 보면 블룸의 계산과 달리 4개월 정도 걸린 셈이다.

케스티우스의 행동의 신속성에 대한 평가는 그가 이끌고 온 병력의 규모와 이들의 이동 거리, 이동 시간을 보아야 한다. 케스티우스가 안티오키아(Antiochia)에서 이끌고 온 로마군은 제 12군단 전체, 시리아에 주둔하던 나머지 3개 군단에서 선발한 각각 2,000명의 분견대(vexillatio), 6개 보병대(cohors)와 4개 기병대(alae)였다. 여기에 콤마게네(Commagene)의 왕 안티오쿠스 1세(Antiochus I)가 보낸 기병 2,000명, 보병 3,000명과 그 외의 수천 명에 달하는 궁수와 기병이 더해졌다. 아그리파 2세는 기병 2,000명을, 에메사의 소아이무스(Sohaemus)는 기병과 궁수로 4,000명을 보내주었다. 당시 한 개 군단의 병사 수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최소한으로 잡아도 원군 포함 총 병력은 25,000명에서 35,000명으로 추산된다. 15)

23년 이후로 시리아에 4개 군단이 주둔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sup>14)</sup> Josephus, *Bellum Judaicum* 2,284–285, 430–440, 513–5171 J. J. Bloom, *The Jewish Revolts against Rome, A.D. 66–135*, 70.

<sup>15)</sup> B. Bar-Kochva, "Seron and Cestius Gallus at Beith Horon", 18; M. Gichon, "Cestius Gallus's Campaign in Judaea", *Palestine Exploration Quarterly* 113, 1981, 43–44.

케스티우스가 이끌고 온 병력은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16) 이 대규모 병력은 한곳에 집결해 있지 않았다. 에메사에서 안티오키아까지는 240km 떨어져 있었다. 군대를 모집, 선별하는 시간, 다른 지역에서 오는 군대를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했다. 게다가 군수품을 모으는 시간도 있어야 했다. 발렌스(Valens) 황제가 364년 고트족(Goth)에 대한 전쟁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트라키아에 군대를 집결시켜 출발시키는 데 18개월이 걸렸다. 375년 발렌티니아누스 1세(Valentinianus I) 때 콰디족(Quadi)에 대한원정을 위해 군수품을 모으는 데만 3개월이 걸렸다. 17) 군수품을수집하는 기간, 군수품을 동물이나 마차에 실어 행렬을 꾸리는기간 등을 합치면 상황을 인지한 후 곧바로 출발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18)

케스티우스가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행군한 거리와 시간을 보자. 그는 먼저 안티오키아에서 프톨레마이스(Ptolemais)까지 총 400km의 거리를 14일 동안 이동했고, 프톨레마이스에서 카이사 레아까지 총 50km의 거리를 이틀 만에 주파했다. 카이사레아에서 안티파트리스까지 총 27km의 거리를 하루 만에 행군했다. 하루 평균 각각 28.6km, 25km, 27km를 이동한 셈이다.19) 군인들의 이동 속도에 대해서는 5세기의 군사 전략가인 베게티우스 (Vegetius)의 글을 참조할 수 있다. 그는 더운 여름 날씨에 군인들이 행군 훈련을 할 때 일반적으로는 5시간 안에 20로마마일, 즉 29.6km를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급박해 더 빨리 이동하려면 5시간 안에 24로마마일, 즉 35.5km를 걸어야 한다고 말했

<sup>16)</sup> Tacitus. Annales 4.5.

<sup>17)</sup> Ammianus, *Res Gestae* 16.2.8, 17.8.2, 19.11.2, 21.6.6, 23.2.8, 23.3.6; Zosimus, *Historia Nova* 1.43, 4.10, 5.50.

<sup>18)</sup> S. P. Mattern, *Rome and the Enemy: Imperial Strategy in the Principat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2, 99.

<sup>19)</sup> Josephus. Bellum Judaicum 2,500-513.

다.<sup>20)</sup> 이를 볼 때 대규모 군수품 행렬을 대동한 케스티우스 군대의 이동 속도가 느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세푸스의 비난과 달리 전략적인 측면에서 케스티우스의 원군 파견은 적절한 시점에 이루어진 듯 보인다. 상황의 진위 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에 대한 회의를 거친 후 군대 파견 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상황 파악과 대책 마련이 우선인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신중하게 상황을 파악한 후 대책이 결정되면 케스티우스는 신속하게 결정 사항을 이행했다. 군대 모집과 이동이 빠르게 이행된 것을 볼 때 케스티우스의 우유 부단함을 유대 전쟁 장기화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재고의 여 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 3. 가바오 전투 패배의 원인 분석

요세푸스가 케스티우스의 군사적 능력에 대해 부정적으로 서술한 것은 가바오 전투에서의 패배이다. 가바오에서 유대인들은 로마군의 대열 중심부로 공격해 들어와서 로마군을 살상했다. 만약대형 주위에 있던 기병과 일부 보병의 도움이 없었다면 전멸할위기에 있었다. 로마군의 피해가 유대인과 비교하여 얼마나 컸는지는 사망자 수에서 알 수 있다. 로마군은 515명이나 사망했으나유대인의 사망자 수는 22명에 불과했다. 유대인들은 전투 후 베스호론으로 이동하려던 로마군을 공격했다. 후미에 있던 로마군은유대인들의 매복에 걸려 상당량의 군수품을 빼앗겼다. 21)

<sup>20)</sup> Vegetius, *Epitoma Rei Militaris* 1.9; Plinius, *Naturalis Historiae* 19.3-4; Lucianus, *Navigium* 9.

<sup>21)</sup> Josephus, Bellum Judaicum 2.517-522.

요세푸스의 글에서 비판받는 케스티우스의 전략적 실책은 첫 번째, 대형의 측면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보병 중심 의 전투에서 가장 취약한 곳은 대형의 배후와 측면이었다. 베게 티우스에 따르면, 적지를 행군할 때 행군 경로를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병사들이 급습이나 매복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 해야 했다. 군사령관은 예기치 않은 공격에 대비해 우수한 병력 을 전방과 후미, 대형의 좌측과 우측에 두어야 했다. 또 적군이 아군의 대형을 파괴하려고 할 때 원형 대형을 형성하여 전체 병 력이 파괴되는 것을 막아야 했다.<sup>22)</sup>

요세푸스의 글에서 케스티우스가 이러한 기본 전략을 무시한 채 대형의 측면을 보호할 병력을 두지 않았는지는 의문이다. 유대인들이 로마군의 대형을 공격할 때 기병들이 대형 주위에 있었고, 보병들 역시 전투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케스 티우스의 군대에서 기병의 역할이 눈에 띈다. 로마군은 말 사 육 비용과 훈련 비용, 훈련 시간이 많이 드는 기병보다 보병에 역점을 두었다. 기원전 1세기 말 유구르타(Jugurtha) 전쟁 후 군단에서 기병의 모습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카이사르 (Julius Caesar)가 아리오비스투스(Ariovistus)와 회담할 때 기병이 필요했으나 일부 보병들에게 말을 태운 것도 이 때문이 었다. 23) 로마 군단 내에 기병이 편성된 것은 1세기 즈음인 것 으로 추정된다. 그 근거는 요세푸스가 120명의 군단 기병 (equites legionis)이 군단에 소속되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 기 때문이다. 24) 또한 비문에 아일리우스(Aelius Severus)는 제3군단에서 율리우스(Julius Candidus)가 지휘하는 백인 대의 기병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25) 군단 내의 기병뿐만

<sup>22)</sup> Vegetius, Epitoma Rei Militaris 1.26, 3.6.

<sup>23)</sup> Sallustius. Bellum Jugurthinum 95; Caesar. Bellum Gallicum 1.42.6.

<sup>24)</sup> Josephus. Bellum Judaicum 3.6.2.

아니라 아그리파 2세와 소아이무스가 보낸 병력 중 ¼에서 ¾ 는 기병대였다. 이들은 그 수가 보병 못지않았고, 대형 주위에 포진해 있었다. 따라서 케스티우스 휘하의 병력에서 기병대가 군단에서 보병의 대형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으므로 요세푸스의 주장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케스티우스의 두 번째 실책으로 거론되는 것은 군수품의 행렬을 후미에 두었다는 것이다. 학자들은 군수품 행렬을 적의 공격을 받기 쉬운 후미에 두어 상당수의 군수품을 적에게 빼앗긴 것을 케스티우스의 실책으로 꼽았다. 셰퍼드(Si. Sheppard)는 케스티우스가 자만하여 정찰도 소홀히 하고, 군수품 행렬도 본대 뒤에 두었다고 비판했다. 26) 이런 비난의 정당성은 다른 전투 사례들과 비교해야 판단할 수 있다.

군수품 행렬의 위치는 실제 전투 사례에서 알 수 있다. 가령 로마군과 동행했던 상당수 갈리아인이 네르비이인(Nervii)에게 로마군의 두 군단 사이에 상당히 긴 군수품 행렬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27)로마군이 적의 공격으로 뒤로 물러나거나전진할 때도 군수품과 수송용 동물을 중앙으로 몰아넣었다. 28) 58년 아르메니아의 티리다테스 1세(Tiridates I)가 흑해 지역에서 로마군을 포위했을 때 로마군의 수송 행렬은 대열 사이에 끼어있었다. 29) 67년 베스파시아누스가 갈릴리로진격할 때 제일 먼저 정찰 부대인 기병대와 기마 궁수가 출

<sup>25)</sup> H. Dessau, *Inscriptiones Lationae Selectae*, Berlin, 1892-1916, 2326 in H. M. D. Parker, *The Roman Legions*, Oxford: Clarendon Press, 211 재인용.

<sup>26)</sup> Si. Sheppard, *The Jewish Revolt AD 66-74*, 10-11; 75; S. G. F. Brandon, "The Defeat of Cestius Gallus, A.D. 66", *History Today* 20, 1970.

<sup>27)</sup> Caesar, Bellum Gallicum 2.17.

<sup>28)</sup> Livius, Ad Urbe Condita 8.8, 30.30–35; Polybius, Historiae 3.113, 15.9–14; Caesar, Bellun Civilum 1.83, 3.88; Dio, 49.30; Vegetius, Epitoma Rei Militaris 2.6.

<sup>29)</sup> Tacitus, Annales 1.50-51, 3.45, 13.40.

발했다. 이어서 보조군 기병대와 보병대, 군사령관과 경호 기병대, 군단 기병대가 주둔지를 나갔다. 그다음에 각 군단이천부장, 백부장과 함께 각 백인대별로 출발했다. 그 뒤에 비로소 군수품 행렬과 용병부대가 있었다. 마지막에는 후미를지키는 보병과 기병이 따라왔다. 70년 티투스가 예루살렘으로 진격할 때는 창병과 기병, 공성 장비, 기수, 보병이 있었다. 그 뒤에 군수품 행렬과 용병부대가 있었고, 후미를 지키는 병사들이 마지막에 따라왔다. 30) 이 사례들을 볼 때 군수품 행렬의 일반적인 배치 장소는 대형 중앙이었다. 전투를 지속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군수품이었기 때문에 중앙에배치하여 아군 병력의 보호를 받는 동시에 적의 탈취 공격을 차단하고자 했다.

하지만 군수품 행렬이 항상 중앙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가령 9년 토이토부르크(Teutoburg) 숲에서 바루스(Publius Quinctilius Varus)는 아르미니우스(Arminius)의 매복에 걸려 3개 군단을 잃었다. 이때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이유는 군수품의 수송 마차 행렬을 대형 중앙에 두었기 때문이다. 이들이전투 병력과 뒤섞여 군단병들은 대형을 만들기도, 전투를 벌이기도 어려웠다. 31) 69년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베드리아쿰(Bedriacum) 전투에서 오토(Otho)가 패배한 이유, 크레모나(Cremona) 전투에서 비텔리우스(Vitellius)가 패배한 이유는모두 군수품 수송 동물과 마차를 대형의 중앙에 둠으로써 전투에서 이들이 전투 병력과 뒤섞여버렸기 때문이다. 32) 대형중앙에 군수품 행렬을 두는 것은 비교적 안전한 지역을 행군

<sup>30)</sup> Josephus, *Bellum Judaicum* 3,115–126, 5,47–48; Arrianus, *Ectaxis contra Alanos* 1–11.

<sup>31)</sup> Dio. 56,20; Tacitus. Annales 1,63.

<sup>32)</sup> Tacitus, Historiae 2.41, 3.25.

해 갈 때는 유익하지만 급습의 위험이 있는 지역이나 전장에서는 전투력에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투 병력이 이들 비전투 병력과 뒤섞여 대형의 전개나 백병전을 펼치는 데 방해를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515명에 달하는 전투병력이 사망하고 후퇴하는 과정에서, 적의 또 다른 공격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에서 케스티우스가 군수품 행렬을 중앙에 두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케스티우스는 군수품 행렬을 후미에 두면서 보호 조치로서 호송 부대를 배치했던 것 같다. 유대인들이 후미에서 철수하던 로마군을 습격하고, 군수품을 빼앗았다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군수품 행렬과 이들을 보호하는 부대였을 가능성이 있다. 기원전 141년 스페인에서 폼페이우스(Pompeius Aulus)가 천부장의 지휘하에 몇 개의 백인대를 군수품 호송 병력으로 파견한 것, 69년 로마군이 군수품 수송 행렬을 보호하기 위해 병력을 파견한 것에서 보듯이 이는 일반적인 사례였다. 33) 따라서 케스티우스가위험한 지역에서 전투 병력의 신속하면서도 안전한 이동을 위해 군수품 행렬을 호송 부대를 대동하여 후미에 둔 것은 전략적인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추측된다.

기병을 활용한 대형 보호, 군수품 보호와 신속한 이동을 고려한 군수품 행렬의 후미 배치 등이 적절한 조치였다면 가바오 전투의 패인이 무엇인지에 관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전략적 특징을 알 필요가 있다. 요세푸스는 "로마인들이 거대한 영토를 획득한 것은 행운이 아니라 그들의 용맹함에 기인한 것이다.", "로마군에게 훈련은 피를 흘리지 않는 전투였고, 전투는 피를 흘리는 훈련이었다.", 패배하더라도 유익한 교훈을 얻을 수 있으므로 "로마군은 패배를

<sup>33)</sup> Appianus, Hispanica 13.77; Tacitus, Historiae 4.35.

단순히 행운으로 얻는 승리보다 더 낫다고 여긴다." 등의 문구들로 로마군을 규정했다. 그는 훈련이 잘된 조직력, 엄격한 규율, 병사들의 잘 갖추어진 무장 상태와 공성 장비들을 로마군의 장점으로 꼽았다.<sup>34)</sup>

대규모 병력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로마군에 반해 유대인들은 가볍게 무장했고, 조직적인 훈련을 하지도 않았으며, 투석에 의존했다. 무질서한 유대인들이 완벽한 전열을 갖춘로마 군인들을 상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 무기나 들었던 유대인들이 완전 무장한 로마 군인들을 상대로 싸우는 형국이었다. 35) 유대인들은 훈련이나 조직, 무기는 열악했지만가볍게 무장했으므로 기습공격에 강하다는 장점이 있었다.로마군을 급습하여 타격을 준 후 적이 반격해오기 전에 재빨리 도망치는 게릴라식 전술은 유대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이었다. 36)

전열을 질서정연하게 갖추고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는 로마군이 게릴라 전술을 펴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는 67년 아스칼론(Ascalon) 전투가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 전투에서 보병대 1개 대대와 기병대 1개 대대를 지휘한 안토니우스(Antonius)는 적은 병력으로 적들을 물리쳤다. 주효했던 전략은 넓게 트인 평지에서 전투한 것이다. 개방지에서는 기병들이운신할 폭이 넓었고, 이로써 기병들은 유대인들의 전열을 무너뜨리는 동시에 도주하는 유대인들까지 따라잡을 수 있었다. 이를 볼 때 로마군에게 유리한 지형은 대규모 병력이 대형을 전개

<sup>34)</sup> Josephus, *Bellum Judaicum* 1,22, 1,142, 2,529, 2,580, 3,70-109, 3,167, 3,214-217, 3,243-249, 3,467, 3,484, 5,79, 5,121, 5,285, 5,353.

<sup>35)</sup> Josephus, Bellum Judaicum 2.512, 3.15, 3.113.

<sup>36)</sup> Plutarchos, Pyrrhus 22.4-6, 25.1, 11.24; Do, 10.6.48; Scriptores Historiae Augustae, Vita Gallienii 13.8; Zosimus, Historia Nova 1.43; Josephus, Bellum Judaicum 2.543, 3.207, 3.275, 3.478-479.

하고, 기병을 활용할 수 있는 넓은 지형이었다.

기원전 275년 베네벤툼(Beneventum) 전투나 268년 나이수스 (Naissus) 전투에서처럼 적을 공격하는 척하면서 개방지나 매복지로 적을 유인하는 전략이 로마군에게 적합했다. 37) 84년 그라우피우스(Graupius) 전투 또한 전략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전투는 로마군이 브리타니아의 칼레도니아(Caledonia) 군대를물리치고 스코틀랜드까지 정복한 전투이다. 로마군은 적의 장검이 백병전에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백병전으로 평지의 적을 죽이고 완만한 경사면에 있는 적들을 꼭대기로 밀어붙였다. 언덕 꼭대기의 적들이 로마의 측면 공격을 시도할 때 로마군 기병들이 재빨리 적의 측면과 배후를 공격함으로써 승기를 잡았다. 이 전투는 로마군이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해도 기병과 보병이 활약할수 있는 넓은 지형이라면 충분히 승산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38)

개방지가 로마군에게 유리하다면 역으로 이는 유대인들에게 불리한 지형이다. 유대인들에게 유리한 지형은 아스칼론과 같은 개방지가 아닌 폐쇄적인 지형일 것이다. 그래서 아그리파 2세가 가바오 전투 후 유대인들이 산악지역을 장악하자 이것이 로마군에게는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협상을 시도한 것이다. 요세푸스또한 유대인들은 산악 지형을 활용한 전략에 의존하고, 개방지에서 공격하는 경우는 드물었다고 말했다. 39) 유대인들은 병력이나 전술적인 측면에서 개방지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인지했기에 산악 지형에 의존했다. 급습과 매복 전략에 의존하는 유대인들은 지형에 익숙하다는 점을 최대한 활용했다.

유대인들을 개방지로 유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로마군이 취

<sup>37)</sup> Josephus, *Bellum Judaicum* 3,9–21; B. Bar-Kochva, "Seron and Cestius Gallus at Beith Horon", 20–21.

<sup>38)</sup> Tacitus. Agricola 34-46.

<sup>39)</sup> Josephus. Bellum Judaicum 2,523, 2,547.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장악한 산악지역으로 가는 것이었다. 산악 지형에서 전투할 때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베게티우스의 글에서 알 수 있다. 전투 지형에 관해 베게티우스는 공격하거나방어하는 최적의 장소는 높은 곳이라고 했다. 고지는 배수와 통풍이 잘되는 이점이 있고, 무엇보다도 적의 돌, 화살, 창의 공격을 막기 쉬웠다. 아래에 있는 군대가 고지에 있는 적군을 맞추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고지는 공격에도 용이했다. 위에서 아래로 발사물을 던질 때 공격의 속도가 가속화되기 때문이다. 40) 갈리아의 게르고비아(Gergovia)나 유대의 마사다처럼 지형이 깊고가팔라서 접근이 어려운 고지에 요새를 구축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41) 6세기 비잔틴의 무명(Anonymous Byzantinus)의 전략가도 적지, 특히 산악 지대를 통과할 때 아군의 부대가인근의 고지를 점령해 놓기 전에는 행군을 시작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42)

고지를 점령하여 승리한 사례들은 무수히 많다. 가령 기원전 387년 알리아(Allia) 강에서 갈리아군과의 전투에서 로마군이 언덕을 선점하여 작전상 유리하다고 생각한 것, 기원전 310년 키미니아 숲(Silva Ciminia) 전투에서 로마군이 에트루리아군에 대한 수적인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거칠고 돌이 많은 언덕 지역을 차지한 것, 기원전 224년 텔라몬(Telamon) 전투에서 언덕을 선점하기 위해 로마군과 갈리아군 기병대가 격돌한 것, 기원전 211년 카푸아(Capua) 전투에서 로마군이 유리한 언덕 지역을 점령하여 다시 전투태세를 갖추는 것을 보자 한니발(Hannibal

<sup>40)</sup> Vegetius, Epitoma Rei Militaris 3.8.

<sup>41)</sup> Caesar, Bellum Gallicum 7.36; Josephus, Bellum Judaicum 7.276-280.

<sup>42)</sup> Vegetius, *Epitoma Rei Militaris* 3.6; Anonymous Byzantinus, *De Re Strategica* 2.2.245b.7 in M. Gichon, "Cestius Callus's Campaign in Judaea", 53 제임용.

Barca)이 카푸아를 포기한 것, 기원전 102년 아쿠아이 섹스티아이(Aquae Sextiae) 전투에서 로마군이 언덕을 선점, 아래의 게르만족을 공격하여 승리한 것, 기원전 58년 비브락테(Bibracte) 전투에서 카이사르가 언덕에서 내려오면서 공격하는 동시에 우익을 보강하면서 헬베티인(Helvetii)의 측면을 공격하여 승리한 것 등이 그 사례들이다. 43)

케스티우스가 전략서와 그 내용을 알지 못했고, 실제 전투 사 례는 오래전의 일이라서 몰랐다면 바로 직전에 벌어졌던 아사몬 (Asamon) 전투는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 전투는 케스 티우스가 세포우스(Sepphous)로 파견한 제12군단의 군단장 카 이세니우스(Caesennius Gallus)가 지휘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갈릴리의 요새라고 불<del>리는</del><sup>44)</sup> 아사몬 산으로 들어가 높은 곳을 점령하고 있었다. 고지의 유대인들은 로마군의 공격을 수월하게 막았을 뿐 아니라 노출된 로마군을 공격하기 쉬워 200명을 살상 했다. 이에 로마군은 산을 우회하여 유대인들보다 더 높은 곳을 점령하여 승리했다. 45) 전략서와 실제 전투 사례를 볼 때 로마군 은 고지를 점령해야 유대인과의 전투에서 승산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요세푸스도 인지하고 있는 바였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케스티우스는 군수품을 빼앗긴 후 그곳에 3일 동안 지 체했는데. 이때 유대인들이 고지대를 점령한 채 로마군의 움직 임을 감시하여 로마군은 섣불리 행동할 수 없었다.46) 이를 볼 때 케스티우스의 전략적 실책은 고지를 점령하지 않아 로마군의 움직임을 적에게 그대로 노출한 것이다.

<sup>43)</sup> Livius, Ad Urbe Condita 5.37–39, 9.36; Plutarchos, Camillus 18–31; Marius, 10–20; Polybius, Historiae 2.22–30; Caesar, Bellum Gallicum 1.23–26.

<sup>44)</sup> Josephus, Antiquitates Judaicae 18,27.

<sup>45)</sup> Josephus, Bellum Judaicum 2.510-512.

<sup>46)</sup> Josephus, Bellum Judaicum 2.522.

고지 점령과 관련하여 하나의 전략이 눈에 띈다. 272년 다프네(Daphne) 전투에서 로마군은 팔미라(Palmyra)의 군대와 싸워 승리했다. 이 전투에서 언덕 지역을 점거한 적군은 가파른경사로 인해 로마군이 접근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으나 로마군은 귀갑대형(testudo)으로 적의 화살과 돌을 피하면서 전진하여 승리했다. 47) 케스티우스 역시 이 전략을 인지하고 있었고,실제로 구사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벽 위에서 공격할 때로마군이 방패를 들어 귀갑대형으로 전진한 것이다. 다만 성벽돌파에는 사용했으나 고지 점령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을 뿐이다.

케스티우스와 마찬가지로 베스파시아누스도 고지를 점령하지 못했다. 67년 10월 가말라 전투에서 베스파시아누스는 좁고 가파른 지역에서 내려오는 유대인들에게 밀려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수많은 로마 군인이 살해되었고, 로마군의 사기는 저하되었다. 또 11월 사면이 암석으로 되어 오르기 힘든 타보르 산에서 유대인들이 고지를 점하고 있어서 로마군의 화살 공격은 통하지 않았다. 전투 후 베스파시아누스는 사기가 저하된 병사들에게 "적이고지에 있을 때 여러분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자제해야 한다. 여러분이 저지를 장악하고 있다면 그곳에서 물러나서 더 안전한 전투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저지에서 고지를 겨냥한부주의하고 경솔한 전투가 패인이었다는 것이다. 이를 볼 때 케스티우스와 베스파시아누스 모두 산악 지형과 고지 점령을 활용한 유대인들의 전술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런 유대인들을 상대로고지를 점령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규모 병력으로대형 전투를 펼치는 로마군으로서는 익숙한 지리적 환경을 선점

<sup>47)</sup> l. Syvänne, Aurelian and Probus: The Soldier Emperors Who Saved Rome, Barnsley: Pen & Sword Books Limited, 2020, 92–126.

하여 소규모의 게릴라 전술을 펴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승리하기 란 쉽지 않은 것이다.

유대인의 수십 배가 넘는 사망자를 발생시킨 가바오 전투에서 케스티우스는 대형 전개에 있어서 실책을 저지른 것은 아니었다. 그는 기동성 있는 기병들로 대형을 보호했다. 군수품을 후미에 두어 적에게 빼앗겼다는 비난 또한 케스티우스에게 적합하지 않다. 군수품 행렬은 일반적으로 대형 중앙에 두었으나 이는 전투력 저하와 기동력 저하를 불러온다. 급습의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는 군수품 행렬을 후미에 둘 수 있었다. 케스티우스의 패인은 대형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의 지형적 특징을 극복하지못했다는 데 있다. 산악 지형을 활용한 기습과 게릴라식 공격에 의존하는 유대인을 제압하지 못한 것이다. 케스티우스는 로마군의 일반적인 전략을 따랐으나 유대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면이 있다. 따라서 그의 군사적 능력에 대한 총체적인 비난은 전략 교본과 지역적 특수성이라는 점을 구분해서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4. 베스호론 전투 후 전략적 철수

요세푸스는 케스티우스가 예루살렘을 장악할 기회를 두 번이 나 놓쳤다고 했다. 한 번은 케스티우스가 예루살렘 상부 도시의 헤로데스 왕궁 앞에 진을 친 후 성벽 안으로 강제 진입하지 않 은 것이다. 만약 플로루스에게 매수된 지휘관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진격했더라면 예루살렘 전체를 장악하여 전쟁을 종결지었 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한 번의 기회는 6일 후 갑자기 공격을 중지하고 예루살렘에서 철수한 것이다. 케스티우스의 공격에 폭도들이 당황하여 도망갔고, 주민들이 성문을 열어주었다. 이때 케스티우스가 예루살렘 성문에서 조금만 더 오래 머무르면서 계속 공격했더라면 예루살렘을 금방 장악할 수 있었다는 것이 요세푸스의 주장이다. 케스티우스가 공격을 받은 것도 아닌데 희망을 접고 군대를 철수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것이다. 48) 그 이유에 대해 커랜(J. R. Curran)은 "케스티우스가 이상한 결정"을 한 것은 그가 예루살렘을 장악하려는 생각이 없었고, 당면한 재난을 피하는 데만 급급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케스티우스가 군사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하는 학자도 있다.49)

요세푸스 주장의 타당성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당시 케스티우스의 상황이 진격할 여건을 갖추었는지, 진격했다면 정말 승리할수 있었는지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베게티우스의 조언처럼50 유리한 상황이나 상당히 필요한 상황인데도 케스티우스가 진격을 하지 않았다면 그의 실책이지만 승리할 가능성이 없어서 진격하지 않았다면 그의 오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판단을 위해서는 진격하는 데 필요한 병력, 병참, 지형, 날씨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당시 케스티우스가 지휘하는 병력으로서 전체 군단이 온전히 있는 것은 제12군단뿐이었다. 이 군단은 62년 아르메니아에서 군사령관 파이투스(Lucius Caesannius Paetus)의 지휘하에 승리를 갈망하여 안전한 겨울 주둔지를 떠나 파르티아와 정면 대결했으나 패배한 전력이 있었다.51) 패배 후 군단은 손실된 병력

<sup>48)</sup> Josephus, Bellum Judaicum 2.527-532, 535-545.

<sup>49)</sup> J. R. Curran, "The Jewish War: Some Neglected Regional Factors", 75-91; J. J. Bloom, *The Jewish Revolts against Rome, A.D. 66-135*, 75.

<sup>50)</sup> Vegetius, Epitoma Rei Militaris 3,26.

이 보강되지 않았고, 전력도 저하된 상태에서 유대에 파견되었다. 가바오 전투에서 제12군단이 군기를 적에게 빼앗긴 사실만으로도 허약한 군단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기원전 53년 크라수스(Marcus Licinius Crassus)가 카라이(Carrhae) 전투에서대패하여 군기를 빼앗겼고,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빼앗긴 군기를 반환받은 것을 기념하는 부조를 새겼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52) 군기 상실은 그 군단의 치명적인 오점으로 남는다. 제12군단이그런 전력인 것이다. 케스티우스의 나머지 병력은 3개 군단에서 뽑은 분견대와 유대인들에게 적대적인 여러 도시에서 선발된 정식 군인이 아닌 지원자들이었다. 지원자들은 정식 군사 훈련을받지도 않았고, 전투보다는 약탈에 더 관심을 가진 자들이었다. 53) 이런 병력으로 예루살렘 성벽 안으로 강제 진입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54)

예루살렘 공격에 앞서 케스티우스의 군수품 상황과 병참선의 안전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군수품의 안정적인 공급의 중요성은 "식량 공급과 군수품을 준비하지 않은 자는 타격을 한 차례도 받지 않아도 정복된다."라는 베게티우스의 말에서 알 수 있다.55) 배후의 병참선을 확보하여 군수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공성전이 가능하다. 67년 베스파시아누스는 예루살렘을 즉각공격하지 않았다. 이유는 배후인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적대 세력이 존재한다면 로마군의 병참선을 단절시킬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북부에서 중요한 요새를 점령하는

<sup>51)</sup> Tacitus, Annales 15.10-11.

<sup>52)</sup> Suetonius, *Vespasianus* 4; Plutarchos, *Crassus* 17–33; P. Susan, "The Defeat of Crassus and the Just War," *Classical World* 96,4, 2003, 387–396.

<sup>53)</sup> Josephus, Bellum Judaicum 2.502-509.

<sup>54)</sup> A. Goldsworthy, *The Roman Army at War: 100 BC-AD 200*,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84-95.

<sup>55)</sup> Vegetius. Epitoma Rei Militaris 3.26.

데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이다.56)

요세푸스는 케스티우스가 어떻게 군수품을 확보하는가에 관해서 말하지 않았다. 케스티우스는 프톨레마이오스, 카이사레아, 요파를 장악했고, 카이사레아를 기점으로 세포리스, 안티파트리스, 가바오 등지로 이동했다. 그가 카이사레아에서 일부 병력을 요파에 파견하면서 육로와 해로를 동시에 이용했던 것으로 보아해안선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다. 이는 육로로 내륙 깊숙이 들어갔을 때 뒤쪽의 해안선이 확보된다면 해로로 안정적으로 군수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즉, 해안선을 병참선으로 간주했던 것 같다. 다만 병력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긴병참선은 오히려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체 병력을 너무 넓게 퍼뜨리지 말라."는 베게티우스의 말을 고려할 때 긴 병참선은 전략적으로 힘의 낭비 내지는 분산만 초래했던 것 같다. 따라서실제로 병참선 문제는 원활하게 해결되지 못했다.57)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가바오 전투에서 군수품과 공성 장비들을 상당히 빼앗겼기 때문에 군수품이 부족하고, 주변이 적대적인 유대 지역이므로 군수품 공급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로마군은 가바오에서 군수품을 빼앗기고 스코푸스 산에서 3일 동안 인근 마을로 가서 식량을 구했다. 식량을 구했어도 산악지역인 관계로 2만 명이 넘는 병력이 먹을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4일째 되는 날 로마군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왕궁 맞은편에 진을 칠 때부터 철수할 때까지 대략 2주 정도였다.58)

병사들이 2주 정도 버틸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양의 식량을

<sup>56)</sup> Josephus, Bellum Judaicum 3.29-58; J. Roth, The Logistics of the Roman Army at War: 264 B.C.-A.D. 235, Leiden: Brill, 1999, 286-297.

<sup>57)</sup> Vegetius, *Epitoma Rei Militaris* 3,26; Josephus, *Bellum Judaicum* 2,507–508.

<sup>58)</sup> B. Bar-Kochva, "Seron and Cestius Gallus at Beith Horon", 18.

가지고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병사 한 명당 가지고 다니는 식량 의 양은 정해진 것이 없었다. 키케로(Marcus Tullius Cicero) 는 '반 달 이상의 식량'59)을 가지고 다닌다고 했으나 이는 상당 히 부정확한 표현이다. 3-4세기의 기록에서 알렉산데르 (Alexander Severus) 황제가 전쟁 지역에 있는 동안 군인들은 적이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보통 가지고 다니던 17일분의 식 량을 반드시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허용했다."60)거나 "군인들이 전쟁터로 갈 때 17일분의 식량을 짊어지고 갔다."61) 는 표현이 있다. 하지만 로마군은 갑옷, 투구, 방패, 창으로 무 장을 하고, 톱, 바구니, 곡괭이, 갈고리, 쇠사슬같이 전쟁을 수 행하는 데 필요한 장비들을 가지고 가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양의 식량을 짊어지고 가기 어려웠다. 또 요세푸스가 당 시 로마 군인들이 '3일분의 식량'을 가지고 다녔다.62)고 정확히 표현하고 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앞에 진을 치고 있는 로마 군인들에게 3일 이상의 주둔은 군수품 부족 현상을 초래할 수 밖에 없었다.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장악하기 위한 공성전을 제대로 시도했다면 군수품 부족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었을 것이다. 군수품 부족은 적의 요새를 공격하는 측에도 치명적이다. 가령 356년 율리아누스(Flavius Claudius Julianus) 황제가 갈리아의 겨울주둔지에 있을 때 알레마니족(Alemmani)이 포위했다. 로마군은 전략가들의 권고처럼 포위전에 대비해 요새를 지을 때 물과 식량을 비축해 놓아서 식량 문제가 없었다. 63) 오히려 포위하는

<sup>59)</sup> Cicero, Tusculanae Disputationes 2.37.

<sup>60)</sup> Scriptores Historiae Augustae, Alexander Severus 47.1.

<sup>61)</sup> Ammianus, Res Gestae 17.9.2.

<sup>62)</sup> Josephus. Bellum Judaicum 3.95.

<sup>63)</sup> Vegetius. Epitoma Rei Militaris 4,7-10.

알레마니족이 주위에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부족하여 40일만에 포위를 풀고 떠났다. 64) 이 사례를 보면 도착했을 때 이미 식량 부족 문제를 안고 있었던 로마군은 군수품 부족으로 예루살렘 공성전을 시도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군인들이 버틸 수 있는 식량만큼이나 공성 장비들도 필요했다. 공성 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자재를구할 시간, 장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건설 공사를 할 시간도 있어야 했다. 공성전을 위해서는 아군 보호용 이동로(vineae)와 공성탑(turris)이 있어야 한다. 이동로는 화살, 돌, 불 등의 공격으로부터 아군을 보호하면서 적의 성벽 가까이 이동할 수 있는 장비이다. 공성탑은 내부에 사다리와 도개교를 통해 적의 성벽을 넘을 수 있는 장비이다.

리비우스(Titus Livius)와 암미아누스(Ammianus Marcellinus)는 공성전에 "비틀림 노포와 기계(tormenta machinaeque)"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기계에는 스코르피오(scorpio)나 발리스타(ballista) 같은 화살이나 돌을 발사하는 노포, 적의 성문을 파괴하는 파성퇴(arietes, krioi)도 포함된다. 65) 스코르피오는 기원전 50년경부터 사용된 가벼운 노포였다. 발리스타는 양팔을 비트는 원리를 이용하여 화살이나 돌을 발사하는 장비이다. 100년경 도입된 '수레에 싣고 가는 발리스타(carroballistra)'는 청동원통을 가진 것으로서 무게로 인해 4개의 바퀴 위에 싣고 다니는 무기이다. '수레에 싣고 가는 발리스타'는 한 군단에 55대,즉한 백인대마다 1대씩 있는 셈이었다. 66)

이러한 공성 장비들은 기술과 인력,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토목

<sup>64)</sup> Ammianus, Res Gestae 16.4.2.

<sup>65)</sup> Zosimus, *Historia Nova* 1.70, 2.23–26, 3.17–18; Ammianus, *Res Gestae* 20.11, 24.2; Livius, *Ab Urbe Condita* 6.9.2.

<sup>66)</sup> Vegetius, Epitoma Rei Militaris 2,25.

공사를 필요로 한다. 이 장비들을 성벽 가까이 끌어올려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성로(agger)를 건설해야 하기 때문이다. 67년 요타파타 전투에서 베스파시아누스는 4일 만에 공성로를 닦았으나 예루살렘 인근의 지형은 바위가 많고 단단한 지층이어서 공성로 건설에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카이사르가 아바리쿰(Avaricum) 전투를 위해 공성로를 건설하는 데 25일이나걸렸던 것처럼 지형에 따라 공성로 건설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수 있었다. 67) 공성전을 위한 작업을 할 수 있을 만큼예루살렘 주변이 우호적인 것도 아니었다. 로마군의 공격 소문을 듣고 유대군에 자원하는 유대인들이 점점 더 늘어났기 때문이다. 로마군은 병력이 보충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군의 수는 더증가한 것이다. 68) 따라서 적대적인 지역에서 공성전을 펼칠 수있는 병력도, 장비도, 시간도, 자재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예루살렘 공성전을 포기한 케스티우스의 판단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공격할 여건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철수한 것이 전략적으로 타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지형과 날씨를 살 펴볼 필요가 있다. 로마군이 있었던 상부 베스호론 지역은 산악 지형이었다. 동쪽은 절벽이고, 서쪽은 가파른 경사면을 가진 깊 은 골짜기여서 접근하기 어려웠다. 로마군은 지형적으로 익숙지 않아 공격의 장소를 찾기 어려웠던 반면 유대인들은 지형에 익 숙했고, 게릴라전에 능숙했다. 개방된 지형에서의 백병전에 익숙 했던 로마군은 경사면에서 보병과 기병 모두 고전하고 있었

<sup>67)</sup> Zosimus, *Historia Nova* 1,70, 2,23–26, 3,17–18; Livius, *Ab Urbe Condita* 6,9,2; Caesar, *Bellum Gallicum* 2,12, 7,25; Josephus, *Bellum Judaicum* 2,545, 3,7; P. Oleson, ed., *The Oxford handbook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in the classical worl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699–701.

<sup>68)</sup> Josephus, Bellum Judaicum 2.545.

다.<sup>69)</sup> 9년 바루스의 패배 후 로마군은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작전을 펼치는 것을 꺼렸다. 적의 게릴라식 공격을 당할 수 있었고, 매복에 걸릴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케스티우스의 입장에서는 지형이나 전략이 모두 로마군에게 유리하지 않은 것이었다.

날씨 또한 변수였다. 당시는 11월 하순으로 넘어가는 시점이었다. 이때는 춥고 비가 오는 겨울이 다가온 시점으로써 군인들이 이동하기도 어렵고, 전투 자체도 힘겨웠다. 날씨도 문제이지만들판에 곡식이 없어서 식량의 현지조달이 어렵다는 점도 겨울전쟁을 꺼리는 이유이다. 로마시에서 3월 1일에는 전쟁의 신인마르스 신을 모시는 사제들(Salii)의 개전 의식이 진행되었다. 10월 19일에는 전쟁을 종료하는 의식, 군인들이 마르스 신의 명예를 기리는 의식을 거행했다. 이를 볼 때 전쟁을 하는 계절, 즉전쟁 계절은 3월에서 10월까지로 들판에 식량이 있는 계절, 우기가 아닌 계절이었다. 70) 따라서 계절적으로 겨울 전쟁을 꺼리는 상황에서 케스티우스가 겨울 초입에 새로운 전투를 시도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식량을 구하기 어렵고, 군수품도 부족하고, 우기로 병사들의 건강을 답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전투를 시도하기보다는 철수하여 차후를 대비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익할 수 있었다. 가령 272년 팔미라와 싸웠던 이마이(Immae) 전투에서 로마군은 적군의 강력한 중장 기병들을 공격하지 않고 후퇴했다. 로마군을 추격한 적군이 뜨거운 태양과 전투 장비의 무게로 지쳐말이든, 사람이든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 때로마군의 기병이 공격하여 승기를 잡았다.71) 이처럼 전략적 후

<sup>69)</sup> Josephus, Bellum Judaicum 2.546-550, 3.16.

<sup>70)</sup> H. H. Scullard, Festivals and Ceremonies of the Roman Republic, Itach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1, 190–198.

<sup>71)</sup> Zosimus. Historia Nova 1.50.

퇴는 더 큰 피해를 막아줄 뿐 아니라 승리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었다. 병참, 지리, 지형, 기후 등 총체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시도하는 무리한 전투는 오히려 군대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 무모한 도전보다는 전략적 철수가 더나을 수 있었다.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한 합당한 철수였다고 해도 철수에 대 한 요세푸스의 어조는 사뭇 비판적이었다. 그가 말하는 케스티 우스의 철수는 비겁한 지휘관의 모습이었다. 그가 일부 병력을 죽음으로 내몰면서 자신은 몰래 달아난 것이다. 그는 예루살렘 앞에서 이틀 머무른 후 3일째 되는 날 유대인들이 더 늘어나는 것을 보자 상부 베스호론으로 이동했다. 그는 신속한 철수를 위해 군수품 수송용 동물들을 모두 죽였다. 상부 베스호론에서 유대인의 공격을 받아 고전한 후 밤에 겨우 하부 베스호론으로 탈출했다. 72) 이때 그는 공개적인 철수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용 맹한 병사 400명을 성벽 위에 세워놓고, 나머지 병력을 밤에 이동시켰다. 날이 밝은 후 로마군은 유대인의 추격에 잡히지 않기 위해 공성 장비를 비롯한 여러 무기를 버리고 달아났다. 유대인의 피해는 미미했으나 로마군은 보병 5.300명. 기병 480명을 잃었다. 중요한 전투 장비들을 내버리고, 용감한 병사 400명을 희생시킨 대가로 케스티우스는 목숨을 건졌다. 요세푸 스에 따르면, 케스티우스는 전투 패배의 책임을 플로루스에게 떠넘기려고도 했다. 73)

케스티우스의 야간 철수가 전략적으로 타당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베게티우스의 글을 참조할 수 있다.

<sup>72)</sup> B. Bar-Kochva, "Seron and Cestius Gallus at Beith Horon", 20-21.

<sup>73)</sup> Josephus, Bellum Judaicum 2,546-555.

적이 당신의 퇴각과 공격을 즉시 알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많은 장군이 보병들 앞에 기병을 배치한다. 이는 보병이 퇴각하는 것을 적이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정찰한 길을 따라 야간에 퇴각해야 할 것이다. 새벽에 적이 퇴각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앞서간 적을 추격할 수 없을 것이다. <sup>74</sup>

베게티우스도 퇴각 전략으로 일부 병력을 세워놓고 야간에 철수할 것을 권고했다. 전략적인 측면에서 적의 공격을 받은 후 게릴라식의 신속한 철수가 오히려 나머지 병력 대다수를 구하고, 차후를 기약할 수 있는 유익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75) 이후베스파시아누스가 투입되어 작전을 구사할 수 있었던 것도 케스티우스의 전략적 철수로 보호된 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일이었다.

요세푸스는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않은 케스티우스의 우유부단 함과 무능을 주장했으나 전략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의 행동은 타당성이 있었다. 제대로 된 병력, 군수품, 공성 장비가 없는 상태에서, 공격할 지형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루살렘 공격은 무리였다. 또 겨울 초입의 춥고 비가 오는 날씨에 공성전을 시작하기는 어려웠다. 케스티우스가 일부 병력을 세워둔 상태에서 나머지 병력을 이끌고 야간에 철수한 것 또한 전략적으로 유익한 조치였다. 승리에 대한 과욕으로 무리한 공격을 하지 않고 병력 대부분을 구한 케스티우스의 판단은 차후 유대 정복의기초가 되었다

<sup>74)</sup> Vegetius. Epitoma Rei Militaris 3,22.

<sup>75)</sup> M. Gichon, "Cestius Gallus's Campaign in Judaea", 60.

## 5. 맺음말

유대 전쟁을 기술했던 요세푸스는 66년 로마군 패배의 원인을 케스티우스의 전략적 판단 착오에서 찾았다. 케스티우스가 조기에 로마군을 투입했더라면 유대 전쟁이 장기화되지 않았다는 것이 요세푸스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원군 파견 전에 상황 파악과대책 마련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한 후에 군대를 모집한 케스티우스의 판단은 타당했다고 볼수 있다. 케스티우스가 원군 파견을 결정한 후 유대 지역으로 군대가 진군하기까지 4개월이 걸렸다. 전쟁이 발발하고 군대를 모집, 이동하는 데 걸리는 평균 기간과 비교할 때 케스티우스의 군대 모집과 이동은 신속하게 진행된 편이었다.

가바오 전투의 패배 원인에 대해 요세푸스는 케스티우스의 대형 전략의 실책을 주장했다. 하지만 케스티우스는 대형의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기병을 활용했고, 군수품 행렬을 호송 부대와 함께 후미에 두어 여타 병력의 기동성과 안전성을 높였다. 대형 전략이 적절했음에도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은 유대인들의 지형 활용 전략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조직적이고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는 로마군과 달리 유대인들은 경무장한 비조직적인 부대였다. 로마군은 개방지에서 유리했고, 유대인들은 산악지역에서 유리했다. 로마군은 산악지역에서 게릴라식 공격에 의존하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그들을 개방지로 끌어내야 했다. 그것이 어려울 때는 산악지역의 고지를 선점해야 했다. 케스티우스는 유대인들을 개방지로 끌어내지 못했고, 고지를 선점하지 못했다. 고지로 전진하기 위해 귀갑대형 전술을 사용하기는 했으나 확대 적용하지 못했다. 그의 패인은 산악지역의 게릴라전이라는 유대의

지역적 특수성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베스호론 전투 후 철수한 것에 대해 요세푸스는 예루살렘을 장악할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케스티우스가 보유한 정규 군단은 군기를 빼앗긴 허약한 1개 군단뿐이었다. 군수품도 부족했고, 배후의 병참선도 안전하지 못했다. 또 예루살렘에 대한 공성전을 펼치는 데 필요한 공성 장비도, 공성 시설을 구축할 자재도 부족했다. 좁고 가파른 지형 또한 공성전을 하기에 부적합했다. 춥고 비가 오는 겨울 초입이라 전투를 시작하기에는 날씨도 부적합했다. 예루살렘을 공략하기에는 병력, 군수품, 무장 상태, 지형, 날씨 등 모든 여건이 부적합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무리한 도전보다 전략적 철수가 더 나을 수 있었다. 케스티우스가 예루살렘 공략을 포기하고, 병력 대부분을 야밤에 철수시킨 것은 유익한 판단이었다. 그의 철수로 인해 로마군은 전멸을 피할 수 있었다. 그 경험으로 인해 향후 유대인들의 전략에 대응할 수 있었다.

유대 전쟁에서 지휘권을 행사한 케스티우스, 베스파시아누스, 티투스, 실바 중에서 그 군사적 역할이 과소평가된 사람은 케스티우스라고 생각한다. 베스파시아누스의 요타파타 점령, 티투스의 예루살렘 점령, 실바의 마사다 점령과 비교하여 케스티우스는 영토를 점령하지 못했고, 전투에서 패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신중한 판단과 전략적 철수는 이후 지휘관들이 유대를 장악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했다. 병력 수급, 병참선 확보, 공성장비 구축 등은 로마군에게 중요시되었다. 또 유대의 게릴라 전술과 산악 지형을 활용한 전술은 로마군의 전략 수립에 참고 사항이 되었다. 유대 전쟁에서 케스티우스는 전쟁 장기화의 원인이아니라 승리의 발판이 된 것이다.

### 66년 케스티우스 갈루스(Cestius Gallus)의 전략 분석 | **123**

(원고투고일: 2020, 9, 16, 심사수정일: 2020, 11, 5, 게재확정일: 2020, 12, 2,)

주제어 : 유대 전쟁, 대형 전략, 병참, 산악 지형, 전략적 철수



### 〈참고문헌〉

1. 1차 사료
Ammianus, Res Gestae.
Caesar, Bellum Gallicum.
Josephus, Antiquitates Judaicae.
, Vita.
, Bellum Judaicum.
Livius, Ab Urbe Condita.
Polybius, Historiae.
Sallustius, Bellum Jugurthinum.
Tacitus, Annales.
, Historiae.
Vegetius, <i>Epitoma Rei Militaris</i> .
Zosimus, Historia Nova.

#### 2. 2차 사료

- Bar-Kochva, B., "Seron and Cestius Gallus at Beith Horon", Palestine Exploration Quarterly 108, 1976, 13-21.
- Bilde, p., "The Causes of the Jewish War according to Josephus", Journal for the Study of Judaism in the Persian, Hellenistic, and Roman Period 10.2, 1979, 179–202.
- Bloom, J. J., The Jewish Revolts against Rome, A.D. 66–135, Jefferson: McFarland & Company, 2010.
- Curran, J. R., "The Jewish War: Some Neglected Regional Factors", Classical World 101, 2007, 75-91.
- Gichon, M. "Cestius Gallus's Campaign in Judaea", Palestine Exploration Quarterly 113, 1981, 39-62.
- Goldsworthy, A., The Roman Army at War: 100 BC-AD 200,

-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 Jones, B. W., "Titus in Judaea, A.D.67", *Latomus* 48, 1989, 127–134.
- Mattern, S. p., Rome and the Enemy: Imperial Strategy in the Principat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2.
- Millar, F., The Roman Near East, 31 B.C.-A.D. 337,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3.
- Oleson, p., ed., *The Oxford handbook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in the classical worl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 Paltiel, E., "War in Judaea: After Herod's death", Revue belge de Philologie et d'Histoire 59, 1981, 107–136.
- Paul, G. M., "The Presentation of Titus in the Jewish War of Josephus: Two Aspects", *Phoenix* 47, 1993, 56–66.
- Price, J. J., Jerusalem under Siege, Leiden: E. J. Brill, 1992.
- Rajak, T., Josephus: The Historian and His Society, London, 1983.
- Roth, J., The Logistics of the Roman Army at War: 264 B.C.-A.D. 235, Leiden: Brill, 1999.
- Scullard, H. H., Festivals and Ceremonies of the Roman Republic, Itach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1.
- Sheppard, Si., *The Jewish Revolt AD 66-74*, Oxford: Osprey Publishing, 2013.
- Susan, p., "The Defeat of Crassus and the Just War," Classical World 96.4, 2003, 387–396.
- Syvänne, I., Aurelian and Probus: The Soldier Emperors Who Saved Rome, Barnsley: Pen & Sword Books Limited, 2020.

(Abstract)

# Analysis for the strategy of Cestius Gallus in the year of AD 66

Bae, Eun-suk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military capabilities of Cestius Gallus who led the Jewish War in 66. Josephus found the cause for the defeat of the Romans in Cestius' strategic error and military incompetence. But I think that the judgment of Cestius, who retreated troops after giving them accurate recognition of the situation, was reasonable. The Roman cavalry was used to protect the flanks of the military formation, and a convoy of military supplies was placed in the rear of the convoy to increase the mobility and safety of other troops. The defeat of Cestius was due to the lack of consideration for the terrain features of the ties of guerrilla warfare in mountainous areas.

In response to the withdrawal after the battle of Beth Horon, Josephus claimed that he had missed the chance to take control of Jerusalem. All conditions, such as troop, munitions, armed conditions, topography, and weather, were inappropriate for attacking Jerusalem. In this situation, a strategic withdrawal could have been better than an unreasonable challenge. It was a good judgment that Cestius to give up his attack on Jerusalem and withdraw most of his troops overnight.

Of the Cestius, Vespasianus, Titus and Silva who exercised command in the Jewish War, it is Cestius whose military role has been underestimated, Cestius' careful judgment and strategic withdrawal provided a foundation for subsequent commanders to take control of Judaea. The supply and demand of troops, the securing of supply lines, and the establishment of siege equipment became important to the Roman army. In addition, the guerrilla tactics of the Judaea and the tactics of utilizing the mountainous terrain

### 66년 케스티우스 갈루스(Cestius Gallus)의 전략 분석 | **127**

became a reference to the Roman army's strategy. In the Jewish War, Cestius was not the cause of the prolonged war, but the foundation for victory.

Keywords: Jewish War, Military Formation Strategy, Logistics, Mountainous Terrain, Strategic Withdrawal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0, No. 117, pp. 129-172 https://doi.org/10.29212/mh.2020..117.129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일본 학계의 唐代 軍制史 研究 動因과 논점

이기처\*

- 1. 머리말
- 2. 府兵制, 藩鎭 연구의 개척과 논점
- 3. 戰後 군제사 논쟁의 계보
- 4. 戰後世代의 군제사 연구의 특징
- 5. 맺음말

# 1. 머리말

"국가의 중대한 일은 제사와 전쟁에 있다(國之大事, 在祀與戎)." 전근대 군주 권력의 성격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左傳』成公 13年 條의 명구다. 제사(祀)가 정권의 정통성을 드러내는 의례적 행위

<sup>\*</sup> 서강대학교 사학과 강사

를 총칭한다면, 전쟁(戎)은 군주 권력의 근간인 군제의 운영 및 군사권의 장악 등 일체의 군사 행위를 의미한다. 정권의 창출과 유지를 위해 왕조는 당시 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망라하여, 군 사제도를 편성·운영했다. 그러나 단순히 병력 규모만 집착하여 齊民의 재생산과 수취체제를 무시하고 병력·물자 동원을 강행한 다면, 煬帝의 고구려 침략 실패와 隋의 멸망처럼 왕조의 몰락을 초래하기도 했다. 그리고 군제의 운영권이 군주, 권신, 지방 호족 등 누구에게 있었는가의 문제는 지배체제의 성격을 가늠하는 척 도이기도 했다. 아울러 어떠한 부류의 사람에게 어떠한 형태로 兵 役을 부담시켰는가를 규명하는 작업은 사회구성의 해명에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軍制史 研究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軍制史 研究에서 唐代는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중국의 正 史에서 「兵志」가 처음 출현한 것은 『新唐書』였고, 唐代 편찬된 典章類 사서인 『通典』에서도 「兵典」이 독립되었다. 唐은 魏晉南 北朝 3백여 년의 분열시대를 종식하였고, 7세기에는 동부 유라시아에 제국을 건설했던 왕조이다. 영토 확장의 배경 중 하나는 당왕조가 효과적으로 병력을 동원하고 군사권을 집중할 수 있던 군사제도의 편성과 운영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高麗와 朝鮮에서 "府兵" 혹은 "府衛之兵"으로 호칭되던 軍人의 존재는, 唐의 府兵制가한국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일본 학계는 근대적 역사 연구방법이 일찍부터 정착되었다. 반면 중국과 한국은 근대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역사학이 체계적으로 발전하기 어려웠다. 唐代 軍制史 연구로 한정하자면, 일본에서는 1930년 濱口重國의 唐代 府兵制에 대한 선구적인 전문연구가 출간된 이래로 다수의 학자들이 다양한 주제에 천착하며 계통적인 연구성과를 축적했다.1)

<sup>1)</sup> 이에 반해 중국 학계에서는 1930년대 후반 陳寅恪, 杜洽의 연구(陳寅恪, 「府兵制前

근대 일본의 사학자 內藤湖南(1866-1934)은 唐 中期까지를 中世(中古), 宋 이후를 近世로 시대구분하며, 그 배경에 대해 "唐의 붕괴는 곧 귀족정치가 붕괴한 것이며, 이것은 군대의 제도에서 초래되었다"고 밝혔다.<sup>2)</sup> 그의 지적은 일본의 동양사학계에 시대구분논쟁<sup>3)</sup>과 함께 군제사 연구<sup>4)</sup>에 대한 큰 자극을 주어, 일본에서 唐代 軍制史에 대한 활발하고 다양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특히 중국사를 세계사적 보편법칙에 따라 이해하려는 戰後 일본의 연구경향과 자국의 고대사와 비교 연구하는 과정에서 서양의 기사계급, 일본의 무사계급이 중국의 중세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期史料試釋」、『(國立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刊』7-3, 1936; 杜洽,「唐代府兵考」、『史學年報』3-1, 1939)가 발표되었지만, 후속 연구로 계승되지 않았고 연구자의 확산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1950년대 후반을 즈음하여 唐代 軍制史에 대한 專論(唐長孺,『唐書兵志箋正』、北京: 科學出版社, 1957; 岑仲勉,『府兵制度研究』、上海人民出版社, 1957; 谷霽光,『府兵制度考釋』、上海人民出版社, 1962)이 출간되었지만, 중국 학계의 唐代 軍制史 연구는 개혁개방 이후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한국 학계에서는 1970년대 金善昱의 기초적 연구, 1990년대 金羨珉의 연구에 그치고 있다(金善昱,「唐代 折衝府에 관한 연구」、『충남대논문집』10, 1971; 金善昱,「唐代之府兵制」、『湖西史學』4, 1976; 金羨珉、「唐代府兵役의 性格에 관하여」、『魏晉南北朝史研究』2, 1996; 金羨珉、「唐 開元・天寶期 서북지역의 兵役諸道 변화」、『歷史學報』151, 1996。)

<sup>2)</sup> 內藤虎次郎,『支那近世史』, 神田喜一郎內藤乾吉 共編,『內藤湖南全集』10, 東京: 筑摩書房, 1969, p. 362(原刊:『中國近世史』, 東京: 弘文堂, 1947.)

<sup>3)</sup> 内藤湖南이 日本의 中國史學界에서 점하고 있는 위상에 대해서는 内藤湖南研究會, 『内藤湖南の世界一アジア再生の思想』, 名古屋: 河合文化教育研究所, 2001; 小松浩平, 「内藤湖南における東アジア觀の再檢討」, 『教育論叢』 55, 2012; 楊棟梁, 「在學識與良知之間——國策學者内藤湖南的'支那論'」, 『史學月刊』 2014-7 참조. 内藤湖南에 의해 촉발된 중국사의 시대구분논쟁에 대해서는 閔斗基 編, 『中國史時代區分論』, 서울: 創作과 批評社, 1984 참조.

<sup>4)</sup> 군제사와 관련된 시대구분 논쟁은 魏晉南北朝의 豪族이 거느리던 사병, 즉 部曲을 奴隷나 隷民으로 이해하여 그 관계를 봉건적중세적 주종관계가 아닌 고대적 노예관계로 이해한 입장(加藤繁,「支那と武士階級」,『史學雜誌』50-1, 1939)과 근세와 구별되는 중세의 특징으로 國民 皆兵主義를 제시한 입장(宮崎市定,『東洋における素朴主義と文明主義の社會』,東京: 富山房, 1940)이 대립하며 전개되기시작했다.

일본 학계의 중국 중세사 연구를 정리한 작업이 없지는 않지만,5) 唐代 軍制史를 관통하는 논점이나 논쟁들 사이의 계통성을 해명하는 데에는 소홀했다. 기초적인 연구를 완성했던 일본의 사학자들은 직·간접적으로 일본의 군국주의와 2차 대전을 경험했으며, 戰後세대가 학계의 중진이 되었던 1980년대 이전까지는 활발한 논쟁이 전개되었던 특징이 주목된다. 本稿에서는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일본학계의 독특한 경향성, 즉 전쟁을 경험했던 일본의 학자들이 唐代軍制史를 연구하게 된 動因과 활발한 논쟁을 통해 형성된 學風을 검토하고자 한다.

# 2. 府兵制, 藩鎭 연구의 개척과 논점

濱口重國(1901-1981)은 唐代 軍制史 연구를 1930년대부터 본 격적으로 개척한다. 그는 1930년 『史學雜誌』 41卷 11號와 12號에 「府兵制度より新兵制へ」를 연속으로 게재하여, 唐初 府兵制의시행부터 唐 中期 부병제의 이완과 이를 대체하는 團結兵, 長征健兒, 礦騎 등 새로운 軍制의 출현을 검토했다.6) 東京帝國大學文學士 學位論文이기도 한 이 논문은 "(그의) 고전적 노작은 지금도 전거할 만한"7) 연구라는 평가를 받으며, 당대 군제사, 특히

<sup>5)</sup> 氣質澤保規,「前期府兵制研究序説―その成果と論點をめぐって一」,『法制史研究』42, 1993; 候旭東,「八十年代以來魏晉南北朝軍事制度史研究槪述」,『中國史研究動態』1994-1; 小尾孟夫,「六朝時代における軍制史研究の現狀と課題」,『六朝都督制研究』, 廣島: 溪水社, 2001.

<sup>6)</sup> 濱口重國,「府兵制度より新兵制へ」,『秦漢隋唐史の研究』上,東京大學出版會,1966 (原載:『史學雜誌』41-11·12,1930); 이하 濱口重國의 여러 논문은 상기한 연구서 에서 인용.

<sup>7)</sup> 菊池英夫,「府兵制度の展開」,『岩波講座 世界歴史』5, 東京: 岩波書店, 1970, p. 423. 注(1). 이하 본문에서 재차 인용하는 연구논저는 저자명, 논저명, 쪽수로 약칭함.

부병제 연구의 기반이 되어왔음은 중국 학계에서도 인정되고 있다.<sup>8)</sup>

濱口의 唐代 府兵制 연구의 요지는 ① 중앙집권적 군제. ② 兵農一致. ③ 折衝府의 偏在로 인한 兵役의 불평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당대 부병제는 都督府總管府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수 립되었다. 魏晉南北朝 사병이 횡행하고 지방의 군사조직이 산재 했던 문제를 극복하고. 중앙의 兵部에서 일괄적으로 조직 관리 하는 중앙집권화된 군제가 바로 당대 부병제의 특징이다.9) 병력 동원은 折衝府가 설치된 지역의 농민, 즉 均田制에 의해 受田한 백성 중 壯丁이 충분한 戸에서 건강한 자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揀點함으로써 '府兵'으로 징병했다. 부병은 衛士로서 1-2개월간 교대로 수도를 경비하는 番上. 防人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지니 는 기간 중 1회에 한해 3년간 변경에 鎭戍. 衛士나 防人이 아닌 府兵은 집에서 生産에 종사하며 農閑期에는 훈련을 받는 등 중 앙·지방·변경과 관련된 3종의 兵役을 부담했다. 절충부의 총 수에 대해서는 사료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10) 濱口는 절충부의 폐지와 증치가 거듭되었기에 그 是非보다 전체 절충부의 약 65%가 長安과 洛陽에 집중되었던 분포상황에 주목하여. 이러한 절충부의 偏置가 부병제의 붕괴 요인이었다고 논증했다.

그렇다면 濱口重國은 어떠한 배경에서 昭和 초기까지 미개척 분야였던 唐代 軍制史에 천착하게 된 것일까? 濱口重國이 "漢~ 唐을 중심으로 중국사 연구의 기초적 연구에 많은 업적을 남겼 지만, 그의 생애는 정말로 20세기의 개막과 함께 生을 누렸으

<sup>8)</sup> 張國剛,「唐代府兵制的演變與中古社會變遷」,『中國社會科學』2006-4, p. 178.

<sup>9)</sup> 濱口重國,「府兵制度より新兵制へ」, p. 6.

<sup>10) 574</sup>府(『通典』、『樊川文集』), 594府(『唐六典』), 630府(『鄴侯家傳』), 633府(『唐會要』 卷72), 634府(『唐會要』 卷70)로 각 사료별 기록이 상이하다. 한편, 折衝府의 總數 問題는 20여 년 후 府兵制의 사료적 신빙성 논쟁으로 이어진다(菊池英夫,「唐代府兵制度に關する一疑問」、『史淵』 58, 1953.)

며, 明治·大正·昭和의 영광과 그림자를"경험한 인물로 평가되는 만큼<sup>11)</sup> 그가 살아왔던 시대의 분위기에 주목하여 그 해답을 찾아보자.

1901년(明治 34) 高知縣에서 태어난 濱口重國은 양친이 모두士族 출신이었고 濱口氏 가문은 대대로 상선업을 가업으로 삼아비교적 윤택한 유년시절을 보냈다. 부친 濱口重政은 고위 경찰관료였으며, 重國의 이복형 重猛은 상선학교를 졸업하고 유럽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었다. 아버지의 직업과 가업은 어린 濱口重國에게도 영향을 주어 유년시절 그는 조선학을 지망하기도 했으며, 아버지의 잦은 전출로 인해 金澤, 廣島 등으로 수차례 이주했다. 항구도시 거주는 그에게 독특한 기억을 남겼는데, 그의 유품인 육성녹음 테잎에 따르면 대여섯 살에 불과했던 러일전쟁당시 宇品港에서 벌어진 승리의 제등 행렬이 인상적이었다고 술회했다. 12) 이러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濱口重國은 동년배보다 전쟁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이 앞설 수 있었다.

잦은 전학도 그의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廣島에서 小學校에 입학하여 岡山, 福山, 福岡 등을 거쳐 長野縣에서졸업했다. 당시 정주민의 이동이 흔치 않았기에, 濱口重國은 전학생으로서 심한 따돌림을 받았다. 중학시절 그는 안과 질환으로 인해, 지망했던 조선공학의 꿈을 포기하여 第三高等學校(이하 三高로 약칭) 이과를 중퇴하고 다음해 문과로 재입학했다. 당시 永平寺에서 參禪을 경험하게 된 것이 불교와 동양문화에 대한 관심을 심화시켰다. 그는 禪宗의 목적은 선악의 문제가 아닌 중생의 고통에서 비롯된 是非의 문제라 언급할 정도로 인간중심의 사고를 강조했다고 한다. [13] 이와 같은 성장기 경험은

<sup>11)</sup> 菊池英夫,「濱口重國(1901~1981)」,今谷明 等 編,『20世紀の歴史家たち』2,東京: 刀水書房,1999,p. 227.

<sup>12)</sup> 菊池英夫,「濱口重國(1901~1981)」, p. 228.

훗날 군제사 연구에서 인간의 고통에 대한 깊은 성찰로 이어졌 다고 할 수 있다.

三高에서는 불교청년회를 조직해 강연회를 개최하는 것이 유행했는데, 인근 京都帝大의 桑原隲三, 狩野直喜 등 교수를 초빙하여 강연회를 열었다. 강연자로 초빙된 교수 중에「天平文化と唐文化との關係」를 논한 內藤湖南, 唐代 社會史를 전공한 那波利貞이 포함되었다. 濱口重國이 훗날 唐代를 전공하게 된 것도두 사람의 영향에서 비롯되었다.<sup>14)</sup> 이후 京都에서 靜岡으로 이사한 濱口重國은 1926년 東京帝國大學 文學部 東洋史學科에 입학하여<sup>15)</sup>, 藤田豊八, 池內宏, 加藤繁 등에게 사사했다.

그가 대학에 입학한 1920년대 중국에서는 중국공산당이 창당했고, 제1차 국공합작 하에 노동운동이 고양되었다. 한편, 북중국에서는 張作霖 폭살사건(1928), 만주사변(1931) 등 일본과 중국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일본의 소장 학자들은 '中國社會性格論爭', '中國社會史論戰', '아시아적 生産樣式論爭' 등을 전개했다. <sup>16)</sup> 그러나 濱口重國은 자신은 "매우 억센 가정교육을 받았고 동양적 정신 혹은 불교에 마음이끌렸기에", 갑작스럽게 마르크스 이론에 동조하는 것에 "일종의반발하는 느낌"이 들었다며 유물사관과 거리를 두었다고 한다. <sup>17)</sup>

<sup>13)</sup> 鈴木一郎,「(回想)濱口重國先生」,『東北學院大學論集』(歷史學地理學) 38(史學科創立40周年記念特輯號), 2005, p. 53.

<sup>14)</sup> 菊池英夫,「濱口重國(1901~1981)」, p. 229.

<sup>15)</sup> 東京帝大에 입학하게 된 동기는 ① 당시 濱口重國의 病患(장티푸스와 근막염), ② 본가와의 거리, ③ 아버지의 방침("男子는 젊었을 때 帝都 東京의 생활을 경험해야 한다") 등이 있다(菊池英夫,「濱口重國(1901~1981)」, p. 229.)

<sup>16) 1920</sup>년대 일본에서 마르크스주의 전파의 요람은 노동자 단체보다 대학이었다. 1924년 결성된 學生社會科學聯盟은 53개 대학, 600명 이상의 회원이 참여했는데 그 목적은 지식인·학생 사회 내의 프롤레타리아 의식의 고양과 PT운동의 공헌이었다(한상일, 『日本 軍國主義의 形成過程』, 서울: 한길사, 1982, p. 96.)

<sup>17)</sup> 菊池英夫,「濱口重國(1901~1981)」, p. 229.

대신 池内宏, 藤田豊八의 사료비판과 세밀한 고증법에 매료되어, 唐代 制度史에 흥미를 품고 1929년 3월 졸업논문으로「府兵制度 から新兵制へ」를 제출했고, 이것이 軍制史 研究의 출발점이 되 었던 것이다.

잦은 이주로 인한 따돌림, 지속적인 질환, 전쟁에 대한 간접 경험과 군국주의로 점철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濱口重國이 군제사 연구를 통해 규명하고자 했던 논점은 무엇이었을까? 그가부병제에 대한 前近代 다양한 議論을 재검토하며, 부병제의 역사적 의의를 평가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王夫之는 부병제가 군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지 여부("任爲兵與否也")도문지 않고 전문 군인이 아닌 農民을 징병한 軍制로서, 사실상군대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으며("猶之乎無兵也") 당 중기 이후혼란을 막아내지도 못하고 스스로 약해지는 원인("欲弱天下以自弱")이 되었다고 혹평한 바 있다. 18) 이에 대해 濱口는 역사적 사실은 당시의 맥락에서 읽어내야 한다는 관점에서, 당대 사료에기반하여 부병제는 민첩한 군사대응이 가능했던 군제라고 평가했다. 즉, 明代는 徵兵制가 소멸되고 募兵制가 시행되던 시기였기에, 王夫之가 징병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19)

반면 兵農一致를 근거로 부병제를 이상적인 군제로 평가한 前近代 議論도 적지 않았다. 대표적인 사례로 宋代 陳傅良은 唐代府兵制를 농민으로서 병사는 (군사활동으로 인해) 生業을 잃지않고, 장수는 병권을 장악하지 못하므로("故士不失業, 而將帥無握兵之重"), 부병제는 禍亂의 싹을 막을 수 있는("絕禍亂之萌也") 이상적인 군제로 평가한 바 있다. 20) 濱口重國은 중국 고중세 군

<sup>18) 『</sup>讀通鑑論』(臺北: 河洛圖書出版社, 1976) 卷20 「太宗」4, pp. 701-702.

<sup>19)</sup> 濱口重國,「府兵制度より新兵制へ」, pp. 31-32.

<sup>20) 『</sup>歴代兵制』(北京:中華書局, 1985) 卷6「唐」, pp. 38-39.

제를 통사적으로 분석하며 唐代 府兵制의 역사적 의의를 兵農一致에서 모색했다.<sup>21)</sup> 그 요지는 "분산된 병권을 중앙으로 회수하고, 게다가 그 회수된 병권을 兵農—致의 정신하에 구성하게 한 것이 다름 아니라 西魏의 新兵制이며, 그것이 제도적으로 완성된 모습은 唐의 府兵制度였다"는 것이다.<sup>22)</sup> 즉, 부병은 사병이 횡행하던 시대를 종식시키고 일국의 병권을 중앙으로 회수하는 동시에, 생계수단이 보장된 受田民을 대상으로 각 지방에서 징병하는 제도로서, 당제국을 지탱하는 군사력의 원천이라는 평가이다.

濱口重國의 研究動因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당시 일본의 군사제도의 전개과정이다. 특히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을 서술한 대목에서 "兵役은 국민의 중대한 부담"이라는 문제의식을 밝히고 있으며,23) 의식적으로 일본의 군제와 당대 부병제를 비교했다. 그는 唐代 府兵은 국민 개병의 성격을 지녔다고 보았다.24) 揀點率에 대해서는 西魏·北周·唐 모두 3丁마다 1丁의 비율로 간점했으며, 이는 日本 軍團制의 간점비율과 동일하다고 밝혔다.25) 中日간의 간점률의 비교는 唐令의 소실을 구실로 일본의 고대 율령을 통해 推斷하는 증명방식을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 濱口 스스로 일본의 고대 군제(軍團制)와 唐의 府兵制 사이에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養老令과 大寶令을 통해 散佚된 唐令을 보충하는 형식의 傍證法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26

<sup>21)</sup> 濱口重國,「前漢の南北軍に就いて」, pp. 252-253; 濱口重國,「魏晉南朝の兵戸制度の研究」, pp. 358-361; 濱口重國,「西魏の二十四軍と儀同府」, pp. 212-213; 濱口重國,「府兵制度より新兵制へ」, pp. 24・31-36・45-46.

<sup>22)</sup> 濱口重國,「府兵制度より新兵制へ」, p. 33.

<sup>23)</sup> 濱口重國,「はしがき」,『秦漢隋唐史の研究』上, p. 1.

<sup>24)</sup> 濱口重國,「府兵制度より新兵制へ」, pp. 16-18.

<sup>25)</sup> 濱口重國,「西魏の二十四軍と儀同府」, pp. 206-207; 濱口重國,「府兵制度より新兵制へ」, pp. 24・36-37.

<sup>26)</sup> 濱口重國,「府兵制度より新兵制へ」, p. 37.

「我國の軍防令に就いて」라는 附設을 1章의 말미에 첨부하여 일본의 軍團制가 ① 군단이 인구에 비례하여 均置되었고, ② 番上과 邊境守備을 담당하는 해에는 課役이 면제되었으며, ③ 在役期間은 1-2개월이 아닌 1년 1회로 고정되었다는 점을 들어 당대부병제와 차이가 있음을 제시했다. 그러므로 中・日 군제의 비교 분석은 양자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비교하려는 濱口의 의식적인 노력의 결과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 징병제에 대한 濱口의 관심은, 昭和 2년(1927)에 '일본의 전체 남성에게 병역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兵役法이 선포된 일본의 현실과 무관하지 않았던 것이다. 27)

한편, 1940년대 日野開三郎(1908-1989)이 『支那中世の軍閥』을 출판하면서, 공백으로 남아있던 唐 後期의 군제인 藩鎭體制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28)1908년 愛媛縣에서 태어난 그는 1928년 東京帝國大學에 입학한다.29)당시 加藤繁, 池內宏, 和田清 등의 指導를 받았으며, 3학년의 濱口重國, 靑山定雄 등이 선배였고, 旗田巍, 板野長八 등이 동기였다. 학부졸업 논문은 南北朝時代의 契와 宋代 詭戸를 주제로 작성하다가 질병으로 휴학하고, 「北宋時代の鹽鈔に就いて」라는 제목의 논문을 1930년 제출했다. 『支那中世の軍閥』을 출간하기 전인 1942년까지 그의 주된 관심사는 北宋의 화폐문제였다. 交子의 발행 및 동전 주조 등에 대한 관심은 五代의 재정문제로 옮겨갔다.30)藩鎭體制에 관심을

<sup>27)</sup> 徵兵令에서 兵役法으로의 전환, 兵役法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는 加藤陽子, 『徴 兵制と近代日本 1868-1945』, 東京: 吉川弘文館, 1996, pp. 188-206 참조.

<sup>28)</sup> 日野開三郎, 『支那中世の軍閥―唐代藩鎭の研究―』, 東京: 三省堂, 1942.

<sup>29)</sup> 이하 日野의 약력 및 성장배경에 대해서는 日野開三郎,「日野開三郎博士自撰年譜」, 『(日野開三郎博士頌壽記念論集)中國社會制度·文化史の諸問題』, 東京: 中國書店, 1987, pp. 7-10 참조.

<sup>30)</sup> 日野開三郎,「五代の沿徽に就いて」,『史淵』13, 1936; 日野開三郎,「五代藩鎮の 券絲絹と北宋朝豫買絹」,『史淵』1516, 1937; 日野開三郎,「唐代便換考」,『史淵』 22, 1939.

기울이게 된 계기도 이러한 본인의 주전공인 송대 경제사에 대한 연구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日野開三郎의 연구 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藩鎭은 府兵制에서 新兵制로의 이행과정과 均田制가 이완되는 상황에 서 출현했다. 31) 균전제의 이완으로 출현한 流民을 군대로 흡 수해 傭兵으로 삼았으며. 藩鎭은 종래 변경에서 군사 임무를 맡고 있던 都督府·都護府를 대신했고. 安史의 亂 이후 당의 새로운 지방 지배체제로 발전했다. 기존의 지방제도인 州·縣 위에 복수의 州를 관할하는 藩鎭이 설치되고, 그 장관인 節度 使는 軍政·民政·財政의 3권을 장악하는 강력한 지방권력자가 되었다. 중앙에 대해 半독립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강력한 번진들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자손에게 節度使의 지위를 세습하고, 관할 구역 내에서의 재정 및 임용 등의 권한을 자 의적으로 행사했다. 특히 지역적으로 安史軍의 降將이 재임용 된 河北지역에서 이러한 경향이 심했는데, 이것이 이른바 '河 朔의 舊事'이다 淮西'淄淸 등 河北과 인접한 河南 지역의 번 진들도 河朔의 舊事를 모방했다. 번진은 내부적으로 團結 兵32)과 사병을 모아 정예부대를 형성했고. 외부적으로 外鎭에 나가 있는 蕃將을 통해 刺史를 제압하거나 겸임하여33) 주 · 현까지 번진의 지배를 관철시킴으로써. 조정에 반독립적인 할 거상황이 전개되었다.

唐朝는 번진을 축소·통제하려는 정책을 시행했고, 이에 대응

<sup>31)</sup> 日野開三郎, 『支那中世の軍閥』, p. 38; 이하 藩鎭에 대한 일반적인 서술은 日野開三郎, 『唐代藩鎭の支配體制』(『日野開三郎 東洋史學論集』 1), 東京: 三一書房, 1980에 수록된 여러 논문을 참조.

<sup>32)</sup> 日野開三郎은 적은 비용으로 상당수 團結兵이 藩鎭에 招募되었다고 주장했다(日野 開三郎、「大唐府兵制時代に於ける團結兵の稱呼とその普及地域」、『唐代藩鎭の支配 體制』、pp. 176-179.)

<sup>33)</sup> 日野開三郎、「唐代藩鎭の跋扈と鎭將」、『唐代藩鎭の支配體制』、pp. 363-373.

하여 지방을 장악한 節度使들은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심지어 反唐을 선언하며 皇帝를 자칭하기도 했다. 德宗時代 번진의 반란이 두드러졌지만, 당조의 강력한 대응책과 반란군 내부의 하극상으로<sup>34)</sup> 종결되었다. 또한 憲宗時代에는 대규모의 削藩 戰爭이 수행되어 역사적으로 '憲宗의 中興'이라고 평가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日野는 번진체제를 "兩稅法의 창설까지가 發展時代, 憲宗의 개혁까지가 極盛時代, 그 이후가 弱體化時代, 群雄進占의 唐末은 이른바 變態時代, 五代가 終焉時代이고, 宋初가 死期"라고 시대구분했다. <sup>35)</sup> 반면 가장 강성했던 河北三鎭에 대해서는 德宗時代에 잠시 제압하였을 뿐 당조는 정책적인 회유 외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었다. 하북은 대규모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唐末까지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했다.

日野開三郎이 강조하고자 했던 점은 번진의 성격을 중앙정부에 反하는 권력기구로 이해하고, 권력기구의 출현·발전·변형·소멸의 필연적 전개과정을 다방면에서 고찰하면서, '抑藩振朝' 즉 번진을 억제하고 王朝를 진흥시키는 양태에 대한 모색이었다. 36)이를 통해 五代宋初에 결국 번진체제가 종식되고 오히려 강력한 중앙집권국가인 宋을 탄생시킨 역사상 필연적 법칙을 밝히고자

<sup>34)</sup> 대표적인 하극상의 사례로 魏博을 들 수 있다. 최초의 절도사인 田承嗣부터 8代 절도사인 田布까지 하극상에 의한 절도사의 수립이 2건이었고, 幽州는 8代까지 3건, 成德은 1건이 보인다. 그러나 헌종 이후부터 하극상에 의한 절도사 추대가 더욱 일반화되었다.

<sup>35)</sup> 日野開三郎、「藩鎭時代の州稅三分制について」、『唐代兩稅法の研究: 本編』(『日野開三郎 東洋史學論集』4)、東京: 三一書房、1982、p. 293(原載: 『史學雑誌』65-7、1956。)

<sup>36)</sup> 日野開三郎、「唐河陽三城節度使考」、pp. 336-337; 日野開三郎、「唐代の戰亂と山棚」、 pp. 495-508; 日野開三郎、「憲宗の振朝抑藩策による地方鎭防力の弱體化」、 『唐末混亂史考』(『日野開三郎 東洋史學論集』 19)、東京: 三一書房、1996、 pp. 128-131.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송대 경제사 전공자인 日野가 '抑藩振朝'를 키워드로 번진체제를 연구하게 된 動因은 무엇일까? 환언하면, 번진과 당조를 대립관계로 인식한<sup>37)</sup> 배경은 무엇일까? 日野가藩鎭을 일관되게 '軍閥'로 규정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sup>38)</sup> 반면, 中國 學界에서는 唐末 藩鎭을 軍閥로 규정하지 않으며, <sup>39)</sup> 日野가 주로 분석했던 反중앙정부 성격이 강했던 河北三鎭 외에도 중원·서북변경·동북·동남 등 다양한 지역의 번진이 상호 견제하며 전체적으로 왕조체제를 지탱했다는 대조적인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sup>40)</sup>

이러한 이해의 차이는 『支那中世の軍閥』이 출판되었던 1940년 대 일본의 정치·군사적인 상황 속에서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근대 일본의 군제는 軍人勅諭에 근원을 두고 있었으며, 군인칙유는 바로 '天皇信仰'에 그 뿌리를 두고 있었다. 41) 예컨대 明治憲法(1889)의 제1조에서는 "대일본제국은 萬歲一系의 천황이 국가원수로서 일본을 통치한다"고 명시했고, 제11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천황은 육·해군을 統帥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상은 천황의 통수권을 저해하는 軍閥이 형성되었다. 42) 明治時代에 출신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藩閥이 형성되었고,

<sup>37)</sup> 日野開三郎.「藩鎭體制と直屬州」.『東洋學報』43-4. 1961. pp. 4-8.

<sup>38)</sup> 단적으로 日野開三郎의 藩鎭에 대한 첫 연구성과의 제목은『支那中世の軍閥―唐代藩鎭の研究―』이다.

<sup>39)</sup> 唐代 藩鎭體制에 대한 연구사 정리는 胡戟、「藩鎭問題」、『二十世紀唐研究』、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2002、pp. 50-58 참조.

<sup>40)</sup> 張國剛,「唐代藩鎭類型及其動亂特點」,「歷史研究」1983-4; 王授朝,「唐代藩鎭分類芻議」、『唐史論叢』5. 西安: 三秦出版社,1990.

<sup>41)</sup> 須山幸雄, 『天皇と軍隊』, 東京: 芙蓉書房, 1985, pp. 131-132.

<sup>42)</sup> 이하 軍閥의 형성과정에 대해서는 雄谷光久, 『日本軍の人的問題と問題點の研究』, 東京: 國書刊行會, 1987, pp. 343-354; 하정열, 『일본의 전통과 군사사상―일본 자위대의 뿌리를 찾아서』, 서울: 팔복원, 2004, pp. 200-201 참조.

점차 출신학교와 병과를 중심으로 파벌이 확산되었다. 大正 · 昭和時代에는 皇道派, 統制派, 櫻會, 一夕會, 二葉會 등 이념을 중심으로 파벌이 강화되었다. 군벌은 인사권에 영향을 미쳤고, 정치장교와 집단을 형성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해 가며, 국가와 군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 軍閥에 의한 下剋上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만주사변(1931)<sup>43)</sup>. 2.26사건(1936)이다.<sup>44)</sup>

주목되는 사실은 日野開三郎이 自撰한 자신의 年譜에서 두 사건을 상당히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45) 그는 "昭和 6년(1931)의 만주사변을 自由主義의 謹終"으로 술회했다. 그리고 2.26사건에 대해서는 당시 의형제를 맺고 있던 참모 대위가 소식을 전해주었다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령 일본인이기에 大正 15년 12월의 항목에 "大正天皇崩御"라 기록한 것은 일견 납득이 가지만, 쿠데타의 발생을 자신의 年譜에 기록한 학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日野와 동시대에 군제사를 연구했던 栗原益男, 布目潮渢의年譜에는 '2·26 사건'에 대한 기록은 없다. 이는 日野에게 당시 軍閥의 난립이 큰 관심사 중 하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그리고 1940년 日野開三郎의 인생에 극적인 사건이 벌어

<sup>43)</sup> 만주사변의 실제 책임자인 石原莞爾는 昭和 軍閥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중령에 불과했던 중견 장교였지만, 관동군 참모 板垣征四郎, 國民改造論의 거두 大川周明, 政友會의 森格의 지지 하에 상부의 명령을 무시한 채 극우파 軍閥을 조직하여 만 주사변을 일으켰다(伊香俊哉, 『滿洲事變から日中全面戰爭へ』(『戰爭の日本史』22), 東京: 吉川弘文館, 2007, pp. 10-15.)

<sup>44) 2·26</sup>사건 이전에도 皇道派의 하극상은 만연했다. 1931년 荒木貞夫가 陸軍大臣 에 취임하면서, 皇道派는 宇垣閥을 제거하고 수상 犬養毅을 살해했으며, 1935년 8월에는 陸軍省 軍務局長 永田鐵山 소장이 皇道派 相澤三郎 중좌에 의해 살해당했다. 결국 1936년 2월 26일 22명의 皇道派 청년장교들이 1,400여 명의 사병을 이끌고 국가의 전면적 개조와 군사정부 수립을 요구하며 육군성, 참모본부, 경시청 및 국회의사당을 점거하고 高橋是淸, 齊藤實 등 정부 대신을 살해하면서 체제 전복을 기도했다(藤原彰, 『日本軍事史』, 東京: 日本評論社, 1987, pp. 222-223.)

<sup>45)</sup> 日野開三郎,「日野開三郎博士自撰年譜」, p. 8.

진다. 2월 10일 임시 소집되어 松山22聯隊에 입영한 日野는, 같은 달 26일 부친의 죽음으로 6월에 소집이 해제된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소집된 동기 병사들은 대동아전선의 최전방에서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전사했다. 그리고 2년 뒤인 1942년 日野開三郎은『支那中世の軍閥』을 출판한다.

당시 군사·정치적 상황은 마치 唐末 藩鎭割據와 유사한 軍閥의 난립시기였다. 사회이슈에 관심을 갖고 있던 日野에게 현실속 일본의 군벌과 그에 압도당한 내각은 번진세력과 당조로 투영되었던 것이다. 당대 번진세력과 근대 일본의 만주사변, 2·26사건은 하극상이라는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었다. 日野가藩鎭이라는 일반적인 용어대신 軍閥이라는 용어를 제목으로 선택한 이유도 이러한 배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므로 藩鎭을 억제하고 王朝를 중흥시키는 양태를 추구한다는 '抑藩振朝'論은 결국 藩鎭體制[軍閥]가 중식되고 강력한 中央集權國家가 탄생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현실정치로 끌어내고자 했던 전쟁세대인 日野의 의식적인 노력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 3. 戰後 군제사 논쟁의 계보

唐代 軍制史 연구는 濱口重國의 연구 이후 약 20년이 지난 19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후속연구가 진행된다. 그 배경은 선행연구의 독보적인 성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戰後 아시아의 停滯性을 극복하고 세계사적 기본법칙을 모색하기 위해 시작되었던 시대구분논쟁이 東京帝國大學(이하 東大로 약칭)와 京都帝國大學(이하 京大로 약칭) 사이에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46) 東大 출신 혹은 그 영향을 받은 학자들은 漢·唐을 고대로 규정하며,齊民은 皇帝의 개별인신지배를 받는 奴隸로 이해한다. 반면,京都學派에서는 漢唐 간의 차이에 주목하며 唐의 출현에 대해 北朝 胡族國家의 영향에 비중을 두고 설명한다. 그들은 漢末까지를 고대 노예제 사회로,魏晉—唐을 중세 농노제 사회로 이해한다. 비록 두 학파 간의 입장 차이는 평행선을 그리는 두 개의 철로에 비유되기도 하지만, 47) 중국사회의 성격을 규명하고 시대의 특징을 모색하려는 노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唐代 軍制史로 한정하자면, 戰後 東大출신 日野開三郎의 후배 栗原益男과 日野의 제자 菊池英夫 등 東京學派와 京都學派 谷川 道雄 사이의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栗原益男(1918-2000)은 東大를 졸업하고 東京學派의 연구모임인 歷史學研究會의 幹事를 맡기도 했다. 48) 그러나 1944년 정병되어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는데, 같은 해 7月 어뢰 공격으로 인해 척추가 골절되는 부상을 당했으며, 이후 上知大學 교수(1964-1984)를 역임했다. 그의 출세작은 홋날 京都學派와의 열띤 토론을 야기한 唐·五代 藩鎮 내의 인적 결합의 성격에 대한 논문이었다. 49) 즉, 1940년대 日野의 藩鎮體制 연구의 공백을 메우는 작업이 그의 연구의 시작이었다. 한편 菊池英夫(1930-)는 九州帝國大學에 입학하여, 東大 출신 日野開三郎과 鈴木俊의 지도를 받았다. 50) 1952년「五代禁軍の

<sup>46)</sup> 이하 東京學派,京都學派 간의 논쟁은 谷川道雄,「總說」,『魏晉南北朝隋唐時代史の基本問題』,東京: 汲古書院, 1997에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다.

<sup>47)</sup> 谷川道雄,「中國史の時代區分問題をめぐって一現時点からの省察一」, 『史林』 68-6, 1985. p. 971.

<sup>48)</sup> 이하 栗原益男의 생애와 연구경력에 대해서는 堀敏一,「栗原益男先生年譜著作目録」,『(栗原益男先生古稀記念論集)中國古代の法と社會』,東京: 汲古書院, 1988 补조.

<sup>49)</sup> 栗原益男,「唐五代の假父子的結合の性格―主として藩帥的支配權力との關連において一」,『史學雜誌』62-6, 1953.

發展」으로 文學士를 취득하고 그 해 스타인 돈황문헌의 정리연구를 종합발표하는 「中國土地制度の研究」라는 제목의 東洋史研究會大會에 참석해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된다.51) 이를 계기로 東洋文庫研究員을 거쳐, 1966년 濱口重國의 후임으로 山梨大學에 임용된후 北海道大學, 中央大學으로 전임했다.52) 초기 연구는 五代 禁軍의 변천과 性格에 집중되었다.53) 그러므로 栗原益男과 菊池英夫의 唐代 府兵制 연구의 기저에는 藩鎭體制의 연원과 府兵制 붕괴의 역사적 당위성을 모색하기 위한 관점이 전제되었다.

栗原益男과 菊池英夫의 唐代 府兵制에 대한 논점을 요약하자면, ① 부병제를 당대 유일한 병제로 이해했던 濱口重國의 說에대해 그 외의 군제가 병존했다며, 부병제의 역사적 의미를 저평가한다.54) ② 부병제의 붕괴 원인은 濱口가 제기한 折衝府의 편중 외에도 당의 대외정책이 '羈縻政策'에서 '武力邊防主義'로 전환된 점, 주변 민족의 발흥이라는 추세를 간과할 수 없다.55) ③ 武

<sup>50)</sup> 池田熊一, 「菊池英夫教授山崎利男教授の古稀の雅齢を祝う」, 『(中央大學文學部史學科)紀要』45,2000, p. 190.

<sup>51)</sup> 이 토론회는 戦後 진행된 東京學派와 京都學派 간의 논쟁의 정예전으로 평가할수 있다. 당시 東大에서는 山本達郎, 周藤吉之, 仁井田陞, 古鳥和雄, 西嶋定生, 堀敏一, 古賀登, 池田溫 등이 참석했고, 범의에서 東京學派에 속하는 九州大學에서는 鈴木俊, 日野開三郎, 菊池英夫 등이 참여했다. 반대로 京大에서는 田村實造, 池田誠, 河地重造, 西村元佑, 川勝義雄, 谷川道雄 등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전개했다(池田熊一, 「菊池英夫教授年譜および著作目錄」, p. 199.)

<sup>52)</sup> 학문분야 외에 1960년 三池爭議, 1961년 9회 原水爆禁止 世界大會에 참석하는 등 사회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기도 했다(中村政則,『戦後史』, 東京: 岩波書店, 2005, pp. 77-78; 池田熊一,「菊池英夫教授年譜および著作目錄」, p. 200.)

<sup>53)</sup> 菊池英夫,「五代禁軍の地方駐屯に就いて」,『東洋史學』11, 1954; 菊池英夫,「五代禁軍に於ける侍衛親軍司の成立」,『史淵』70, 1957.

<sup>54)</sup> 菊池英夫,「唐府兵制の成立過程と北衙禁軍の起源」、『東洋史學』13,1955; 菊池英夫,「唐代兵募の性格と名稱とについて」、『史淵』6768,1956; 菊池英夫,「唐代邊防機關としての守捉城鎮の成立過程について」、『東洋史學』27,1964.

<sup>55)</sup> 菊池英夫,「節度使制確立以前における「軍」制度の展開」,『東洋學報』 44-2, 1961; 菊池英夫,「節度使制確立以前における「軍」制度の展開(續編)」,『東洋學報』 45-1, 1962

騎團, 즉 團結兵이 설치된 것은 濱口의 說과 달리 부병제 붕괴의원인이 아니라,河北에서 부병제가 정비되지 않았던 이유에서비롯된 것이다. 56) ④ 부병제에서 新兵制로의 이행을 징병제에서모병제로의 변화라 말할 수 없으며,신병제도 징병제적 요소가존재한다. 57) 즉,그들의 논점은 府兵制 보다는 新兵制라 일컬어지는 唐 중기에서 宋代에 이르는 軍制의 전개과정에 주목하는東大출신 연구자들(周藤吉之,堀敏一)과 일맥상통한다. 58)

특히 菊池英夫는 사료에 대한 비판과 부병제 조직의 세부실태에 천착하여, 唐代 府兵制에 회의적인 입장을 피력한다. 그는 『玉海』에 인용된 『唐會要』와 현재 전해지는 『唐會要』 사이의 "不置府兵" 구절의 유무를 근거로 당대 부병제를 부정하는 試論을 발표했다. 59) 비록 독창적인 결론은 없었지만, 그의후속연구의 단초가 되었다. 이러한 사료비판적인 입장은 기본적으로 西魏의 二十四軍과 唐代 府兵制와의 관련성에 깊은 회의를 밝히는 논문으로 이어진다. 60)

한편, 菊池英夫의 연구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바로 '團'이라는 군제인데 이는 스승인 日野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sup>61)</sup> 菊 池의 연구는 西魏 二十四軍의 말단인 '團'에 대한 연구사정리와

<sup>56)</sup> 菊池英夫、「唐代府兵制度に關する一疑問」、『史淵』58, 1953.

<sup>57)</sup> 栗原益男,「府兵制の崩壞と新兵種―前半期唐朝支配の崩壞に關する若干の考察をふくめて(一)」,『史學雑誌』73-2,1964; 栗原益男,「府兵制の崩壞と新兵種―前半期 唐朝支配の崩壞に關する若干の考察をふくめて(二)一」,『史學雑誌』73-3,1964.

<sup>58)</sup> 周藤吉之,「五代節度使の牙軍に關する一考察一部曲との關聯において一」,『東洋文化研究所紀要』2, 1951; 堀敏一,「五代宋初における禁軍の發展」,『東洋文化研究所紀要』4, 1953; 堀敏一,「藩鎭親衙軍の權力構造」,『東洋文化研究所紀要』20, 1960.

<sup>59)</sup> 菊池英夫,「唐代府兵制度に關する一疑問」, pp. 96·113-114.

<sup>60)</sup> 菊池英夫,「府兵制度の展開」, p. 407.

<sup>61)</sup> 菊池英夫,「節度使制確立以前における「軍」制度の展開」,『東洋學報』 44-2, 1961; 菊池英夫,「節度使制確立以前における「軍」制度の展開、續編」,『東洋學報』 45-1, 1962.

존재형태의 실증으로 이어진다. 서위의 부병조직인 儀同府와 團 의 통속관계에 대해 "1團 밑에 2개의 儀同府가 존재하며. 총 96의 儀同三司가 있다"는 기존 濱口의 說62)을 뒤집고 오히려 團은 儀同府의 하부조직이며, 開府의 권한은 開府儀同三司와 儀同三司 모두 지니고 있었다는 설을 정립했다.63) 이후 그는 團結兵의 源流를 바로 이 團에서 찾게 되는데. 그의 논리를 따 르면 다음과 같다. 西魏時代 二十四軍의 團은 西魏·隋代 戰時 行軍組織이었으며.64) 西域 出土文書에서도 병사의 부대편제단 위를 규정화고 있는 '團'이라는 용례가 빈출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당대까지 이러한 '團'이 존재했고 이것이 바로 '團結兵'으 로 이어졌다는 것이다.65) 團結兵이 藩鎭의 주요 兵源 가운데 하나였음은 日野開三郎의 주요 논지 중 하나이다. 菊池英夫의 府兵制에 대한 입장을 보여주는 단적인 연구 경향 가운데 하나 가 바로 東京學派의 寄生官僚없에 근거한 鄕兵≠府兵, 즉 鄕兵 은 兵戸的 존재로 이해하고. 府兵은 개별인신적지배가 행해졌 던 編戸民이라는 것이다.66) 요컨대 菊池英夫는 唐代 府兵의 위 상을 저평가함으로써. 團結兵이 어떻게 藩鎭體制로 발전되었는 지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다.

菊池英夫의 입장은 西魏 二十四軍  $\rightarrow$  隋代 行軍  $\rightarrow$  唐代 團結 兵  $\rightarrow$  唐末 藩鎭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로서 '團'이 지속되었고, 이 러한 '團'이 府兵制보다 西魏 $\sim$ 唐末의 본질적인 軍制였다는 것이다.

<sup>62)</sup> 濱口重國,「西魏の二十四軍と儀同府」,『東方學報』8・9、1938・1939.

<sup>63)</sup> 菊池英夫,「西魏二十四軍の『團』をめぐる從來の諸説とその檢討」,『史朋』 20, 1986, p. 12.

<sup>64)</sup> 菊池英夫,「北朝隋の二十四軍制度における『團』」,『(日野開三郎博士頌壽記念論集) 中國社會制度文化史の諸問題』、東京: 中國書店. 1987. p. 246.

<sup>65)</sup> 菊池英夫,「西域出土文書に見える唐代軍制關係用語としての「團」について(その二)」, 『アジア史における制度と社會』,東京:刀水書房,1996.

<sup>66)</sup> 菊池英夫,「北朝軍制に於ける所謂鄕兵について」,『(重松先生古稀記念)九州大學東 洋史論叢』,九州大學文學部東洋史研究室, 1957.

1986년 「西魏二十四軍の『團』をめぐる從來の諸説とその檢討」를 발표한 이래로 2000년까지 團과 관련된 논문만 9편을 발표할 정도로이 문제에 천착하고 있다.<sup>67)</sup>

반대 진영에서 논쟁에 참여한 학자는 谷川道雄(1925-2013)이다. 1948년 京大를 졸업하고,「隋唐帝國形成史論」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谷川道雄은 名古屋大學을 거쳐, 1978년부터 京大 교수로 재직한 京都學派의 중진이다.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던현실 속에서 그는 무기력한 학부생활을 보냈다고 술회한다.68) 1945년 3월 미 공군의 공습으로 일본의 주요 도시가 파괴되었다. 대학 입학일인 1945년 4월 1일은 미군이 沖繩에 상륙한 날이었으며, 그는 같은 해 7월 징집되어 福岡에서 복무하다가 종전으로 복학했다. 복학 후에도 인플레이션, GHQ의 행정지배외에도 특히 군대를 중핵으로 했던 天皇 중심의 국가체제의 해체는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고 한다. 당시 21살의 청년 谷川道雄에게 대학과 현실의 간극에서 오는 고뇌, 국가의 장래 등은무거운 과제였다.

그러나 "더이상 戰後는 아니다"로 상징되는 1950년대 중반 일본경제의 정상화는, 69) 谷川道雄에게도 연구의 전기가 되었 다. 심취했던 유물사관과는 다르게 전개되는 사회적 상황과 이 에 대한 회의감으로 그는 隋唐時代에 대한 새로운 입장을 정리 했다고 술회하며, 이때 고민했던 문제의식이 隋唐帝國의 원류 에 대한 문제였다. 70) 그 결과 谷川道雄은 府兵制 제도 자체에 대한 해명보다는 그 역사적인 의미, 즉 수당제국을 형성한 動因

<sup>67)</sup> 池田熊一,「菊池英夫教授年譜および著作目録」, pp. 205-207 참조.

<sup>68)</sup> 이하 谷川道雄, 『中國史とは私たちにとって何か一歴史との對話の記録ー』, 名古屋: 河合文化教育研究所, 2003, pp. 13-18 참조.

<sup>69)</sup> 清水一彦,「"もはや「戦後」ではない"という社會的記憶の構成過程」,『江戶大學紀要』 25, 2015, pp. 195-206.

<sup>70)</sup> 谷川道雄, 『中國史とは私たちにとって何か』, pp. 24-26 · 41-43.

으로서 부병제를 연구하고자 했다.

谷川道雄은 北魏의 분열을 隋唐帝國 형성의 기점으로 이해하며, 六鎮의 亂에 주목했다. 그의 논점은, 六鎮의 亂은 北魏의 門閥貴族 制에 대한 遊牧部族 共同體(遊牧民族)와 지역 共同體(漢族 鄕兵)의 저항이었으며, 두 종류의 공동체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國家 를 형성하는 큰 흐름을 만들었으며, 그 결합체가 바로 西魏·北周 의 二十四軍制, 즉 府兵制라는 것이다.71) 이러한 府兵制의 反門閥 性과 새로운 국가질서의 출현은 일찍이 谷川의 스승 宮崎市定에 의 해 제시된 바 있다. 宮崎는 府兵制의 최상층인 八柱國에 관해 "北 周에서 隋唐에 이르는 동안 종래의 漢人 貴族과는 완전히 다른 계 통의 문벌이 갑자기 성립했던 것"이라고 이해한 바 있다.72)

반면, 菊池英夫는 鄕兵은 결국 隸屬民으로서 部曲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西魏의 鄕兵과 府兵制의 관계를 부정했다. 결국 양 진영의 대립점은 鄕村에 산재했던 鄕民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谷川道雄은 지역 공동체의 명망가로서 豪俠性이 풍부한 鄕帥를 따라 주체적인 의지로 결집된 鄕人兵士가 바로 鄕兵이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73) 그는 府兵의 입신 사례를 모아, 鄕兵은 隸屬民도 아니며, 강제로 府兵이 된 것이 아니라 한낱 민중도 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갖고 從軍하여 공을 세워 출세할 수 있는, 즉 자발적으로 豪族을 따라 출전했던 것으로 분석했다. 74) 鄕兵의 精神은 反門閥主義이며, 이러한 지

<sup>71)</sup> 谷川道雄,「北魏末の内亂と城民」、『史林』41-3·5, 1958; 谷川道雄,「武川鎭軍閥の形成」、『名古屋大學東洋史研究報告』8, 1982; 谷川道雄은 사회의 구성원리로서 계급관계보다 共同體 내부의 豪族과 自立民의 관계에 주목한다. 이에 대해서는 川勝義雄谷川道雄,「中國中世史研究における立場と方法」、中國中世史研究會 編, 『中國中世史研究』東京:東海大學出版會, 1970, pp. 10-16 补조.

<sup>72)</sup> 宮崎市定,『九品官人法の研究』, 京都: 京都大學東洋史研究會, 1956, pp. 489-497.

<sup>73)</sup> 谷川道雄,「北朝末期の郷兵について」,『東洋史研究』20-4, 1962.

<sup>74)</sup> 谷川의 府兵制論에 대한 입장은 谷川道雄, 『中國史とは私たちにとって何か一歴史 との對話の記錄—』, pp. 50-55에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향 위에 胡·漢 협력관계를 실현한 西魏·北周·隋·唐이 공통의 계 통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다.75)

谷川道雄은 부병제의 제도적 이해는 대체로 濱口重國의 이론을 따랐으며, 아울러 1970년 제출된 菊池英夫의 연구에 대해 2차 논쟁을 전개한다. 谷川의 반론은 覇府와 鄕兵의 연결점은 혁명 의지로 결집된 것이며, 부병의 명칭을 都督制에서 찾는 菊池의 견해를 "都督制의 잔상을 통해 唐末 藩鎭으로 연결시키는 논리"라고 비판했다.76) 이후 谷川은 공동체 이론에 입각하여 부병제를 非門閥的 豪族層의 정치적 진출의 기반으로서이해하고, 隋唐時代의 공동체를 府兵制國家라고 규정했다.77) 즉, 宇文泰의 과제는 東魏·南朝에 열세였던 西魏의 현실을 극복하는 것이었고, 그 구체적인 방안이 바로 府兵制의 창설이라는 것이다. 결국 隋唐帝國을 탄생시킨 원동력으로서 府兵制는均田制와 함께 隋唐 律令體制의 양대지주 중 하나였다는 것이 谷川道雄의 논점이다.

唐代 軍制史에 대한 戰後 논쟁은 濱口重國의 연구에 기반한 谷川道雄과 日野開三郎의 연구를 확장하여 府兵制를 소극적으로 평가했던 菊池英夫의 논쟁을 중심으로 1980년대 중반까지府兵制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唐 後期 藩鎭에 대한 논쟁은 사실 軍制史의 중심 논제가 되지는 않았다. 78) 연구를 개척한 日野開三郎도 藩鎭을 군제사의 관점에서만 논하지 않았기때문이다. 예컨대 藩帥가 겸임하는 민정관직인 觀察使에 대한

<sup>75)</sup> 谷川道雄,「北朝郷兵再論―波多野教授の軍閥研究に寄せて―」,『名古屋大學文學部研究論集(史學)』19, 1972.

<sup>76)</sup> 谷川道雄,「府兵制國家と府兵制」,『律令制―中國朝鮮の法と國家―』, 東京: 汲古書院, 1986, pp. 430-435.

<sup>77)</sup> 谷川道雄,「府兵制國家論」,『龍谷大學論集』443, 1993.

<sup>78)</sup> 藩鎭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사 정리는 鄭炳俊, 「唐末五代 藩鎭體制에 대한 研究史 的 考察」, 『中國學報』 40, 1999 참조.

專論이라든지<sup>79)</sup>, 兩稅法이 번진을 억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지적<sup>80)</sup> 등에서 日野가 번진체제를 사회·경제·관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支那中世の軍閥』은 군제사가 아닌 경제사 분야에서 학술적 성과를 남겼다고 평한 논자도 있었다.<sup>81)</sup>

이러한 배경에서 戰後 藩鎭 연구는 정치·경제사의 측면에서 주로 논의되었지만, 日野를 중심으로 東大 출신 혹은 그 영향을 받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一群의 연구자들에 의해 藩鎭體制 연구가 일정한 계통성을 유지하며 진행되었다. 菊池英夫는 唐代府兵制의 연구에서 시작하여 府兵制에서 節度使 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을 團結兵을 중심으로 천착했다. 82) 스승인 日野가 밝혀내지 못한 번진체제로의 이행과정에서 그 근원이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의문을 품고 이를 단결병에서 찾음으로써 日野의 說을 보충한 것이다. 堀敏一은 논리 및 실증이 부족했던 83) 日野의 연구를 보충하며, 번진에 대한 劃期를 설정하여 宋 이후를 중세로보는 근거 중 하나로서 번진체제를 접근했다. 84) 栗原益男은 日野의 연구의 공백 중 하나인 번진 내부의 결합관계에 천착하는

<sup>79)</sup> 日野開三郎,「觀察處置使について一主として大曆末まで一」,『唐代兩稅法の研究 前篇』(『日野開三郎 東洋史學論集』3),東京:三一書房,1981.

<sup>80)</sup> 日野開三郎、「支那中世の軍閥」、pp. 111-119.

<sup>81)</sup> 栗原益男, 「(書評)日野開三郎 著「支那中世の軍閥」『史學雑誌』 54-6, 1943, p. 110.

<sup>82)</sup> 菊池英夫,「唐代府兵制度に關する一疑問」,『史淵』58, 1953; 菊池英夫,「節度使制確立以前における「軍」制度の展開(續編)」,『東洋學報』45-1, 1962; 菊池英夫,「北朝隋の二十四軍制度における『團』」,『日野開三郎博士頌壽記念論集》中國社會制度文化史の諸問題』,東京:中國書店, 1987.

<sup>83)</sup> 初版되었던 『支那中世の軍閥―唐代藩鎭の研究―』은 각주 하나 없는 일종의 연구 노트에 가까웠다. 재출간된 日野開三郎, 『唐代藩鎭の支配體制』(『日野開三郎 東洋 史學論集』 I), 東京: 三一書房, 1980에서는 唐代藩鎭の成立と盛衰라는 부제로 ユ 동안의 비판을 수용하여 많은 부분이 수정되었다.

<sup>84)</sup> 堀敏一. 『唐末五代變革期の政治と經濟』. 東京: 汲古書院. 2002.

작업<sup>85)</sup>과 藩鎭體制에 대한 연구를 위한 기초작업으로 연표를 정리했다.<sup>86)</sup>

반면 京都學派 宮崎市定과 礪波護는 '財政國家論'87)에 입각하여 國家體制의 전환으로서 藩鎭을 설명하려는 시도와 藩鎭의 유형별 분석을 통한 연구를 진행했다.88) 이는 藩鎭과 朝廷을 대립관계로 도식화했던 東京學派에 대한 비판으로서, 오히려 국가권력을 보조했던 藩鎭의 적극적인 모습을 재평가하는 방식으로 藩鎭과 唐朝의 共存을 모색함으로써 번진을 왕조의 지배체제 중하나로 이해하려는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다.89)

# 4. 戰後世代의 군제사 연구의 특징

唐代 軍制史 연구에서 두각을 보이는 戰後세대 연구자는 氣賀澤保規(1943-)이다. 그는 1986년부터 발표한 西魏에서 唐에 이르는 府兵制의 발전과정을 논한 여러 논문을 엮어 1999년 『府兵制の研究』(京都: 同朋舍)를 출판하며, '兵民分離'라는 새로운 관

<sup>85)</sup> 栗原益男,「唐五代の假父子的結合の性格―主として藩帥的支配權力との關連において一」、『史學雜誌』62-6, 1953; 栗原益男,「唐末五代の變革―その遡及的考察をふくめて一」、『歴史教育』12-5, 1964.

<sup>86) 「</sup>五代宋初藩鎮年表」라는 제목의 기초적인 연구성과를 1965년(『上智史學』10》부터 1988년(『上智史學』33)까지 연속 게재했다. 그리고 이를 집대성하여 『五代·宋初 藩鎭年表』(東京堂出版, 1988)을 출간했다.

<sup>87)</sup> 宮崎市定,『大唐帝國―中國の中世』,東京: 中央公論社,1988; 礪波護,「唐の律令體制と宇文護の括戶」、『東方學報』41,1970.

<sup>88)</sup> 大澤正昭,「唐末の藩鎭と中央權力・德宗憲宗期を中心とて一」,『東洋史研究』32-2, 1973.

<sup>89)</sup> 元和年間의 정치적 안정화의 배경 중 하나로 唐朝와 江淮藩鎭의 상호 협력관계를 꼽을 수 있다(中砂明德,「後期唐朝の江淮支配-元和時代の一側面-」,『東洋史研究』 47-1, 1988.)

점을 제기함으로써 1990년대 다소 침체되어 있던 학계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氣質澤은 京大를 졸업하고, 1996년 『府兵制の研究』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지도교수는 귀족제 논쟁을 주도하고 공동체이론을 제창한 川勝義雄(1922-1984)이다. 氣賀澤의 연구에 또 다른 영향을 준 인물로는 谷川道雄을 꼽을 수 있는데, 谷川은 川勝의 京大 후배이자 "연구상의 盟友"였다. 90)

氣賀澤保規의 府兵制 연구는 谷川道雄을 계승했는데, 谷川은 부병의 위상을 논하면서 中男을 入軍시키는 案에 대한 魏徵의 反對論은 "명예로운 전사로서 위치를 보증한 것에 다름 아니었다"고 규정한 바 있다. 91) 그리고 "府兵制는 隋 開皇 10年(590)을 즈음하여 兵民分離에서 兵民一致로 이행했다. 그러나 그것은 제도의 표면이며, 唐의 兵民一致 속에서도 兵民分離의 흔적이 인정되는 것이 있으며, 부병제의 본질은 兵民分離에 있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고 했다. 92) 이러한 谷川道雄의 견해를 계승・발전시켜 氣賀澤保規는 "이것은 상당히 한발 내딛었던 발언이며, 필자가 생각한 것에 가까우며, 이후의 구체적인 논증에주목하고 싶다"고 『府兵制の研究』의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93)요컨대 隋 開皇 10年詔에 대한 谷川의 견해, 즉 兵民一致(兵農一致)의 시도였지만, 결국 "軍府統領, 宜依舊式"했다는 점을94)계승하여 氣賀澤은 일관되게 '兵民分離'였다는 입장으로 발전시켰던 것이다.

唐代 府兵制에 대해서 종래 소수 의견으로 岑仲勉만이 '兵民分

<sup>90)</sup> 谷川道雄、『中國史とは私たちにとって何か』、p. 91.

<sup>91)</sup> 谷川道雄,「府兵制國家と府兵制」, p. 438.

<sup>92)</sup> 谷川道雄,「府兵制國家論」, pp. 7-8.

<sup>93)</sup> 氣質澤保規,「前期府兵制研究序説―その成果と論點をめぐって―」,『府兵制の研究』, 東京: 同朋舍, 1999, p. 58 注16(이하 氣賀澤保規의 논문은 앞의 연구서에서 이용.)

<sup>94)</sup> 谷川道雄, 「府兵制國家論」, p. 5.

離'를 주장했지만, 95), 일본과 중국에서는 대체로 濱口重國의 선구적 연구를 따르고 있다. 濱口의 연구 이후 반세기 이상 일본에서 府兵制 研究에 대한 專著가 출판되지 않았던 이유도 이러한 연구상황에 기인한 바가 크다. 이러한 연구경향에 대해 氣賀澤保規는 ① 系統的 연구의 부족, ② 國家權力에 중점을 두어全體像을 규명하지 못했던 점, ③ 府兵制가 존재했던 시대상황에 대한 인식의 문제를 제기했다. 96) 唐代 府兵制로 한정하자면, 氣賀澤의 논점은 唐代 府兵은 '兵士'라는 특수한 신분이었으며, 農民보다 양호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兵農一致로 이해한 선행 연구에서도, 제도의 입안과정에서는 병역 부담의 균등성이 전제되어 있어도 실제 운영상 府兵의 부담은 과중했고 그 결과 府兵의 지위가 저하되었다는 견해<sup>97)</sup>, 과중한 부담을 견뎌낼 수 있는 地主階級의 필연적 탄생을 전제한 입장<sup>98)</sup>이 산재해 있었다. 그러나 氣賀澤保規는 唐代 軍防令의 규정과 달리 현실에서는 대략 500里 5番을 기준으로 京師로 上番하는 府兵과 인근에 설치된 都督府로 上番하는 府兵으로 나뉘어 운영되었으며, 따라서 府兵의 과중한 부담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sup>99)</sup> 그리고 出土文書를 분석한 결과 "衛士라는 명칭은 中央의 禁衛에 속한 병사로서 사회적 영예와 특권을 지닌호칭이며, 그것으로 兵士와 軍府를 中央에서 일원적으로 계속연결시켜주는 적극적인 의미를 지녔다"라고 부병의 지위를 논증

<sup>95)</sup> 岑仲勉, 『府兵制度研究』, 上海人民出版社, 1957.

<sup>96)</sup> 氣質澤保規, 『府兵制の研究』, pp. 1-5.

<sup>97)</sup> 濱口重國、「府兵制度より新兵制へ」、pp. 37-49.

<sup>98)</sup> 日野開三郎、「大唐府兵制時代に於ける團結兵の稱呼とその普及地域」、『史淵』61, 1954; 栗原益男、「府兵制の崩壞と新兵種: 前半期唐朝支配の崩壞に關する若干の考察をふくめて(一)・(二)」、『史學雜誌』73-2・3、1964; 菊池英夫、「中國軍制史の基本的視點」、『歴史評論』250、1971.

<sup>99)</sup> 氣賀澤保規、「唐代府兵制における府兵兵士の位置」、pp. 290-307.

했다. 100) 즉, '兵(軍人)'이 '民'보다 사회적 신분이 높았고, 그 특권으로서 필연적으로 '民'보다 부담이 가벼웠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일반민과 구별되는 '軍'의 존재가 바로 '중세적인 특질'이라는 것이다. 101) 궁극적으로 氣賀澤은 唐代 府兵을 일본 중세의 사무라이 계급과 유사한 특징을 지닌 특권 계층으로 상정함으로써, 중국과 일본의 공통적인 역사발전 과정을 모색하고자했던 것이다. 102)

다소 과감한 입론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氣賀澤保規의 연구에 대한 몇 편의 서평을 제외하고<sup>103)</sup> 본격적인 논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氣賀澤 역시 연구서의 출간 이후 연구 관심을 石刻資料와 佛教史로 전환했다. 이러한 현상은 영성한 사료, 부병제 연구의 축적 등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戰後세대의 군제사 연구의 특징 속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戰後세대의 군제사 연구의 특징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연구자가 石田勇作(1948-)이다. 그는 東京學藝大學에서 학부를 마치고 上智大學 大學院에서 栗原益男의 지도를 받았다. 주목할 사실은 3장에서 살펴본 전쟁세대들의 논쟁과 달리 戰後세대에서는 연구의 계보가 희미해졌다는 점이다. 石田勇作은 唐代 府兵의 부담을 둘러싸고 東大 출신의 布目潮渢(1919-2001)과 격렬한 논쟁을

<sup>100)</sup> 氣賀澤保規,「唐代西州における府兵制の展開と府兵兵士」, p. 323.

<sup>101)</sup> 다만, 氣質澤保規의 용어 사용은 다소 모호한 부분도 없지 않다. 그는 "府兵兵士는 그 개개인(및 그의 가족)은 兵農—致의 산업활동에 종사하지만, 사회전체 속에서 점하고 있는 위치는 兵民分離의 원칙에 입각하여 존재하고 있었다. 그 兵農 — 致와 兵民分離의 並存, 그것이야말로 府兵制의 本質에 관한 중요한 요소"라고설명한 바 있다(氣質澤保規,「府兵制史再論」, pp. 424-425.)

<sup>102)</sup> 氣質澤保規,「研究フォーラム新府兵制論: 唐代史の新たな理解のために」,『歴史と地理』574, 2004, pp. 50-54.

<sup>103)</sup> 石田勇作, 「(書評)氣質澤保規著『府兵制の研究―府兵兵士とその社會―』」, 『駿台史學』109, 2000; 山口正晃, 「(書評・新刊紹介)氣質澤保規著『府兵制の研究―府兵兵士とその社會―』」. 『唐代史研究』3. 2000.

전개한 바 있는데, 石田勇作의 지도교수 栗原益男(1942년 東大卒)은 布目潮渢(1943년 東大卒)의 師兄에 해당한다.<sup>104)</sup>

논쟁의 쟁점은 『新唐書』「兵志」와 『唐六典』卷6「尚書兵部」에 각각 상이하게 기록되어 있는 衛士의 京師 上番規定 중무엇을 신뢰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었다. 105) 府兵制 관련 사료의 영성함과 史書 사이의 기록차이는 研究에 큰 장애가 되기도 하는데, 106) 결과적으로 布目潮渢은 府兵의 부담이 과중했다는 濱口重國의 기존 입장을 변호했고, 반면 石田勇作은 府兵의 부담이 일반농민의 그것에 비해 과중하지 않았다는 입장

<sup>104)</sup> 栗原益男, 布目潮渢의 약력에 대해서는 각각 堀敏一,「栗原益男先生年譜著作目録」,『(栗原益男先生古稀記念論集)中國古代の法と社會』,東京: 汲古書院,1988, pp. 3-5; 中村裕一,「布目潮渢博士略年譜」,『布目潮風中國史論集』下,東京: 汲古書院,2004, p. 431 참조; 한편 石田의 약력은 上掲む『(栗原益男先生古稀記念論集)中國古代の法と社會』와 『(日野開三郎博士頌壽記念論集)中國社會制度文化史の諸問題』(東京:中國書店、1987)의 집필자 소개를 참조.

<sup>105)</sup> 布目潮風은 衛士上番에 관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게 규정된 『唐六典』의 기록을 따라, 濱口重國의 說인 150日(2500 - 3000里 衛士의 연간 부담일수)이 옳았음을 증명했다. 그가 府兵의 부담문제를 제기한 것은 律令體制하의 一般民丁과 府兵 모두 동일한 부담으로 중앙정부에 의해 일괄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던 추상성을 증명하고자한 데 있다(布目潮風,「唐代衛士番上の負擔」、『(山本博士還曆記念)東洋史論叢』、東京: 山川出版社, 1972; 布目潮風、「唐代衛士番上の負擔再論一石田勇作氏の「唐府兵負擔攷」を讀みて一」、『(三田村博士古稀記念)東洋史論叢』、京都:立命館大學人文學會, 1980.) 한편 石田勇作은 史書의 편찬시점을 문제삼아『新唐書』의 기록에 신빙성이 있음을 증명했다. 아울러 衛士上番과 防人負擔(防人의在役期間 3년을 衛士의 1년으로 환산)을 합한 府兵의 부담률을 非軍府州 丁男의賦役負擔率과 비교하여, 양자의 부담률의 균일성을 수치화를 통해 논중했다. 그의 결론은 唐의 律令支配體制의 '個別人身的' 또는 '均等的支配'의 특질이 府兵制에서도 일관되게 보인다는 것이다(石田勇作、「唐府兵負擔券—律令法規からみたる一」、『上智史學』 24, 1979.)

<sup>106)</sup> 府兵制 관련 사료에 대한 문제는 70년대부터 제기되어 왔는데, 예컨대 菊池英夫는 『鄴侯家傳』의 기록을 문제삼아 府兵制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西魏府兵制'는 당후반기 祖法의 부흥과 北周隋唐의 지배층의 동질성을 과도하게 해석한 점을 지적했다(菊池英夫,「府兵制度の展開」, pp. 410-411.) 史料의 零星함에 대해서는 谷川道雄,「西魏北周隋唐政權と府兵制」, 『中國律令制の展開とその國家・社會と關係(唐代史研究會報告)5』, 東京: 刀水書房, 1984, p. 144 참조.

을 제기했다. 사실상 濱口重國이 京都學派의 입장을 계승·전수했다는 점에서 東大 출신의 布目이 濱口의 설을 지지했던 사실은 3장에서 보이는 평행선을 달리던 東京學派와 京都學派 양 진영의 논쟁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石田 역시 師淑과 논쟁을 펼치고 있다는 점도 전쟁세대의 계통적인 논쟁과는 구별된다.

2차 논쟁에서 石田은 折衝府의 偏重이나 府兵의 負擔에 의한 民亂이 없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하며107). 府兵制 붕괴의 원인을 武后 집권이후 정국의 변화에서 찾을 것을 제안했다. 사 실상 唐의 律令支配體制가 관념적·추상적인 것이었는가(布目) 아 니면 현실적으로 구현되었는가(石田)에서 견해 차이를 보인 것이 다. 한편. 石田은 氣質澤의 연구에 대해서도 '兵·民', '農·兵'의 개 념 구별의 모호함을 지적하며, 『新唐書』 「兵志」에 매년 冬季(즉, 農閑期)에 부병이 군사훈련을 행했다는 것으로부터 兵農一致的 사회적 상황에 대한 반영이라고 비판했다. 108) 이러한 주장의 내 면에는 만약 兵民이 分離되었다는 氣賀澤의 주장을 수용한다면. 均田制를 통한 唐朝의 농민에 대한 '個別人身的支配'說이 부정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氣賀澤과 同門인 山口 正晃은 전공분야가 魏晉南朝 都督制임에도 불구하고109). 氣賀澤 의 입장을 변호하는 서평을 제출하며 石田의 비판에 반비판을 가한다. 그의 논리는 농경사회에서는 農耕이 일반적인 생활수단 이었으며. 전문병사인 '兵'(그 가족도 포함)이 府兵으로 揀點되지 않는 자인 '民'(그 가족도 포함)과 생활환경이 달랐다는 점이 더

<sup>107)</sup> 石田勇作, 「唐府兵負擔についての再考」, 『(日野開三郎博士頌壽記念論集)中國社會制度·文化史の諸問題』, 東京: 中國書店, 1987, pp. 261-262〈表〉Ⅰ・Ⅱ.

<sup>108)</sup> 石田勇作、「(書評)氣賀澤保規著『府兵制の研究』」、p. 180.

<sup>109)</sup> 山口正晃은 2004년「魏晉南朝における都督制」라는 논문으로 京大에서 博士學位 를 받았으며, 현재 大手前大學 准教授를 맡고 있다.

#### 욱 본질에 가깝다는 것이다. 110)

한편 戰後세대들의 연구경향과 관련하여 그들이 새로운 사료의 발굴과 개별 연구에 치중한다는 지적은 일찍이 제기되었다. 1111) 예컨대 辻正博(1961-)은 河北三鎭으로 藩鎭 전체를 일반화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로, 憲宗의 河南藩鎭 順地化를 분석한 바 있다. 112) 그러나 참신한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辻은 京大 박사과정을 중퇴하는 등 여러차례 부침을 겪다가 敦煌學으로관심을 옮겼다. 113) 그와 동년배인 中砂明徳도 宮崎市定과 礪波護를 계승한 한 편의 문제작을 끝으로 114) 자신의 전공분야를 唐에서宋으로 옮겨 버렸다. 115) 비교적 젊은 학자로서 早稻田大學 출신의 平田陽一郎(1973-), 山下將司(1974-) 등이 각각 唐代 府兵制의 개념문제, 소그드인들의 軍府官 임명 등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116) 연구를 통해 규명하려는 논점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117) 戰後 세대에게 뚜렷하게 보이는 연구의

<sup>110)</sup> 山口正晃,「(書評·新刊紹介)氣賀澤保規著『府兵制の研究―府兵兵士とその社會―』」, p. 109.

<sup>111)</sup> 谷川道雄,「中國史の時代區分問題をめぐって」,『史林』68-6, 1985.

<sup>112)</sup> 辻正博,「唐朝の對藩鎭政策について一河南「順地」化のプロセス一」,『東洋史研究』 46-2, 1987.

<sup>113)</sup> 辻正博,「草創期の敦煌學と日本の唐代法制史研究」,『草創期の敦煌學―羅・王兩 先生東渡 90周年記念日中共同ワークショップの記録―』, 東京: 知泉書館, 2002; 辻正博,「麹氏高昌國と中國王朝」, 夫馬進 編,『中国東アジア外交交流史の研究』, 京都: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07.

<sup>114)</sup> 中砂明徳,「後期唐朝の江淮支配一元和時代の一側面一」,『東洋史研究』47-1, 1988.

<sup>115)</sup> 中砂明徳,「劉後村と南宋士人社會」,『東方學報』66, 1994; 中砂明徳,「士大夫のノルムの形成―南宋時代―」,『東洋史研究』54-3, 1995.

<sup>116)</sup> 平田陽一郎、「唐代兵制=府兵制の概念成立をめぐって一唐・李繁『鄴候家傳』の史料的性格と位置づけを中心に一」、『史觀』147,2002; 山下將司、「隋唐初の河西ソグド人軍團一天理圖書館藏『文館詞林』「安修仁墓碑銘」 殘卷をめぐって」、『東方学』110,2005; 平田陽一郎、「皇帝と奴官:唐代皇帝親衛兵組織における人的結合の一側面」、『史滴』36,2014; 山下將司、「北朝末~唐初におけるソグド人軍府と軍團」、『アジア遊學』173,2014.

<sup>117)</sup> 최근 平田陽一郎과 山下將司는 스승 石見清裕의 영향으로 軍制史보다 民族問題

세분화와 신자료의 발굴도 역사 연구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며, 후속 연구를 위한 사전작업의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이러한 개별 연구의 누적이 '時代의 全體像'을 드러내지는 못하고 있다.

### 5. 맺음말

唐代 軍制史에 대한 日本 學界의 독특한 연구경향과 논점은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世代'라고 하는 시간축과 '學派', 즉 출신학교라고 하는 공간축이 바로 그것이다. 시간의 흐름을 의미하는 世代는 戰爭에 대한 기억의 농도에 근거한다. 전쟁세대에게 軍制史는 '是非'를 초월한 '生死'의 문제였다. 어뢰 공격으로 척추가 골절되었던 栗原益男, 한 명을 제외한 입대 동기가 모두 戰死했던 日野開三郎, 패전이 임박하여 징집되었던 谷川道雄 등 전쟁을 경험했던 연구자들과 戰後세대의 軍制를 대하는 관점이 상이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바로 전쟁의 기억에서 비롯되었다.

濱口重國이 "국민의 최대 고통인 兵役"의 문제에 천착했고, 日野開三郎이 唐末 藩鎭과 1930년대 일본의 軍閥을 '下剋上'이라는 공통분모에서 연구하여 '抑藩振朝'라는 역사상 필연적인 법칙을

에 천착하고 있다(平田陽一郎、「史索巖墓誌」、石見清裕 編、『ソグド人墓誌研究』、東京: 汲古書院、2016; 平田陽一郎・山下將司、「「唐・翟天徳墓誌」の譯注と考察」、『沼津工業高等専門學校研究報告』 50、2016; 山下將司、「安史の亂におけるソグド人李抱玉の事績について」、『史艸』 59、2018; 山下將司、「漢文墓誌より描く六世紀華北分裂期のソグド人」、『日本女子大學紀要(文學部)』 69、2019; 山下將司、「朱耶氏と沙陀三部落: 唐末の代北におけるテュルク・ソグド軍團」、『メトロポリタン史學』 15、2019; 平田陽一郎、「「唐・慕容曦輪墓誌」の譯注と考察」、『沼津工業高等専門學校研究報告』 54、2020 참圣。)

모색하고자 했던 動因도 '戰爭'의 기억 때문이었다. 1950년대 이후 열띤 時代區分論爭이 촉발된 것도 바로 전쟁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되었다. 종래 침략전쟁을 미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졌던 소위 아시아 사회의 停滯論을 극복하고 세계사적 기본법칙을 과제로 삼아 열띤 논전이 전개되었다.

시대구분논쟁과 함께 戰後 30여 년간 일본 학계는 실증을 중시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연구자세를 바탕으로 크게 발전했다. 軍制史 研究가 戰後부터 1980년대까지 활발해진 근본적인 動因도 東京學派와 京都學派 사이에 전개된 論爭에서 비롯되었다. 日本 學界의 軍制史 研究는 '學派', 즉 대학이라는 공간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日本의 주요 大學은 연구자들의 조직과 협조 및 교류를 주도하는 특수한 연구기관을 지니고 있었다. 지금은 다소 색깔이 엷어졌지만 각 대학별로 학술지를 발간하며 연구의 계통성을 드러내고 있다. 예컨대 東大에는 東洋文化研究所(舊 東洋文化研究所·東方文化學院 統合)가 있으며, 東大 출신 학자들이 창립 발기한 학회지로는 『史學雜誌』, 『歷史學研究』 등이 있다. 東洋文庫의 설립에는 白鳥庫吉이 주도적인역할 담당하기도 했다.

반면, 京大에는 東方文化研究所(1948년 文部省으로 이관), 人文科學研究所 등의 부속 연구기관이 존재하며, 『東洋史研究』는 1935년 京大 문학부 동양사학과에서 창립 발기한 동양사연구회의 기관지에 해당한다. 그 외 川勝義雄과 谷川道雄의 주도 하에주로 京都大學과 名古屋大學 출신들이 회원으로 활동했던 中世史研究會는 京都學派的 색채를 비교적 강하게 띠고 있다. 京都學派의 重鎮인 東北大學에서는 『集刊東洋學』을 발간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京都學派 혹은 그 영향을 받은 一群의 연구자들은 '岡崎文夫→濱口重國→谷川道雄→氣賀澤保規'라는 계통성

을 지니면서 반대편에 서있는 '日野開三郎→栗原益男·布目潮渢· 菊池英夫'와 논전을 전개하며 府兵制 연구의 발전을 꾀할 수 있 었던 것이다.

菊池英夫는 "大學 敎授는 研究者이자 敎育者"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118). 이 표현은 근래 일본 학계의 논쟁의 소멸, 문제의 식의 공유 부족, 연구의 개별화 등의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 軍制史 연구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濱口重國과 日野開三郎 의 軍制史 研究가 후속 세대에게 계승되는 양상은 큰 차이를 보인다 그 배경 중 하나는 濱口는 연구자의 성격이 강했던 데 에 반해 日野는 교육자적인 모습이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日野 는 평생 백 편이 넘는 논문을 집필하여. 이를 全集 20권으로 출판했다 이러한 양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濱口의 精緻한 と증이 돋보이는 「府兵制度より新兵制」 보다 12년이나 지나 출간된 日野의 『中國中世の軍閥』은 각주 하나없는 논설에 가 까운 글이었다. 日野의 스승인 加藤繁에게 대학시절 실증적이 지 못하다고 비판을 받던 일화는 고스란히 日野의 自撰年譜에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日野의 說은 이후 제자 菊池英 夫를 비롯한 東大 출신의 栗原益男, 堀敏一 등 많은 연구자들 에 의해 계승되었다. 이에 반해 濱口의 연구를 직접적으로 계 승한 제자는 없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濱口重國은 선구적인 실증적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스승 加藤繁의 영애와 이혼한 이후 東京大, 東北大, 滿鐵調査部 등을 전전하며, 안정적으로 자신의 학설을 전수할수 있는 교육기관에 자리를 잡지 못했다. 반면 日野는 1935년 27살의 나이에 九州帝國大學에 부임하여, 비교적 안정적으로 菊

<sup>118)</sup> 菊池英夫,「劇詞」,『(日野開三郎博士頌壽記念論集)中國社會・制度文化史の諸問題』, 東京: 中國書店, 1987, p. 1.

池英夫와 같은 후학을 양성할 수 있었다. 濱口重國의 府兵制 연구와 이를 수용한 谷川道雄의 연구 사이에 약 30년의 시간차가 발생한 배경도 이러한 상황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이는 中國史研究가 대학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그 學派에 의해 계승·발전되었다는 점을 방증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경향은 이러한 學派의 차이가 무의미해질 정도로 논쟁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 배경은 논쟁의 한 축이었던 東大에 中國史 전공 교수의부족과 그로 인한 연구자 재생산의 단절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1990년대 이후 戰後세대에서 두드러지는 논쟁의 소멸, 연구의 개별화 등의 문제는 한국 학계에도 반면교사가 될 것이다. 물론 실증주의적 접근과 새로운 사료를 통한 연구의 발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담한 假設과 소심한 論證'이라는 역사연구의 방법론이 현재 일본 학계에만 해당되는 조언은 아닌 듯하다. 어느 大家의 조언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되어 이를 인용하면서 本稿를 마무리하겠다.

사료의 한편 끝에는 역사가의 통찰력과 구상력이 있어야 한다. 그 통찰력과 구상력은 실증주의(positivism)를 뛰어넘어야 생기는 것이다. 감히 고언을 드리자면 최근 수년 동안 연구의 세분화라고 불려진 것은 전망을 가진 세분화가 아니라 목표를 잃은데서 오는 세분화일지도 모른다. 119)

<sup>119)</sup> 谷川道雄,「總説」,『魏晉南北朝隋唐時代史の基本問題』, 東京: 汲古書院, 1997, p. 28.

#### 일본 학계의 唐代 軍制史 硏究 動因과 논점 | 163

(원고투고일: 2020, 10, 7, 심사수정일: 2020, 11, 16, 게재확정일: 2020, 12, 2,)

주제어: 濱口重國, 日野開三郎, 栗原益男, 谷川道雄, 菊池英夫, 府兵制, 兵募, 節度使, 藩鎮, 軍國主義



# 〈참고문헌〉

1. 일본 학계의 唐代 軍制史 논저(필자 생년순)
濱口重國,「府兵制度より新兵制へ(一)」,『史學雑誌』41-11,1930.
,「前漢の南北軍に就いて」,『(池内博士還暦記念)東洋史論叢』, 東京
座右寶刊行會,1940.
, 『秦漢隋唐史の研究』上・下,東京大學出版會,1966.
日野開三郎,「唐·河陽三城節度使考」,『史淵』14, 1936.
,「唐代藩鎭の跋扈と鎭将(ー)」, 『東洋學報』26-4, 1939.
1954.
書房, 1980.
周藤吉之、「五代節度使の牙軍に關する一考察一部曲との關聯において一」、『東河
文化研究所紀要』2, 1951.
栗原益男. 「(書評)日野開三郎 著「支那中世の軍閥」 『史學雑誌』 54-6. 1943

栗原益男、「唐五代の假父子的結合の性格―主として藩帥的支配權力との關連に
おいて一」,『史學楽館志』 62-6,1953.
をふくめて(一)」,『史學楽[誌』73-2, 1964.
, 「府兵制の崩壞と新兵種: 前半期唐朝支配の崩壞に關する若干の考察
をふくめて仁」,『史學楽誌』73-3,1964.
1964.
,『五代·宋初藩鎭年表』,東京堂出版,1988.
布目潮楓、「唐代衛士番上の負擔」、『(山本博士還曆記念)東洋史論叢』、東京: 山
川出版社,1972.
て一」,『(三田村博士古稀記念)東洋史論叢』,京都: 立命館大學人文學
會, 1980.
,『布目潮楓中國史論集』上,東京:汲古書院,2003.
堀敏一,「五代末初における禁軍の發展」,『東洋文化研究所紀要』4,1953.
,『唐末五代變革期の政治と經濟』,東京:汲古書院,2002.
谷川道雄, 「北魏末の内亂と城民(上)」, 『史林』41-3, 1958.
學部研究論集(史學)』19, 1972.
會と關係(唐代史研究會報告)5』,東京: 刀水書房,1984.
, 「府兵制國家と府兵制」, 『律令制―中國朝鮮の法と國家―』, 東京
汲古書院, 1986.
. 「府兵制國家論」. 『龍谷大學論集』 443. 1993.

菊池英夫,「唐代府兵制度に關する一疑問」,『史淵』58, 1953.
,「唐代兵募の性格と名稱とについて」,『史淵』67:68, 1956.
學東洋史論叢』,九州大學文學部東洋史研究室,1957.
1961.
,「節度使制確立以前における「軍」制度の展開(續編)」, 『東洋學報
45-1, 1962.
27, 1964.
1970.
,「中國軍制史の基本的視點」,『歷史評論』250,1971.
1986.
論集)中國社會制度・文化史の諸問題』,東京:中國書店,1987.
の二)」、『アジア史における制度と社會』、東京: 刀水書房、1996.
氣賀澤保規,「前期府兵制研究字説―その成果と論點をめぐって―」,『法制史
究』42, 1992.
『中國中世史研究(續編)』,京都大學學術出版會,1995.
1997.

氣賀澤保規,『府兵制の研究』,東京:同朋舍,1999.
,「研究フォーラム新府兵制論: 唐代史の新たな理解のために」,『歴史
と地理』574, 2004.
石田勇作,「唐府兵負擔考―律令法規からみたる―」,『上智史學』24,1979.
, 「唐府兵負擔についての再考」, 『(日野開三郎博士頌壽記念論集)中國
社會制度·文化史の諸問題』,東京:中國書店,1987.
,「(書評)氣賀澤保規著『府兵制の研究―府兵兵士とその社會―』」, 『駿
台史學』109, 2000.
,「(書評・新刊紹介)氣賀澤保規著『府兵制の研究―府兵兵士とその社
會一』」,『唐代史研究』3, 2000.
平田陽一郎,「唐代兵制=府兵制の概念成立をめぐって一唐・李繁『鄴候家傳』の
史料的性格と位置づけを中心に一」、『史觀』147, 2002.
36, 2014.
山下將司,「隋唐初の河西ソグド人軍團―天理圖書館藏『文館詞林』「安修仁墓碑
銘」殘卷をめぐって」,『東方学』110,2005.
,「北朝末〜唐初におけるソグド人軍府と軍團」,『アジア遊學』173,
2014.

#### 2. 학술사 관련 논저

- 菊池英夫,「濱口重國(1901~1981)」, 今谷明 等 編, 『20世紀の歴史家たち』 2, 東京: 刀水書房, 1999.
- 鈴木一郎,「(回想)濱口重國先生」,『東北學院大學論集』(歷史學地理學) 38(史學 科創立40周年記念特輔號), 2005.
- 日野開三郎,「日野開三郎博士自撰年譜」,『(日野開三郎博士頌壽記念論集)中國社會制度·文化史の諸問題』,東京:中國書店,1987.
- 堀敏一,「栗原益男先生年譜著作目録」,『(栗原益男先生古稀記念論集)中國古代 の法と社會』, 東京: 汲古書院, 1988.

- 中村裕一,「布目潮楓博士略年譜」,『布目潮楓中國史論集』下,東京: 汲古書院, 2004
- 谷川道雄, 『中國史とは私たちにとって何か―歴史との對話の記録―』, 名古屋: 河合文化教育研究所, 2003.
- 池田熊一,「菊池英夫教授山崎利男教授の古稀の雅齢を祝う」,『(中央大學文學部史學科)紀要』45,2000.
- 関斗基 編, 『中國史時代區分論』, 서울: 創作과 批評社, 1984. http://uci.or.kr/G701:B-00047829928
- 內藤虎次郎,『支那近世史』,神田喜一郎內藤乾吉 共編,『內藤湖南全集』 10, 東京: 筑摩書房,1969(原刊: 『中國近世史』,東京: 弘文堂,1947.)
- 内藤胡南研究會,『内藤胡南の世界一アジア再生の思想』,名古屋: 河合文化教育研究所,2001.
- 小松浩平, 「内藤湖南における東アジア觀の再檢討」, 『教育論叢』55, 2012.
- 楊棟梁,「在學識與良知之間——國策學者內藤湖南的'支那論'」,『史學月刊』 2014-7.
- 加藤繁、「支那と武士階級」、『史學楽[誌』 50-1、1939、
- 宮崎市定、『東洋における素朴主義と文明主義の社會』、東京: 富山房、1940.
- 川勝義雄谷川道雄,「中國中世史研究における立場と方法」,中國中世史研究會編, 『中國中世史研究』東京:東海大學出版會,1970.
- 谷川道雄,「中國史の時代區分問題をめぐって―現時點からの省察―」,『史林』 68-6, 1985.
- 3. 일본 근현대사 관련 논저
- 하정열, 『일본의 전통과 군사사상―일본자위대의 뿌리를 찾아서』, 서울: 팔복원, 2004.
  - http://uci.or.kr/G901:A-0008566299

- 한상일, 『日本 軍國主義의 形成過程』, 서울: 한길사, 1982. http://uci.or.kr//G901:A-0008370089
- 加藤陽子,『徴兵制と近代日本 1868-1945』, 東京: 吉川弘文館, 1996. http://uci.or.kr/G500:1310377-02012013322429
- 藤原彰,『日本軍事史』,東京:日本評論社,1987. http://uci.or.kr//G901:A-0008651803
- 須山幸雄、『天皇と軍隊』、東京: 芙蓉書房、1985、
- 雄谷光久,『日本軍の人的問題と問題點の研究』,東京: 國書刊行會, 1987. http://uci.or.kr//G901:A-0008414272
- 伊香俊哉,『滿洲事變から日中全面戰爭へ』(『戰爭の日本史』 22), 東京: 吉川弘 文館, 2007.
- 中村政則,『戰後史』, 東京: 岩波書店, 2005.
- 清水一彦, 「"もはや「戦後」ではない"という社會的記憶の構成過程」, 『江戸大學 紀要』25, 2015.

# 

礪波護、「唐の律令體制と宇文護の括戸」、『東方學報』41.1970. 大澤正昭、「唐末の藩鎭と中央權力―徳宗・憲宗期を中心とて―」『東洋史研究』 32-2 1973辻正博、「唐朝の對藩鎭政策について―河南「順地」化のプロセス―」、『東洋史研究』 46-2. 1987. 「草創期の敦煌學と日本の唐代法制史研究」『草創期の敦煌學―羅・ 王兩先生東渡90周年記念日中共同ワークショップの記録―』 東京: 知 泉書館. 2002 . 「麹氏高昌國と中國王朝」 夫馬進 編 『中国東アジア外交交流史 の研究』 京都: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07 中砂明德、「後期唐朝の汀淮支配一元和時代の一側面一」、『東洋史研究』 47-1. 1988 . 「劉後村と南宋士人社會」、『東方學報』66. 1994. .「士大夫のノルムの形成<mark>一南未時代一」、</mark>『東洋史研究』54-3, 1995. 平田陽一郎・山下將司、「「唐・翟天徳墓誌」の譯注と考察」、『沼津工業高等専門 學校研究報告』50. 2016. 平田陽一郎、「史素巖墓誌」、石見清裕編、『ソグド人墓誌研究』、東京: 汲古書 院, 2016. . 「唐・慕容曦輪墓誌」の譯注と考察」. 『沼津工業高等専門學校研究報 告』54. 2020. 山下將司、「安史の亂におけるソグド人李拘玉の事績について」、『史艸』59,2018. . 「漢文墓誌より描く六世紀華北分裂期のソグド人」. 『日本女子大學紀 要(文學部)』69. 2019 『メトロポリタン史學』15. 2019

(Abstract)

The Motivation and Arguments of the Research in the History of Military System of Tang Dynasty in Japanese Academia

Lee, Ki-chon

The research in the history of Tang dynasty's military system in Japanese academia has been conducted by 'the experience of war' as the time axis and 'schools of thought' as the space axis. The early scholars who experienced the war were cognizant of the fact that military system was not the matter of right and wrong but the experience of survival.

It originated from the experience of war why scholars of the war generation, such as Hino Kaisaburo who suffered from a spine fracture produced by torpedo attacks, Kurihara Masuo who lost all but one comrade in the war, and Tanigawa Michio who was conscripted into the army as he matriculated at university on the verge of defeat in the war, and scholars of the post—war generation had different perspectives on the military system.

Hamaguchi Shigekuni focused on the matter of the biggest anguish of people, namely military service, and Kurihara Masuo compared military provinces in the late Tang to Japan's warlords in the 1930s by a common denominator 'mutiny', and sought an inevitable principle in history which is 'Restrain Military provinces, Encourage the Cabinet.' The motive behind their researches also came from the experience of war.

Scholars of the war generation were divided into two camps, Tokyo university and Kyoto university. They heavily debated the utility of the conscription system and the burden of military service. On the contrary, scholars of the post—war generation did not have scholarly debates between schools, but rather had a tendency to conduct individual research focusing on specific cases. They tended to focus on excavation of new historical sources and individual research, but have not yet presented 'the zeitgeist

#### **172** | 軍史 第117號(2020, 12.)

of Tang dynasty.'

Keywords: Hamaguchi Shigekuni, Hino Kaisaburo, Kurihara Masuo,

Tanigawa Michio, Kikuchi Hideo, the System of territorial soldiery,

Conscript-recruits, Military governors, Military provinces,

Expansionism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0, No. 117, pp. 173–213 https://doi.org/10.29212/mh.2020..117.173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대몽전쟁기 西海道·北界에서의 海島入保策 추진 양태와 군사적 성격

강재광\*

- 1. 머리말
- 2. 1231년 西海道・北界 諸州의 海島入保 추진
- 3. 江華遷都 이후 西海島·北界 諸州의 海島入保 추진과 대몽전투 戰果
- 4. 맺음말 西海道・北界 諸州의 海島入保策 실행의 軍事的 特性 -

# 1. 머리말

고려는 對蒙戰爭期에 몽골군의 騎兵隊를 중심으로 한 위력적 인 速度戰을 무마시키고 연해안 州縣民·別抄軍을 섬 안으로 옮 겨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한편 몽골군 후방지대의 약점을 노

<sup>\*</sup> 한국학중앙연구원 백과사전편찬실 책임연구원

려 기습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海島入保策을 시행하였다.1) 海島入保 사례는 1231년(고종 18) 제1차 대몽전쟁 때부터 西海道·北界의 여러 고을에서 발견되거니와2), 해도입보책은 몽골의 군사력에 비해 열세였던 고려가 그들의 침공에 대해 장기적으로 맞설 수 있었던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3) 1232년(고종 19) 6월의 江華遷都는 비록 崔瑀政權이 전격적으로 강행한 측면이 있으나 해도입보책의 결정판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이후 몽골이 出陸還都(開京還都)를 최우선 강화조건으로 내세웠을 만큼 출륙문제는 麗·蒙 사이에서 외교적으로 중대한 현안이었다.

그동안 고려시대사 사학계에서 대몽전쟁기 고려가 구사한 해 도입보책에 대해서 여러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다. 먼저 윤용혁 은 고려무인정권이 입안하고 강행하였던 해도입보책의 시행 배 경 및 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하였고, 고려가 구사한 해도입보책 에 대응하기 위한 몽골 측의 해도침공 등 전략변화 모습을 정밀 하게 살펴보았다.4) 다음으로 강재광은 대몽전쟁기 해도입보책에 따른 고려의 주요 戰略海島5) 20여 개를 도출해내고 서남해안

<sup>1)</sup> 고려시대사 학계에서 그동안 對蒙戰爭期 海島入保·海島入保策에 대한 연구 성과 는 다음과 같다.

尹龍爀,「고려의 海島入保策과 몽고의 戰略變化-麗蒙戰爭 전개의 一樣相-」,「歷史教育」32, 1982; 姜在光,「對蒙戰爭期 崔氏政權의 海島入保策과 戰略海島」,「軍史」66, 2008;「對蒙戰爭期 서·남해안 州縣民의 海島入保抗戰과 海上交通路」,「지역과역사」30, 2012; 윤경진,「고려후기 北界 州鎭의 海島入保와 出陸 僑寓」,「震檀學報」109, 2010;「고려 대몽항쟁기 南道지역의 海島 入保와 界首官」,「軍史」89, 2013; 姜鳳龍,「몽골의 침략과 고려 무인정권 및 삼별초의 '島嶼海洋戰略' -그 동아시아적 의의-」,「東洋史學研究」115, 2011; 강재광,「1255~1256년 槽島・牙州海島 대상지 비정과 海戰의 影響」,「軍史」93, 2014.

<sup>2) 『</sup>高麗史』 권23, 高宗 18년 9월 丁酉日條 및 『高麗史』 권58, 志12, 地理3 참조.

<sup>3)</sup> 尹龍爀, 『高麗對蒙抗爭史研究』, 一志社, 1991.

<sup>4)</sup> 尹龍爀,「고려의 海島入保策과 몽고의 **戦略變化-麗蒙戦**争 전개의 一様相-」,『歴史 教育』32, 1982.

<sup>5)</sup> 姜在光은 對蒙戰爭期에『高麗史』・『高麗史節要』에 등장하는 海島들 가운데 대하천

전략해도에서의 해상전투 승리 사례들을 정리하면서 전략해도의 전술적 중요성을 강조하였다.6) 한편, 윤경진은 대몽전쟁기 해도 입보가 界首官 중심으로 상급 고을 수령이 섬으로의 입보를 실행하였다고 보았으며7), 기존 학설과는 다르게 대몽전쟁기 해도 입보는 1232년(고종 19)에서야 시작되었다고 해석하였다.8)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견해는 조금씩 다르지만 최씨무인정권이 구사한 해도입보책의 실행 배경 및 추진 양태, 해도입보의 성과 및해도전투 전과, 그리고 투몽사태 등 한계점에 이르기까지 전쟁사·대몽항전사 관점에서 이해의 지평을 넓혀주었다.

이글에서 필자는 그간의 연구업적을 토대로 하여 대몽전쟁기 해도입보 추진 사례와 戰果를 서해도 · 북계에 국한시켜 상세하게 분석해보고, 서해도 · 북계에서 실행된 해도입보책의 군사적특성 및 역사적 성격을 조명하고자 한다. 필자가 해도입보책 시행 지역을 서해도 · 북계로 국한한 것은 이들 지역에서 1231년 대몽전쟁 개시와 더불어 해도입보 사례가 산견되고, 1232년 이후 고려의 수도로 자리매김한 江都를 1차적으로 방어하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전략해도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제 I 장에서는 1231년 제1차 대몽전쟁 당시 서해도 · 북계에서 추진된 해도입보 사례를 모두 망라하여 해도입보 추진 주체, 해도입보 시기, 입보한 해도 등을 정밀하게 탐색해보고자 한다. 특히 이 章에서는 해도입보 추진 주체가 고을 수령인지 국가인지에 대해서 試論的인 논의를 해볼 것이다. 또한, 서해도 ·

하구에 위치하면서도 육지와 가까우며 전략적으로 중요한 입지를 지니고 있어서 州縣民·別抄軍이 입보해 있거나 몽골군과의 海上戰鬪가 벌어졌던 주요 해도를 戰略海島라고 규정한 바 있다(姜在光,「對蒙戰爭期 崔氏政權의 海島入保策과 戰略海島」、『軍史166, 2008, 30쪽).

<sup>6)</sup> 姜在光, 앞의 논문, 『軍史』66, 2008.

<sup>7)</sup> 윤경진, 「고려 대몽항쟁기 南道지역의 海島 入保와 界首官」, 『軍史』89, 2013.

<sup>8)</sup> 윤경진, 「고려후기 北界 州鎭의 海島入保와 出陸 僑寓」, 『震檀學報』109, 2010.

북계 고을의 해도입보가 몽골군의 예봉을 회피하기 위한 피난의 성격도 있지만 고려 三軍의 洞仙驛戰鬪·安北府戰鬪 수행을 위 한 사전 준비 작업이라는 관점에서 논의의 폭을 확장시켜보려 한다.

다음으로 제Ⅲ장에서는 강화천도 이후 서해도·북계 고을들의 해도입보 추진 樣態를 모두 살펴본 후 1231년의 해도입보와달라진 점은 어떤 측면이 있는지 제시해보고, 해도입보책을 유지한 서해도·북계 전략해도의 대몽전투에서의 戰果를 찾아보고자 한다. 아울리 대몽전쟁 말엽 전략해도에 입보한 주현별초군·주현민의 謀叛 및 投蒙事態의 원인을 밝혀내보고, 투몽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江都朝廷의 제반 조치를 분석하여 고려무인정권이 끝까지 해도입보책을 강경하게 고수하려 했음을 설파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 IV 장에서는 대몽전쟁기 서해도 · 북계에서 추진된 해도입보책의 군사적 특성에 주안점을 두고서 이들 지역에서시행된 해도입보책의 독자적인 특징을 적시하고자 한다. 이 章에서 서해도 · 북계에서의 해도입보책 시행은 江都 북방의 해상로를 수호하여 고려 수도인 강도를 지켜냈다는 점, 북계 전략해도에 京別抄9)를 배치시켜 해상 방어력을 배가시켰다는 점, 대몽전쟁 말기에 北界兵馬使營이 서해도 · 북계의 주요 전략해도로옮겨가면서 전략해도 중심으로 대몽항전을 이끌었다는 점 등을 강조하려 한다.

<sup>9)</sup> 京別抄는 州縣別抄와 구별되는 江都에 있던 별초, 곧 江都別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對蒙戰爭期 고려의 중추적인 부대였던 三別抄의 다른 표현으로 생각해볼 여지도 있다(강재광,「對蒙戰爭期 고려 水軍의 활동 양상과 戰爭史的 의미」,「한국중세사연구」57, 2019, 53쪽의 각주 30 참조).

## 2. 1231년 西海道·北界 諸州의 海島入保 추진

1231년(고종 18) 8월 몽골 제1차 침입이 개시되자 고려는 淸野入保戰術로 맞서 항전했지만, 북계 興化道·雲中道의 諸城이함락되고 龜州城·慈州城 등에서만 고군분투하는 형세로 수세에몰리게 되었다. 몽골군이 西海道까지 남하해오자 대몽전쟁기 최초의 해도입보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관련 내용을 아래의 사료를 통해 살펴보자

A. 丁酉日에 몽골군이 黃州·鳳州까지 침입해오자 두 州의 수령은 백성을 이끌고 鐵島로 入保하였다.(「高麗史」권23, 高宗 18년 9월 丁酉日條)<sup>10)</sup>

위의 사료 A에서 1231년 9월 丁酉日(14일)에 몽골군이 黃州· 鳳州까지 침입하자 황주·봉주의 수령이 백성을 이끌고 鐵島로 入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11)</sup> 황주·봉주까지 남하한 몽골군 은 撒禮塔의 本陣이 아니라 전체 몽골군 중에서 별동대였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sup>12)</sup> 황주·봉주 수령의 철도 입보를 두고서 고 을 수령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sup>13)</sup> 그러나

<sup>10) 「</sup>高麗史」刊23, 高宗 18년 9월 丁酉日條, "丁酉 蒙兵至黃·鳳州 二州守率民 入保 鐵島"

<sup>11)</sup> 사료 A에서 몽골군이 黃州·鳳州 방면으로 침입한 것이 1231년(고종 18) 9월 정 유일(14일)이므로 黃州·鳳州의 鐵島 入保는 9월 14일 이후의 일이라고 생각된다.

<sup>12) 1231</sup>년(고종 18) 9월 丁酉日에 西海道 黃州·鳳州까지 남하한 몽골군은 몽골 南 路軍 소속으로서 唐古·蒲桃·迪巨 元帥가 이끄는 別動隊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sup>13)</sup> 사료 A의 문맥으로만 따져보면 黃州·鳳州 수령의 자의적이면서도 독단적인 결정에 의해 鐵島 入保가 이루어진 셈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여러 정황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황주·봉주 수령이 인근 山城으로 피난하지 않고 철도에 들어갔다는 것은 국가의 명령을 따랐을 개연성을 암시해 준다<sup>14)</sup>. 이와연관하여 아래의 사료를 통해서 황주·봉주의 철도 입보를 당시급박했던 제1차 대몽전쟁 전개과정 속에서 새롭게 해석해 보고자 한다.

- B-1. 乙酉日에 宰相들이 崔瑀의 집에 모여 三軍을 출동시켜 몽골군을 방어할 것을 의논하였으며, 大將軍 蔡松年을 北界兵馬使로 삼고 여러 道에서 군사를 징발하였다.(『高麗史』권23, 高宗 18년 9월 乙酉日條)<sup>15)</sup>
- B-2. 壬辰日에 三軍이 출정하였다.(『高麗史』권23, 高宗 18년 9월 壬辰日條)<sup>16)</sup>
- B-3. 三軍이 洞仙驛에 주둔했는데, 해질 무렵에 첩자가 와서 적이 공격해 올 기미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삼군이 그 말을 믿고 말안장을 풀어놓고 쉬고 있었다. 어떤 사람이 산에 올라 외치기를, "오랑캐 군사가 이르렀다."라고 하니, 軍中이 크게 놀라 모두 무너졌다. 몽골군 8,000여 인이 갑자기 이르자, 上將軍 李子晟과 장군 李承子‧盧坦 등 5,6이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는데, 이자성은 날아온 화살에 맞고, 노탄은 창에 찔렸으나 겨우 죽음을 면하였다. 삼군이 비로소 집결하여 싸우니, 몽골군이 조금 물러났다가 다시 와서 우리의 右軍을 공격하였다. 散員 李之茂‧李仁式 등 4,5인이 이를 막아내었다. 馬山의 草賊 두 명이 몽골인을 쏘았는데, 시위소리가 나는 대로 거꾸러졌다. 관

<sup>14)</sup> 강재광, 「對蒙戰爭期 고려 水軍의 활동 양상과 戰爭史的 의미」, 『한국중세사연구』 57, 2019, 46쪽.

<sup>15) 「</sup>高麗史」刊23, 高宗 18년 9월 乙酉日條, "九月 乙酉 宰相會崔瑀第 議出三軍 以 禦蒙兵 以大將軍蔡松年爲北界兵馬使 又徵諸道兵"

<sup>16) 「</sup>高麗史」 223, 高宗 18년 9월 壬辰日條, "壬辰 三軍啓行"

군이 勝勢를 타 공격하여 물리쳤다.(『高麗史節要』권16, 高 宗 18년 9월조)<sup>17)</sup>

위의 사료 B-1에서 1231년 9월 乙酉日(2일)에 고려 조정의 재상들이 무인집정 崔瑀의 집에 모여 三軍을 출정케 하여 몽골군을 방어할 것을 의논하였고, 최우는 大將軍 蔡松年을 北界兵馬使로 삼아 여로 道에서 군사를 징발케 하였음을 알 수있다. 몽골군이 이미 1231년 8월 하순에 咸新鎭의 항복을 받아내고 鐵州를 도륙한<sup>18)</sup> 것을 상기한다면, 최우가 私第에 재상들을 모아놓고 對蒙防禦策 회의를 연 것은 조금 늦은 감이었다. 그렇더라도 고려 삼군이 급히 편제되어 같은 해 9월 壬辰日(9일)에 출정하였고(B-2), 황주·봉주 수령이 철도에 입보한 이후 洞仙驛戰鬪를 치렀다(B-3).

악전고투하며 몽골군을 겨우 물리쳤던 동선역전투가 언제 치러졌는지 위의 B-3의 사료에서는 알 수 없으나, 『고려사절요』 고종 18년 9월의 여러 기사들의 배치 순서에 의하면, 동선역전투 기사는 龍州 함락 기사와 宣州·郭州 함락 기사 사이에 끼여 있다. 물론『고려사절요』고종 18년 9월의 여러 기사들은 날짜를 전혀 알 수 없고『고려사』에서도 동선역전투 기사가 누락되어 있다. 19) 그렇더라도 『고려사』 고종세가에서 고종 18년 9월의 여러

<sup>17) 「</sup>高麗史節要」刊16, 高宗 18년 9월조, "三軍屯洞仙驛,會日暮, 諜者來報無財變. 三軍信之,解鞍而息. 有人登山呼曰,'狄兵至矣'軍中大驚皆潰. 蒙兵八千餘人突至,上將軍李子晟將軍李承子盧坦等五六人殊死戰,子晟中流矢,坦中槍僅免. 三軍始集而與戰,蒙兵稍却,復來,擊我右軍. 有散員李之茂李仁式等四五人拒之. 馬山賊二人射蒙人,應弦而仆. 官軍乘勝,擊走之."

<sup>18) 『</sup>高麗史』 223, 高宗 18년 8월 壬午日條, "壬午 蒙古元帥撒禮塔圍咸新鎮, 屠鎮州."

<sup>19) 「</sup>高麗史節要」에서는 洞仙驛禪城 기사가 수록되어 있는 반면 「高麗史」에서는 이 기사가 실리지 않았다. 하지만 「高麗史節要」에서 동선역전투 기사 배열 순서를 통해서 「高麗史」에서 비록 동선역전투가 기록되지 않았더라도 「高麗史節要」의 기사배열 순서를 감안하여 동선역전투 발발 시점을 추정할 수 있다.

기사들은 날짜 확인이 가능하다. 『고려사』고종세가에 의하면, 용주가 몽골군에게 항복하였다는 사실이 보고된 시점은 1231년 9월 癸卯日(20일)이고<sup>20)</sup>, 선주·곽주 함락은 9월 壬子日(29일)이다.<sup>21)</sup> 그렇다면, 동선역전투는 1231년 9월 20~29일 사이에 치러졌음이 분명하다.

황주·봉주 수령이 백성을 거느리고 철도에 입보한 시점이 1231년 9월 14일 이후이고, 동선역전투가 같은 달 20~29일 사이에 발발했다면, 황주·봉주의 철도 입보와 동선역전투 전개의 상관관계를 유추할 수 있다. 우선 洞仙驛이 서해도 황주에 위치해 있고<sup>22)</sup> 봉주도 황주에 인접해 있는 고을인 점이 눈에 띄며, 고려 삼군이 주둔한 동선역에서 몽골군과의 대규모전투가 발생했던 점을 상기해야 한다. 다음으로 황주·봉주의철도 입보에서 멀지 않은 시점에 황주 동선역에서 동선역전투가 발발했다는<sup>23)</sup> 점도 각별히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1231년 9월 2일에 대장군 채송년이 북계병마사에 신규 임명되어 여러도의 군사를 징발하는 임무를 맡았던 점도 가볍게 볼 수 없다. 기존의 북계병마사 차犀는 내륙로의 군사거점인 龜州城에 입보하여 몽골 北路軍에 맞서 항전하고 있었으므로<sup>24)</sup> 최우는 새롭게 북계병마사 1인을 추가 임명하여 병력 징발 임무와 더불어

<sup>22) 『</sup>高麗史』 218, 毅宗 22년 3월 壬午日條, "壬午 住蹕黃州洞仙驛, 宴于碧波亭, 又泛舟南溪, 至夜宴樂. 賜樂工及雜戲人白金三斤."

<sup>23)</sup> 黃州·鳳州의 鐵島 入保가 1231년(고종 18) 9월 14일이고, 洞仙驛禪閒子 같은 달 20~29일 사이에 치러졌다면, 鐵島 入保와 洞仙驛禪閒 사이의 간극은 6~15일 정도 차이가 난다. 최소 기간으로 상정한다면 洞仙驛禪閒는 黃州·鳳州의 鐵島 入保 이후 1주일 정도 지나서 곧바로 치러졌을 가능성이 있다.

<sup>24) 『</sup>高麗史』 권103, 列傳16, 朴犀傳·金慶孫傳 및 『高麗史節要』 권16, 高宗 18년 9월 조 참조.

고려 삼군의 전투수행과 연관된 부수적인 여러 업무를 맡겼다고 판단된다. 새롭게 임명된 북계병마사 채송년은 급한 대로 개경의 中央軍뿐만 아니라 개경에서 가까운 楊廣道·西海道 중심으로 군사를 징발했을 것으로 여겨지며, 그의 직함이 북계병마사였으므로 그는 삼군을 따라 북상하여 任地인 安北都護府로<sup>25)</sup>나아가려 했을 것이다.

몽골군 별동대가 1231년 9월 癸巳日(10일)에 西京城 함락에 실패했으나<sup>26)</sup> 곧장 서해도 방면으로 남하하고 있다는 급보를 고려 삼군 지휘부가 접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소문은 西京留守 혹은 황주·봉주 수령이 전파했을 개연성이 있다. 특히 몽골군 침입을 눈앞에 둔 황주·봉주 수령은 그 당시 황주 쪽으로 북상하고 있었던 고려 삼군 지휘부에 사태의 위급성을 알리고 긴급하게 피난하는 것을 건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27)</sup> 이에 따라 고려 삼군 내에서 최우의 의사를 대신하고 있었던 後軍陳主大集成과 병력 징발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북계병마사채송년은 황주·봉주 두 고을의 해도입보를 허락했을 것이며,고려 삼군 원수부는 차후 몽골군과의 一戰을 위해 황주 동선역으로 나아갔던 것이라 보아지다

<sup>25)</sup> 北界兵馬使(西北面兵馬使)의 軍營은 청천강 河岸의 安北都護府에 소재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邊太燮,「高麗 兩界의 支配組織」,『高麗政治制度史研究』, 一潮 閣. 1971, 214쪽).

<sup>26) 「</sup>高麗史」권23, 高宗 18년 9월 癸巳日條, "癸巳 蒙兵攻西京城, 不克." 1231년 9월 癸巳日(10일)에 西京城 함락에 실패한 몽골군은 唐古·蒲桃·迪巨가 이끄는 몽골 南路軍 소속의 別動隊로 추정된다. 이들이 西京城 공함에 실패했으나 곧장 남하하 여 西海道 黃州·鳳州 방면으로 내려갔고 차후 고려 三軍과 洞仙驛戰鬪를 치렀다고 여겨진다.

<sup>27)</sup> 黃州·鳳州 수령이 몽골군 별동대의 침입을 받을 처지에 몰렸더라도 국가의 허락 없이 독단적으로 海島에 入保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고을 수령이 몽골군의 침입에 대항하여 담당 고을을 지키기 위한 어떠한 노력이 없이 무단으로 섬에 도피하는 행위는 용납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黃州·鳳州 수령은 어떤 식으로든 海島入保에 대하여 국가의 승낙을 받으려 했다고 생각된다.

위의 사료 B-3에서, 삼군이 동선역에 주둔했을 때 첩자가 와서 몽골군이 공격해 올 기미가 없다고 보고한 점이 눈에 띈다. 나중에 첩자의 보고는 몽골군 기습으로 인하여 허위로 드러났지만, 삼군이 황주 인근에 몽골군이 와 있었다는 점은 인지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8) 몽골군 선봉대가 1231년 9월 14일에 황주·봉주까지 남하하였고, 동선역전투가 9월 20일 이후에 발발했으므로 몽골군 선봉대는 일정 기간 황주 일대에서 머물며 전열을 가다듬으면서 고려 삼군의 동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몽골 기병 8천은 첩자의 보고를 사실대로 믿고 동선역에서 野營을 준비하던 고려 삼군을 기습하여 큰 타격을 입혔으나삼군 내에서 右軍에 편제된 장교들의 분전과 草賊들의 집중 화살 사격으로 퇴각하게 되었다.

필자는 고려 삼군 지휘부와 북계병마사 채송년이 황주·봉주 수령의 철도 입보를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해 보았는데, 이러한 추정이 큰 무리가 아니라면, 고을 수령이 독단적으로 해도입보 를 결정하고 실행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전시 명령체계에 따랐 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고려사』地理志에서는 1231년에 해도입 보를 추진한 북계 여러 고을들의 사례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아래의 사료를 살펴보기로 하자.

C-1. 高宗 18년에 몽골군을 피하여 紫燕島로 들어갔다가 元宗 2년 에 육지로 나왔다.(『高麗史』권58. 志12. 地理3 宣州條)<sup>29)</sup>

<sup>28)</sup> 洞仙驛에서 野營을 준비하던 고려 三軍은 黃州·鳳州 인근까지 몽골군이 출몰했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몽골군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지는 못한 듯 여겨진다. 몽골군이 洞仙驛 근처에서 매복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前哨兵을 통해 몽골군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몽골군이 공격해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첩자의 말을 믿게 됨으로써 몽골 기병 8천으로부터 기습을 받아 일시 큰위기에 빠졌던 것이라 하겠다.

<sup>29) 『</sup>高麗史』 258, 志12, 地理3 宣州條, "高宗十八年, 避蒙兵, 入于紫燕島, 元宗二年,

- C-2 고종 18년에 몽골군이 昌州를 함락시키자 고을 사람들이 紫 燕島로 들어갔다가 원종 2년에 육지로 나와 郭州의 바닷가에 임시로 거처하였다.(『高麗史』권58. 志12. 地理3 隨州條)30)
- C-3. 고종 18년에 몽골군의 침구로 城邑이 폐허가 되었다.(『高麗 史』刊58. 志12. 地理3 昌州條)31)
- C-4 고종 18년에 몽골군을 피해 海島로 들어갔다가 원종 2년에 육지로 나와 嘉山의 西村에 임시로 거처하면서 延山府에 예 속되었다.(『高麗史』권58. 志12. 地理3 雲州條)32)
- C-5. 고종 18년에 몽골군을 피해 海島로 들어갔다가 원종 2년에 육지로 나와 嘉州에 소속시켰다.(『高麗史』권58. 志12. 地理3 博州條)33)
- C-6 (고종) 18년에 몽골군을 피해 海島로 들어갔다가 원종 2년에 육지로 나와 泰州·博州·撫州·渭州 등을 모두 이 군에 속 하게 하여 五城兼官을 삼았다.(『高麗史』권58, 志12, 地理3 嘉 州條)34)
- C-7. (고종) 18년에 몽골군을 피해 海島로 들어갔다가 원종 2년에 육지로 나와 隨州에 예속하였다.(『高麗史」권58. 志12. 地理3 郭州條)35)

出陸."

<sup>30) 『</sup>高麗史』 358, 志12, 地理3 隨州條, "高宗十八年, 蒙兵陷昌州, 州人入于紫燕島. 元宗二年,出陸,寓干郭州海濱"

<sup>31) 『</sup>高麗史』 258, 志12, 地理3 昌州條, "高宗十八年, 被蒙兵, 城邑丘墟."

<sup>32) 『</sup>高麗史』 358, 志12, 地理3 雲州條, "高宗十八年, 避蒙兵, 入于海島. 元宗二年, 出陸, 寓于嘉山西村, 隷延山府,"

<sup>33) 『</sup>高麗史』刊58. 志12. 地理3 博州條, "高宗十八年, 避蒙兵, 入于海島, 元宗二年, 出陸. 屬于嘉州."

<sup>34) 『</sup>高麗史』刊58, 志12, 地理3 嘉州條, "十八年, 避蒙兵, 入于海島. 元宗二年, 出陸, 以泰·博·撫·渭等州, 皆屬本郡, 爲五城兼官."

<sup>35) 『</sup>高麗史』刊58. 志12. 地理3 郭州條. "十八年, 避蒙兵, 入于海島, 元宗二年, 出陸, 隸隨州."

- C-8. 고종 18년에 몽골군을 피해 海島로 들어갔다가 (고종) 44년에 殷州에 병합시켰다. 원종 2년에 육지로 나와 安州의 속현이 되었다.(『高麗史』권58, 志12, 地理3 孟州條)<sup>36)</sup>
- C-9. 고종 18년에 몽골군을 피해 海島로 들어갔다가 원종 2년에 육지로 나와 渭州의 옛 성에 거처하면서 嘉州에 소속시켰다. (『高麗史』권58, 志12, 地理3 撫州條)37)
- C-10. 고종 18년에 몽골군을 피해 海島로 들어갔다가 원종 2년에 육지로 나와 嘉州에 소속시켰다.(『高麗史』권58, 志12, 地理3 泰州條)<sup>38)</sup>
- C-11. 고종 18년에 몽골군을 피해 海島로 들어갔다가 뒤에 육지로 나와 成州의 속현이 되었다.(『高麗史』권58, 志12, 地理3 殷州條)<sup>39)</sup>

위의 사료 C群에서, 1231년(고종 18)에 북계의 宣州·昌州·雲州·博州·嘉州·郭州·孟州·撫州·泰州·殷州 등 10개 州가 海島에 입보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이들 10개 주 중에서 興化道에 속한 것은 선주·곽주·가주·박주 등 4개 주이고, 雲中道에속한 것은 창주·운주·맹주·무주·태주·은주 등 6개 주이다. 흥화도·운중도에 속한 10개 주 중에서 몽골군에게 함락된 것이 사료에서 확인되거나 함락되었을 것이 확실시되는 고을은 선주·곽주·가주·태주·운주·창주·박주 등 7개 주이다. 40) 몽골군에

<sup>36) 「</sup>高麗史」258, 志12, 地理3 孟州條, "高宗十八年, 避蒙兵, 入海島. 四十四年, 併于殷州. 元宗二年. 出陸爲安州屬縣"

<sup>37) 「</sup>高麗史」刊58, 志12, 地理3 撫州條, "高宗十八年, 避蒙兵, 入于海島, 元宗二年, 出陸, 處渭州古城, 屬嘉州."

<sup>38) 「</sup>高麗史」 1358, 志12, 地理3 泰州條, "高宗十八年, 避蒙兵, 入于海島, 元宗二年, 出陸, 屬于嘉州."

<sup>39) 『</sup>高麗史』 258, 志12, 地理3 殷州條, "高宗十八年, 避蒙兵, 入于海島. 後出陸, 為成州屬縣."

<sup>40)</sup> 宣州·郭州는 『高麗史』 223, 高宗 18년 9월 壬子日條에서, 雲州·泰州·嘉州는 『元史』 2120, 列傳7, 吾也而傳 및 『元史』 2149, 列傳36, 移刺揑兒傳 附 移刺買奴

게 함락되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는 고을은 맹주·무주·은주 등 3개 주이다.<sup>41)</sup> 대체적으로 이들 북계 諸州는 청천강 하구에 위치해 있거나 청천강 연안에 인접해 있는 고을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위의 사료 C-1·2에서, 선주·창주는 紫燕島에 입보하였다. 선주는 『고려사』고종세가에서 1231년 9월 29일에 함락된<sup>42)</sup> 사 실을 명시하고 있으며, 창주는 『고려사』지리지에서 몽골 침입을 받아 완전히 폐허가 되었음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선주·창주 가 입보한 자연도는 현재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동에 속해 있는 영종도이다. 북계의 선주·창주가 북계 소속의 섬이 아니라 남 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자연도에 입보한 것은, 국가의 명령에 의해서 해도입보가 이뤄졌을 개연성을 내포한다.<sup>43)</sup>

사료 C群에서 선주·창주의 海島入保處로 자연도만 나타날 뿐 나머지 운주·박주·가주·곽주·맹주·무주·태주·은주의 해도 입보처는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고 려사』 고종세가를 면밀히 살펴보면, 박주의 해도입보처는 葦 島<sup>44)</sup>임이 확인되고.<sup>45)</sup> 맹주의 해도입보처는 神威島<sup>46)</sup>임이 발견

傳에서 몽골군이 함락한 사실이 발견된다. 博州는 사료 상에서 몽골군에게 함락되었다는 기록이 없지만 博州가 嘉州와 泰州 사이에 위치하기 때문에 몽골군에게 함락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sup>41)</sup> 孟州·撫州·殷州는『高麗史』나『元史』 등을 통해서, 1231년 제1차 對蒙戰爭 당시 몽골군에게 함락되었다는 기록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 孟州·撫州·殷州는 몽골 北路軍으로부터 靜州·朔州·雲州·泰州·昌州 등이 함락당한 후 그들로부터 침입당할 위기에 몰리게 되자 北界의 어느 海島에 입보한 것이 아닌가 한다.

<sup>42) 『</sup>高麗史』卷23 高宗 18년 9월 壬子日條. "壬子 蒙兵陷宣·郭二州."

<sup>43)</sup> 강재광, 앞의 논문, 2019, 48~49쪽.

<sup>44)</sup> 葦島는 大寧江과 淸川江의 하류가 합류하는 곳에 위치한 섬이다.

<sup>45) 『</sup>高麗史」 224, 高宗 45년 5월 壬戌日條, "博州人避兵, 入保葦島. 國家遣都領郎將崔乂等, 率別抄鎮撫之, 州人反殺乂及指諭尹謙·監倉李承璡. 乂所領兵皆逃匿蘆葦閒, 跡而盡殺之, 遂投蒙古."

<sup>46)</sup> 神威島는 그 위치가 불분명하지만 청천강 하구에 위치한 자그마한 섬으로 추정된 다(강재광, 앞의 논문, 2019, 49쪽 각주20 참조).

된다. $^{47)}$  사료 C-5·8에서 박주·맹주가 1231년에 바다 섬으로 피난했다고 분명히 기술했으므로, 박주·맹주는 1231년부터 각기 위도, 신위도에 입보한 셈이 된다.

선주·창주·박주·맹주의 해도입보 사례를 제외하면, 운주·가주·곽주·무주·태주·은주의 해도입보처는 전혀 알 수가 없다. 『고려사』列傳 金方慶傳에 의하면, 김방경이 西北面兵馬判官이 되었을 때 몽골군이 공격해오자 북계 여러 城에서는 葦島에입보하였다는<sup>48)</sup> 사실이 주목된다. 위도에 박주뿐만 아니라 북계의 다른 여러 주들도 입보하였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운주·가주·곽주·무주·태주·은주 중에서 일부가 1231년에 위도에함께 입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sup>49)</sup> 한편, 운주·가주·곽주·무주·다중 하구에 위치한 葛島<sup>50)</sup>·艾島<sup>51)</sup>와 대동강하구에 있는 椵島에 입보하였을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

<sup>47) 『</sup>高麗史」刊24、高宗 44년 7월조、"蒙兵陷神威島、孟州守胡壽被害."

<sup>48) 『</sup>高麗史」 2104, 列傳17, 金方慶傳, "後爲西北面兵馬判官,蒙古兵來攻,諸城入保 葦島. 島有十餘里,平衍可耕,患海潮不得墾. 方慶令築堰播種,民始苦之,及秋大熟, 人賴以活. 島又無井泉、常陸汲. 往往被虜. 方慶貯雨爲池. 其患遂絶"

<sup>49)</sup> 雲州·嘉州·郭州·撫州·泰州·殷州 중 일부 州가 1231년 제1차 對蒙戰爭 당시 葦島에 入保하였다는 사료적 증거는 없다. 하지만 『高麗史』 列傳 金方慶傳에서 北界 여러 城이 몽골 침입 때 葦島에 入保하였다고 하였으므로 博州 인근에 있던 北界 고을들이 葦島에 入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sup>50)</sup> 葛島는 『大東地志』권24, 平安道 宣川 島條에 葛島가 등장한다. 갈도는 고려시 대 당시 宣州 소속이었다. 이 섬은 지금의 북한 평안북도 宣川郡 葛里島로 여 겨진다.

<sup>51) 「</sup>大東地志」 권24, 平安道 龍川 島條 및 「輿地圖書」 冊30, 平安道 定州牧 定州地圖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北界 방면에 艾島가 2개나 존재했음을 포착할 수 있다. 龍州 관할의 艾島와 嘉州·定州 경계에 위치한 청천강 하구의 艾島이다. 필자는 대몽전투가 발생하였던 艾島가 龍州 관할의 艾島일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姜在光, 앞의 논문, 「軍史」 66, 2008, 39쪽). 그러나 애도는 龜州 관할이라고 되어 있는 사료 내용(「高麗史」 권25, 元宗 4년 7월 乙巳日條, "秋七月 乙巳 日本商船三十人漂風, 到龜州艾島, 命賜糧護送")을 통해서 볼 때, 대몽전투가 발발한 애도는 龍州 관할이라기보다는 嘉州·定州 경계에 있었던 龜州 관할의 艾島였다고 생각된다.

같도·애도·가도는 『고려사』고종세가에 등장하는 북계의 대표 적인 전략해도이기 때문이다.

위의 사료 C群에서는 선주 등 10개 州가 1231년에 각기 입 보하였음을 알려주고 있으나 해도입보의 시점은 명시되어 있 지 않다. 선주·곽주가『고려사』고종세가에서 1231년 9월 29일 에 몽골군에게 함락되었다고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선주 · 곽 주의 해도입보는 같은 해 10월에서야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 운주 등 나머지 주들도 몽골군의 進攻에 따라 1231년 10월 중 에 정해진 해도에 입보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231년 10월 하순에 여ㆍ몽 사이에서 안북부전투가 치러졌고 이 大會戰에 서 몽골 南路軍이 승리하여 고려 삼군은 과반을 殺傷당했고 安北府城 안으로 들어가 수세에 몰렸던52) 것을 주목해야 한 다. 안북부전투 이후 몽골 주력군이 안북부성을 포위했을 뿐 만 아니라 청천강 하류 일대를 장악했기 때문에 이 전투 이후 에 선주 등 10주가 청천강을 통해 서해로 빠져나가기는 어려 웠을 것이다. 그렇다면 선주 등 10주는 안북부전투 이전에 모 두 해도입보를 완료했던 것으로 이해하여 볼 수 있다. 안북부 전투가 1231년 10월 하순에 발발했으므로 선주 등 10주는 같 은 해 10월 하순 이전에 해도입보를 실행하였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제부터는 선주 등 10주의 해도입보 추진 명령체계에 대하여 공구해 보도록 하자. 선주 등 10주의 수령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동시에 국가의 명령 없이 독단적으로 州鎮軍과 백성을 거느리고 해도에 임의대로 입보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선주·창주는 강화도 남쪽의 자연도(지금의 영종도)로 입보했는데. 이것은 국가가 몽골군의 침입으로 큰 피

<sup>52) 『</sup>高麗史』권23, 高宗 18년 10월 癸酉日條 참조.

해를 입은 선주·창주를 우선적으로 자연도에 입보케 한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53) 선주·창주는 비록 몽골군에게 함락되었으나 고을 수령과 백성이 자연도에 입보하여 국가의 통제를 받게 되었던 것이라 하겠다. 위도에 입보한 박주, 신위도에 입보한 맹주의 경우도 고을 수령의 독단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국가의 명령체계에 따른 것이었다고 이해된다. 해도입보처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운주·가주·곽주·무주·태주·은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러면 1231년 10월 북계 해도입보 추진 명령체계와 관련하여 선주 등 10주를 해도에 입보시킨 주체는 누구였을까? 선주 등 10주의 해도입보를 현장에서 직접 추진한 것은 북계병마사 채송 년과 서북면병마사 박서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안북부전투 이전 에 북계병마사 채송년과 서북면병마사 박서는 최우정권의 명령 을 받고 몽골군에게 함락당했거나 몽골군 침입 위기에 몰린 청 천강 인근 10주의 해도입보를 실행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동 선역전투 이후 안북부전투 직전까지 1개월 동안에는 안북부에 주둔한 고려 삼군과 북계병마사에게 전열을 가다듬을 시간적 여 유가 있었고 이때 선주 등 10주의 해도입보 계획이 입안되고 실 행되었다고 보면 무리가 없다.

황주·봉주 수령이 철도에 황급하게 입보했을 때에는 시간적여유가 없어서 최우정권이 입보명령을 직접 내리지 못했으나 선주 등 10주가 해도에 입보했을 때에는 최우정권이 안북부의 고려 삼군 지휘부에 위기에 처한 북계 고을의 해도입보 명령을 직접 내렸을 개연성이 크다. 물론 선주 등 10주의 해도입보는 북계병마사 채송년이 서북면병마사 박서의 협조를 얻어서 추진했을 것으로 본다. 서북면병마사 박서가 해도입보에 협조했다는

<sup>53)</sup> 강재광, 앞의 논문, 2019, 48~49쪽.

것은 龜州城 안에 泰州 副使와 泰州別抄가 입보하여 몽골 북로 군과 전투를 치르고 있었는데, 사료 C-10에서 태주가 1231년 북계의 어느 해도로 입보했다는 사실에서 추정할 수가 있다. 서 북면병마사 박서는 구주성과 가까우며 청천강에 인접한 고을들의 해도입보를 추진하면서 북계병마사 채송년을 도왔을 것이고, 북계병마사 채송년은 안북부에 머무르면서 청천강을 통한 흥화도・운중도 고을들의 해도입보를 총괄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국가에 의해 1231년 10월 하순 이전에 북계 흥화도·운중도 고을들에 대한 해도입보가 전격적으로 추진되자, 咸新鎭에서도 함신진 副使가 국가에 구원을 요청하였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아래의 사료를 통해 살펴보자.

D. 咸新鎭에서 보고하기를, "국가에서 만일 배(舟楫)를 보내준다면 내가 마땅히 성을 지키는 몽골사람 小尾生 등을 모두 죽이고, 다음에 온 성에 있는 것을 거두어서 배를 타고 개경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金永時 등 30명에게 배를 갖추어 보냈더니 과연 몽골사람을 거의 다 죽였는데, 小尾生은 먼저 알고 달아났으므로 副使 全僴이 아전과 백성을 거느리고 薪島에 入保하였다. 뒤에 全僴이 집안사람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개경으로 돌아오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高麗史節要』권16, 高宗 18년 겨움 10월조)54)

위의 사료 D를 살펴보면, 함신진 부사 全僴이 아전과 백성을 거느리고 薪島<sup>55)</sup>에 입보하였다가 후에 개경으로 배를 타고 오면

<sup>54) 「</sup>高麗史節要」刊16, 高宗 18년 겨울 10월조, "咸新鎮報曰, "國家若遣舟楫, 我當盡殺留城蒙人小尾生等, 然後卷城乘舟如京." 乃命金永時等三十人, 具舟楫以送, 果殺蒙人幾盡. 小尾生先覺亡去. 副使全僩率吏民入保薪島. 後僩挈家乘舟還京, 溺死."

<sup>55) 『</sup>大東地志』 224, 平安道 龍川 島條에 薪島가 기록되어 있고, 『輿地圖書』 冊23, 平安道 龍川府 龍川地圖에 薪島가 그려져 있다. 그러므로 薪島는 龍州 소속의 海島

서 溺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간이 신도에 입보하기 전에 개경 조정에 서신을 보내, 만일 국가에서 배(舟楫)를 보내준다면 함신진을 지키는 몽골인 小尾生 등을 모두 죽이고 배를 타고 개경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전하였다. 실제로 전간은 小尾生을 제외하고 함신진을 수비하던 몽골인들을 거의 다 제거하였으며 신도에 입보하는 데 성공하였다.

몽골군 점령지였던 함신진에서 전간이 개경 조정에 서신을 보내 해도입보를 시도한 내막은 무엇일까. 함신진 부사 전간은 1231년 10월 당시 몽골 북로군이 구주성전투에 2개월 정도 발목이 붙잡혀 있고 몽골 남로군 본진이 안북부전투를 수행하기위해 안북부 쪽으로 집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몽골군 점령 후방지역의 취약점을 활용하여 개경 조정과 연락했던 것이라 여겨진다. 56) 이와 더불어 생각이 미치는 것은, 전간이 국가의 주도로 청천강 연안에 인접한 북계 고을들의 해도입보가 추진되고있다는 소문을 접했을 가능성이다. 만일 전간이 북계 여러 고을들의 해도입보 추진 소문을 들었다면 그 자신도 몽골세력권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해도에 입보하는 것을 고려했을 법하다. 함신진 부사 전간에게 청천강 연안 고을들의 해도입보 실행 소식을 전한 주체는 안북부에 있던 북계병마사 채송년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다.

사료 C群과 사료 D의 시간적인 선후관계는 정확하게 말할 수 없으나, 『고려사절요』고종 18년 10월조 기사들의 배치 순서를 놓고 볼 때, 함신진의 신도 입보가 북계 諸州의 해도입보 추정시기보다 약간 늦은 1231년 10월 말에 실행된 것이 아닌가 한다.57) 국가에 의해서 청천강 연안의 북계 10주에 대한 해도입보

임을 알 수 있다. 薪島는 현재 평안북도 신도군 신도읍에 소속되어 있다.

<sup>56)</sup> 강재광, 앞의 논문, 2019, 47쪽.

<sup>57) 『</sup>高麗史節要』 高宗 18년 10월조의 기사 배치 순서를 보면, 咸新鎭의 薪島 入保

가 추진되고 있던 시기에 함신진 부사 전간이 북계 諸州의 해도 입보 소문을 접했을 가능성이 크며, 이후 개경 조정과 연락하여 해도입보를 실행했던 것으로 이해하여 볼 수 있다.

요컨대 1231년 9월에 서해도 황주 · 봉주의 철도 입보는 몽골 군 별동대가 황주 · 봉주 방면으로 급속히 남하하고 있었던 급박 한 상황 속에서 고려 삼군 지휘부와 북계병마사 채송년의 해도 입보 승낙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었고. 1231년 10월 하순 이전에 추진되었던 북계 선주 등 10주의 해도입보는 최우정권의 명령에 의해 북계병마사 채송년과 서북면병마사 박서의 상호협 조 하에 전격적으로 시행되었을 것으로 추정해 보았다. 선주 등 10주는 청천강 연안에 인접한 고을들로서 청천강 수로를 활용하 여 서해 바다로 빠져나갔으며, 선주·창주는 강화도 남쪽의 자 연도(영종도)에 피난하였고. 박주 등 여러 고을은 위도 등 청천 강 하구의 여러 전략해도에 입보할 수 있었다. 한편, 함신진의 신도 입보는 함신진 부사 전간이 개경 조정에 배(舟楫)를 요청 하여 최우정권이 수락함으로써 가능했는데. 청천강 연안의 선주 등 10주의 해도입보와는 성격이 다르며 선주 등 10주의 해도입 보 추정 시기(1231년 10월 21일 이전)보다 약간 늦은 1231년 10월 말에 실행된 것으로 여겨진다.

기사는 제2차 龜州城郡園, 東眞軍의 和州 침략 기사 뒤에 배치되어 있다. 그런데 「高麗史」에서 東眞軍의 和州 침략 기사는 1231년 10월 辛巳日(29일)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면, 咸新鎭의 薪島 入保는 1231년 10월 말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咸新鎭 副使 전간이 1231년 10월 말에 薪島에 入保했다면, 필자가 추정한 청천강 연안에 인접한 고을들의 해도입보 시기(1231년 10월 하순 이전)보다 약간 늦은 셈이 된다.

# 3. 江華遷都 이후 西海島・北界 諸州의 海島入保 추진과 대몽전투 戰果

1232년 6월 무인집정 최우가 강행하였던 강화천도는 개경의 대다수 문·무신의 반대에 직면했으나 해도입보책이 현실적으로 가장 유효한 대몽방어책임을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강화천도 이후 연해안 주현의 해도입보는 국가의 결단으로 시행되었으며, 몽골군이 침입해오면 해도입보 명령은 江都 조정(최씨무인정권) → 兩界兵馬使·五道按察使·三道巡問使 → 지방 수령(혹은 防護別監) → 주현민 순으로 하달되었다. 58) 이러한 해도입보명령 체계는 대몽전쟁기 내내 무인정권의 항몽정책 속에서 지속되었다.

고려가 몽골의 강력한 騎兵隊에 대항하여 지연전을 펼치고 적군으로부터 연해안 주현민과 별초군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시행한 해도입보책은 1231년 9~10월에 서해도·북계에서부터 먼저 시행되었음은 앞 章에서 살펴보았다. 1232년 강화천도 이후 해도입보책이 한층 강화되어 나갔으며, 강도 북방에 위치 한 서해도·북계 전략해도의 중요성은 더욱 배가되었다.59) 그 러면 먼저 강화천도 이후 서해도 방면의 해도입보 사례와 몽골 수군과의 전투에서의 전과, 서해도 전략해도의 전력 증강 등을 살펴보면서 서해도에서 나타난 해도입보의 특성을 추적해보기 로 하자

<sup>58)</sup> 尹龍爀, 앞의 논문, 1982, 62쪽.

<sup>59)</sup> 서해도·북계 전략해도는 江都로 나아가는 북방 해로를 장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몽골군 본진이 양광도 이남 지역으로 진격했을 때 후방지대에 남겨져 있던 몽골의 보급부대를 역습하는 전초기지로서도 중요하였다.

- E-1. 丙午日에 席島의 防護別監이 몽골 병사 3인을 사로잡아서 檻車에 넣어 개경으로 호송하였다.(『高麗史』권24, 高宗 23년 8월 丙午日條)<sup>60)</sup>
- E-2. 고종 43년에 몽골 병사를 피해 昌麟島에 들어갔다가 뒤에 육지로 나왔다.(『高麗史』권58, 志12 地理3 北界 安北大都護府寧州條)<sup>61)</sup>
- E-3. 己巳日에 西海道按察使가 보고하기를, "몽골 兵船 6척이 昌麟 島를 침공하였으나 甕津縣令 李壽松이 別抄를 이끌고 격퇴하 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수송을 7품으로 승진시켰다.(『高麗 史』권24, 高宗 44년 9월 己巳日條)<sup>62)</sup>
- E-4. 林衍은 왕이 몽골 병사를 청하여 환도할 것을 우려하여 황제의 명령을 거부하고자 指諭 智甫大를 보내 군사를 이끌고 黃州에 주둔하게 하고, 또한 神義軍에게 椒島에 주둔하여 방비하게 하였다.(『高麗史節要』권18, 元宗 11년 1월조)63)
- E-5. 北界營이 있는 席島에서 지었다. (東文選」권14, 七言律詩, 贈 西海按部王侍御仲宣 北界營在席島作)

위의 사료 E群은 강화천도 이후 서해도 방면에서 이루어진 해도입보 사례를 모두 모아본 것이다. 먼저 사료 E-1을 보면, 1236년(고종 23) 8월 丙午日(21일)에 席島를 방어하던 방호별감<sup>64)</sup>이 몽골 병사 3인을 사로잡아 檻車에 넣어 개경으로 호송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석도는 『高麗史』지리지에

<sup>60) 『</sup>高麗史』224, 高宗 23년 8월 丙午日條, "丙午 席島防護別監擒蒙兵三人, 檻送于京"

<sup>61) 「</sup>高麗史」刊58, 志12, 地理3 北界 安北大都護府 寧州條, "高宗四十三年, 避蒙兵, 入昌麟島, 後出陸"

<sup>62) 「</sup>高麗史」 224, 高宗 44년 9월 己巳日條, "己巳 西海道按察使報, 蒙兵六船侵昌麟島. 瓮津縣令李壽松率別抄. 擊却之. 加壽松七品."

<sup>63) 『</sup>高麗史節要』 218, 元宗 11년 1월조, "衍慮王請兵復都, 欲拒命, 遣指論智甫大, 率 兵屯黃州, 又令神義軍, 屯椒島, 以備之."

<sup>64)</sup> 席島를 방어하던 防護別監은 海島防護別監인 것으로 이해된다.

의하면 서해도 豊州 관할이었으며<sup>(5)</sup>, 현재는 북한의 황해남도 과일군 석도리에 속해 있다. 석도가 풍주 관할이었으므로 기본적으로 석도에는 豊州民이 입보하였다고 생각되며, 풍주에 인접해 있는 은율현 등 연해안 주현들도 입보했을 개연성이 있다.<sup>(6)</sup>

사료 E-1에서 석도에 방호별감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은 석도가 서해도의 대표적인 전략해도로서 중요했음을 말해준다. 67) 석도방호별감이 몽골 병사 3인을 사로잡았다는 것은 몽골 침입군元帥 唐古가 지휘하던 몽골군 전체 부대 중에서 어느 한 부대가석도를 침공하다가 실패했다는 의미이며, 여·몽 사이에서 일정한 규모의 海戰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68) 석도방호별감은 몽골 수군과의 해전에서 승리하여 몽골 병사 3인을 붙잡았음에 틀림없다.

사료 E-2는 안북도호부가 1256년(고종 43)에 서해도의 昌麟島에 입보하였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기사이다. 창린도는 서해도 甕津縣 관할이었다. 69) 본래 안북도호부에 北界兵馬使營이 있었으므로 1256년에 안북도호부와 더불어 북계병마사영은 창린도에 입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256년 안북도호부와 북계병마사영이 창린도에 입보한 것은 그 당시 몽골군 원수 車羅大의 대대적인해도침공과 연관이 있다. 70) 차라대의 해도침공에 맞서 江都를

<sup>65) 『</sup>高麗史』 258, 志12, 地理3 西海道 豊州條, "有椒島席島."

<sup>66) 「</sup>高麗史」 권58, 志12, 地理3 西海道 豊州條에 의하면, 豊州의 屬郡이 1개, 屬縣이 5개로 나타나 있다. 속군은 安岳郡이고, 속현은 儒州·殷栗縣·靑松縣·嘉禾縣·永寧縣이다. 풍주에 속해 있는 속군·속현은 서해에 바로 인접하여 있거나 서해에서 가깝다. 따라서 안악군·유주·은율현·청송현·가화현·영녕현 등이 席島에 입보했을 가능성이 있다.

<sup>67)</sup> 강재광, 앞의 논문, 2008, 41쪽.

<sup>68)</sup> 席島防護別監이 몽골 병사 3인 정도만 붙잡았다는 것은 麗·蒙 사이에서 발생한 海戰의 규모가 크지 않았을 개연성은 높여준다.

<sup>69) 『</sup>高麗史』刊58, 志12, 地理3 西海道 甕津縣條, "有 麒麟島·昌麟島·魚化島·孤島·謀島."

<sup>70)</sup> 몽골 제5차 침입군 元帥였던 車羅大는 1256년(고종 43) 1월에 고려의 주요한

지키는 한편 서해도 방면 전략해도의 방어력을 증강시키기 위해 안북도호부와 북계병마사영을 서해도 창린도에 입보시켰다고 보 아서 무리가 없다.

북계병마사영의 창린도 입보와 연관하여 주목되는 것이 사료 E-3이다. 사료 E-3을 면밀히 살펴보면, 甕津縣令 李壽松이 別抄를 거느리고 창린도를 침공한 몽골 병선 6척을 격퇴한 장면이 포착된다. 옹진현령 이수송이 몽골 병선 6척을 물리친 것으로보아 몽골 수군과 적지 않은 규모의 해전을 펼쳤음이 분명하며,이수송 휘하의 별초가 몽골 수군을 거의 괴멸시킨 것으로 볼 수있다. 이수송이 거느렸던 별초의 정체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사료 E-3의 별초를 중앙의 별초군,71) 삼별초,72) 옹진현별초73)로 보는 견해가 있다. 필자는 옹진현령 이수송이 거느린별초가 창린도 인근 해역에 대한 지리에 밝았을 것이며 옹진현령이 별초를 직접 거느리고 전투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사료 E-3의 별초는 옹진현 별초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한편, 사료 E-4를 보면 元宗이 몽골 황제에게 請兵하여 還都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무인집정 林衍이 指諭 智甫大로 하여금 군사를 이끌고 황주에 주둔케 하고 神義軍을 椒島에 주둔시켜 몽골군을 방비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삼별초의 한부대인 신의군이 초도에 주둔하였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초도는 서해도 풍주 관할이었으며, 섬 안에 농경지와 목마장이 있어서 입보처로서 적합하였다. 74) 아울러 이 섬은 북계 전략해도

섬들을 공격해서 모두 점령하겠다고 큰 소리로 장담하였다. 이는 그가 고려의 戰略海島들에 대한 대규모 海島侵攻을 전개하겠다는 작전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 없었다.

<sup>71)</sup> 姜在光, 앞의 논문, 『軍史』66, 2008, 44쪽.

<sup>72)</sup> 강재광, 「대몽항쟁과 삼별초」, 『한국해양사』Ⅲ, 한국해양재단, 2013, 570쪽.

<sup>73)</sup> 강재광, 앞의 논문, 2019, 66쪽.

<sup>74) 『</sup>新增東國輿地勝覽』刊43. 黃海道 豊川都護府 山川條. "椒島 府北四十里 海中

와 서해도 전략해도를 서로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하였다. 또한 초도는 고려시대 北線航路의 가장 북쪽에 위치하며 고려의 使臣團이나 商船이 이 섬을 거쳐야만 중국 登州로 향할 수 있었다. 75) 현재 이 섬에 북한 해군 제9전대가 주둔하고 있을 만큼이 섬의 군사전략적 가치는 상당하다.

사료 E-4에서 등장하는 초도에 어느 주현이 입보했는지 알수 없으나 초도가 서해도 풍주 관할이었으므로 豊州民이 초도에 입보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초도는 규모가 비교적 큰 섬이었고<sup>76)</sup> 섬 안에 농경지·목마장이 있었으므로 풍주 이외에 서해도의 연해안에 위치한 여러 주현이 입보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사료 E群에서 『고려사』·『고려사절요』의 수록 기사가 아닌 것은 E-5이다. 사료 E-5는 『東文選』에 수록된 김지대의 詩文 제목 '贈西海按部王侍御仲宣 北界營在席島作'인데, 김지대가 석도에 있는 북계병마사영(북계영)에서 시문을 지었음을 알려준다. 『고려사절요』에 의하면 김지대가 1258년(고종 45) 5월에 北界知兵馬事에 임명되었다.77) 그러므로 김지대가 '贈西海按部王侍御仲宣北界營在席島作'이라는 시문을 지은 시점은 1258년 5월 이후가된다. 그리고 1256년에 서해도 창린도에 있었던 북계병마사영이 1258년경에 석도로 옮겨졌음을 이해할 수 있다. 북계병마사영이 창린도에서 석도로 이동한 이유는 1258년 당시 최씨무인정권의 붕괴 및 대몽전쟁 말기의 군사적 한계 상황에 봉착하여 전략해

有牧場."

<sup>75)</sup> 강재광, 앞의 논문, 2019, 55쪽.

<sup>76)</sup> 椒島는 현재 북한의 황해남도 과일군에 속해 있으며 황해도 3대 島嶼 중의 하나이다. 이 섬은 육지에서 12km 떨어져 있고, 면적은 32,56km이며, 섬의 둘레는 47km에 달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초도」,『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개정증보판 (http://encykorea,aks,ac,kr) 참조.

<sup>77) 『</sup>高麗史節要』 217, 高宗 45년 5월조, "北界知兵馬事洪熙免,以判秘書省事金之岱代之. 熙耽嗜女色, 不恤國事, 一方離心."

도에 입보한 주현민의 離叛이 촉발되었던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강화천도 이후 서해도 주현민이 입보한 섬은 석도·창린도· 초도의 사례가 발견되며, 고려는 석도·창린도 해역에서 벌어진 여·몽 간의 해전에서 모두 승리하였다. 석도·창린도 등 전략 해도는 당시 고려의 수도였던 강도를 북방에서 지키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셈이다. 그러면 이제는 강화천도 이후 북계 諸州 의 전략해도 입보 상황과 대몽전투 전과, 입보민의 離叛 등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찰해보기로 하자. 우선 북계의 여러 전략해 도들 중에서도 특히 葦島의 사례가 관련 사료에서 산견되어 눈 길을 끈다.

- F-1. 이후 金方慶이 西北面兵馬判官이 되었을 때 몽골군이 공격해 오자 여러 성에서는 葦島에 入保하였다.(『高麗史』권104, 列傳 17, 金方慶傳)<sup>78)</sup>
- F-2. 北界兵馬使 盧演에게 명하여 북계 여러 성의 백성을 남김없이 옮겨 해도에 입보하게 하였다. 葦島라는 섬이 있었는데 10여 리나 평탄하여 농사를 지을 만하지만 潮水 때문에 개간할 수 없었다. 兵馬判官 김방경이 제방을 쌓고 씨를 뿌리게하였다. 백성들이 처음에는 괴로워하였으나 가을에 큰 풍년이 들었으므로 사람들이 그 덕에 살았다. 섬에 또한 우물이 없었는데 물을 길러가는 사람이 종종 포로가 되므로, 김방경이 빗물을 모아 연못을 만드니, 그러한 근심이 드디어 사라졌다. 사람들이 그 지혜에 탄복하였다.(『高麗史節要』권16, 高宗 35년 3월조)79)

<sup>78) 『</sup>高麗史』 2104, 列傳17, 金方慶傳, "後爲西北面兵馬判官, 蒙古兵來攻, 諸城入保 葦鳥."

<sup>79)『</sup>高麗史節要』刊16, 高宗 35년 3월조, "命北界兵馬使盧演 盡徙北界諸城民 入保

- F-3. 博州 사람들이 병란을 피해 葦島에 입보하였다. 나라에서 都 領郎將 崔乂 등을 파견하여 別抄를 이끌고 그들을 鎭撫하게 하였는데, 박주 사람들이 도리어 최예와 指諭 尹謙, 監倉 李 承璡을 죽였다. 최예가 거느리던 군사들은 모두 도망쳐서 갈 대밭에 숨었지만 박주 사람들이 그 뒤를 밟아 모두 죽이고는 마침내 몽골에 투항하였다.(『高麗史』권24, 高宗 45년 5월 壬 戌日條)80)
- F-4. 庚午日에 安北別將 康之俊이 葦島로부터 와서 항복하였으므로 銀 9근과 쌀 20곡을 하사하고 이어 攝郎將을 제수하였다.(『高麗史』권24. 高宗 45년 5월 庚午日條)<sup>81)</sup>

위의 사료 F-1·2는 김방경이 1248년(고종 35) 西北面兵馬判官이 되었을 때 북계 여러 성에서 위도에 입보하였음을 알려준다. 앞 章에서 살펴보았듯이, 위도에는 1231년 제1차 대몽전쟁때부터 박주가 입보해 있었다. 사료 F-1은 박주 이외에도 북계여러 州(원문에서는 城)에서 위도에 입보하였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으며, 그 시점은 사료 F-2를 살펴보면 1248년(고종 35년)이었다. 몽골 제4차 침입 때 북계 여러 주에서 청천강 하구에위치한 위도에 입보했던 것이다.

사료 F-2에서 위도의 자연지리 환경이 나타나는데, 위도는 10여 리나 평탄하여 농사를 지을 만한 섬이었으나 潮水 때문에

海島. 有葦島 平衍十餘里可耕 患海潮不得墾. 兵馬判官金方慶令築堰播種. 民始苦之 及秋大稔 人賴以活. 島又無井 汲者往往被虜 方慶貯雨爲池 其患遂絶. 人服其智."

<sup>80) 「</sup>高麗史」刊24, 高宗 45년 5월 壬戌日條, "博州人避兵, 入保葦島. 國家遣都領郎將 崔乂等, 率別抄鎮撫之, 州人反殺乂及指諭尹謙·監倉李承璡. 乂所領兵皆逃匿蘆葦 閒, 跡而盡殺之, 遂投蒙古."

<sup>81) 『</sup>高麗史』 224, 高宗 45년 5월 庚午日條, "庚午 安北別將康之俊自葦島來降, 賜銀九斤, 米二十斛, 仍除攝即將."

개간할 수 없었다. 하지만 서북면병마판관 김방경이 입보민으로 하여금 위도 해안에 제방을 쌓고 씨를 뿌리게 하여 가을에 농작물을 수확함으로써 위도 입보민의 생계문제를 해결하였다. 아울러 김방경이 빗물을 모아 연못을 만듦으로써 식수 걱정도 사라지게 되었다. 이처럼 김방경의 지혜와 혜안 덕분에 위도에서 식량·식수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위도는 청천강 하구의 대표적인 전략해도로서의 위상을 다지게 되었다. 위도에서 여·몽 사이에벌어진 해도전투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대몽전쟁기에 몽골군이 위도를 침공한 기사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김방경의 철저한방비로 전략해도 위도의 방어력이 탄탄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사료 F-3에서는 1258년(고종 45) 5월 壬戌日(13일) 위도에 입보한 박주 사람들이 都領郎將 崔乂, 指諭 尹謙, 監倉李承璡과 별초군을 모두 죽이고 몽골에 투항한 사실이 발견된다. 박주 사람들이 몽골에 투항한 시점은 1258년 3월 戊午政變 직후이다. 그러므로 金俊·柳璥 등 反崔竩連帶勢力에 의한 무오정변으로 인하여 최씨무인정권의 붕괴 및 정치권력 공백이 박주사람들로 하여금 무인정권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보아진다.82) 아울러 북계병마사 洪熙의 苛斂誅求와 주색잡기가 북계 백성들의 반감을 샀기 때문에83) 위도에 입

<sup>82)</sup> 崔氏武人政權의 家兵 지휘관 金俊, 崔氏家의 심복 문신 柳曔 등이 反崔瑄連帶勢力을 결집하여 1258년(고종 45) 3월에 崔瑄政權의 대몽정책, 대민시책에 강한 반 감을 품고 崔瑄를 제거한 사건이 戊午政變이다. 무오정변에 대해서는 그간 학계에서 상당수 논문이 제출되어 이 정변의 정치적 성격을 조명하였거니와 이글에서는 일일이 소개하지 않는다. 무오정변으로 인해 崔氏武人政權이 붕괴되었고, 江都에서는 정치권력의 공백이 일정기간 지속되었으므로 북계 戰略海島에 대한 통제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葦島에 입보한 博州民이 자신들을 압제하던 별초군을 모두 죽이고 몽골에 투항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sup>83) 「</sup>高麗史節要」권17, 高宗 45년 5월조, "北界知兵馬事洪熙免 以判秘書省事金之岱 代之. 熙耽嗜女色 不恤國事 一方離心." 北界知兵馬事 洪熙가 여색을 즐기고 나랏 일에 힘쓰지 않았으므로 한 지역[一方]이 이반하였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한 지역 은 北界를 가리키는데, 결국 홍희는 면직되었고 判秘書省事 金之岱가 그를 대신

보한 박주 사람들이 이반하였다고 해석된다. 또한 고종 말엽 해마다 연이은 기근과 식량난도 박주 사람들의 투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본다.

위의 사료 F-3에서 위도에 입보한 박주 사람들이 몽골에 투항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도가 몽골군에게 함락되어 그들의 점령지가 된 것은 아니었다. 위도에는 북계 여러 주의 백성들이 입보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몽골에 투항한 박주 사람들 이외에북계 諸州의 백성들은 그대로 위도에 남아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위도에 입보한 주현민들은 무오정변 이후 반정부적인기치를 내걸고서, 일부는 몽골에 투항하였고 일부는 그대로 위도에 머물면서 최씨무인정권 붕괴 이후 강도조정의 정세를 관망하고 있었을 것이다.

사료 F-4에서, 安北別將 康之俊이 1258년 5월 庚午日(21일) 강도에 귀순하여 攝即將에 제수된 장면이 포착된다.<sup>84)</sup> 강지준이 귀순하게 된 것은 강도조정에서 홍희 대신 파견한 金之岱가 위도에 입보하고 있었던 북계민과 주진군을 적극적으로 설유하였기<sup>85)</sup> 때문이라 여겨진다. 안북별장 강지준은 박주민처럼 몽골에 투항하여 반역자로 낙인찍히는 것보다 강도조정에 귀순하여 위도 입보민이 처한 그 당시 상황을 보고하고 흐트러진 북계의 해도입보방어체계를 추스르고자 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위도 이외에 북계의 다른 전략해도들의 입보 상황, 대

하여 임명되었다.

<sup>84)</sup> 본문의 사료 F-4에서 安北別將 康之俊이 江都에 귀순해 왔다고 되어 있을 뿐 그가 휘하 병사들을 데리고 함께 귀순하였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안북별장 강지준은 葦島에서 배를 타고 강도에 도착하여 귀순하였을 것이므로 그가 휘하 병력과 더불어 강도조정에 귀순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sup>85) 「</sup>高麗史」 2102, 列傳15, 金之岱傳, "(前略) 時蒙古兵犯北邊 知兵馬事洪熙嗜女色不恤軍務 一方離心. 以之岱有才略 陞簽書樞密院事 代熙出鎮 撫以恩信 西北四十餘城 賴以安."

몽전투 전과, 입보민 離叛 및 투몽사태 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G-1. 己未日에 北界兵馬使가 보고하기를, "몽골의 병선 7척이 葛島를 침공하여 30호를 포로로 잡아갔습니다."라고 하였다.(『高麗史』권24, 高宗 41년 2월 己未日條)<sup>86)</sup>
- G-2. 己巳日에 몽골군 60명이 艾島를 침공하였는데 別抄가 모두 잡아 목을 베었다.(『高麗史』권24. 高宗 43년 10월 己巳日條)87)
- G-3. 몽골군이 神威島를 함락시켰으며, 孟州 수령 胡壽가 살해되었다.(『高麗史』권24, 高宗 44년 7월조)<sup>88)</sup>
- G-4. 북계의 艾島와 葛島의 피난민들과 같이 섬으로 들어갔던 각 驛의 사람들이 京別抄 7인을 죽이고 몽골에 투항하였다.(『高 麗史』권24, 高宗 46년 3월조)<sup>89)</sup>
- G-5. 癸未日에 席島와 椵島 사람들이 모반하자 西北面兵馬使 李 喬가 都領 韋得柔를 파견하여 그들을 공격하여 괴수 來同 등을 참수하였다.(『高麗史』권25, 元宗 1년 1월 癸未日條)<sup>90)</sup>
- G-6. 원종 원년(1260)에 몽골병을 피해 安州의 蘆島에 들어갔다. 그 뒤에 모두 다섯 번을 옮겨 다녔다. 충렬왕 6년(1280)에 이르러 옛 땅을 회복하고 成州에 예속되었다.(『高麗史』 권58. 志12. 地理3 北界 安北大都護府 寧州 德州條)<sup>91)</sup>

<sup>86) 「</sup>高麗史」 224, 高宗 41년 2월 己未日條, "己未 北界兵馬使報 蒙古兵船七艘侵葛 島. 虜三十戶."

<sup>87) 『</sup>高麗史』 224, 高宗 43년 10월 己巳日條, "己巳 蒙兵六十人寇艾島, 別抄盡擒 斬之."

<sup>88) 『</sup>高麗史』 224, 高宗 44년 7월조, "蒙兵陷神威島, 孟州守胡壽被害."

<sup>89) 『</sup>高麗史』 224, 高宗 46년 3월조, "北界艾·葛二島, 合入各驛人, 殺京別抄七人, 投蒙古."

<sup>90) 「</sup>高麗史」刊25, 元宗 1년 1월 癸未日條, "癸未 席島·椵島人謀叛, 西北面兵馬使李 喬, 遣都領韋得柔, 擊之, 斬其魁來同等."

<sup>91) 『</sup>高麗史』刊58, 志12, 地理3 北界 安北大都護府 寧州 德州條, "元宗元年, 避蒙兵,

앞의 사료 G群을 살펴보면, 대몽전쟁기 말엽 및 대몽강화체결(1259년) 이후부터 원종 10년까지 서해도·북계에서 葛島, 艾島, 神威島, 석도, 椵島, 蘆島 등의 전략해도가 散見된다. 이들 전략해도 중에서 서해도의 석도를 제외하면, 갈도 등 나머지 5개 섬은 북계에 소속되어 있는 전략해도이다. 북계 전략해도들 중에서 해도전투가 발발하였던 섬은 갈도·애도·신위도이다

먼저 사료 G-1에서 고종 41년 2월 己未日(16일)에 몽골 병선 7척이 갈도를 침공하여 30戸를 포로로 잡아갔음을 알 수있다. 갈도를 침공한 몽골군은 몽골 제4차 침입군 총사령관 也古(也窟)의 부관이었던 阿毋侃 휘하의 병사들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당시 야고는 충주산성전투에서 병을 얻어<sup>92)</sup> 몽골 수도로 귀환하고 있었으므로 사료 G-1의 갈도침공을 명령한 이는 阿毋侃이었다고 생각한다. 갈도를 침공하였던 몽골군이 30호를 포로로 붙잡아감으로써 해도입보 방어책에 위기가도래하였다. 그러나 몽골군이 갈도를 함락시킨 것은 아니며 갈도에 입보해 있던 軍民의 강렬한 저항을 받고 물러났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사료 G-2를 살펴보면, 고종 43년 10월 己巳日(12일)에 몽골군 60명이 애도를 침공하였으나 애도에 주둔한 별초가모두 사로잡아 목을 베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애도를 침공한몽골군 60명은 제5차 침입군 중 몽골 수군에 편제된 부대였는데, 이들이 타고 온 전선의 규모는 알 수 없다. 93) 사료 G-2

入于安州之蘆島、後凡五遷、至忠烈王六年、復舊地、屬于成州、"

<sup>92) 『</sup>高麗史』권103, 열전 金允侯傳에서 也古(也窟)이 忠州山城전투에서 病을 얻어서 전투를 중단하고 몽골로 北還하게 되었다고 기록하였다. 그러나 池內宏은 몽골군 지휘부 내부 갈등 때문에 소환된 것이라고 하였다(池內宏,「蒙古の高麗征伐」,「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10, 1924, 165쪽 및 190쪽 참조).

<sup>93)</sup> 사료 G-2에서, 北界의 艾島를 침공한 몽골군은 60명이었다. 몽골군이 10명씩 작

에서 나타나는 별초는 京別抄라고 여겨진다. 이는 사료 G-4에서 애도에 경별초가 주둔하고 있었음을 통해서 추정이 가능하다.

한편 사료 G-3을 눈여겨보면, 고종 44년 당시 신위도가 몽골 수군에게 함락되고 맹주 수령 胡壽가 적군에게 살해되었음이 확인된다. 신위도의 함락은 최씨무인정권이 입안하고 강행하였던 해도입보책에 중대한 위기가 도래하였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대몽전쟁기 서해도 방면에서 치러진 해도전투는 전부 고려 측의 승리로 귀결되었으나, 북계에서 발발한 해도전투는 승전과 패전이 모두 상존한다는 점이 특색이다. 북계 애도에서는 별초가 몽골 수군을 격멸시켰으나, 신위도에서는 대몽방어에실패하여 섬이 함락되고 맹주 수령이 살해되는 일까지 발생하였던 것이다.

대몽전쟁기 말엽 ~ 원종대 초반 북계 전략해도에서는 대몽항전의 한계가 노정되면서 입보민의 투몽사태 및 모반이 심화되었고 몽골군을 피하기 위하여 특정한 주에서 추가적인 해도입보가이루어졌다. 먼저 북계 해도입보민의 투몽 사례는 사료 G-4에서선명히 드러난다. 사료 G-4를 살펴보면, 1259년(고종 46) 3월에북계 애도·갈도에 들어온 피난민들과 각 역의 사람들이 경별초7인을 죽이고 몽골에 투항한 사실이 포착된다. 애도·갈도는 경별초가 주둔하고 있었을 만큼 북계에서 중요시되었던 전략해도였는데, 애도·갈도에 입보하였던 각 처의 주현민과 驛人이 경별초를 살해하고 몽골에 항복한 것은 강도조정에 커다란 위기의식을조장하였다. 애도·갈도 입보민의 투몽은 1년 전 위도에 입보한 박주민의 투몽사태처럼 해도입보책을 강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

은 戰船 1척에 승선했다고 하면 총 6척으로 침공한 셈이고, 20명씩 전선 1척에 승선했다고 가정하면 총 3척으로 침공했다고 생각된다. 몽골군은 전선 3~6척 정도의 규모로 애도를 침공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는 강력한 무인정권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94)

그리고 사료 G-5를 보면, 1260년(원종 1) 1월 癸未日(15일) 에 석도·가도 입보민이 모반하자 서북면병마사 李喬가 都領 韋得柔를 보내 반란민의 괴수 來同 등을 참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북계의 전략해도 중 하나였던 가도에서 모반사태 가 발생했다는 점이 특히 눈길을 끈다. 1260년 당시 북계병마 사영(서북면병마사영)은 석도에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 에<sup>95)</sup> 서북면병마사 이교가 도령 위득유를 보내 진압한 대상은 가도의 반라민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 면, 석도에 주재하고 있던 서북면병마사는 석도 안의 반란민을 자체적으로 제압하였을 것이고. 다소 떨어져 있는 북계의 가도 에 도령 위득유를 급파하여 가도 반란민의 우두머리 내동 등을 참수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사료 G-5에서는 석도·가도 입보 민이 모반했다고 되어 있을 뿐이지 그들이 몽골에 투항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서북면병마사의 적절한 대응 으로 석도·가도 입보민의 모반사태를 진정시키는데 성공했다 고 볼 수 있다.

사료 G-4에서 애도·갈도 입보민의 투몽사태, G-5에서 석도·가도 입보민의 모반사태와는 다르게, 사료 G-6을 보면

<sup>94)</sup> 艾島・葛島 입보민의 投蒙은 1259년(고종 46) 3월의 일이었다. 이 당시 金俊政權 이 성립되어 있었으나 金俊은 朴希實·李延紹·朴松庇·林衍·金承俊·李公柱 등 衛社功臣과 연대하면서 重房 중심의 정치운영을 구사하였고, 1258년 戊午政變 이후 復政于王의 대의명분 하에 王權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므로 김준정권 초기에 김준은 崔氏武人政權 때보다 무인집정으로서의 정치적 위상은 크게 격하되어 있었다. 더욱이 당시 몽골과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감안한다면, 김준 집권 초기에 김준이 북계 戰略海島의 入 保民에 대한 적극적인 통제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본다.

<sup>95) 「</sup>東文選」권14, 七言律詩, 贈西海按部王侍御仲宣 北界營在席島作 및 「高麗史節要」 권17, 高宗 45년 5월조를 통해서, 1258년(고종 45) 5월 당시 金之岱는 北界兵馬 使營이 소재한 席島에 머물러 있었음이 확증된다. 그렇다면 1260년(원종 1) 무렵 에도 북계병마사영이 석도에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고 본다.

1260년(원종 1) 북계의 德州가 몽골군을 피해 安州 소속의 蘆島 에 입보한 사실이 발견된다. 덕주가 안북부(안주) 소속의 로도 에 입보한 것은 1259년 대몽전쟁이 종식되고 대몽강화가 체결 되었더라도 서경에 몽골군 장수 王萬戸가 1만 군사로 주둔하 여%) 큰 위협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왕만호는 『元史』에서 王榮 祖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몽전쟁 초기부터 종군하여 고려를 끊 임없이 공략한 거란족 출신 몽골 장군이었다.97) 왕영조 휘하의 서경 몽골군은 1259년 7월 靑松縣·安獄郡·豊州·海州에 함부 로 뛰어들어 사람과 재물을 약탈하여 갔다 98) 뿐만 아니라 대 몽강화에 따른 여ㆍ몽 사이에서의 和平 분위기 형성에도 불구 하고 왕영조 휘하의 몽골군은 서해도 섬에서 육지로 나온 고려 병사들을 모두 포로로 잡았으므로, 서해도의 出排別監이 섬에 있는 고려 병사들을 육지로 내보내는 것을 중지시킬 것을 강도 조정에 요청하는99)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이러한 왕영조 휘하 서경 몽골군의 위협을 받아 1260년에 덕주가 안북부에 소속된 로도에 입보하게 된 것이라 판단된다. 물론 덕주 수령의 자의 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서경 몽골군의 약탈과 군사행 동을 견제하기 위한 김준정권의 명령에 의한 해도입보라고 보 아야 할 것이다

<sup>96) 「</sup>高麗史」刊24, 高宗 46년 2월 庚子日條, "庚子 李凝還自西京日 王萬戶云 汝國王 不愛百姓耶. 何聽尹椿·松山之言 不出降乎. 降則秋毫不犯. 時 王萬戶率軍十領 修 築西京古城 又造戰艦. 開屯田 爲久留計."

<sup>97) 『</sup>元史』 引49. 列傳36. 王珣傳 附 王榮祖傳 참조.

<sup>98) 「</sup>高麗史」刊25, 元宗 즉위년 7월 己巳日條, "己巳 西京蒙兵 闌入靑松·安獄·豊·海州 驅掠人物而去."

<sup>99) 「</sup>高麗史」 225, 元宗 즉위년 11월 甲寅日條, "甲寅 西海道出排別監馳報 今兵出陸者 皆爲蒙兵所虜 請停出陸."

## 4. 맺음말

- 西海道・北界 諸州의 海島入保策 실행의 軍事的 特性 -

대몽전쟁기 해도입보는 1231년(고종 18) 9월 서해도 황주·봉주에서 최초로 시행되었고, 그해 10월경 안북부전투를 앞두고 북계청천강에 인접한 諸州에서 집단적으로 시행되었다. 1231년에 서해도 ·북계의 해도입보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유력한 대몽방어책으로서 인식되자 1232년 강화천도 이후에는 전국적인 규모로 해도입보가 추진되었으며, 해도입보책은 최우정권에 의해서 최우선 전략으로서 확정되었다. 서해도 ·북계에서 시행된 해도입보는 군사전략적특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으며, 楊廣道 이남 지역에서 추진된 해도입보안는 성격이 다르다. 대몽전쟁기 서해도 ·북계에서 시행된 해도입보 한 성격이 다르다. 대몽전쟁기 서해도 ·북계에서 시행된 해도입보 보착의 군사전략적 특성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계의 경우 1231년 10월부터 청천강 연안에 인접해 있던 여러 州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국가에서 지정한 전략해도에 입보하였다. 박주를 비롯하여 여러 주들이 위도에 입보하였고, 맹주는 신위도에 입보하였다. 박주·맹주 이외의 북계 諸州는 청천강 하구의 애도·갈도 및 대동강 하구의 가도 등에 입보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례적으로 선주·창주의 경우 1231년에 강화도 바로 아래에 위치한 자연도(지금의 영종도)에 입보하였는데, 이는 몽골군 침입으로부터 큰 피해를 받은 북계 고을을 최우정권이 직접 통제하기 위해서 북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해도에 입보케 한 것이었다. 이와 달리 몽골군에게 1231년 8월에가장 먼저 함락당한 함신진은 몽골군 주력부대가 안북부전투를 앞두고 있을 무렵 압록강 하구의 신도에 입보하였다. 전반적으

로 1231년 북계 諸州에서 이루어진 해도입보는 안북부전투 이전에 최우정권의 통제 하에 실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둘째, 북계의 경우 전략해도에 입보한 주현민이 1261년(원종 2)에서야 출륙했을 만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전략해도에서 머물렀다.100) 대몽전쟁이 심화될수록 북계 내륙은 폐허가 되다시피 했으며 몽골 제5차 침입 이후에는 몽골군이 장기간 북계에 주둔하였으므로 북계 전략해도에 입보한 피난민들은 쉽사리 출륙하지 못하였다. 북계 전략해도에 입보한 주현민은 1259년 대몽강화가 체결되고 서경에 주둔한 1만의 몽골군이 1260년 완전히 철수한 이후에야 1261년에 육지로 나올 수 있었다. 이런 점은 양광도 이남의 주현민이 대몽전쟁기에 전략해도에 입보했더라도 몽골군이 철수하면 상황에 따라 곧바로 출륙할 수 있었던사정과 상반되는 것이다. 북계 諸州의 주현민이 전략해도에 오랜 기간 입보하였다는 것은 고려무인정권이 해도입보민을 효율적으로 통제하였으며 북계민의 대몽항전 역량을 장기간 보존하였다는 것을 반증한다.

셋째, 서해도·북계에 소속된 전략해도는 대몽전쟁기 고려의 정식 수도였던 江都(江華京)를 북쪽으로부터 방어하는 전초 기지와도 같았다. 북계의 전략해도들은 압록강·청천강·대동강 하구에위치하고 있으며, 서해도의 전략해도들은 주로 대동강 하구 및용진반도에 자리 잡고 있다. 북계 전략해도들은 압록강·청천강·대동강 등 대하천을 연결하는 해상로를 통해 서로 연계되어 있었다. 이러한 북계 전략해도들은 서해도의 전략해도인 석도·초도

<sup>100)</sup> 博州 등 北界 州縣民의 경우 1231년(고종 18)에 국가에서 지정한 海島에 入保하여 1261년(원종 2)에서야 육지로 나왔다. 물론 북계 주현민은 몽골 침입군이철수한 후에는 상황에 따라 육지로 나와 평소의 삶을 영위하려 애썼겠으나 이마저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지며, 대체적으로 楊廣道를 포함한 五道 주현민의 피난 생활에 비해 훨씬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으리라는 것은 쉽게 이해가간다.

를 거쳐 옹진반도의 창린도까지 연결되었다. 특히 서해도 전략해 도였던 석도·창린도에서는 몽골 수군과의 해상전투에서 모두 승리하였으며, 몽골군이 수로를 통해 강화도를 침공하는 것을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군사적 의미가 있었다.

넷째, 북계의 중요한 전략해도에는 북계 소속의 별초군뿐만 아니라 중앙의 경별초까지 배치되어 있어서 방어력을 배가시켰다. 경별초가 배치된 것으로 관련사료상에서 확인되는 전략해도는 애도·갈도·가도 등이 있다. 경별초는 북계 소속의 별초군과 합동작전을 펼쳤으며, 북계 전략해도를 침공한 몽골 수군을 격퇴시켰다. 한편, 1256년(고종 43) 4월 서북면병마사의 명령에의해 의주에 주둔하고 있던 몽골군 1천을 격파한 주체는 별초 3백이었는데101), 이 별초군은 창린도에 주둔하고 있었던 북계별초 혹은 경별초였을 개연성이 높다. 1256년 몽골군 원수 車羅大의 대대적인 해도침공이 개시되었을 때 전라도·충청도 방면의 전략해도들을 지키기 위해 강도의 舟師(수군) 3백 명이 급파된102) 것과 달리, 북계의 주요 전략해도들에는 이미 경별초가배치되어 있었다는 특색을 지닌다.

다섯째, 대몽전쟁기 말엽에 북계병마사영(서북면병마사영)이 서해도 · 북계 전략해도로 옮겨져 해도입보 및 대몽전투를 총괄 지휘하였다. 1256년 몽골 제5차 침입군이 대대적인 해도침공을 시도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sup>103)</sup> 북계병마사영이 서해도의 창 린도로 옮겨져 몽골 수군의 해도침공을 방어하였다. 이후 북계 병마사영은 1258년경 서해도의 석도로 옮겨졌으며, 대몽강화가

<sup>101)「</sup>高麗史」224、高宗 43년 여름 4월 戊寅日條、"戊寅 西北面兵馬使馳報 遣別抄 三百 撃蒙兵一千于義州."

<sup>102) 『</sup>高麗史』 권24, 高宗 43년 봄 정월 丁巳日條, "丁巳 王聞 蒙古兵 謀攻諸島 遣將軍 李廣 宋君斐 領舟師三百 南下 禦之."

<sup>103) 『</sup>高麗史』권24, 高宗 43년 봄 정월 丁巳日條 참조.

체결된 元宗 때 북계의 가도로 옮겨졌다.

고려무인정권이 대몽전쟁을 장기전으로 이끌 수 있었던 원인들 중 하나는 북계·서해도에 소재한 전략해도가 대몽전쟁이 종식될 때까지도 계속 군사적 기능을 유지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북계·서해도 전략해도들은 고려 수도 강도를 북방으로부터 방어하는 한편 몽골군 후방지대를 기습하는 등 고유의 장점을 발휘함으로써 대몽전쟁기 해도입보책의 전략전술적 유용성을 입증하였다.

(원고투고일: 2020, 10, 7, 심사수정일: 2020, 11, 13, 계재확정일: 2020, 12, 2,)

주제어: 서해도, 북계, 해도입보, 해도입보책, 전략해도, 최우정권, 석도, 창린도, 애도, 갈도, 경<mark>별초</mark>

#### 〈참고문헌〉

1. 사료

『高麗史』,『高麗史節要』,『東文選』,『輿地圖書』,『大東地志』,『元史』

2. 연구서

邊太燮、『高麗政治制度史研究』、一潮閣、1971. 尹龍爀、『高麗對蒙抗爭史研究』、一志社、1991. \_\_\_\_\_\_\_、『고려 삼별초의 대몽항쟁』、일지사、2000. http://uci.or.kr/G901:A-0005997481 \_\_\_\_\_\_\_、『여몽전쟁과 강화도성 연구』、혜안、2011. http://uci.or.kr/G701:B-00093245162

\_\_\_\_\_, 『삼별초: 무인정권, 몽골, 그리고 바다로의 역사』, 혜안, 2014. http://uci\_or\_kr/G901:A-0006521906

姜在光,『蒙古侵入에 대한 崔氏政權의 外交的 對應, 경인문화사, 2011. http://uci.or.kr/G701:B-00099027212

한국해양재단 편, 『한국해양사』Ⅲ,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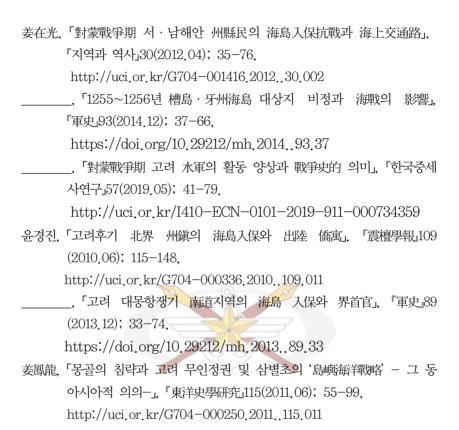
#### 3. 연구 논문

尹龍爀,「고려의 海島入保策과 몽고의 戰略變化-麗蒙戰爭 전개의 —樣相-」, 『歴史教育』32, 1982.

> http://uci.or.kr/G706+HISN31-N.legacyInfo.NAHF. yn\_003\_0695

姜在光,「對蒙戰爭期 崔氏政權의 海島入保策과 戰略海島」,『軍史』66 (2008.04); 27-62,

https://doi.org/10.29212/mh.2008..66.27



(Abstract)

The Characters for the Implements of Island Protection Tactics(海島入保策) in Seohaedo(西海道)·Bukkye(北界) of Goryo dynasty in the Period of the War against Mongol from the Military Point of View

Kang, Jae-gwang

Island Protection Tactics(海島入保策) during the Period of the War against Mongol was carried out for the first time in Seohaedo(西海道) and Bukkye(北界) of Goryo dynasty in 1231. The strategic experience of Haedoibbo(海島入保) that had been executed in these provinces had an considerable effect on the governments' escape led by King into the Kanghwa island(江華遷都) in 1232.

Island Protection Tactics that was propelled in Seohaedo and Bukkye in the Period of the War against Mongol, have several military characters distinguished with southern provinces of Yanggwangdo(楊廣道).

The first, Haedoibbo in Seohaedo and Bukkye had come true throughout intensive military control of Choi Woo's political power, from the start,

The second, Juhyunmin(州縣民) who had entered to strategic islands of Bukkye, could come back to the homeland in 1261. They defended strategic islands from Mongol invasion, staying to designated islands for a long time.

The third, Byeolchogun(別抄軍) that had stationed to strategic islands of Seohaedo, won to all naval battles against Mongol navy. As a result, Juhyunmin and defensive forces of strategic islands, prevented from Mongol navy's coastal infiltration toward Kanghwa island.

The fourth, Gyungbyeolcho(京別抄) dispatched to main strategic islands of Bukkye. Forward stationing of this unit strengthened defensive power of strategic islands of Bukkye. The fifth, Bukkyebyungmasayeong(北界兵馬使

#### 대몽전쟁기 西海道:北界에서의 海島入保策 추진 양태와 군사적 성격 | 213

營) had been moved to strategic islands of Seohaedo and Bukkye in the end of the War against Mongol.

Keywords: Seohaedo(西海道), Bukkye(北界),

Island Protection Tactics(海島入保策), Juhyunmin(州縣民),

Byeolchogun(別抄軍), Gyungbyeolcho(京別抄)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0, No. 117, pp. 215–257 https://doi.org/10.29212/mh.2020..117.215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1958년 한반도 전술핵무기 배치 요인 재고찰

- 미국의 대일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

김민식\*



- 1. 서론
- 2. 미국 극동지역 안보정책의 변화. 1954-1955
- 3. 전술핵무기 배치 논의와 결정, 1956-1957
- 4. 결론

# 1. 서론

미국은 1958년 1월부터 1991년 12월까지 33년간 한국에 전 술핵무기를 배치했다.<sup>1)</sup> 한국에 전술핵무기가 배치되는 과정을

<sup>\*</sup> 육군 소령(진),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본 논문의 완성과정에서 귀중한 논평을 해주신 네 분의 심사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sup>1)</sup> Kristensen, Hans M. & Norris, Robert S., "A History of US Nuclear Weapons

다른 기존 연구들은 주로 한 · 미 관계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분석했다. 우선 전술핵무기 배치를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 행정부의 '뉴룩정책(New Look Policy)'<sup>2)</sup>이 한국에 적용된 결과로보는 연구들이 있다.<sup>3)</sup> 이 연구들은 뉴룩정책의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미국 정부가 재래식 무기 대신에 핵무기에 대한 의존을 한 충 강화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대한 군사원조 비용을 축소하기 위해 한국군을 감축하고자 했으며,한국군 감축의 대가(代價)로 주한미군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했다는 것이다.

반면 공산권의 위협에 대한 군사안보적 대응이 전술핵무기 배치의 주된 요인이었다고 주장하는 연구들이 있다.4) 이 연구들은 미국

in South Korea",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73-6 (2017), p. 349.

<sup>2)</sup> 뉴룩정책에 대해서는 권오신,「아이젠하워 대외정책의 기조: '뉴룩(New Look)'정 책과「아이젠하워 독트린」, 『미국사연구』 제21집, 한국미국사학회, 2005, 141-173 쪽을 참고; 뉴룩정책이 미국의 군사전략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Walker, David M., Eisenhower's New Look, Tactical Nuclear Weapons, and Limited War with a Case Study of the Taiwan Strait Crisis of 1958, Ph.D. Dissertation,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2004의 Part I · Ⅱ를 참고.

<sup>3)</sup> 도널드 스턴 맥도널드(Donald Stone MacDonald) 지음·한국역사연구회 1950년대반 옮김,『한미관계 20년사(1945-1965년): 해방에서 자립까지』,서울: 한울, 2001; 박태균,「1950·60년대 미국의 한국군 감축론과 한국정부의 대응」,『國際地域研究』제9권 제3호,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2000, 31-53쪽의 Ⅱ장; 차상철,「아이젠하워,이승만,그리고 1950년대의 한미관계」,『미국사연구』제13집,한국미국사학회, 2001, 121-167쪽의 Ⅲ장;이재봉,「남한의 핵무기 배치와 북한의 핵무기 개발: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하여」,『평화학연구』제9권 제3호, 세계평화통일학회, 2008, 23-44쪽; 박태균,「잘못 끼운 첫 단추:이승만-아이젠하워 정부의 갈등」,『역사비평』통권 86호,역사문제연구소, 2009, 82-112쪽의 3장;이규원,『이승만 정부의 국방체제형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의 제5장;정경두,「미국의 동북아 위협인식 변화에 따른 한반도 내 전술핵무기의 역할 연구」,『軍史』第83號,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105-130쪽의 2장.

<sup>4)</sup> 이철순, 『이승만정권기 미국의 대한정책 연구(1948-1960)』, 서울대학교 정 치학과 박사학위논문, 2000의 제4장; 이연주, 『핵무기를 통한 예산절감 또 는 안전보장?: 1958년 한반도 전술핵무기 배치와 미국의 선택』. 서강대학교

정부가 1957년 6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한국 내 전술핵무기 배치를 결정한 이후 한국 정부와 한국군 감축에 관한 협상을 진행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전술핵무기 배치 결정의 핵심은 재정절감이라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며, 전략적 방어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군사안보적인 이유 때문이었던 것으로 분석한다.

상술한 기존 연구들은 1950년대 중·후반 미국의 대한정책이 경제에 중점을 두었는지 아니면 안보에 중점을 두었는지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주장하는 바가 상이하다. 그렇지만 한·미관계의 차원에서 전술핵무기 배치 문제에 접근했다는 점에서 보면, 이 연구들이 갖는 문제의식은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 그러나실제 1950년대 미국의 정치 및 군사지도자들은 극동지역 안보정책을 수립해나가는 과정에서 최소한 한·미·일 3국의 안보관계를 고려했다.5)

1950년대 한·미·일의 안보관계를 국제연합군의 역할을 중심으로 분석한 기존 연구들은 미국 정부가 국제연합군의 권능(權能)을 매개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일체화'시키고자 노력했다는 사실을 규명했다.<sup>6)</sup> 또한 주한미군과 그 핵전력에 대해 상세히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2014; 이연주·이근욱, 「재정절감과 동맹국 안전 보장의 기로에서: 1958년 전술핵무기 배치에 대한 새로운 해석」, 『社會科學 研究』第23輯 2號,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5, 126-156쪽.

<sup>5) 1950</sup>년대 초 미국의 대한정책이 일본 중심의 극동지역 안보체제에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되었다는 관점은 남기정, 『기지국가의 탄생: 일본이 치른 한국전쟁』,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8(2016)을 참고. 그리고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1950년대중ㆍ후반한ㆍ미ㆍ일의 안보관계를 분석한 연구로는 신욱회, 『한미일 삼각안보체제: 형성ㆍ영향ㆍ전환』,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의 제2, 3장을 참고. 또한 '유사동맹(quasi alliances)'의 관점에서 1960년대 이후 3국의 안보관계를 고찰한 연구로는 빅터 D. 차 지음ㆍ김일영ㆍ문순보 옮김, 『적대적 제휴: 한국, 미국, 일본의 삼각 안보체제』,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0(2004)를 참고.

<sup>6)</sup> 쿠라타 히데야, 「일·미·한 안보 제휴의 기원: '한국조항' 前史의 해석적 재검토」,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6권(제3분과, 근·현대사편)」,

분석한 기존 연구들은 한국에 대한 전술핵무기 배치는 일본에 도입되어 있던 핵무기 철수와 동시에 진행되었으며,7) 한편으로 이사안이 미 육군을 전술핵무기를 보유한 펜토믹 사단(Pentomic Division)으로 재편하는 작업의 일환이었다는 사실을 조명했다.8) 이러한 연구들은 한반도 전술핵무기 배치가 단순히 한국군을 감축하면서 한국에 배치된 군사력을 증강하려는 목적 때문만은 아니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1958년 한반도에 전술핵무기가 배치되는 과정은 한 · 미 관계와 미 · 일 관계를 포함한 한 · 미 · 일의 안보관계와 극동이라는 지역적 차원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1950년대 중 · 후반 미국의 대한정책이 검토 및 결정되는 과정을 전술핵무기 배치 문제를 중심에 놓고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대일정책 변화가 이 문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규명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문에서는 1954년부터 1957년까지 미국의 대한정책과 대일정책이 수립되는 과정을

서울: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2005, 47-89쪽; 츠치야마 지츠오, 「미일동맹과 한미 안보 협력」, 『한일공동연구총서』 Vol.2007 No.9,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07, 130-169쪽; 金基亨, 「韓国「戦時」における在日国連軍基地使用権をめぐる日米交渉過程: 朝鮮戦争から沖縄返還に至るまで」, 『韓日軍事文化研究』, 第16輯, 韓日軍事文化學會, 2013, pp. 101-131; 조진구,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에 있어서의 '사전협의'의 의미와 실제」, 『국방정책연구』 제32권 제3호, 한국국방연구원, 2016의 Ⅱ 장.

<sup>7)</sup> 피터 헤이스 지음고대승고경은 옮김, 『핵 딜레마: 미국의 한반도 핵정책의 뿌리와 전개과정』, 서울: 한울, 1993의 제3장; 김일영·조성렬, 『주한미군: 역사, 쟁점, 전망』, 서울: 한울, 2003의 제3장. 그러나 이 연구들은 미국 정부의 '일본'에 대한 고려가 어떻게 한반도 전술핵무기 배치로 이어졌는지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sup>8)</sup> 서울新聞社 編著, 『駐韓美軍 30年 1945-1978』, 서울: 杏林出版社, 1979의 Ⅲ 장; 피터 헤이스·류바 자르스카월든 벨로 지음·한국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 엮음, 『핵무기는 가라!: 미국 핵전략과 한반도 평화』, 서울: 민중사, 1988의 2장. 펜토믹 사단에 대해서는 Bacevich, Andrew J., *The Pentomic Era: The U.S. Army Between Korea and Vietnam*, Washington, D.C.: National Defence University Press, 1986을 참고.

시간 순서대로 비교 검토했으며, 미 국무부에서 발간한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이하 FRUS) 1955-1957 XXIII Part1 JAPAN, Part2 KOREA에 수록된 문서들을 주로 참고했다.

# 2. 미국 극동지역 안보정책의 변화, 1954-1955

## 가. 일본 재무장 정책 재검토

1954년 3월 1일 발생한 '다이고후쿠류마루(第五福竜丸)호 사건'은 요시다 시게루(吉田 茂) 내각의 기반을 뒤흔들기 시작했고, 일본 내에서는 미국에 대한 비난이 봇물 터지듯 밀려나오는 계기가 되었다. 9)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 내 원·수폭 금지 서명운동에는 연말까지 2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서명했다 10)

5월 20일 앨리슨(John M. Allison) 주일 미 대사는 이 사건의

<sup>9) 1954</sup>년 3월 1일, 미국은 마셜군도 비키니 섬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 이때 실험지역 인근에서 참치 조업을 하고 있었던 다이고후쿠류마루호의 선원들이 방사능에 노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선원들에게 피폭(被爆) 증상이 나타났고, 9월 23일 구보야마 무선기장이 사망했다. 미국은 피폭에 따른 증상을 인정하지 않았고, 보상액도 지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요시다 총리는 미국에 제대로 항의하지 않았다. (마고사키 우케루 지음·문정인 해제·양기호 옮김, 『미국은 동아시아를 어떻게지배했나: 일본의 사례, 1945-2012년』, 서울: 메디치, 2013, 188-191쪽).

<sup>10)</sup> 다나카 아키히코 지음·이원덕 옮김, 『戰後 일본의 안보정책』, 서울: 중심, 2002, 183쪽. 1950년대 미국이 일본에서 원자력평화이용박람회를 개최하고 원자력의 평화이용에 대한 여론형성과정에 전략적으로 개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것에는 이와 같은 일본 내 반미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서동주, 「일본 고도성장기'핵=원자력'의 표상과'피폭'의 기억」, 『일본학보』 제99권, 한국일본학회, 2014, 433-448쪽; 서동주, 「'전후'와 폭력: 한국전쟁, 기지, 원자력」, 『日本研究』 제24집, 글로벌일본연구원, 273-304쪽을 참고.

영향을 분석하여 미 국무부에 보고했다. 이 보고에서 앨리슨은 '일본이 안고 있는 핵에 대한 취약성'을 지적하면서, 미국의 핵 독점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과 일본에서 중립주의와 함께 미국으로 부터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을 경고했다.<sup>11)</sup> 미국 정부는 피폭의 경험에 뿌리를 둔 일본의 반미(反美)주의와 평화주의 사이의 연관성을 부인할 수 없었다.<sup>12)</sup>

1954년 8월 9일과 10일 앨리슨 대사와의 회담 석상에서 자유 당(자민당의 전신)의 이케다 하야토(池田 勇人) 간사장은 일본이 정치적·경제적 맥락을 고려하여 동·서 관계를 재검토하고 보다 유연한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발언은 일본 내의 미국에 대한 의구심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것이었다.<sup>13)</sup> 그리고 미국과의 쌍무관계에서 나름대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복합적인 포석이었다.<sup>14)</sup>

1954년 10월 25일 주일 미 대사관에서는 일본의 정치적 안정을 증대시키기 위해 미국의 대일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미 국무부로 발송했다. 10월 27일 미 국가안전보장회의실시조정국은 '대일 목표와 행동에 관한 진척상황 보고'를 작성하여일본 내에서 더욱 심각해지는 반미감정과 중립주의, 공산주의의 유혹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한 재무장 압력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대일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15)

<sup>11)</sup> 소토카 히데토시·혼다 마사루미우라 도시아키 지음·진창수·김철수 옮김, 『미일 동맹: 안보와 밀약의 역사』,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5, 117-119쪽.

<sup>12)</sup> Guthrie-Shimizu, Sayuri., "Japan, the United States, and the Cold War, 1945-1960", p. Leffler, Melvyn and A. Westad, Odd,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Cold War Volume I. Origin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p. 258.

<sup>13)</sup> 소토카 히데토시·혼다 마사루·미우라 도시아키 지음 · 진창수·김철수 옮김 (2005), 120-121쪽.

<sup>14)</sup> 신욱희 (2019), 233쪽.

<sup>15)</sup> 소토카 히데토시·혼다 마사루·미우라 도시아키 지음 · 진창수·김철수 옮김 (2005),

미국 정부의 대일정책 재검토 작업은 1955년 4월까지 계속되었다. 16)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4월 9일에 새로운 대일정책을 담은 문서인 NSC5516/1을 채택했다. 향후 5년간 미국 대일정책의 기본이되었던 이 문서는 "일본은 주일미군기지가 일본 방위를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전쟁 시 일본을핵공격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안보문제에 있어서 미・일 간의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지적했다. 17) 그리고 이러한 이해관계에 관한 문제는 일본 정부와 대등한 입장에서협의해야 하며, 특히 "군사력 증대에 대한 압력을 가해서 일본의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18)

미국 정부가 앨리슨 대사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대일정책을 채택했지만, 미·일 관계는 쉽게 호전되지 않았다. 1955년당시 하토야마 이치로(鳩山 一郎) 내각은 과거 요시다 내각의 친미(親美)적 자세를 비판하면서 자주독립 노선을 내세웠다. 그리고 일본 내 반기지(反基地) 운동의 확산 분위기 속에서 1955년7월 미국에 미·일안보조약 개정을 요구했다 19) 대미관계에

<sup>121-124</sup>쪽. 1950년대 초 미국의 일본 재무장 정책이 수립되는 과정과 그 내용에 대해서는 김남균, 「미국의 일본 재무장 정책」,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1』,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다나카 아키히코 지음·이워덕 옮김 (2002)의 제2장을 참고.

<sup>16) 1955</sup>년 1월과 2월 앨리슨 대사는 재차 미 국무부에 전문을 보내 방위력을 중시하는 미국 정부와 정치적 안정과 경제성장을 우선순위로 두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비교하면서 미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입장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신욱희 (2019), 233쪽).

<sup>17) &</sup>quot;National Security Council Report", 9 Apr 55, FRUS, Vol. XXIII, Part1 JAPAN, p. 56.

<sup>18) &</sup>quot;National Security Council Report", 9 Apr 55, FRUS, Vol. XXIII, Part1 JAPAN, p. 59.

<sup>19) 1954</sup>년 12월 10일 출범한 하토야마 내각은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동 시에 소련과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이른바 '전방향 외교(multidirectional diplomacy)' 정책을 표방했다. 1956년 12월 23일 이시바시 단잔(石橋 湛山)이 총 리가 되어 하토야마 내각의 외교정책을 계승했다. 그러나 그는 취임 후 60여 일만

있어서의 자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을 안보조약 개정 움직임으로 표현한 것이다.<sup>20)</sup>

이때 미·일안보조약 개정에 관한 교섭을 맡은 일본 외무성이 기존 안보조약의 문제점으로 정리한 내용 중에는 미국의 핵무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현행 조약에서는 재일미군의 배치와 장비에 관해서는 미국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일본의 의향을 무시하고 핵무기를 일본에들여올 수 있다는 논의가 생겨날 수 있다."<sup>21)</sup> 즉 하토야마 내각이 안보조약 개정을 요구한 배경에는 미국의 핵전략에 대한 고려가 중요한 맥락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1955년 8월 시게미쓰 마모루(重光 葵) 외무대신과 기시 민주당 간사장 등으로 구성된 일본의 사절단은 워싱턴을 방문하여 이 문제에 대해 덜레스(John F. Dulles) 미 국무장관 일행과 논의했다. 8월 29일 열린 제1차 회담에서 덜레스가 행한 발언은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일본 내 반기지 운동에 이은 하토야마 내각의 미·일안보조약 개정 요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잘 보여준다.

일본 내에서 핵무기가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중략] 그러나 만약 핵무기가 거부된다면, 공산주의 위협에 가장 중요한 억지력이 사라질 것이다. 미국은 그러한 상황에서 쉽게 공격당하지 않을 것이지만, 소련의 방대한 영토에 훨씬 근접해있는 국가들은 심각한 위험에 처할 것이다. 22)

에 지병으로 사퇴했으며, 1957년 2월 기시 노부스케(岸信介)가 총리로 취임하게 된다. (Iriye, Akira and I. Cohen, Warr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n the Postwar World*, Lexington: The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1989, pp. 26–29; 63).

<sup>20)</sup> 신욱희 (2019), 236쪽.

<sup>21)</sup> 다니카 아키히코 지음 · 이원덕 옮김 (2002), 161쪽.

<sup>22) &</sup>quot;Memorandum of a Conversation, Department of State", 29 Aug 55, FRUS,

이튿날 계속된 제2차 회담에서 덜레스 국무장관은 래드포드 (Arthur W. Radford) 합참의장에게 발언을 양보하면서 일본의 방위계획에 관하여 조언을 부탁했다. 래드포드는 일본의 방위계획이 충분하지 않으며, 현재의 계획으로는 군사적 위협에 적절히 대응할수 없다는 미 합참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전달했다.

일본이 미국의 지상군 철수를 말할 때 그것은 전투부대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 일본에 있는 7만여 명의 지상군의 절반 이상은 병참기능을 갖춘 지원부대이다. 일본의 계획은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일본의 해군과 공군에 대한 계획도 완전하지 않다. 미군 철수를 위해서는 군사력에 대한 계획을 확대해야 한다. [중략] 미국은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따라 지상 전투부대의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필요에 따라서 일본의 지상군 증강보다 더 빨리 감축할 수도 있다.<sup>23)</sup>

털레스 국무장관과 래드포드 합참의장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미국은 앨리슨 대사의 대일정책 재검토 권고 이후 NSC5516/1을 채택했지만, 극동지역에서 미국의 핵전략과 일본 재무장 정책을 그 즉시 전면적으로 수정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덜레스는 일본 내에서 미국의 핵무기에 대한 여론이 매우 좋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핵무기를 통한 억지력을 갖추는 것이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다. 24)

Vol. XXIII. Part1 JAPAN, p. 92.

<sup>23) &</sup>quot;Memorandum of a Conversation, Department of State", 30 Aug 55, FRUS, Vol. XXIII. Part1 JAPAN. pp. 99–100.

<sup>24)</sup> 이종원은 미국 정부가 NSC5516/1을 채택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중심 국가로서의 일본에 대한 기대를 공식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설명했다(이종원, 「625 전쟁과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통합전략의 변천」, 유영악이채진 편, 『한국과 625전 쟁』,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2, 316쪽).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이후 일본 정부

확실히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폭넓은 상황에서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1955년 초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러한 접근법을 제한전(limited war)에도 확대 적용할 것을 승인했다. 25) 미국은 제1차 베트남전쟁의 디엔비엔푸 전투(battle of Dien Bien Phu) 직후인 1954년 8월 7일 대외정책의 기본 문서로 NSC5422/2를 채택했으며, 이 문서에서부터 공산진영이 아시아에서 '점진적 확대(creeping expansion)'을 추구함에 따라 제한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26) 그리고 1955년 1월 7일 채택된 NSC5501을 통해서는 국지적 침략(local aggression)을 억지하기 위해 '적절한 핵능력으로 무장된(equipped as appropriate with atomic capability)' 군사력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7)

와 있은 회담에서 여러 차례 군사<mark>력 증강</mark>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새로운 대일 정책을 채택한 것은 사실이나,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군사적 중심국가를 모색하기 전까지 일본 정부에 기존의 대일정책을 즉각적으로 수정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 았던 것이다. 마일 관계를 보다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려는 미국 정부의 정치적 판 단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sup>25)</sup> Gaddis, John L., Strategies of Containment: A Critical Appraisal of American National Security Policy During the Cold Wa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5[1982], pp. 147; 169.

<sup>26)</sup> 제1차 베트남전쟁은 1946년 12월 19일 베트민(Viet Minh)군의 하노이 발전소 습격을 시작으로 1954년 5월 7일 디엔비엔푸 전투가 끝날 때까지 8년간 계속된 전쟁을 말한다. 베트남전쟁의 시기 구분에 대해서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사령부직할부대편』,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14-25쪽을 참고. 디엔비엔푸 전투에서 프랑스군이 베트민군에 패배했다. 1956년 9월 미태평양사령관 스텀프(Felix B. Stump) 제독이 한 영국군 장교에게 설명한 바에따르면, 이 전투에서 미국은 나토(NATO) 국가들의 반대로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했으며 이후부터 아시아의 동맹국들은 미국의 핵무기 사용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미국의 군사지도자들은 동맹국을 안심시키고 미국이 약하다는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핵 능력과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결심을 과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Jones, Matthew D., After Hiroshima: The United States, Race and Nuclear Weapons in Asia, 1945-1965,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p. 310).

<sup>27)</sup> David M. Walker (2004), pp. 74-77.

이렇듯 1955년으로 접어들면서 미국 정부는 전면 핵전쟁(general nuclear war)에 따른 대량보복(massive retaliation) 능력을 강조했던 것에 더하여 전면 핵전쟁으로의 확전을 막기 위해 제한전과 국지전(local war) 단계에서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28) 그러나 같은 시기 일본 정부는 재무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일본 여론은 핵무기에 대해 대단히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일본의 재무장과 핵전략에 기반하여 극동지역 안보정책을 수립해 나가고자 했던 미국 정부의 노력은 차질을 빚게 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강조해온 극동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 나. 한국의 전략적 가치 제고

미국 정부가 대일정책을 재검토하게 되면서 대한정책에도 변화가 있기 시작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해외에 배치된 미군의 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핵무기 효과에 대한 기대 때문만은 아니었다. 아이젠하워의 의도는 지역 방어를 위해 동맹국의 인력을 활용하면서, 미국은 핵무기로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이었다. 즉, 미국과 지역 동맹국들 간의 군사적 분업을 추구했던

<sup>28)</sup> 그러나 이 결정이 곧 제한전과 국지전에서의 무차별적인 핵무기 사용을 의미했던 것은 아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핵무기 사용 의지를 보여준다면 도발 가능성이 희박해질 것이며, 도발 억지에 실패하여 제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전면전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John L. Gaddis, (2005[1982]), pp. 164-165). 그러나 핵무기를 사용하면서도 핵 전면전을 촉발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은 곧이어 비판에 직면했다. 이를 비판한 대표적인 인물이 키신저(Henry A. Kissinger)이며, 1957년 출판된 그의 저서 Nuclear Weapons and Foreign Policy에 그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서는 헨리 A. 키신저 著李春根 譯,「核武器와 外交政策」, 서울: 青莪出版社, 1980의 제7장 '제한핵전쟁의 문제'를 참고.

#### 것이다.<sup>29)</sup>

그러한 맥락에서 아시아·태평양의 지역적 집단안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1955년 2월에 대한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담은 NSC5514가 승인되었다. 이 문서에는 한국과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 간의 지역적 연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었다. 사카타 야스요(阪田 恭代) 교수의 평가에 따르면, 이 문서는 '한미·일 3국 안보관계의 출발(the origins of U.S.-ROK-Japan trilateral security relations)'를 의미했다. 30)

새로운 대한정책의 수립은 주한미군을 재배치하는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주한미군 재배치는 극동지역의 군사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 특히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 내에서의 논의 과정은 미국의 대한 정책이 대일정책과 매우 밀접한 관련 속에서 수립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1955년 6월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 육군참모총장과 혈 (John E. Hull) 국제연합군 및 미 극동군사령관은 한국에서 적대행위가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은 철수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투에 개입될 것이며, 일본 방위를 위해서도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주한미군 2개 사단을 모두 일본으로 철수하거나,혹은 적어도 1개 사단은 일본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반면 래드포드 합참의장은 전면전 시 일본 방위는 일차적으로핵무기를 활용하는 반격에 의존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주한미군을 일본으로 전환하다면, 전환한 부대들은 일본 방위에 결

<sup>29)</sup> Dockrill, Saki, Eisenhower's New-Look National Security Policy, 1953-61, London: Macmillan Press, 1996, p. 70; John L. Gaddis (2005[1982]), p. 164.

<sup>30)</sup> 사카타, 「'지역동맹' 으로서 한·미동맹의 기원: 1953-54년 미국의 아시아·태평 양 집단 안보정책과 한·미동맹의 형성」,『軍史』第57號,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79-82쪽.

정적인 기여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31)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미국의 주요 안보담당자들이 기본적으로 대한안보정책을 대일안보정책과의 관련 속에서 평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32) 한국 방어와 일본 방어를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들은 극동지역 전체에서 자유진영의 군사력 수준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을 우려했으며, 그핵심적인 원인으로 일본의 재무장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33)

이러한 인식은 래드포드 합참의장의 발언에서 특히 잘 드러난다. 래드포드는 주한미군 재배치에 관한 위의 논의가 있기 2개월전인 1955년 4월 레이시(William S. B. Lacy) 주한 미 대사와의 매우 개인적이고 비밀스러운 대화(highly personal and confidential talk) 자리에서 한국의 군사력 증강(build-up) 계획에 대해 질문받았다. 래드포드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래드포드는 '낡은 구식 장비를 신식으로 교체함으로써, 자유진영과 공산진영간의 균형을 되찾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래드포드가 주로 의미하는 바는 항공기에 관한 것이었으나, 박격포와 같은 소형 장비 또한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교체 계획에 중포(heavy artillery)류 장비가 포함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래드포드는 우리의 종심 방어선은 한반도 후방과 더 나아가 일본의 후방인 오키나와까지 나아간다고 밝혔다. 레이시는 래드포드가 언급한 '균형의 회복'은

<sup>31)</sup> 이철순 (2000), 263-264쪽.

<sup>32) 1950</sup>년대 중반 미국의 한국정책은 일본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되고 있었으며, 이는 당시 미국의 정책 수립가들의 일반적인 정서였다. (차상철 (2001), 147-148쪽).

<sup>33)</sup> 헐 사령관은 1955년 4월 21일 제254차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일본의 군사적 능력을 높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이 현재 '극동지역의 가장 큰 군사적 문제(greatest military problem in the Far East)'라고 평가한 바 있다. ("Memorandum of Discussion at the 245th Meeting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21 Apr 55, FRUS, Vol. XXIII, Part2 KOREA, p. 69).

단지 한반도 내부의 균형이 아니라 아시아 전체 지역의 균형을 일 컫는 것이라고 평가했다.<sup>34)</sup>

래드포드 합참의장의 발언은 일본의 군비증강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극동지역 전체의 군사력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의 군사력 증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준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하나의 종심을 갖는 방어선을 이루고 있다는 설명은 이 두 국가가 하나의 작전지역 내에서 군사적으로 서로 연동하고 있다는 혹은 그래야 한다는 지정학적 인식을 보여준다.

극동지역 안보상황에 대한 미국의 주요 안보담당자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종합해보면, 극동지역의 군사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 안은 크게 세 가지가 될 수 있었다. 첫째, 주한미군 2개 사단의 전부 혹은 일부를 6·25전쟁 정전협정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극동지역내 일본을 포함한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증강하는 것이다. 35) 둘째, 주한미군 2개 사단을 전부 혹은 일부 일본으로 전환하면서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더욱 압박하는 것이다. 이 경우 일본 정부와 여론의반대를 감수해야 한다. 셋째, 주한미군 2개 사단을 전부 한국에 그

<sup>34) &</sup>quot;Memorandum From John W. Hanes to the Secretary's Special Assistant (O'connor)", 19 Apr 55, FRUS, Vol. XXIII, Part2 KOREA, pp. 67-68.

<sup>35)</sup> 이러한 대안은 헐의 후임자인 테일러(Maxwell D. Taylor) 사령관의 보고내용에서 확인된다. 그는 1955년 6월 2일 합참에 보내는 전문에서, 미군과 국제연합군을 한국에서 철수시키고 '극동군사령부가 관할하는 다른 지역(elsewhere in FEC)'으로 배치한다면 정전협정의 제약에서 벗어나 현대화 작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Telegram From the Commander in Chief, United Nations Command (Taylor) to the Joint Chiefs of Staff", 2 Jun 55, FRUS, Vol. XXIII, Part2 KOREA, pp. 108-110). 625전쟁 정전협정 제2조 13항 (ㄹ)목은 한반도로 반입될 수 있는 무기에 대해 규정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②한국 국경 외로부터 증강하는 작전 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의 반입을 정지한다. 단, 정전 기간에 파괴, 파손, 손모 또는 소모된 작전 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은 같은 성능과 같은 유형이 물건을 1대 1로 교환하는 기초 위에서 교체할 수 있다." (이연주·이근욱 (2015), 132쪽).

대로 주둔시키거나 혹은 그대로 주둔시키면서 동시에 증강시키는 것이다. 이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6·25전쟁 정전협정의 제약을 정지 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다.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는 결국 래드포드 합참의장의 안에 따라 2 개 사단 모두 한국에 잔류시키는 방안으로 결정되었다. 이 결정은 기본적으로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덜레스 국무장관의 대(對)중국 압 박정책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보다 직접적으로는 일본 국내의 반기 지운동과 반미여론이 고조되어, 일본 본토의 미 지상군 유지가 정치적으로 곤란하게 된 사실이 크게 작용한 결과였다 36)

특히 이러한 결정에는 미 국무부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다. 머피 (Robert D. Murphy) 국무부 정치담당 부차관은 이 사안에 대해 일본에 대규모 미군을 주둔시킨다면 일본 국민들의 분노와 반감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심리적인 측면에서 미국에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덜레스 국무장관과 로버트슨(Walter S. Robertson) 극동담당차관보 역시 머피와 의견을 같이하면서 래드포드 합참의장의 안을 지지했다. 37)

미국의 주요 정치 및 군사 지도자들은 최초 일본의 재무장 정책을 통해 극동지역의 군사적 불균형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미국이 상정했던 일본에 대한 재무장 요구 정책은 일본의 반발로 진전을 보이지 못했으며, 오히려 일본 내 반미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미국의 극동지역 안보정책은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sup>38)</sup> 즉, 가능한 세 가지 대안들 중 세 번째 대안에 주목하게된 것이다.

<sup>36)</sup> 이종원 (2002), 318쪽.

<sup>37)</sup> 이철순 (2000), 264-265쪽.

<sup>38)</sup> 최희식, 『전후 한일관계 70년: 우리는 어떻게 갈등을 극복해 왔나』, 서울: 선인, 2016, 35-37쪽.

한편 이 시기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핵전략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1955년 6월 18일 정일권 육군참모총장은 워싱턴에서 맥클러킨(Robert J. G. McClurkin) 미 국무부 극동과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군은 미국 방어의 최전선으로서 그리고 만약 공산측이 핵공격을 한다면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목적에서 현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대한민국은 미국이 운항하는 '배 한 척에 모든 것을 실었으며' 미국이 이끄는 대로가야만 하고 또 그렇게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39) 한국 정부는 일본의 재무장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의 군사적 역할에 더욱 관심을 갖고 한국에 의존하도록 만들고자 노력했다. 40)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 요인을 활용하여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획득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sup>41)</sup> 그는 미국 측에 일본의 재무장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었다. <sup>42)</sup> 향후 일본이 한국에게 공격적인 정책을 전개할 가능성에 대해 이승만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sup>43)</sup> 그러나 그

<sup>39) &</sup>quot;Memorandum of a Conversation, Department of State", 18 Jun 55, FRUS, Vol. XXIII, Part2 KOREA, pp. 114-116.

<sup>40)</sup> Gallicchio, Marc S., "The Best Defense Is a Good Offense: The Evolution of American Strategy in East Asia, 1953–1960", I. Cohen, Warren and Iriye, Akira, *The great powers in East Asia, 1953–1960*,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0, p. 70.

<sup>41)</sup> 이종원은 "합리적 판단이 아니라 개인적 감정에 좌우된 정책이라는 비판은 당시부터 있었다. 그러나 신생 한국의 자립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당분간은 일본과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단절하는 한편, 미국의 지원 확보에 주력하는 전략이었다."고 이승만 대통령의 대일정책에 담긴 전략적 의도를 분석했다. (이종원, 「전후 한일관계와 미국: 한미일 삼각관계의 변용과 지속」, 이원덕기미야다다시 외지음, 『한일관계사 1965-2015: I.정치』, 서울: 역사공간, 2015, 176쪽).

<sup>42) &</sup>quot;이승만 대통령이 리차드 닉슨 부통령에게 보낸 서한", 1 Apr 54, 감사서한-13, 대통령기록관 사료

<sup>43)</sup> 윤석정, 「이승만 정권과 일본의 재군비(1953-1955)」, 『일본공간』 제21호, 국민대

의 구상은 일본의 안보를 한국이 맡아야 한다는 측면으로도 볼 수 있다.<sup>44)</sup>

이러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이승만 대통령의 인식은 1950년대 후 반까지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한국 정부 내에서는 미국의 극동지역 방공전선(防共前線)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45) 일본 방어를 위해서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반드시 증강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미국 측에 전달하는 모습을 보였다. 46) 이승만은 1958년 국무회의에서 한 · 미 · 일의 안보관계 속에서 한국 정부가 안보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중략] 국방장관은 무슨 핑계든지 만들어서 미국에 가서 아는 사람들과 의논도 하고 서신으로도 연락하여 그들에게 '미국이 만일 털레스 씨의 정책대로 일본을 재무장시킨다면 공산당을 쳐내 보내고서도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도록 하여야한다." [중략] "그것은 원조를 더 받자는 술책이다. 국방장관은 그 외와 지혜로서 미국인에게 말하여 '한국만 붙들고 있으면 걱정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만들어야 한다."고 분부.47)

학교 일본학연구소, 2017, 135쪽.

<sup>44)</sup> 박태균, 「반일을 통한 또 다른 일본 되기: 이승만 대통령의 대일인식」, 「일본비평」 제3호,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2010, 114쪽.

<sup>45)</sup> 홍원표, 「일본의 잠재적 전력」, 「國防研究」第1號,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1958, 141-144쪽.

<sup>46) &</sup>quot;이승만 대통령이 L. L. Lemnitzer 미국방부참모총장에 보낸 서한", 22 July 59, 17-미국육군장성(Chief of staff- L. L. Lemnitzer(렘니처)) 서한철, 대통령기록관 사료.

<sup>47) &</sup>quot;대만사태에 관한 국제정세에 관하여," 제97회, 「제1공화국 국무회의록」1958,10,21, 김명섭·이희영·양준석·유지윤 편주, 『대한민국 국무회의록 1958』, 파주: 국학 자료원, 2018, 362-363쪽.

한국 측의 입장과 인식은 앞서 살펴본 미군의 주요 정치 및 군사지도자들의 그것과 거의 일치하는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1955년을 지나면서 미국 정부의 극동지역 안보정책은 핵무기와 주일미군기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과 여론의 반응을 바꾸려는 노력을 단행하기 보다는, 6·25전쟁 정전협정의 제약을 해소하면서 한국에 배치된 군사력을 증강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된다.

# 3. 전술핵무기 배치 논의와 결정, 1956-1957

## 가. 전술핵무기 배치 논의의 본격화

1956년으로 접어들면서 핵무기와 미군기지에 관한 일본의 여론은 더욱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미국 정부는 일본 대중에게 그들의 냉전 전략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1956년 1월 미 해외 공보처(USIA, United States Information Agency)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국의 입장에 함께 서야한다는 입장은 전체 응답자의 29%였다. 그러나 중립을 지켜야한다는 의견은 48%를 차지했다. 그리고 주일미군기지에 대한 설문에서 16%가 긍정적이었으며, 무려 51%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48)

같은 달에 미 극동 육군 및 제8군사령부는 훈련 목적으로 오키나와에 있는 280mm 원자포를 일본 본토 내로 반입하게 해줄 것을 미 극동군사령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미 극동군사령부는 원자무기 반입이 일본의 정치적 상황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sup>48)</sup> Matthew D. Jones (2010), pp. 322-323.

승인하지 않았다. 49) 미국의 정치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군사지도자들 역시 핵무기 관련 사안이 정치적으로 일본에 매우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6월에 있었던 오키나와의 '섬 전체 투쟁'은 일본 내에서 초당파적 반기지운동으로 발전했으며, 반미감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영향을 미쳤다. 50)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국지전에 대비하기 위한 핵무장을 언급했던 NSC5501의 연장선상에서 대외안보정책의 기본 방침을 발전시켜나갔다는 사실이다. 1956년 3월 15일 채택된 NSC5602/1은 NSC5501보다 핵무기 전개 정책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논의를 담고 있었다. NSC5602/1은 전면전 이외의 국지전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를 모두 사용하기에 충분히 다재다능한 군사력(forces must be sufficiently versatile to use both conventional and nuclear weapons)'를 갖춰야 한다고 명기했다. 51)

미국 정부는 극동지역에서 핵무기에 대한 일본의 반응을 우려하면서도, 지역 안보정책 수립에 있어서 핵무장을 한층 더 강조하고

<sup>49) &</sup>quot;Hq Far East Command UN Command, Command Report, Jan - Mar 1956", 15 Dec 56, RG550, Records of United States Army, Pacific, Records of HQ, US Army, Pacific, Military History Office, Classified Organizational History Files, Box 84, pp. 47-48.

<sup>50)</sup> 오키나와의 '섬 전체 투쟁'은 1950년대 오키나와에 미군기지 건설을 위한 일련의 토지몰수정책에 대항한 주민 측의 반대운동을 충칭하는 것이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의에서 오키나와의 토지문제에 대한 현지 조사단을 파견했으며, 현지조사를 마친 메르빈 프라이스(Melvin Price) 의원 일행은 1956년 6월 '프라이스 권고'를 발표했다. 권고에서 오키나와는 '세계적 규모에 걸친 방위의 불가결한 일부'로서 전략적으로 중요하고, '핵무기를 저장해서 사용하는데 외국정부의제한도 없는'등의 이점이 있다고 했다. 이것이 투쟁에 발단이 되었다. (소토카히데토시·혼다 마사루·미우라 도시아키 지음·진창수·김철수 옮김 (2005), 149—152쪽).

<sup>51)</sup> David M. Walker (2004), pp. 77-83.

있었다. 그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1차 베트남전쟁의 결과 때문이었다. 그리고 제1차 대만해협(臺灣海峽) 위기로 불리는 1954년 금문도(金門島)와 마조도(馬祖島)에 대한 중국의 포격과 1955년까지이어진 중국—대만 간의 위기 상황이 미친 영향이 컸다. 이때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덜레스 국무장관은 이 섬들이 대만 방어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으며,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을 고려한 바 있었다.52)

이러한 배경으로 1956년 초부터 미국 정부 내에서는 일본이 아닌 한국에 배치된 군사력을 증강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특히 미국의 주요 군사지도자들은 이때부터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다. 테일러 미육군참모총장은 1956년 1월 6일에 열린 국무부 관리들과의 회의에서 한국에 전술핵무기 배치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극동지역 안전보장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의 연동을 강조하면서, 한국에 새로운 군사 장비를 도입하는 사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테일러 장군은 만약 가능하다면 지금 몇 대의 전투기를 한국에 배치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는 많은 수는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연합군사령부가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 비행기를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는 또한 정전협정 제 13항 (d)목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탱크와 신형 포병전력이 한국에 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280mm 원자포배치 가능성을 언급했다.53)

국제연합군 및 미 극동군사령관 렘니처(Lyman L. Lemnitzer)도 이러한 테일러 육군참모총장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그는 1월 30일

<sup>52)</sup> John L. Gaddis, (2005[1982]), pp. 167-168

<sup>53) &</sup>quot;Memorandum of a Conversation, Department of State", 6 Jan 56, FRUS, Vol. XXIII, Part2 KOREA, p. 200.

테일러에게 보낸 전문에서 한국에 있는 적대세력과 미군 간에 존재하는 군사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군에 의해 '핵 운반 능력을 가진 육군의 무기(army weapons possessing an atomic delivery capability)'가 한국에 배치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54) 그리고 렘니처는 6월 30일까지 미 제1기병사단(1만 명)과 군수지원부대(3만 3천명)만을 남기고 주일미지상군을 모두 철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미군이 일본에서 완전철수를 결정하기 전까지 지상군을 줄일 수 있는 만큼 가장 최소로 줄인다는 것이었다. 55)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주한미군에 신형 무기를 도입하는 사안에 대해 결심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후버 (Herbert Hoover, Jr.) 국무장관 대리에게 보낸 전문에서 "새로운 유형의 무기를 장착한 군대를 한국에 주둔시키겠다는 우리의 의도를 공개적으로 발표해야하는 시기가 오지 않았는지" 문의했으며, 후 버는 아이젠하워에게 "우리는 이것이 이루어져야 할 시간이 가까워 졌다고 생각한다."고 회신했다. 56)

1956년 중반을 넘어서면서 한국에 배치된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는 일본의 상황과의 관련 속에서 한층 더 진전되었다. 5월 23일 이 문제에 대한 미 국무부와 합참의 회의에서, 래드포드 합참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sup>54) &</sup>quot;Telegram From the Commander in Chief, United Nations Command (Lemnitzer) to the Department of the Army", 30 Jan 56, FRUS, Vol. XXIII, Part2 KOREA, p. 212.

<sup>55) &</sup>quot;Memorandum From the Acting Director of the Office of Northeast Asia Affairs (Hemmendinger) to the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Far Easter Affairs (Robertson)", 19 Apr 56, FRUS, Vol. XXIII, Part1 JAPAN, pp. 171–173.

<sup>56) &</sup>quot;Memorandum From the Acting Secretary of State to the President", 3 May 56, FRUS, Vol. XXIII, Part2 KOREA, p. 256.

래드포드 제독은 정전협정 13(d)항에 대해 문의하면서, 주한미군의 효율성을 필요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큰 위험(great risks)을 감수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래드포드 제독은 우리가 공군력을 철수시켜 한국으로 보낼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일본 인들에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일본인들로부터 그들의 활주로를 연장하는데 동의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57)

래드포드 함참의장은 일본의 군사력이 충분히 증강되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에 배치된 군사력 또한 정전협정의 제약으로 인해 효율적으로 준비되고 못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 그런 점에서 그의발언은 정전협정에 의한 제약을 해소할 수 있다면 극동지역의 군사적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기도 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미국이 한국에 보다 많은 군사력을 배치하여 일본의 재무장을 자극하려는 간접적인 목적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1956년 7월 12일 제290차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윌슨(Charles E. Wilson) 국방장관은 극동지역에서 한국의 군사적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관점을 명확히 제시했다. 그는 일본의 군 사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하며, 지역 안보정책에서 한국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밝힌 구상은 다음과 같다.

국방부는 태평양지역 군사부문 재조직을 위한 새로운 계획에 합의했다. 이 계획이 실행되면 스텀프 제독이 이끄는 하나의 태평양사 령부가 수립될 것이다. 게다가 국제연합군사령부를 일본에서 한국으

<sup>57) &</sup>quot;Memorandum on the Substance of Discussion at the Department of State-Joint Chiefs of Staff Meeting", 23 May 56, FRUS, Vol. XXIII, Part2 KOREA, p. 271.

로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것은 일본 내에 팽배해 있는 일본 이 아직 점령되어 있다는 인식을 없애기 위한 국방부 차원에서의 노력의 일환이다. 이러한 인식을 없애지 못하면 우리는 일본에서 우리의 지위를 잃게 될 것이다.58)

이 계획은 이듬해에 실제로 실행되었다. 1957년 7월 1일 용산의 미 8군사령부 광장에서 도쿄 국제연합군사령부의 서울 이전식이 거행되었다. 59) 국제연합군사령부의 서울 이전은 이 사령부를 축으로 하는 미국의 지역전략에 의해 한・일 관계가 군사적으로 매우 긴밀히 연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60) 그런점에서 미국의 대일군사정책이 처음에는 동아시아 전역(全域)을 위한 주요 군사기지였던 것에서 점차 군사작전을 위한 병참기지로 전환되었다는 평가는 한・미・일 3국의 안보관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참고가 된다. 61)

<sup>58) &</sup>quot;Memorandum of Discussion at the 290th Meeting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12 Jul 56, FRUS, Vol. XXIII, Part1 JAPAN, pp. 188-189. 물론 이러한 조직 재편에는 인력의 감축과 조직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일반적인 목적도 있었다. 그러나 래드포드 합참의장은 여기에 더하여, 국제연합군 사령부를 한국으로 이전함으로써 한국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극동군사령부를 해체하고 태평양지구사령부를 설치함으로써 일본이 그들 자신의 방어에 더 큰 부담을 짊어지게 되기를 희망했다. (Matthew D. Jones (2010), pp. 308-309).

<sup>59)</sup> 서울新聞社 編著 (1979), 316쪽.

<sup>60)</sup> 李東俊,「韓米日安保体制の歴史的展開と「国連の権能」: 1950-70年代における米国の対日及び 国連軍司令部政策を中心にして」、『日本研究論雜』 제28호, 現代日本學會, 2008, pp. 85-86.

<sup>61)</sup> Mott IV, William H., United States Military Assistance: An Empirical Perspective, Westport: Greenwood Press, 2002, p. 219. 이때 형성된 한 · 미 · 일 3국의 안보관계는 6 · 25전쟁 발발 70년이 지난 현재도 여전히 유효하다. 국제연합군사령부의 참모장 질레트(Mark W. Gillette) 소장은 "한반도에서의 국제연합군사령부활동을 보충하는 것은 도쿄 요코타 공군기지에 소규모로 존재하는 국제연합군사령부후방기지입니다. 호주 대령이 이끄는 국제연합군사령부 후방기지의 국제 장교단은 일본에 전략적으로 지정된 7개의 국제연합군 기지에 대한 접근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United Nations Command, Combined

1956년 9월 20일 제297차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향후 2년 동안 한국에 주둔하게 될 미군과 한국군의 최소수준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하여 제출할 것을 합참에 요청했다. 62)이에 따라 10월 11일 합참은 국방부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합참은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최소 수준을 현실에 맞게 결정하기 전에취해야할 첫 조치로서 주한미군과 장비를 '핵전력을 포함하여(to include atomic capable forces)' 현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63)

한편 11월 28일 이 문제에 대한 미 국무부와 국방부 간의 논의에서 국무부 극동과의 네스(Nes)는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할 경우 동맹국들 사이에 '심각한 파급효과(serious repercussion)'이 발생할 것을 지적했다. 그는 일본과 호주와 같은 국가들이 매우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했다. 64) 1956년 초부터 국방부를 중심으로 한반도 전술핵무기 배치 문제가 적극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리고 논의에 있어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1956년 말까지

Forces Command and United States Forces Korea, [2018: The Year On Pen] U.S. Military Forces on the Korean Peninsula, 2019 Strategic Digest, 2019, p. 57).

<sup>62) &</sup>quot;Memorandum of Discussion at the 297th Meeting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20 Sep 56, FRUS, Vol. XXIII, Part2 KOREA, p. 314. 이 회의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장기간 해외에 주둔하는 군대가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에서보다 일본에서 더욱 철군시키고 싶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sup>63) &</sup>quot;Memorandum From the Joint Chiefs of Staff to the Secretary of Defense (Wilson)", 11 Oct 56, FRUS, Vol. XXIII, Part2 KOREA, pp. 322-325. 미국 노틸러스 연구소(Nautilus Institutue)의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핵문제 전문가인 헤이스 (Peter J. Hayes)에 따르면, 1956년 후반 존스홉킨스대학의 작전연구실(Operations Research Office)이 국방부에 제출한 자료들에는 한반도에 '원자탄 방벽'을 쌓는데 필요한 무기들을 분류 및 분석하고 있었다. (Operations Research Office, Johns Hopkins University, Semi-Annual Report 9:2 (July-Dec.31, 1956), contents page. (피터 헤이스 지음고대승고경은 옮김 (1993), 85쪽 재인용).

<sup>64) &</sup>quot;Memorandum of Conversation", 18 Nov 56, FRUS, Vol. XXIII, Part2 KOREA, pp. 357–358.

국무부는 네스의 발언에서처럼 그것이 가져올 정치적 파급효과를 우려하며 이를 반대하고 있었다

## 나. 대일정책의 변화와 전술핵무기 배치

1957년 1월 일본 주둔 미 제1기병사단의 철수와 그것이 'Atomic Task Force'로 대체 된다는 일본 내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후 미국무부와 국방부는 그러한 결정을 부인하는 언론 발표를 실시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일본 내 사회주의자들의 비난을 멈출 수 없었다. 이 사건으로 기시 총리는 일본은 핵무기 보유에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더 확고한 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다. 65)

여기에 더하여 1월 30일에는 주일미군 병사가 훈련 도중에 일본 인을 살해한 '제럴드 사건'이 발생했다. 덜레스 국무장관은 일관되게 사태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군을 비판하며, 일본과의 외교관계가 악화될 것을 우려했다.<sup>66)</sup> 이 제럴드의 행위를 두고 그것이 공무집행 중의 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해 미국과 일본 정부는 대립했고 일본 여론은 격앙되었다.<sup>67)</sup>

<sup>65)</sup> Matthew D. Jones (2010), pp. 327-329. 1957년 실시된 일본의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7%가 세계 어느 곳에서도 핵무기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답변했다. (Endicott, John E., *Japan's Nuclear Option: Political, Technical, and Strategic factors*,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75, pp. 91; 93. (피터 헤이스 지음·고대승·고경은 옮김 (1993), 88쪽에서 재인용).)

<sup>66) &</sup>quot;Letter From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Secretary of the Army (Brucker)", 21 May 57, FRUS, Vol. XXIII, Part1 JAPAN, p. 306. 제럴드 사건은 1957년 1월 30일 일본 군마현(群馬県) 소마가하라(相馬原) 미군 훈련장에서 훈련장에 들어와 탄피를 줍고 있던 46세 여성 사카이(坂井)를 미군 병사 제럴드 3등 특기병이 사살한 사건이다. 미군은 이 사건이 '공무집행 중'에 있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여 미국 측 재판권을 얻고자 주장하면서 일본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정영신, 『동아시아의 안보분업구조와 반(反)기지운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12, 224-225쪽).

<sup>67)</sup> 다나카 아키히코 지음·이원덕 옮김 (2002), 168쪽.

핵무기와 주일미군기지에 대한 일본의 여론이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서 미국방부는 주한미군의 현대화를 더욱 강력히 주장했다. 주일미군기지의 공군력과 전략핵무기로 충분히 억지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했던 덜레스 국무장관은 차츰 국방부의 의견을 수용하기시작했다. 극동지역 안보를 위해서는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이 이 지역의 정치적 안정을 고려했을 때 보다 나은 대안일 수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1957년 1월 18일 미 국무부와 국방부 간의 회의에서 최우선적으로 국방부가 나서서 공산진영의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가능한 모든 증거를 수집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국방부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하면, 국무부와 국방부의 대표들이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유진영 내 국가들을 설득하는 자료를 만들기로 했다. 68) 이 시점에서 덜레스 국무장관은 만약 국방부가 공산진영이핵무기로 그들의 장비를 증강하고 있다는 확실한 정보를 제공할 수있다면, 한반도에 핵무기 배치를 묵인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1월 31일 제311차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는 보다 점진적으로 한국 군을 감축하는 계획과 함께 주한미군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는 안 에 기초하여 극동지역 안보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발전시킨 다는 결정을 내렸다.<sup>69)</sup> 이 회의에서 덜레스 국무장관이 내린 결론 은 다음과 같았다.

덜레스 국무장관은 결론적으로 국제관계의 관점에서 보자면 새로운 유형의 무기 도입을 피하면서 동시에 한국군 감축 계획을 유지하는

<sup>68) &</sup>quot;Record of Meeting, Department of State", 18 Jan 57, FRUS, Vol. XXIII, Part2 KOREA, pp. 388-389.

<sup>69) &</sup>quot;Memorandum of Discussion at the 311th Meeting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31 Jan 57, FRUS, Vol. XXIII, Part2 KOREA, pp. 392-402.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요약했다. 하지만 만일 이러한 행동 방침을 취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한국군 병력을 급격하게 감 축시키는 것보다는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데 따르는 위험을 감수하 는 편이 낫다는 의견을 밝혔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57년 6월 13일 제326차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는 사안과 관련해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정전협정 위반에 대응하여국제연합군이 무기와 장비의 현대화를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다울링(Walter C. Dowling) 주한 미 대사와 렘니처 국제연합군 및 미 극동군사령관에게 주한미군을 현대화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서는 한국군의 실질적인 감축을 위한 협상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70)

이에 따라 6월 21일 판문점의 군사정전위원회 회담에서 국제연합 군사령부 수석대표인 릿젠버그(H. L. Litzenberg) 장군은 정전협정 13항 (d)목의 공산 측 위반 혐의를 열거하고, 국제연합군사령부는 '상대적인 군사적 균형이 복구되고, 공산 측이 조치들을 통해 이를 준수할 의지를 표명할 때까지' 해당 문단이 부과하는 제한에 더 이상 묶여 있지 않은 것으로 고려한다는 성명을 냈다. <sup>71)</sup> 그리고 같은 날 다울링 주한 미 대사와 렘니처 국제연합군 및 미 극동군사령관은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 주한미군의 현대화 그리고 이와 관련된

<sup>70) &</sup>quot;Memorandum of Discussion at the 326th Meeting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13 Jun 57, FRUS, Vol. XXI I I, Part2 KOREA, pp. 453-454. 이처럼 주한미군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는 문제는 본질적으로 한국 정부로부터 한국군 감축을 약속받기 위한 협상카드로서의 목적을 갖는 것이 아니었다. 즉, 한국의 특수상황에 따른 것은 아니었다. (피터 헤이스류바 자르스카월 든 벨로 지음한국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 엮음 (1988), 51쪽).

<sup>71) &</sup>quot;Editional Note", no date, FRUS, Vol. XXIII, Part2 KOREA, pp. 460-461.

조치에 대해 논의하기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72)

이렇듯 1957년 6월에 미국 정부는 국제연합군사령부를 통해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는데 있었던 정치적 제약을 제거했다. 이것은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한다고 결정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로써 미국 정부는 극동지역의 군사적 중심국가로서 한국을 공식화했다. 미국 정부는 극동지역에서 일본의 정치적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지역 내의 군사적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한편으로 한반도 전술핵무기 배치는 미 육군의 사단을 펜토믹 사단으로 재조직하는 움직임의 일부였던 측면도 있었다. 73) 6월 27일 브루커(Wilber M. Brucker) 육군장관은 윌슨 국방장관에게 보낸비망록에서 한국에서 전술핵무기는 "미 제7사단과 제24사단이 원자력 무장사단으로 재조직될 때 배치되어야"하며, "한국에서 군의 억지력을 늘리고 우리의 동맹 한국을 안심시키는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74) 그리고 7월 17일 래드포드 합참의장은 역시 윌슨에게 보낸비망록에서 "한국의 미 지상군 현대화는 제7사단과 제24사단을 '펜토믹 개념'으로 재조직하고, 군단형 부대로 재장비하는 것으로 완성될 것이다."고 밝혔다. 75)

<sup>72) &</sup>quot;Telegram From the Embassy in Korea to the Department of State", 21 Jun 57. FRUS. Vol. XXIII. Part2 KOREA, p. 460.

<sup>73)</sup> 미 육군은 핵무기의 지원을 받는 펜토믹 사단을 편성하여, 의회로부터 새로운 무기들에 대한 재정지원과 예산승인을 최대한 얻어내고자 했다. (피터 헤이스 지음고대승고경은 옮김 (1993), 85-86쪽).

<sup>74) &</sup>quot;Memorandum From the Secretary of the Army (Brucker) to the Secretary of Defense (Wilson)", 27 Jun 57, FRUS, Vol. XXIII, Part2 KOREA, pp. 464-465.

<sup>75) &</sup>quot;Memorandum From the Joint Chiefs of Staff to the Secretary of Defense (Wilson)", 17 Jul 57, FRUS, Vol. XXIII, Part2 KOREA, pp. 467-468.

1958년 1월에 존스(Jones) 국무부 극동문제 담당 부차관보가 머피(Murphy) 국무부 정치담당 부차관에게 보낸 비망록은 전술핵무기 배치를 포함하는 주한미군의 현대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 잘 보여준다.

1958년 1월 10일 열릴 국무부-합참 회의에서 당신이 한국군 병력 감축 문제를 주장할 예정이라는 점을 들었다. 주한미군의 현대화와 관련된 우리의 계획을 한국 측이 받아들일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주제는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제 어니스트 존과 280밀리 원자포가 한국에 곧 배치될 예정이다. 76)

존스의 발언은 확실히 한반도 전술핵무기 배치가 본질적으로 한 국군 감축에 목적을 둔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그 의 발언에서는 이 사안이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는 문제'라고 말한 것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그의 발언은 브루커 육군장관과 래드포드 합참의장이 윌슨 국방장관에게 보낸 비망록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한국 방어와 펜토믹 사단으로의 전환을 더 이상 미룰 수 없 었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그러나 전술핵무기 배치를 포함한 주한미군의 현대화 문제는 애 초에 극동지역 전체의 군사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 시된 것이었다. 그리고 이 군사적 불균형에 관한 우려는 본질적으로 일본의 재군비와 일본에서 미국의 핵전략이 부침을 겪는 상황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따라서 존스의 발언은 미국 정부가 극동지역에서 군사적 중심국가로서 일본을 포기하고 한국을 공식화해 나가는

<sup>76) &</sup>quot;Memorandum From the 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Far Eastern Arrairs (Jones) to the Deputy Under Secretary of State for Political Affairs (Murphy)", 9 Jan 58, FRUS, Vol. XVIII, JAPAN; KOREA, p. 425.

1954년부터 1957년까지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1957년까지 일본 내에 있는 9개의 미군기지에 핵탄두를 이송했다. 그리고 1958년 1월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면서 일본 내의 핵무기를 철수했다. 77) 미국이 점령하고 있었던 오키나와를 제외한 일본 전역에 있던 핵무기를 1957년부터 한국으로 옮겼던 것이다. 78) 이러한 사실은 한반도 전술핵무기 배치가 미국의 대한안보정책 차원에서만 논의 및 결정된 사안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미국의대일안보정책 변화에 따른 대한안보정책의 재판단 과정에서 이 사안이 결정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자국의 안보를 미국에 위탁하면서도 미국 정부의 재무장 요구가 야기하는 '냉전의 국내화'를 차단하고자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극동지역의 냉전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했었다. 79) 1950년대 미국 정부에 있어서 일본 정부와 일본의 여론을 우호적으로 두면서 일본에게 극동지역 안보의 중요한역할까지 부여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였다. 80)

일본 정부가 마일 안보조약 개정과 미 지상군 부대의 철수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던 상황에서 일본을 극동의 전략적 거점으로 만들고자 했던 미국 정부의 구상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펜토 믹 사단으로 미 지상군의 편제가 변화하면서 지상군의 일본 배치는 더욱 곤란하게 되었다. 81) 따라서 미국 정부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했다. 주한미군 2개 사단의 한국 잔류, 주일미지상군의 완전

<sup>77)</sup> 피터 헤이스 지음고대승고경은 옮김 (1993), 87-88쪽.

<sup>78)</sup> 김일영·조성렬 (2003), 109쪽.

<sup>79)</sup> 최희식 (2016), 39-41쪽.

<sup>80) &</sup>quot;Memorandum of a Conference With a President, White House," Office, Department of State", 23 Jul 57, FRUS, Vol. XXIII, Part1 JAPAN, p. 429.

<sup>81)</sup> 이종원 (2002), 318-319쪽.

철수, 국제연합군사령부의 한국 이전은 대일안보정책의 변화에 따라 대한안보정책을 다시 판단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결과물 이었다.

한반도 전술핵무기 배치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내려진 결정이었다. 미국 정부는 일본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던 반마·반핵감정을 최대한 회피하면서도, 극동지역에서 핵에 기반 한 억지력을 확고히 유지하고자 했다. 이러한 정치적 판단의 결과가 바로 한반도 전술핵무기 배치였던 것이다. 한편으로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재무장에 관한 관심과 노력을 우회적으로나마 자극하면서도<sup>82)</sup>, 동시에 압박할수 있다고 판단했다.<sup>83)</sup> 1950년대 중·후반 미국 정부는 '일본'요인을 고려하면서 자신들의 냉전 핵전략을 극동지역에 적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sup>82)</sup> 렘니처 국제연합군 및 미 극동군사령관은 "한국군을 현대화하면 일본 자위대 (Japanese self-defense forces)와 일본 정부가 한국을 따라가도록 자극하는 부 수적인 이득(collateral benefit)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었다. "CINCFE TOKYO JAPAN to the DEPTAR WASH DC", 10 Mar 57, RG218, Records of Admiral Arthur, W. Radford 1953-57, 091 Korea 1955, p. 2,

<sup>83)</sup> 이시바시에 이어 1957년 2월 총리로 취임한 기시는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미·일안보조약 개정 논의를 위해 워싱턴을 방문했다. 이 회담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미국이 태평양 방위라는 무거운 짐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환영받지 못하는 장소에는 있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리고 덜레스 국무장관은 "미군 병력을 계속 유지할지 여부는 일본 정부에 달렸으며", 일본이 미국에 협조하지 않을 시 일본과의 절연(divorce ourselves from Japan)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Memorandum of a Conversation, White House", 19 Jun 57, FRUS, Vol. XXIII, Part1 JAPAN, p. 374; Memorandum of a Conversation Between Secretary of State Dulles and Prime Minister Kishi, Department of State", 20 Jun 57, FRUS, Vol. XXIII, Part1 JAPAN, p. 381; "Memorandum of a Conversation, Secretary Dulles' Office, Department of State", 21 Jun 57, FRUS, Vol. XXIII, Part1 JAPAN, p. 389). 미국 측의 단호한 대응은 이 회담이 한국에 전술핵무기 배치를 포함한 주한 미군의 현대화 결정을 내린 직후에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 4. 결론

1950년대 중반 미국의 주요 정치 및 군사지도자들은 한반도 전술핵무기 배치에 대한 논의와 결정 과정에서 일본의 상황을 예의 주시했다. 미국의 핵전략과 일본 재무장 정책이 일본 정부와 여론의부정적인 인식과 저항에 직면하게 되면서, 이들은 일본에 부여한 군사적 부담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대일정책을 재검토했다. 그러나극동지역의 안보상황을 고려한 미국 정부의 대외안보정책은 전술핵무기와 현지 우방국 군대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었다. 따라서 일본에 대한 정치적 고려의 결과, 미국 정부는 극동지역에서한국의 군사력을 현대화하고 증강하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대일정책 변화는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극동지역 내에서도 특별히 한반도에 도입된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한편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극동지역 안보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일본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일본이 미국의 지역 안보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는 다는 사실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한국 정부는 일본 방위를 위해 한국의 군사력을 증강해야 한다는 논리로써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고자 했다. 한반도 전술핵무기 배치에 있어서 미국의 대일정책은 그 자체로도 근본적인 요인이었으며, 한국 정부가 미국의 대일 정책을 전략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84)

<sup>84) 6·25</sup>전쟁으로 탄생한 한반도 정전체제는 공산주의의 팽창을 봉쇄하고, 한국의 북진통일 시도를 방지하며, 일본의 우익전체주의를 봉쇄하기 위한 한국의 의도가 견지된 삼중봉쇄체제(三重封鎖體制)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서는 김명섭, 「전쟁과 평화: 6·25전쟁과 정전체제의 탄생』, 서울: 서강대학교출판 부. 2016[2015]를 참고,

#### 1958년 한반도 전술핵무기 배치 요인 재고찰 | 247

(원고투고일 : 2020, 9, 28, 심사수정일 : 2020, 11, 13, 게재확정일 : 2020, 12, 2,)

주제어: 한·미·일 안보관계, 미국 극동지역 안보정책, 전술핵무기, 주한미군



## 〈참고문헌〉

- 1. 1차 사료
- 대통령기록관, 17-미국육군장성(Chief of staff- L. L. Lemnitzer(램 니처)) 서한철.
- 대통령기록관, 감사서한-13.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5–1957 XXIII Part1 JAPAN, Washington D.C.: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1).
- \_\_\_\_\_\_,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5-1957

  XXIII Part2 KOREA, Washington D.C.: United States

  Governmet Printing Office (1993).
- \_\_\_\_\_\_,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8–1960

  XWII JAPAN; KOREA, Washington D.C.: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4).
- RG218, Records of Admiral Arthur. W. Radford 1953-57, 091 Korea 1955.
- RG550, Records of United States Army, Pacific, Records of HQ, US Army, Pacific, Military History Office, Classified Organizational History Files, Box 84.
- 2. 단행본 및 논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사령부·직할부대편』,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http://uci.or.kr/G500:1310377-02012039533936
- 金基亨,「韓国「戦時」における在日国連軍基地使用権をめぐる日米交渉過程: 朝鮮戦争から沖縄返還に至るまで」、『韓日軍事文化研究』、第16輯,

韓日軍事文化學會, 2013, 101-131쪽.

http://uci.or.kr/G704-SER000009034.2013.16..010

김남균, 「미국의 일본 재무장 정책」,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http://uci.or.kr/G901:A-0006017912

김명섭, 『전쟁과 평화: 6·25전쟁과 정전체제의 탄생』,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6[2015].

http://uci.or.kr/I410-ECN-0102-2017-910-000553726

김명섭·이희영·양준석·유지윤 편주, 『대한민국 국무회의록 1958』, 파주: 국학자료원, 2018.

http://uci.or.kr/G500:1310377-02012051440844

- 김일영·조성렬, 『주한미군: 역사, 쟁점, 전망』, 서울: 한울, 2003. http://uci.or.kr/G901:A-0006039847
- 권오신, 「아이젠하워 대외정책의 기조: '뉴룩(New Look)' 정책과 '아이 젠하워 독트린」, 『미국사연구』 제21집, 한국미국사학회, 2005, 141-173쪽.

http://uci.or.kr/G704-000538.2005.21..003

남기정, 『기지국가의 탄생: 일본이 치른 한국전쟁』, 서울: 서울대학교출 판문화원, 2018[2016].

http://uci.or.kr/G901:A-0006612895

다나카 아키히코 지음·이원덕 옮김, 『戰後 일본의 안보정책』, 서울: 중심, 2002.

http://uci.or.kr/G701:B-00099053457

도널드 스턴 맥도널드(Donald Stone MacDonald) 지음·한국역사연 구회 1950년대반 옮김, 『한미관계 20년사(1945-1965년): 해방 에서 자립까지』, 서울: 한울, 2001.

http://uci.or.kr/G901:A-0006008340

마고사키 우케루 지음·문정인 해제·양기호 옮김, 『미국은 동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했나: 일본의 사례, 1945-2012년』, 서울: 메디치, 2013.

http://uci.or.kr/G901:A-0006436465

- 박태균, 「1950·60년대 미국의 한국군 감축론과 한국정부의 대응」, 『國際地域研究』 제9권 제3호,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2000, 31-53쪽.
- \_\_\_\_\_\_, 「잘못 끼운 첫 단추: 이승만-아이젠하워 정부의 갈등」, 『역 사비평』 통권 86호, 역사문제연구소, 2009, 82-112쪽.

http://uci.or.kr/G704-000293.2009..86.003

- 빅터 D. 차 지음·김일영·문순보 옮김, 『적대적 제휴: 한국, 미국, 일본의 삼각 안보체제』,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0[2004]. http://uci.or.kr/G901:A-0006071309
- 사카타, 「'지역동맹'으로서 한·미동맹의 기원: 1953-54년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집단 안보정책과 한·미동맹의 형성」, 『軍史』第57號,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29-87쪽.

http://uci.or.kr/G704-001528.2005..57\$.003

- 서울新聞社 編著, 『駐韓美軍 30年 1945-1978』, 서울: 杏林出版社, 1979.
- 소토카 히데토시·혼다 마사루·미우라 도시아키 지음·진창수·김철수 옮김, 『미일동맹: 안보와 밀약의 역사』,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5.

http://uci.or.kr/G901:A-0006117104

서동주, 「일본 고도성장기'핵=원자력'의 표상과'피폭'의 기억」, 『일본학보』제99권, 한국일본학회, 2014, 433-448쪽. http://uci.or.kr/G704-000247, 2014, 99,032 \_\_\_\_\_, 「'전후'와 폭력: 한국전쟁, 기지, 원자력」, 『日本研究』제24 집, 글로벌일본연구원, 273-304쪽.

http://uci.or.kr/G704-002007.2015..24.016

- 신욱희, 『한미일 삼각안보체제: 형성·영향·전환』, 서울: 사회평론아카 데미. 2019.
- 유진석, 「핵억지 형성기 최초의 전쟁으로서 6·25전쟁과 미국의 핵전략」, 『한국과 국제정치』제27권 제2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1, 89-118쪽.

http://doi.org/10.17331/kwp. 2011.27.2.004

윤석정, 「이승만 정권과 일본의 재군비(1953-1955)」, 『일본공간』제21호,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7, 128-159쪽.

http://doi.org/10.35506/jspace.2017.21..004

이규원, 『이승만 정부의 국방체제 형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http://uci.or.kr/G901:A-0005669269

李東俊,「韓米日安保体制の歴史的展開と「国連の権能」: 1950-70年代における米国の対日及び国連軍司令部政策を中心にして」,『日本研究論雜』 列28호,現代日本學會,2008,83-113쪽.

http://uci.or.kr/G704-001032.2008..28.009

이연주, 『핵무기를 통한 예산절감 또는 안전보장?: 1958년 한반도 전술핵무기 배치와 미국의 선택』,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2014.

http://uci.or.kr/G901:A-0005870036

이연주·이근욱, 「재정절감과 동맹국 안전 보장의 기로에서: 1958년 전술 핵무기 배치에 대한 새로운 해석」, 『社會科學研究』第23輯 2號,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5, 126-156쪽.

http://uci.or.kr/G704-001086.2015.23.2.004

이재봉, 「남한의 핵무기 배치와 북한의 핵무기 개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하여」, 『평화학연구』제9권 제3호, 세계평화통일학회, 2008, 23-44쪽.

http://uci.or.kr/G704-002115.2008.9.3.009

- 이종원, 「6·25전쟁과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통합전략의 변천」, 유영익· 이채진 편, 『한국과 6·25전쟁』,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2.
- 이철순, 『이승만정권기 미국의 대한정책 연구(1948-1960)』,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2000.
- 정경두, 「미국의 동북아 위협인식 변화에 따른 한반도 내 전술핵무기의 역할 연구」, 『軍史』 第83號,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105-130쪽.

http://doi.org/10.29212/mh.2012..83.105

- 정영신, 『동아시아의 안보분업구조와 반(反)기지운동에 관한 연구』, 서울 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12.
- 조진구,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에 있어서의 '사전협의'의 의미와 실제」, 『국방정책연구』제32권 제3호, 한국국방연구원, 2016, 9-41. http://uci.or.kr/G704-001646.2016.32.3.004
- 차상철, 「아이젠하워, 이승만, 그리고 1950년대의 한미관계」, 『미국사연구』 제13집, 한국미국사학회, 2001, 121-167쪽. http://uci.or.kr/G901:A-0001488669
- 최희식, 『전후 한일관계 70년: 우리는 어떻게 갈등을 극복해 왔나』, 서울: 선인, 2016.

http://uci.or.kr/G901:A-0006608068

- 츠치야마 지츠오, 「미일동맹과 한미 안보 협력」, 『한일공동연구총서』 Vol. 2007 No. 9,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07, 130-169쪽. http://uci.or.kr/I410-ECN-0101-2014-900-003142945
- 쿠라타 히데야, 「일·미·한 안보 제휴의 기원: '한국조항' 前史의 해석적 재검토」,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6권(제3분과, 근·현대사편)』, 서울: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2005.
- 피터 헤이스 지음·고대승·고경은 옮김, 『핵 딜레마: 미국의 한반도 핵정책의 뿌리와 전개과정』, 서울: 한울, 1993. http://uci.or.kr/G901:A-0008489762
- 피터 헤이스·류바 자르스키·월든 벨로 지음·한국기독교 사회문제연 구원 엮음, 『핵무기는 가라!: 미국 핵전략과 한반도 평화』, 서 울: 민중사, 1988. http://uci or kr/G901;A-0008351823
- 홍원표,「일본의 잠재적 전력」,『國防研究』第1號, 국방대학교 안보문제 연구소, 1958, 115-144쪽.

http://uci.or.kr/I410-ECN-0102-2009-390-000099644

- 헨리 A. 키신저 著·李春根 譯,『核武器와 外交政策』, 서울: 靑莪出版社, 1980.
  - http://uci.or.kr/G901:A-0008325219
- Bacevich, Andrew J., *The Pentomic Era: The U.S. Army Between Korea and Vietnam*, Washington, D.C.: National Defence University Press, 1986.
- Dockrill, Saki, Eisenhower's New-Look National Security Policy, 1953-61, London: Macmillan Press, 1996.
- Endicott, John E., Japan's Nuclear Option: Political, Technical, and Strategic factors,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75. [재인용]

- Gaddis, John L., Strategies of Containment: A Critical Appraisal of American National Security Policy During the Cold Wa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5[1982].
- Gallicchio, Marc S., "The Best Defense Is a Good Offense: The Evolution of American Strategy in East Asia, 1953–1960", I. Cohen, Warren and Iriye, Akira, *The great powers in East Asia, 1953–1960*,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0.
- Guthrie-Shimizu, Sayuri., "Japan, the United States, and the Cold War, 1945-1960", p. Leffler, Melvyn and A. Westad, Odd,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Cold War Volume I. Origin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 Iriye, Akira and I. Cohen, Warr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n the Postwar World, Lexington: The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1989.
- Jones, Matthew D., After Hiroshima: The United States, Race and Nuclear Weapons in Asia, 1945–1965.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 Kristensen, Hans M. & Norris, Robert S., "A History of US Nuclear Weapons in South Korea",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73–6 (2017).
- Mott W, William H., *United States Military Assistance: An Empirical Perspective.* Westport: Greenwood Press, 2002.
- United Nations Command, Combined Forces Command and United States Forces Korea, [2018: The Year On Pen]
  U.S. Military Forces on the Korean Peninsula, 2019
  Strategic Digest (2019).

#### 1958년 한반도 전술핵무기 배치 요인 재고찰 | 255

Operations Research Office, Johns Hopkins University,
Semi-Annual Report 9:2 (July-Dec. 31, 1956) [재인용]
Walker, David M., Eisenhower's New Look, Tactical Nuclear
Weapons, and Limited War with a Case Study of the
Taiwan Strait Crisis of 1958, Ph.D. Dissertation,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2004.



(Abstract)

# Reconsideration of the Factors in Deploying Tactical Nuclear Weapons on the Korean Peninsula in 1958

- Focusing on the Change of U.S. Policy toward Japan -

Kim, Min-sik

The 'Japan' factors were behind the deployment of tactical nuclear weapons on the Korean Peninsula in 1958. Previous studies about the process of deploying tactical nuclear weapons in South Korea analyzed this issue mainly in terms of U.S-R.O.K. relations. However, U.S. political and military leaders in the 1950s focused on the relations between the U.S-R.O.K-Japan in the establish of security policies in the Far East. The U.S. has decided to deploy tactical nuclear weapons to the U.S. Forces in Korea as a result of political considerations about Japan.

In the mid-1950s, the U.S. government faced stubborn resistance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and public opinion against the U.S. nuclear strategy and rearmament policy of Japan. At the same time, however, the U.S. foreign security policy was being formulated in a direction that emphasized the role of nuclear weapons and the local forces of allies. Given its political ripple effect, the deployment of tactical nuclear weapons to the U.S. Forces in Korea was a much more reasonable and safer alternative than the deployment of tactical nuclear weapons to the U.S. forces in Japan.

In doing so, the U.S. also put strong pressure on the Japanese government, which demanded a revision of the U.S.—Japan security treaty. It also included expectations that the modernization of U.S. Forces in Korea and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could stimulate rearmament of Japan Self—Defense Forces. As such, the U.S. decision to deploy tactical nuclear weapons on the Korean Peninsula reflected consideration of 'Japan' factors in various

aspects.

Keywords: Security Relations between the U.S-R.O.K-Japan,

U.S. Security Policy toward Far East, Tactical Nuclear Weapons,

U.S. Forces in Korea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0, No. 117, pp. 259–304 https://doi.org/10.29212/mh.2020..117.259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유엔사령부의 국제법적 위상에 관한 재조명<sup>\*</sup>

송승종\*\*

- 1. 서론: 문제의 제기
- 2. 유엔 주요기관과 보조기관 관계의 본질
- 3. 한국 유엔사령부의 경우
- 4. 결론 및 향후 과제

## 1. 서론: 문제의 제기

한반도 분단상태로 인한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는 한미동맹과 남북관계의 상호보완적·선순환적·동시적 개선이

<sup>\*</sup> 본 논문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와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 공 동주관으로 개최(2020.7.7.)된 "종전선언, 전작권 분리 그리고 UNC의 역할" 제하의 세미나에서 발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혀 둠.

<sup>\*\*</sup> 대전대학교 교수. 본 논문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귀중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익명의 네 분 심사위원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함.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매우 곤란하다는 점이다. 이유는 동맹관 계 성립이 '공동의 적'을 전제조건으로 삼기 때문이다. 비록 실현 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가정이지만, 남북간 적대관계가 완전히 청산된다면, 기존 한미동맹의 존재이유(raison d'être)는 크게 훼 손될 것이다. 한편 북한은 원조격인 김일성 정권이 탄생한 순간 부터 지금까지 '전 한반도의 공산화'라는 대남전략을 단 한 순간 도 포기한 적이 없다. 게다가 북한은 언제부터인가 자신이 핵보 유국이라는 사실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고 있다. 김정은이 트럼 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를 무릅쓰고 핵탑재 ICBM 개발에 매 진했던 이유는 미국과 전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싸우 지 않고도 남한을 접수할 수 있는 '부전승 전략'의 핵심이기 때문이 다. 작년 말 기준으로 남북의 경제적 격차를 보면 GDP는 53배, 1인 닷 국민소득은 25배의 격차가 나타난다 1) 하지만 안보적 측면에서 국민들이 인식하는 남북의 격차는 경제적 격차와 정반대다. 그래서 국민의 60% 이상이 북한의 위협으로 인한 안보불안을 호소한다. 유 사한 비율의 국민들이 북핵문제 해결이 난망하다고 인식한다 2) 이 처럼 남북 간 안보 · 군사측면에서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되는 인식의 혼란은 정체성의 혼란을 부채질한다. 전쟁과 도발의 피해자—가해자 의 역전현상이 그것이다.

어느 사이엔가 북한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정전협정체제, 주한미군의 존재 등으로 인한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2016년 김정은의 발언에 의하면,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sup>1) &</sup>quot;통계로 보는 북한: 2019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통계청」, 2019.12.13.

<sup>2) &</sup>quot;국민 절반 北에 '반감', 61%는 안보 '불안' … 2019 국민 통일의식 조사", 「KBS News」, 2019.8.14.

실현"하는 것이다.3) 북한의 최종목적을 실현하는데 최대의 장애 물은 주한미군이다. 한편, 북한 입장에서 주한미군의 주둔명분을 약화시키기 위한 '가장 약한 고리'가 유엔사령부(이하, 유엔사)이 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으로 탄생한 유엔사는 1978년 11월 7일 한미 연합사령부가 창설된 이래. 유엔사가 보유하던 작전통제권 이 하미연합사로 이전되면서 그 외형과 존재감이 축소된 것도 사 실이다. 그래서 북한은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집요하게 '유엔사 령부 흔들기'를 계속하고 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등이 본격적으로 화두에 오르면, 확인되지 않은 '그릇된 안도감(false sense of security)'에 편승하여 유엔사 해체가 단지 '시간문제'에 불과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 하지만 후술하겠 지만 유엔사령부(이하, 유엔사)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전시작전 권 전환 등과 무관한 국제법적 위상을 가지고 있다. 유엔사의 국 제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핵심적 이슈는 "과연 유엔사가 유엔의 보조기관(subsidiary organ)인가?"라는 문제이다. 이는 단순히 "그렇다 또는 아니다"의 문제를 훨씬 넘어. 유엔사의 근거와 존재 이유. 그 창설의 적법성. 국제적 위상과 입지. 나아가 미래 유엔 사의 존폐 문제와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인 것이다.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이에 대한 연구가 피상적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문제다. 고작해야 "유엔사를 유엔 보조기관으로 볼 수 있다"거나 "그렇게 볼 수 없다"는 찬반 양론의 차원을 넘지 못하고 있다. 먼저 긍정론을 요약하면, (1) 유엔사는 1950년 7월 7일 안보리 결의안 제84호에 따라 설치된 보조기관이고, (2) 안보리 결의안은 유엔의 강제조치를 규정한 헌장 제7장에 따라 군사행동을 취하기 위해 유엔사를 창설하였고, 그래서 (3) 유엔사는 정전협정 폐기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와 별개의 사안이며, (4) 유엔사의 해체를

<sup>3) 『2020</sup> 북한이해』(서울: 통일교육원, 2019년 12월), p. 46.

위해서는 미국의 동의뿐만 아니라 안보리의 결의가 필요하다는 것 이다.4) 반면, 부정론을 요약하면, (1) 유엔사가 1950년 이후 유엔 연감에 안보리 보조기관으로 등재된 적이 없고, 유엔의 예산으로 운영되지 않았고. 유엔 스스로 보조기관이 아니라고 부인하였으 며. (2) 기본적으로 유엔사는 유엔군이 아니라 미국 중심의 다국 적군이고. (3) 헌장 29조에 따라 창설되지 않았으므로 유엔기관 이 될 수 없고. (4) 설령 보조기관이라 하더라도 유엔사 해체는 오로지 미국의 결정만으로 이뤄질 수 있으며. (5) 부트로스 갈리 (Boutros Boutros-Ghali) 전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사는 유엔 안보리의 보조기관이 아니며, 어떠한 유엔기구도 유엔사 해체 책 임이 없다. 미국만이 유엔사 해체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발언했다 는 것 등등이다 5) 하지만 상기의 기존 연구들은 국제법적 창설근 거. 성격. 위상 등을 좌우하는 유엔 헌장 조문의 맥락 속에서 유 엔사 문제. 나아가 유엔이 창설한 유사 보조기관들의 선례들(예: 舊유고슬라비아 전범재판소 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지 않은 한 계를 지닌다.

본 연구의 핵심 주제는 "한국 유엔사령부는 유엔의 보조기관 인가?"의 질문에 대한 실체적 답변의 모색이다. 이를 위해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의 "유엔 주요기관과 보조기관의 관계"에서는 주요기관-보조기관 간의 관계, 보조기관에 부여된 권한의 본질.

<sup>4)</sup> 관련 내용은 예를 들어 다음 자료들을 참고할 것. 김명기, "국제법상 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 환수에 따라 제기되는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인도법논총」, 제34호(2014년 12월), pp. 25-48; 유병화 등, 『국제법 II』(서울: 법문사, 2000), p. 717; 정재욱,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동맹,"「JPI 정책포럼」, No. 2014-10, 2014.5.12.; 김성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향과 평화협정의 내용,"「전략연구」, 제19호 (2000년 7월), pp. 120-144.

<sup>5)</sup> 관련 내용은 예를 들어 다음 자료들을 참고할 것. 김선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유엔사 문제에 대한 소고," 「서울국제법연구」, 제12권 2호 (2005년 12월), pp. 85-105; 이기범, "유엔사령부의 법적 지위와 존속 및 해체 문제에 관한 소고," 「서울국제법연구」, 제26집 2권 (2019년 12월), pp. 75-106.

구속력있는 결정권의 위임 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제 3장에서는 "한국 유엔사령부 사례"를 중심으로, 안보리 보조기관으로서 유엔사가 설치된 근거 및 유사 보조기관들에 대한 사례 분석, 안보리의 지휘통제권이 유엔사와 회원국(미국)에 위임된 과정을 검토할 것이다. 제4장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핵심적 발견사항(findings)을 요약 및 정리하고, 나아가 향후 한국 유엔사기능과 역할 및 위상의 제고에 초점을 맞춰 추진되어야 할 정책적 과제를 도출해 보기로 한다.

## 2. 유엔 주요기관과 보조기관 관계의 본질

#### 가. 유엔 주요기관과 보조기관

유엔의 주요기관(principle organs)6)은 헌장 제7조에 따라 헌장 목적의 달성을 위해 보조기관(subsidiary organs)을 설치 및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7) 하지만 보조기관의 설치 및 종료와 관련된 법적 고려사항과 보조기관 활동의 적법성(lawfulness) 간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우선, 유엔 보조기관의 설치 및 종료(establishment and termination)는 헌장의 관련 조항들로 구성된 법적골격(legal framework)의 규율을 받는다. 하지만 보조기관 행위의 적법성은 주요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법적 위임명령(legal mandate)의 준수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 전자(보조

<sup>6)</sup> 유엔 헌장 제7조 1항에 의하면, 유엔의 주요기관은 "총회·안전보장이사회·경제사회이사회·신탁통치이사회·국제사법재판소 및 사무국"등 6개 기관이다.

<sup>7)</sup> 제7조 2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기관은 이 헌장에 따라 설치될 수 있다." Article 7(2). "Such <u>subsidiary organs</u> as may be found necessary may b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present Charter." (emphasis added)

기관의 설치·종료와 관련된 법적 고려사항)는 보조기관의 설치 및 종료에 대한 주요기관의 권능(competence)과 관련된 반면. 후자(보조기관 활동의 적법성)는 보조기관이 위임명령(mandate) 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지와 관련된다. 여기서의 핵심은 유엔 보조기관의 설치 및 종료의 과정을 규율하는 일반적 법적골격의 구성요소들을 식별하는 일이다. 이는 보다 넓은 의미에서 유엔헌 장 제7장의 권한위임(the delegation of Chapter VII powers)과 관련된 일반적 탐구에 중요한 작업이다. 이유는 보조기관에 대한 합법적 권한위임(a lawful delegation of powers)은 합법성이 성 립되는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적골격은 유엔의 모든 주요기관 및 보조기관들에 적용된다. 이런 점은 일 단 보조기관이 주요기관에 의해 합법적으로 설치되는 경우, 이들 은 단지 '특정 주요기관'의 보조기관이 아니라. '유엔 전체'의 보 조기관이 된다는 사실로도 입증된다. 이런 법적골격이 작동되는 사례는 특히 안보리가 국제평화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해 기울 이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활동들. 예컨대 舊유고슬라비아 와 르완다에 설치되었던 유엔 전범재판소, 그리고 한국에 설치되 었던 통합사령부(the Unified Command) 등에서 세부적으로 살 펴볼 수 있다.<sup>8)</sup>

유엔 헌장에는 '보조기관'의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Repertory of Practice of United Nations Organs(RPUNO) 제목의 문서에는 "위원회(commissions, committees)", "보조기관(subsidiary organs)", "보조기구(subsidiary bodies)" 같은 용어들이 상호교환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sup>9)</sup> 하지만 일부 유엔 문서에는 다음과 같이 보조기관

<sup>8)</sup> Danesh Sarooshi, *The United Nations and the Development of Collective Secur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pp. 86-87.

<sup>9)</sup> Repertory of Practice of United Nations Organs (RPUNO), Vol. I, Article 1–22 of the Charter (New York: United Nations, 1955). https://legal.un.org/

에 대한 정의를 시도한 흔적이 남아 있다.

"유엔 주요기관은 관련기구의 결의에 의하여, 헌장 제7조 2항에 따라 보조기관을 설치하거나, 설치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한 보조기관은 유엔기구의 구성요소(integral part)로 간주된다... 일반적으로 보조기관은 모체기관(parent body)의 행동에 의해 폐지 또는 수정될 수 있다."10)

아울러 RPUNO는 "광범위한 차이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보조기관들이 일부 특징들을 공통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하며, 유엔 보조기관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 (1) 보조기관은 유엔 주요기관에 의해, 또는 그 권한에 따라 설치될 수 있다.
- (2) 보조기관의 회원자격(membership), 구조 및 위임사항(terms of reference)은 주요기관의 권한으로 결정 또는 수정될 수 있다.
- (3) 보조기관은 주요기관에 의해 또는 그 권한에 따라 종료될 수 있다.<sup>11)</sup>

용어의 정의는 유엔 보조기관의 합법적 설치를 위한 2가지 전 제조건을 포함한다. 첫째, 유엔 주요기관에 의해 설치되어야 한

docs/?path=../repertory/art22/english/rep\_supp1\_vol1\_art22.pdf&lang=EF. 상기 링크는 'umbrella link(https://legal.un.org/repertory/)' 중에서 Article 22에 관련된 부분임. (검색일: 2020,8.11.)

<sup>10)</sup> General Assembly Official Records, 9th Session, Annexes, Agenda Item 67, at p. 13, A/C1/758, paras. 1–2, cited in Sarooshi, 1999, p. 89.

<sup>11)</sup> *RPUNO*, *1955*, p. 228. https://archive.org/details/in.ernet.dli.2015.168012/page/n 7/mode/2up (검색일: 2020.8.10.)

다는 것이고, 둘째, 그것이 유엔 주요기관의 통제와 권위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조기관의 정의에 추가되어야 할요건은 주요기관으로부터 일정수준의 독립성(a certain degree of independence)이다. 이런 요건이 필수적인 이유는 만일 그렇지않다면 보조기관은 단지 주요기관의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보조기관의 정의에 포함되어야 할 추가적 요소로서의 독립성 또는 독자성(autonomy)의 정도는 유엔 주요기관의 일부와 보조기관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12)

# 나. 유엔 보조기관 설치와 관련된 권한의 본질: 헌장 7장을 중심으로

안보리는 헌장 7조 2항에 따른 '일반적 권한(general authority)'을 가지는 반면, 제29조 하에서는 보조기관의 설치와 관련된 '구체적 권한(specific authority)'만을 갖는다. 즉, 제7조 2항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기관은 이 헌장에 따라 설치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제29조는 "안보리가 그 기능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sup>13)</sup> 제7조 2항은 '무제한적 방식(in a non-restrictive way)'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기관" 설치에 대한 일반적 권한을 제공한다. 한편, 구체적 권한과 관련하여 안보리는 단지 "그 기능(its functions)"의 수행에 필요한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을 뿐이다. 제7조 2항 하에서의 일반적 설치권한의 경우에는 그러한 제

<sup>12)</sup> Sarooshi, 1999, p. 89.

<sup>13)</sup> 제29조.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임무의 수행에 <u>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기관</u>을 설치할 수 있다." Article 29, "The Security Council may establish such <u>subsidiary organs as it deems necessary</u> for the performance of its functions." (emphasis added)

약이 없다. 그러므로 제7조 2항에 의한 일반적 권한은 제29조에 의한 구체적 권한—즉, 단지 안보리의 '기능'을 수행하는 목적만을 가진—보다 그 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다.

로즈너(Gabriella Rosner)가 수행한 '유엔긴급군(United Nations Emergency Force: UNEF)'14) 연구결과에 의하면, UNEF는 비록 유엔헌장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유엔총회가 그 기능의 수행을 지원하는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 헌장 6조22항에 근거하여 창설된 유엔 보조기관이다.15) 한편, 1949년 국제사법재판소(ICJ)는 "UN의 공무수행 중 입은 피해의 손해배상에 관한 권고적 의견(Reparation for Injuries Suffered in the Service of the United Nations: Reparation Case)"에서 유엔이라는 국제기구의 성격에 관한 중요한 판례를 남겼다. ICJ는 권고적 의견에서, "유엔은 국제적인 권리와 의무를 향유하는 법인격과 능력(international personality and the capacity)을 지닌다."고 판시했다.16) UNEF 사례와 유엔의 법인격·능력을 인정한 맥락에서의 핵심은 보조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반드시 유엔 헌장에

<sup>14) 1956</sup>년 프랑스와 영국의 지원을 받는 이스라엘이 이집트 영토 내에 위치한 수에 즈 운하를 침공하는 '수에즈 위기' 사태가 발생했다. 영국과 프랑스의 거부권 행사로 안보리 기능이 마비되자, 유엔총회는 결의안 998호를 통해 "사무총장이 48시간 내에 관련국들의 동의 하에 적대행위 종식을 보장 및 감시하기 위한 유 엔긴급군 창설"을 요청하였고, 총회 결의안 1001호에 따라 휴전감시 임무를 수 행하기 위한 유엔긴급군(UNEF: UN Emergency Forces)의 창설을 승인하였다. 송승종, 『유엔평화유지활동의 이해』(서울: 연경출판사, 2006), pp. 165-167.

<sup>15)</sup> Gabriella Rosner, *The United Nations Emergency Forc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1963), pp. 37–45.

<sup>16) 1948</sup>년 제1차 중동전 당시, '국제연합 조정관(United Nations Mediator)'으로 서 팔레스타인 분쟁의 해결을 위해 임무를 수행하던 스웨덴 국적의 베르나 도테 백작(Count Folke Bernadott)이 9월 17일 예루살렘의 유대인 점령지역에서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유엔 사무총장은 유사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와 이스라엘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제법상의 손해배상 청구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지만, 과연 국가가 아닌 유엔이 이와 같은 권한이 있는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졌다.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권한 이론 (theory of implied powers)'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17) 일 례로, Reparation Case에서 ICJ는 유엔직원이 공무수행 중에 입은 피해에 대하여 유엔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유엔이 '국제법 인격'과 '직원보호라는 기능적 책임'을 동시에 가졌기 때문이고, 이는 유엔 헌장과 그 활동에서 비롯되는 '필요적 묵시(necessary implication)'의 결과라고 보았다.18)

'유엔 행정재판소에 의해 판결된 보상재정의 효과 사건(Effect of Awards of Compensation Made by the United Nations Administrative Tribunal: Administrative Tribunal Case)'에서 ICJ는 유엔 총회가 직원업무와 관한 분야에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행정재판소'라는 사법기관(judicial body)을 설치할 수있는 권능(competence)을 가지고 있다고 판시했다. 同 사건에서 ICJ 판결의 핵심은 3가지로 요약된다. (1) 유엔 행정재판소(보조기관)는 유엔 총회가 설치했으므로, 설치권자(주요기관)인 총회가 그 규정을 폐지하여 종료시키거나, 해당 규정을 개정할 수있지만, (2) 행정재판소는 총회가 사법기관(a judicial organ)으로 의도하여 설치된 것이므로, (3) 따라서, 행정재판소를 '보조적 (subsidiary)', '종속적(subordinate)' 또는 '부차적(secondary)' 기관인지 아닌지의 관점에서만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ICJ는 이런 논리에 기초하여 행정재판소가 유엔 직원에게 유리하게

<sup>17) &#</sup>x27;묵시적 권한 이론'이란 국제법 인격을 가진 국제기구는 협약이나 조약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부여된 권한과 임무뿐만 아니라 그 권한과 임무수행에 필요한 묵시적 권한도 갖는다는 의미이다. 김대순, 『국제법론(17판)』(서울: 삼영사, 2013), p. 1163.

<sup>18)</sup> Reparation for Injuries Suffered in the Service of the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dvisory Opinion of April 11<sup>th</sup>, 1949. pp. 180-182. https://www.icj-cij.org/public/files/case-related/4/004-19490411-ADV -01-00-EN.pdf (검색일: 2020.8.1.)

내린 배상판결의 시행을 총회가 거부할 권리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19) 상기 판례를 근거로 로젠(Shabtai Rosenne)은 헌장 제7조에 나타난 유엔 주요기관과 보조기관의 형식적 구분은 더 이상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20) 여기서 핵심은 주요기관이 발휘할수 '없는'기능의 수행을 위한 보조기관 설치에 관한 일반적 권한의 행사로, 이는 특히 舊유고슬로비아(이하, 舊유고) 및 르완다 전범재판소 등, 안보리가 설치한 보조기관의 적법성(legality)판단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대표적 사례가 舊유고에서 발생한 Duško Tadić Case(이하, Tadić Case)이다. 먼저 舊유고 전범재판소(the War Crimes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가 설치된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안보리는 결의안 808호에서 舊유고 전범재판소 설치가 "국제 인도주의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기소 및 처벌을 통하여 "해당 지역에서의 평화 회복 및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21) 결의안 808호는 사무총장에게 同재판소의 '긴급(as a matter of urgency)' 설치방안을 건의해 주도록 요청했다. 이에 사무총장이 同 재판소를 현장 제7장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안보리는 결의안 827호를 통해, 舊유고 지역에 신속하게 전범재판소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22) 다음은 Tadić Case의 배경 설명이다. 1992년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 공화국이 舊유고 연방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한 직후부터 세르비아인과 다른 민족들 간 분쟁이 고조되는 와중에,

<sup>19)</sup> 김대순, 2013, pp. 1322-1323.

<sup>20)</sup> Shabtai Rosenne, *The Perplexities of Modern International Law* (Leiden, Netherlands: Brill-Nijhoff, 2003), p. 411. 김대순, 2013, p. 1323에서 재인용.

<sup>21)</sup>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808, Adopted by the Security Council at its 3175th meeting, S/RES/808, 22 February 1993.

<sup>22)</sup>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827, Adopted by the Security Council at its 3217th meeting, S/RES0827, 25 May 1993.

보스니아-헤르츠고비나 공화국 북부 지역에서 세르비아인들이 '스릅스카 공화국(Republika Srpska)'을 세우고 무슬림과 크로아 티아인을 그 지역에서 몰아내려 했다. 1992년 6월 세르비아 군대가 Sivci라는 마을에 진입하여 수백명의 非세르비아 남성들을 인근 강제수용소에서 학살하는 '인종청소(ethnic cleansing)' 범행을 저질렀다. 이 범행에 하급 군인으로 참가했던 피고인 Tadić도 상기혐의로 舊유고 전범재판소에 기소된 것이다.<sup>23)</sup>

Tadić Case 변론과정에서 변호인은 국내법원이 사건을 재판할수 있는데도 전범재판소에서 재판하는 것은 관할권(jurisdiction)에 문제가 있다며 전범재판소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항소법원(the Appeal Chamber)은 "전범재판소 설치는 현장41조에 따라 안보리가 행사할 수 있는 권능(competence)과 '정확히 일치(fall squarely within)'한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국제재판소가 관할권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compétence de la compétence라 한다. 이는 19세기부터 20세기 중반에 걸쳐 국제판례들을 통하여 일반원칙으로 정착되었다. 영문으로는 'the power to determine its own jurisdiction,' 'jurisdiction to determine its own jurisdictions to jurisdiction'으로 풀이된다. 이런 용례에 따르면 compétence de la compétence는 '자신의 관할권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또는 '자신의 관할권을 결정할 수 있는 관한권'으로 번역될 수 있다.

Tadić Case에서 임시전범재판소의 적법성에 논란이 벌어지자, 프랑스 정부는 유엔 사무총장에 발송한 공한에서 전범재판소 설

<sup>23)</sup> Tadić은 1995년 4월 1일 舊유고 전범재판소로 넘겨져, 1999년 11월 11일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이유로 20년의 자유형을 선고받으며, 그 형은 국제형집행공조 방식으로 독일에서 집행되었다. 박경규, "ICTY 판례에 의해 확립된 JCE이론의 법적 성격," 「서울법학」, 제23권 3호 (2016년 2월), p. 309-314; 이진국, "독일 국제형법전의 실효성과 정책적 시사점," 「형사정책연구」, 제19권 3호 (2008년 가을호), pp. 108-109.

립은 유엔 현장 제7장, 그 중에서도 제41조<sup>24)</sup>의 묵시적 권한에 기초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서한은 현장 42조<sup>25)</sup>에 명시된 바와 같이 회원국들이 무력사용을 제외한 非군사적 조치의 강구를 촉구하는 현장의 조항들을 언급하며, 현장 제41조가 주로 경제적 성격의 조치를 담고 있어 외견상 전범재판소 설립과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sup>26)</sup> 그러나 서한은 제41조 상의 非군사적 조치들(경제관계 및 철도, 항해, 항공, 우편, 전신, 무선통신 등의 단절)은 단지 예시적일 뿐, 필요한 것으로 입증되는 다른 모든 조치들의 배제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제41조에 대한 현대적 해석의 기준은 동조항이 추구하는 목적의 부합성(commensurability)이라는 것이다.

<sup>24)</sup> 제41조. "안전보장이사회는 그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병력의 사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또한 국제 연합회원국에 대하여 그러한 조치를 적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조치는 경제관계 및 철도, 항해, 항공, 우편, 전신, 무선통신 및 다른 교통·통신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과 외교관계의 단절을 포함할 수 있다." Article 41. "The Security Council may decide what measures not involving the use of armed force are to be employed to give effect to its decisions, and it may call upon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to apply such measures. These may include complete or partial interruption of economic relations and of rail, sea, air, postal, telegraphic, radio, and other means of communication, and the severance of diplomatic relations."

<sup>25)</sup> 제42조. "안전보장이사회는 제41 조에 규정된 조치가 불충분할 것으로 인정하거나 또는 불충분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에 필요한 공군, 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는 국제연합회원국의 공군, 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시위, 봉쇄 및 다른 작전을 포함할 수 있다." Article 42. "Should the Security Council consider that measures provided for in Article 41 would be inadequate or have proved to be inadequate, it may take such action by air, sea, or land forces as may be necessary to maintain or restor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Such action may include demonstrations, blockade, and other operations by air, sea, or land forces of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sup>26)</sup> Letter from the Permanent Representative of France to The United Nations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 S/25266, 10 February 1993, pp. 12-13

Tadić Case로 돌아가, 피고측이 전범재판소의 관할권, 나아가 "전범재판소가 수행하는 순전히(purely) 사법적 기능은 유엔 헌장하에서 안보리가 스스로 보유하지 못하는 기능"이라며 재판소의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하자, 항소법원은 다음과 같이 유엔 헌장 7장 및 제24조 1항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안보리의 국제전범재판소 설립은 안보리가 그 기능의 일부를 위임하였다거나, 또는 자신의 권한 중에서 일부만을 행사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반대로 안보리가 헌장에 따라 자신이 아닌 유엔의 다른 기관에 속한 사법기능의 일부를 남용(usurping)하였음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안보리는 평화와 안전의 유지라는 1차적 기능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제전범재판소라는 형태를 취한 사법기관의 설립에 의존한 것이다. 요컨대, 안보리의전범재판소 설립은 舊유고연방 지역에서 평화를 회복 및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조치인 것이다."27)

항소법원의 핵심은 안보리가 헌장 제41조에 포함된 명시적 권한(express powers)에 근거하여, 사법기능을 행사하는 전범재판소를 설치할 수 있는 묵시적 권한(implied powers)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항소법원은 안보리가 헌장 제24조1항, 그리고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제7장에 따라 국제평화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한 행동을 취할 권능에 기초하여 전범재판소를 설치할 수 있는 묵시적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28)

<sup>27)</sup> Prosecutor v. Dusko *Tadić* a/k/a "Dule," "Decision on the Defence Motion for Interlocutory Appeal on Jurisdiction," 2 October 1995, para #38. https://www.icty.org/x/cases/tadic/acdec/en/51002,htm. (검색일: 2020,5.25.)

<sup>28)</sup> Sarooshi, 1999, p. 97.

다. 안보리의 구속력있는 결정권을 보조기관으로 위임하는 문제

유엔 주요기관이 보조기관에 '구속력있는(binding) 결정'을 위임하는 데는 2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는 결정이 주요기관을 구속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유엔 회원국을 구속하는 결정과 관련된다. 29) "주요기관은 보조기관 결정이 주요기관을 구속하는 방식으로 보조기관에게 구속력있는 결정권을 위임할 수 있다"는 일반명제(general proposition)는 참이다. 예를 들어 Administrative Tribunal Case에서 ICJ 판결은 보조기관을 설치하는 주요기관이이들 기관에게 그 모체기관(creator)을 구속하는 결정을 내릴 수있는 권능을 부여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배척했다. 30)

안보리는 현장 제25조31)와 제7장에 따라 유엔 회원국들에게 구속력있는 의무의 부과를 결정할 수 있다. 구속력있는 결정권을 보조기관에게 위임할 수 있는 안보리 권능과는 별도로, 안보리가 그런 권한을 위임할 일반적 권능을 가지고 있는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同 조치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필요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은 안보리 소관이다. 즉, 헌장

<sup>29)</sup> Ibid, p. 101.

<sup>30)</sup> ICJ, Effect Of Awards Of Compensation Made By The United Nations Administrative Tribunal Advisory Opinion (Administrative Tribunal Case), 13 July 1954, p. 61. https://www.icj-cij.org/files/case-related/21/021-19540713-ADV-01-00- EN.pdf. "It has been argued that an authority exercising a power to make regulations is inherently incapable of creating a subordinate body competent to make decisions binding its creator.....But the contention that the General Assembly is inherently incapable of creating a tribunal competent to make decisions binding on itself cannot be accepted." (김색일: 2020,6.10.)

<sup>31)</sup> 제25조. "국제연합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이 현장에 따라 수락하고 이행할 것을 동의한다." Article 25.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agree to accept and carry out the decisions of the Security Council in accordance with the present Charter."

7장의 권한을 사용하여, 회원국을 구속하는 권한을 보조기관에 위임하는 것이 국제평화·안전의 유지에 필요한지 여부를 안보리가 먼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안보리가 보조기관에 행사하는 권위·통제도 그러한 권한위임의 적법성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안보리가 보조기관에 현장 7장의 권한을 위임한 조치와 관련된 합법성(lawfulness)은 한반도에서 북한의 무력침략으로 6·25전쟁이 발생하자, 파괴된 국제평화의 회복과 평화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리가 취한 일련의 조치들에서 중대한문제로 대두되었다.

## 3. 한국 유엔사령부의 경우

## 가. 안보리 보조기관의 자격으로 유엔사령부를 설치

결의안 82(1950.6.25.)호에서 북한의 "무력공격"을 "평화의 파괴"로 규정한 유엔 안보리는 결의안 83호(1950.6.27.)를 통해 회원 국들에게 "무력공격 격퇴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 주도록 권고했다. 뒤이어 안보리는 결의안 84호(1950.7.7.)에서 "모든 회원국들이 미국이 주도하는 통합사령부(a unified command)가 사용할 수있도록 전투부대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해 줄 것을 촉구했다. 32) 아울러 결의안 84를 통해 미국에게 "회원국들이 제공하는 국제연합군의 사령관을 지명"해 주도록 요청하고, "통합사령부가 참전국들과 북한군에 대한(against)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엔 깃발을 사용할 수 있는 재량권(discretion)을 승인"하는 동시에. "타당한

<sup>32)</sup>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82, 25 June 1950;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83, 27 June 1950;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84, 7 July 1950.

경우(as appropriate) 통합사령부가 취한 행동방책을 안보리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33)

바로 이 '통합사령부' 또는 '유엔사령부'는 '대리인(agent)' 자격으로 안보리를 '대신하여(on behalf of)' 활동한 '보조기관'으로서, 안보리의 전반적 권위와 통제를 받는 가운데, 보조기관의 전제조건에 해당하는 안보리로부터의 상당한 독립성을 보유하였다. '통합사령부/유엔사령부' 관련, 트루먼 대통령은 1950년 7월 8일 맥아더 사령관을 "도발되지 않은(unprovoked) 남침공격을 격퇴함에 있어, 대한민국에 대한 유엔의 지원 요청에 따라, 유엔회원국들을 미국 주도의 통합사령부에 두는 국제연합군 사령관 (commanding general)"에 임명하면서, "맥아더 사령관에게 안보리 결의에 의해 다양한 참전국들의 국기와 함께 북한군에 대한 (against)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동안에 유엔 깃발을 사용하도록지시"했다고 선언했다.34)

아울러 영국의 애틀리(Clement Attlee) 수상은 1950년 6월 28일 하원(House of Commons) 연설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 83호에 따라, 영국 정부는 안보리를 "대신하여(on behalf of)" 남한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의 통제 하에 놓이게 될 영국 해군부대를 한국의 동해안 일대에 즉각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언했다. 35) 또한 유엔군 사령관에 임명된 맥아더는 미 상원 외교위청문회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sup>33)</sup>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84, 7 July 1950.

<sup>34)</sup> Military Situation in the Far East, Hearings Before the Committee on Armed Services and th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United States Senate, 82nd Congress, 1st Session, Part 5 (Washington, DC: GPO, 1951), p. 3373. https://babel.hathitrust.org/cgi/pt?id=uc1.b5107065&view=1up&seq=253&q1=unprovoked%20armed%20attack (검색말: 2020,9.7.)

<sup>35)</sup> Clement Attlee's Statement, as cited in *United States Policy in the Korean Crisis, Department of State, Publication 3922, Far Eastern Series 34* (Washington, DC: GPO, 1950), pp. 55–56.

"미국 정부와 유엔 간 체결된 합의에 의하면, 명백히 미국 정부는 한국에서의 군사작전에서 '유엔 대리인(the agent for the United Nations)'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명령은 미국 정부를 통해 내려오지만, 그 명령은 미국 정부와 유엔 모두의 타당성 (validity)에 기초한 것이다. 6·25전쟁의 전반적 통제는 유엔을 위한 대리인(the agent for the United Nations)으로서의 미국 정부가 맡았다."36)

"유엔의 대리기관으로 행동하는(the agency for the United Nations) 합참으로부터 하달되는 명령은 본인의 작전활동을 좌우하는 군사적 조건을 수정하였다."37)

안보리가 유엔사령부를 안보리 보조기관의 자격으로 설치한 것이라는 점은 그것이 안보리를 "대신하여" 또는 "대리인(agent) 또는 대리기관(agency)"의 자격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에서 분명하게 입증된다. 또한 유엔 보조기관으로 설치된 유엔사는 안보리의 전반적 권한과 통제 하에 있으면서도, 보조기관의 전제조건에 해당되는 상당수준의 독자성(independence)을 보유하였다. 이런관점에서, 세예스티드(Finn Seyersted)는 참전국들이 자국의 군대를 유엔이 아니라 미국이 임명한 사령관 지휘하에 두었으므로, 그부대(유엔군)는 유엔의 '본원적 관할권(organic jurisdiction)'에 속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38)

<sup>36)</sup> Douglas MacArthur, Military Situation in the Far East, *Hearing before the Senate Committee on Armed Services and Foreign Relations*, 82nd Congress, 1st Session Part 1 (Washington, DC: GPO, 1951), pp. 14–15. (Emphasis added)

<sup>37)</sup> Ibid, p. 46.

<sup>38)</sup> Finn Seyersted, "Can the United Nations Establish Military Forces and Perform Other Acts without Specific Basis in the Character?" ÖzöR, Vol. 12 (1962), p. 188. As cited in Sarooshi, 1999, p. 111.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유엔사령부가 안보리가 창설한 보조기관이지만, 안보리의 직접적 통제의 범위를 넘어서는 자율성과 독자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정기관이 보조기관으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결정하는데서 중요한 기준은 주요기관이 보유한 전반적 권한과 통제이지, 주요기관이 보조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작전통제(operational control)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의 보유 여부가 아니다. 그러므로 유엔사가 유엔 보조기관으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따지는 경우, 안보리가 유엔사에 대한 직접적인 작전통제권을 보유 또는 행사했는지 같은 사안은 유엔사가 유엔의 보조기관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요컨대, 유엔사를 창설한주요기관인 안보리, 그리고 안보리에 의해 창설된 보조기관으로서의 유엔사 간에 형성된 '독특한(sui generis)'관계는 오늘날한국 유엔사가 가지는 국제법적 지위와 성격의 본질을 규명함에 있어 핵심적 이슈다. 39)

다음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은 헌장 7장상에 따른 안보리의 권한위임(보조기관으로)과 헌장 제25조40)와의 관계이다. 일반적으로 안보리는 헌장 제25조와 제7장에 따라 유엔 회원국들에게 구속력있는 의무의 부과를 결정할 수 있다. 안보리가 보조기관에게 구속력있는 결정권을 위임하는 권능과 관련된 별도의 이슈가그러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안보리의 일반적 권능(general competence)으로부터 제기된다. 하지만 여기서 충족되어야 할 전제조건은 안보리가 그러한 조치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필요한

<sup>39)</sup> Sarooshi, 1999, p. 107.

<sup>40)</sup> 제25조. "국제연합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이 현장에 따라 수락하고 이행할 것을 동의한다." Article 25.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agree to accept and carry out the decisions of the Security Council in accordance with the present Charter."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안보리가 그 보조기 관을 대상으로 행사하는 권한과 통제도 이러한 권한위임의 적법성에 핵심적 중요성을 가진다. 만일 안보리가 현장 제25조와 제7장에 따라 보조기관이 회원국들에게 구속력있는 결정—때로는 이들의 의사에 반하는 을 내릴 권한을 위임하였다면, 그러한 결정은 유엔 회원국들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그런 결정은 사실상 안보리가 현장 제25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고, 그런 만큼유엔 회원국들에게 법률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41)

또 안보리는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s: ICT)에 회원국들을 구속할 수 있는 결정권을 위임했다. ICT가 회원국들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부분적으로 ICT가 헌장 7장에 따른 안보리의 결정에 기초하여, 안보리 결의 안 827호에 따라 안보리 보조기관으로 설립되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결의안의 핵심(회원국들에 대한 의무부과와 관련)은 제4항이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보리는 모든 회원국들이 현재의 결의안 및 ICT의 법령(statute)에 따라 ICT 및 그예하 기관들과 완전히 협조하고, 따라서 모든 국가들은 현재의 결의안 및 ICT 법령의 규정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내법 하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결정한다."42) 이에 따라 안보리는 ICT에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필요한 조치에 해당되는 특정

<sup>41)</sup> Sarooshi, 1999, p. 107.

<sup>42)</sup>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827, Tribunal (Former Yugoslavia), S/RES/827, 25 May 1993. 동 결의안의 제4항은 다음을 참고할 것. "4. Decides that all States shall cooperate fully with the International Tribunal and its organs in accordance with the present resolution and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Tribunal and that consequently all States shall take any measures necessary under their domestic law to implement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resolution and the Statute, including the obligation of States to comply with requests for assistance or orders issued by a Trial Chamber under Article 29 of the Statute," http://unscr.com/en/resolutions/827 (검색일: 2020,7,22,)

한 사안들에 대하여 회원국들에게 구속력있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일례로 ICT 규정(Statute, 일명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29조 2항은 다음과 같이 명기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ICT가 발행하는 어떤 명령 또는 지원의 요구에 대해서도 지체없이 순응해야 하며, 상기 명령이나 지원의 요구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including, but not limited to):

- (1) 인원의 식별 및 소재파악,
- (2) 증언 청취 및 증거 생산,
- (3) 문서관련 서비스,
- (4) 인원의 체포 또는 구금.
- (5) 피고인을 ICT에 인계 또는 이송.

특정한 경우 ICT가 회원국들에게 부과한 구속력있는 의무의법률적 효력은 그것이 헌장 제103조43)의 조항을 발동하는 데서비롯된다. 제103조의 효력은 명확하다. 헌장에 따른 회원국들의어떠한 의무라도 그 국가가 체결한 조약상 의무가 헌장상 의무와 '충돌(conflicting)'하는 경우, 헌장상 의무가 우선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ICT가 헌장 103조에 따라 해당 국가의 다른조약의무보다 우선하는 구속력있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안보리는 유엔 보조기관을 설

<sup>43)</sup> 제103조. "국제연합회원국의 헌장상의 의무와 다른 국제협정상의 의무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헌장상의 의무가 우선한다." Article 103. "In the event of a conflict between the obligations of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under the present Charter and their obligations under any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 their obligations under the present Charter shall prevail."

치하는 모든 경우에 헌장 제25조에 따라 구속력있는 결정권을 보조기관에게 위임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주요기관이 보조기관에게 구속력있는 결정권을 위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다는 점은 보조기관에게 재량권(a power of discretion)을 위임하는 권능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헌장 제7장에 따른 재량권을 보조기관에게 위임하는 안보리 행위의 적법성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불법적 침략행위로 제기된 국제평화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여 유엔이 취한 접근방식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44)

#### 나. 안보리 지휘통제권을 유엔사령부에 위임

앞서 언급된 내용을 반복하자면, 안보리 결의안 84호는 회원 국들이 군사강제 행동의 수행을 위한 "군대(military forces)"를 제공하고, 이들 군대를 "미국이 주도하는 통합사령부"의 통제 하에 둘 것을 권고하며, 미국이 통합사령부(즉, 유엔사)의 지휘권을 임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나아가 안보리는 통합사령부가 "참전국들과 함께 북한군에 대한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엔 깃발을 사용할 수 있는 재량권을 승인"했다. 끝으로, 안보리결의안은 미국에게 "통합사령부가 취한 행동방책을 안보리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45) 상기 결의안의 문구는 사실상 안보리가 군사강제 행동의 수행에 관한 지휘통제권을 그 보조기관인유엔사—미국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지만, 안보리의 전반적 권한과 통제를 받는—에 위임한 것에 해당된다. 안보리 요청(유엔사령과 임명, 유엔사 행동방책을 안보리에 보고)과 관련, 미국 정

<sup>44)</sup> Sarooshi, 1999, p. 109.

<sup>45)</sup>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84, 7 July 1950.

부는 미국이 안보리 결의안을 충실하게 완수하고, 안보리 결의안의 지지를 위하여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46) 당시 미국 정부는 유엔사를 대신하여(on behalf of) "주한 유엔사 대행기관(executive agent)"의 자격으로 많은 활동을 수행하였다. 일례로 미국 정부는 '대행기관'으로서 6·25 전쟁에 참전한 국가들과 공식 협정을 체결했다. 나아가 한국에서의 유엔 활동과 관련된 다른 국제협정들은 유엔 사무총장이 아닌미국 정부와 체결되었다. 이들 협정의 체결이 대부분 유엔사와미국 정부의 명의로 이뤄졌지만, 필요시에는 유엔이 유엔사가 체결한 협정의 조항을 원용하여 상황에 개입하였다. 47)

안보리가 미국에게 통합사령부 설치를 요청하고 회원국들에게 同 사령부에 군부대를 파견해 주도록 권고한 행위는 안보리 결의안과 현장에 명시된 목표의 달성을 위한 군사력 창설의 권한을 사령관에게 위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48) 한편 콕스(David Cox)는 6·25전쟁의 상황에서 "전략지침을 하달할 수 있는 구조의 결여로 인해, 안보리는 사실상 미군 지휘관에게 전략지침을 위임하였다"고 분석했다. 49) 보다 구체적으로, 안보리는 현장 46조50) 및 47조51) 하에서 군사강제 행위를 수행하는 군

<sup>46)</sup> UNSC Official Records, Fifth Year, 476<sup>th</sup> Meeting, 7 July 1950, pp. 11-12.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632646?ln=en. (검색일: 2020.4.9.)

<sup>47)</sup> Seyersted, 1966, p. 104. as cited in Sarooshi, 1999, p. 112.

<sup>48)</sup> Leland Goodrich and Anne Simons, *The United Nations and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s, 1962), pp. 468–469.

<sup>49)</sup> David Cox (ed.), The Use of Force by the Security Council for Enforcement and Deterrent Purposes: A Conference Report (Toronto, Canada: Canadian Centre for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1990), p. 3.

<sup>50)</sup> 제46조. "병력사용계획은 군사참모위원회의 도움을 얻어 안전보장이사회가 작성한다." Article 46. "Plans for the application of armed force shall be made by the Security Council with the assistance of the Military Staff Committee."

<sup>51)</sup> 제47조. "1.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군사적 필요, 안전보

부대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지휘통제 권한을 미국에게 위임한 것이다.52) 안보리가 회원국들에게 미국 통합사령부에 자국의 군부대를 파견해 달라는 권고는 회원국들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의무도 부과하지 않았다. 모든 과정은 회원국들의 자발적 합의의결과로 이뤄졌다. 다시 말해, 미국의 통합사령부에 부대를 파견하는 것은 회원국들이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충족시켜야할 필요조건이 아니었다는 의미다.53)

안보리는 유엔이 승인한 강제행동의 수행을 위한 군대의 지휘

장이사회의 재량에 맡기어진 병력의 사용 및 지휘, 군비규제 그리고 가능한 군비축 소에 관한 모든 문제에 관하여 안전보장이사회에 조언하고 도움을 주기 위하여 군 시참모위원회를 설치한다. 2. 군사참모위원회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참모 총장 또는 그의 대표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에 상임위원으로서 대표되지 아니하는 국제연합회원국은 위원회의 책임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사업에 동 회 원국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의하여 그와 제휴하도록 초청된다. 3. 군 사참모위원회는 안전보장이사회 하에 안전보장이사회의 재량에 맡기어진 병력의 전 략적 지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러한 병력의 지휘에 관한 문제는 추후에 해결 한다. 4. 군사참모위원회는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를 얻어 그리고 적절한 지역기구 와 협의한 후 지역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Article 47. "1. There shall be established a Military Staff Committee to advise and assist the Security Council on all questions relating to the Security Council's military requirements for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he employment and command of forces placed at its disposal, the regulation of armaments, and possible disarmament, 2. The Military Staff Committee shall consist of the Chiefs of Staff of the permanent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or their representatives. Any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not permanently represented on the Committee shall be invited by the Committee to be associated with it when the efficient discharge of the Committee's responsibilities requires the participation of that Member in its work. 3. The Military Staff Committee shall be responsible under the Security Council for the strategic direction of any armed forces placed at the disposal of the Security Council, Questions relating to the command of such forces shall be worked out subsequently, 4. The Military Staff Committee, with the authorization of the Security Council and after consultation with appropriate regional agencies, may establish regional sub-committees."

<sup>52)</sup> Cox. 1990, p. 3.

<sup>53)</sup> Sarooshi, 1999, p. 112-113.

관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 보웨트(Bowett)는 이렇게 주장했다. "정치기관(註: 안보리)에 의한 사령관 임명의원칙은 특별히 한국전의 상황에서 의심할 여지도 없이 옳은 행위였는데, 그 이유는 지휘권이 회원국에게 위임되었다는 사실로설명될 수 있다."54) 안보리가 지휘관 임명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권한은 보조기관인 유엔사로 위임될 수 있다. 6·25전쟁의 상황에서 유엔사령관의 임명권이 특정한 회원국(미국)에게 위임되었다는 점은 그 후에 어떤 유엔 기관도 미국이 임명한 사령관에 대한 인준(confirmation)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55)

이 문제에 대하여 히긴스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6·25전쟁에서의 활동에 대한 모든 작전통제는 유엔사의 자격을 갖고 있는 미국이 행사하였다...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미국은 맥아더를 주한 유엔군사령관에 임명했다... 미국은 유엔사 창설과 관련된 공식성명(communique)을 발표했다. 작전적 관점에서 볼 때, 유엔사령부는 사실상 당시 도쿄에 주둔하던 미국의 극동군사령부였다... 안보리 결의안 S/1588의 제4항에 따라 맥아더를 임명한 것은 다른 유엔의 어떠한 기관으로부터 인준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아니라, 미국의 특권(prerogative)에 속하는 사항이었다... 미국은 단 한 번도 자국이 결정한 유엔사령관 지휘권의 교체를 유엔에 통보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군사적 및 작전적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이 유엔사에 대한 전적인 통제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관련국가들 (parties involved)은 미국을 유엔의 대리인으로 간주하고, 미국의 행동을 유엔의 행동과 동일시하였다. 참전국들은 유엔사와 커

<sup>54)</sup> Dereck W. Bowett, *United Nations Forces* (Clar, NJ: Lawbook Exchange, 2008), p. 347.

<sup>55)</sup> Sarooshi, 1999, p. 113.

뮤니케이션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엔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들과 미국 간의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어휘를 사용했다. 그리고 유엔 결의안들도 '유엔군(UN Forces)'이나 '유엔사령부(UN Command)'라는 호칭을 사용했다."56)

유엔사에 대한 안보리의 권한위임 가운데 중요한 부분은 안보 리가 적시한(specified) 목표의 달성 시점, 다시 말해 특히 언제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 사라졌는지를 판단하는 권한이 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안보리가 유엔사에 위임한 광범위한 자유 재량권 속에, 군사강제(military enforcement) 활동을 수했하는 군대에 대한 지휘통제권, 그리고 군사행동의 종료시기 결정이 포 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언제 위협이나 국제평화 및 안전의 파괴 가 발생하였고. 언제 그것이 사라졌는지(has ceased to exist)에 대한 판단은 헌장 제7장의 존재이유(raison d'être)와 직결된다. "위임받는 권한의 再위임 불가(delegatus non potest delegare)" 워칙에 따라 한번 위임받은 권한은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 없 다.57) 그러므로 과연 안보리가 유엔사에 "언제 그 지역에서 국 제평화와 안전이 회복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능력을 위임하였는 지 여부는 6 · 25전쟁 사례에서 권한위임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중 요한 쟁점이다. 안보리가 유엔사에 국제평화·안전 회복의 '시점' 에 관한 판단권한을 위임한 증거는 다음 2가지 사실에서 추론된 다. 첫째. 미국은 추가로 안보리 승인을 받지 않고도 정전협정 협상 및 체결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안보리로부터 위임된 권 한의 일부로 간주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안보리나 총회로부터

<sup>56)</sup> Higgins, pp. 195-197.

<sup>57)</sup> Sarooshi, 1999, p. 115.

의 정치적 지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정전협정 협상을 수행하였다.58) 둘째, 안보리나 총회도  $6 \cdot 25$ 전쟁 종결을 위한 휴전협상 과정에서 행동방책이나 전략방향과 관련된 그 어떤 지침을 하달하거나 결의안을 통과시킨 적이 없었다.59)

하지만 그 무렵 소련이 안보리에 복귀하여, 소련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한국에서의 강제행위와 관련된 사안들의 추가적 논의가 불가능해졌다. 1951년 6월 말경, 소련은 뉴욕대표부대사 말리크(Yakov Malik)의 발언을 통해, "만일 쌍방이 평화적 해결의길로 접어들 준비가 되어 있다면 6·25전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발언을 내놓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1단계로 쌍방 군대의 38도 선으로부터의 철수와 함께, 교전당사자들 간 휴전(cease—fire)및 정전(armistice)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월 25일자중공의「인민일보」도 "한반도로부터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그리고 한국국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미래를 해결하도록 허용"이라는 전제조건을 붙이면서 소련의 주장에 동의했다. 나아가 소련은 정전협상을 위한 정치적 협상을 고집하던 자세를 버리고, 정전협상이 엄격히 군사적 성격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이를 바탕으로 미국 정부가 아닌 유엔사가 다른 참전국들과의협의를 거쳐 휴전협상의 책임을 맡게 된 것이다.60)

한편, 당시 시점에 유엔은 미국이 위임된 범위 내에서 그러한 권한(휴전협상과 관련된)을 보유했다고 간주한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당시 트리그베 리(Trygve H. Lie) 사무총장에게 다음 요지의 각서가 보고되었다.

<sup>58)</sup> Leland M. Goodrich, *Korea: A Study of U.S. Policy in the United Nations* (Westport, CT: Greenwood Press, 1956), p. 185.

<sup>59)</sup> Sarooshi, 1999, pp. 115-116.

<sup>60)</sup> Ibid, p. 183.

- (1) 미국은 안보리나 총회의 추가적인 승인 또는 지침이 없이도 휴전 또는 정전협정을 체결할 권리가 있다.
- (2) 이런 권한은 군사적 문제에 국한되며, 정치적 문제에 관한 협상은 안보리 또는 총회의 추가적 결정을 필요로 한다.
- (3) 어떠한 휴전/정전 협상도 미국에 유엔사 권한을 귀속시킨 안보리에 보고해야 한다.
- (4) 미국과 15개 참전국으로 구성된 'Committee of 16'는 유엔 기관이 아닌 미국과의 관계에서(vis-à-vis) 협의하기 위한 임시기구로 설치된다.<sup>61)</sup>

6월 30일 한국을 방문한 맥아더 장군은 한국군이 "혼란속의 후퇴(in confused retreat)" 중이며 "단합된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고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승인해 준다면 즉각 2개 연대 전투단을 한반도 전투지역으로 보내, 자신이 부여받은 "남한으로부터 북한군의 소탕임무(mission of clearing)에 따라 조기에 공세를 취하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들여올 2개사단 증강의 '핵심전력(nucleus)'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히며, 여전히 6·25전쟁 상황을 낙관적으로 바라봤다. 6월 27일, 리(Lie) 사무총장은 모든 회원국들에 발송한 전문(cable)을 통해, 안보리 결의안의 권고에 따라 한국에 제공할 지원의 형태와 분량(type and amount)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 아랍권 국가들은 집단방위의 원칙을 지지하면서도 팔레스타인에 유사한 조치가취해지기 전까지는 한국에서의 집단방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그렇지만 유엔 사무국은 총 53개 회원국들이 "우호적(favorable)" 견해를 밝힌 것으로 집계했다. 62)

안보리 결의안 84호(1950.7.7.)가 채택된지 2주만에 영국. 호주.

<sup>61)</sup> Ibid. pp. 183-184.

<sup>62)</sup> Ibid, pp. 115-116.

뉴질랜드가 제공한 해군 및 공군부대가 북한군과 교전을 시작하고, 네덜란드와 캐나다 부대들이 한반도로 이동하는 중이었다. 그해 9월 중순, 유엔은 14개 회원국(미국 제외)이 지상군을 제공했다고 보고했다. 63) 다른 몇 개국도 지원의사를 밝혔지만 수락되지 않았는데, 이유는 유엔사에 소속된 부대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위한 규모 및 장비 면에서 미국 정부가 설정한 최소 요건 (minimum requirements)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실용적 목적에서 미국은 회원국들이 제공하는 전투부대의 최소요건을 ① 증강된 1개대대(약 1,200명) 이상, ② 손실된 전투력의 병력보충 보장으로 설정했다. 64)

유엔사의 광범위한 자유재량권은 강제행동의 목표와 관련된 안보리로부터의 명확한 지침이 부재함으로써 초래된 공백상태를 메우는데 유용했다. 이처럼 광범위한 자유재량권이 이뤄진 결정적 이유는 6월 27일 안보리 결의안 83호가 "무력공격의 격퇴 및 그 지역에서의 국제평화와 안전의 회복(to repel the armed attack and to restor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 the area)"이라는 표현으로 군사작전의 목적을 매우 포괄적으로 규

<sup>63) 6 · 25</sup>전쟁 지원국가는 전투병 파병 16개국, 의료지원 5개국, 물자지원 39개국, 물자지원 의사 표명 3개국 등 총 63개국이었다. 이는 당시 유엔 회원국 93개국 의 2/3가 참여한 셈이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통계로 본 6 · 25전쟁』(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14); ▲ 전투병 파병국(16개국): 미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프랑스, 필리핀, 터키, 태국, 그리스, 남아공, 벨기에, 룩셈부르크,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 의료지원국(5개국): 스웨덴, 인도,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 물자지원국(39개국): 과테말라, 도미니카, 서독, 라이베리아, 리히텐슈타인, 레바논, 모나코, 멕시코, 미얀마, 베네수엘라,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스위스,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이란, 이집트, 인도네시아, 일본, 아이티, 에콰도르, 오스트리아, 우루과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대만, 칠레, 쿠바, 캄보디아, 코스타리카, 파나마, 파라과이, 파키스탄, 페루, 형가리, 교황청, ▲ 물자지원 의사 표명국(3개국): 니카라과, 브라질, 볼리비아 등이다. (상기 내용에 관한 귀중한 조언을 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림.)

<sup>64)</sup> Ibid, p. 118.

정하였기 때문이다. 비록 안보리와 총회의 논의와 결의를 통해 미국의 군사작전에 통제력(controlling influence)이 행사될 여지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대체로 미국 정부는 한국에서의 군사작전에서 거의 전적인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5)

#### 다. 안보리 지휘통제권을 회원국에 위임

미국은 소련이 불참한 상태에서 안보리의 결의안 통과를 주도 하여 남한에 대한 북한의 무력남침에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결의 안을 채택하였다. 결의안에서 안보리는 북한의 남침공격을 "평화 의 파괴(a breach of peace)" 행위로 규정하고, 회원국들이 무 력공격의 격퇴와 그 지역에서의 국제평화와 안전의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as may be necessary)" 지원을 대한 민국에 제공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66) 6 · 25전쟁을 계기로 안 보리 결의안에 등장했던 "as may be necessary"라는 표현은 훗날(탈냉전시기부터) "all necessary means"란 표현으로 변 형되어 반복적으로 안보리 결의안에 등장하였다. 몇 가지 예 를 들면 다음과 같다. 탈냉전기에 들어 국제사회가 최초로 맞 이한 걸프만 위기사태(1990년)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는 결 의안 678호에서 "회원국들이 쿠웨이트 정부와 협력하여... 이 지 역에서의 국제평화와 안전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수단 (all necessary means)을 사용하도록... 승인(authorizes)"하였 다.67) 이는 6 · 25전쟁 당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합군에게 모 든 책임을 위임한 것과 "매우 유사한(on the lines of)" 방식으 로 취해진 조치였다. 당시에도 안보리가 교착상태에 빠져 '사막

<sup>65)</sup> Ibid, pp. 121-122.

<sup>66)</sup>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83, 27 June 1950.

<sup>67)</sup>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678, 29 November 1990.

의 폭풍작전(Operation Desert Storm)'이 완료되기 전까지 재개되지 않았다. 그 후에도 안보리는 미국 주도의 국제동맹군에게 소말리아 군부토벌을 위한 무력사용을 승인했다. 안보리는 현장 제7장에 따라, 사무총장과 회원국들이 협력하여 소말리아지역에서의 인도주의적 구호활동을 위한 안전한 환경이 가능한한 빨리 조성되는데 "필요한 모든 수단(all necessary means)"을 사용하도록 결의했다. 68) 1993년 보스니아 사태에서도 안보리는 회원국들에게 유엔 사무총장이 UNPROFOR 69)과 긴밀한 협조를 이루는 가운데,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안전지대(safe areas) 주변에 공군력의 사용(the use of air power)을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도록 결의했다. 70) 그 이후에도 안보리는 르완다에서의 인도주의적 위기사태(1993년) 해결과 아이티에서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정권의 축출(1994년) 등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의 사용을 결의했다. 71)

안보리가 국가 내의 단체 또는 국가의 무력사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7장의 권한을 회원국들에게 위임한 사례는 한국, 이 라크, 소말리아, 보스니아 등이다. 제7장에 명시된 권한의 위 임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안보리가 제7장의 권한위임을 규율하는 법적 골격으로부터 도출되는 요건을 준 수했는지 여부이다. 안보리가 헌장 7장의 권한을 회원국들에 게 위임하는 경우는 다음의 5대 목표를 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72)

<sup>68)</sup>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794, 3 December 1992.

<sup>69) 1992</sup>년 2월~1995년 12월 舊유고 지역에서 활동한 유엔보호군(UN Protection Force: UNPROFOR).

<sup>70)</sup>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836, 4 June 1993.

<sup>71)</sup>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929, 22 June 1994;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940, 31 July 1994,

<sup>72)</sup> Sarooshi, 1999, p. 167.

- (1) 국가 내의 단체(entities) 또는 국가의 무력사용에 대응,
- (2) 해상봉쇄(naval interdiction) 수행,
- (3) 인도주의적 목표 달성.
- (4) 안보리가 비행금지구역(no-fly zone)을 강제,
- (5) 안보리가 평화의 유지 또는 회복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합의를 당사자들이 이행하도록 보장 등.

헌장 제39조에 의하면, 제7장상의 강제조치를 적용할지 여부 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the existence of any threat to the peace, breach of the peace, or act of aggression)"에 따라 좌우된다. 여기서 '평화'는 단지 국 가들 간의 평화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안보리는 국가 내부에서 발생하는 분쟁, 양대 인구집단 간의 분쟁, 또는 국가와 그 국가 내 인구집단 간의 분쟁 등에 대하여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안보리는 비국가단체에 대한(against) 강제조치도 명 령할 수 있다. 일부 학자들은 1950년 한국전 및 1991년 걸프전 에서 국가들에 의한 무력사용이 승인된 집단안보 조치의 사례이 지. 유엔의 강제행동이 아니라는 견해를 제시한다. 만일 그렇다 면. 이런 행동은 안보리가 회원국들에 헌장 7장의 권한을 위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회원국들이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의 행사를 안보리가 승인해 준 것에 불과하다. 즉 국가의 무 력사용이 자위의 고유한 권한(inherent right of self-defense) 에 따른 조치라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전 사례의 검토는 과연 안 보리가 헌장 7장의 권한을 회원국에 위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력사용이 국가의 집단적 자위권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파단하는데 필수적이다. 73)

<sup>73)</sup> Sarooshi, 1999, p. 168.

6 · 25전쟁 발발 직후에 안보리가 취한 일련의 결의안,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휘통제 권한이 부여된 유엔사라는 유엔보조기관을 창설한 것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쟁점사항은 회원국들에 부여된 위임명령(mandate)의 성격이다. 회원국들에게 현장 7장의 권한을 위임한 안보리 결의안은 단지 국가들로 하여금자신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승인한것이 아니다. 안보리가 승인한 군사행동이 자위적 조치의 승인에만 국한되는 유일한 경우가 존재한다면, 이는 결의안이 명시적으로이러한 자위권을 적시하고, 나아가 현행 국제법하에 존재하는 자위권의 범위를 초과하는 어떠한 조치도 승인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할때뿐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보리가 무력사용을 승인하는경우의 기본적 전제는 이것이 현장 7장에 따라 안보리가 보유한 권한의 위임이지, 단지 자위적 무력사용에 대하여 주권국이 보유한권리의 재확인이 아니라는 것이다.74)

따라서 한국전에서 취한 군사행동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안보리 승인의 본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6·25전쟁 사례에서, 유엔사가 취한 군사행동은 자위권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 이유는 안보리 결의안 83호가 회원국들에게 무력공격의 격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더 중요하게는 "이 지역에서의 국제평화와 안정의 회복"을 권고하였기때문이다. 즉 안보리는 회원국들에게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회복을 위하여 그 권한을 위임한 것이다. 안보리가 적시한 후자의목표, 즉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회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회원국들이 경우에 따라 자위권 행사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유엔이 한국전에서 취한 군사행동은 안보리가 승인한 '자위적 조치'

<sup>74)</sup> Ibid. p. 169.

가 아니라, 안보리의 승인을 받은 '강제행동'이다. 다시 말해, 유 엔사와 그 예하의 부대들은 안보리를 대신하여, 안보리로부터 위 임받은 현장 제7장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이런 견해는 유엔 사의 지휘통제를 받으며 한국에서 상기의 권한을 행사한 회원국 들의 실행에서도 확인되었다. 75)

그럼에도 불구하고 딘스타인(Yoram Dinstein)을 포함한 일부 학자들은 한국전에서의 군사행동이 안보리에 의해 승인된 자위 권 행사라고 주장한다. 특히 딘스타인은 유엔군이 집단안보가 아 닌 "집단적 자위(collective self-defense)를 위한 싸움"을 벌였 다는 입장이다. 한국에서의 군사행동이 유엔 강제행동으로 간주 될 수 없는 이유는 안보리가 문제의 조치들을 취하도록 회원국 들에게 "요청"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76) 하지만 안보리 가 승인한 군사적 강제행동의 적법성은 국가들이 그런 행동을 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 그러므 로 안보리가 결의안 83호 및 84호에서 국가들에게 특정 행동을 취하도록 '권고'한 것은 그런 조치들을 위임된 군사적 강제행동 으로 간주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회원국들이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은 헌장 7장에 위임된 권한의 특 징이다. 즉 위임받은 권한의 행사 여부는 각 회원국의 재량적 판 단사항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전 상황에서 회원국들은 안보리가 헌장 7장 상의 권한을 위임한데 기초하여 군사력을 사용하였던 것이다. 이런 이유로 많은 학자들은 헌장 39조와 42조가 안보리 결의안의 법률적 기초라고 주장한다.77)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검토한 바에 의하면 한국 유엔사의 국제법적 지위는 안보리라는

<sup>75)</sup> Ibid, pp. 169-170.

<sup>76)</sup> Yoram Dinstein, War, Aggression, and Self-Defen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pp. 42-46.

<sup>77)</sup> Sarooshi, 1999, pp. 170-171.

주요기관에 의해 설치된 보조기관이며, 그 법률적 근거는 헌장 제7장에 포함된 제39조와 제42조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 4.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연구의 중요한 발견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전에서 유엔이 승인한 군사행동의 본질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아니라 헌장 제7장에 따른 '강제행동'이다. 안보리 결의안 제82호는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의 '무력공격'이 '평화의 파괴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헌장 제7장은 "평화의 위협, 평화의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련된 조치(Action With Respect To Threats To The Peace, Breaches Of The Peace, And Acts Of Aggression)"를 규정한 '안보리 강제행동' 조항이다. 결의안 83호가 회원국들에게 무력공격 격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그 지역에서의 국제평화와 안정의 회복"을 권고하였으며,이에 16개국이 호응했다. 참전국 중에서 '개별적·집단적 자위권'행사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는 국가는 없었다. 따라서 한국전에서 안보리 요청에 호응하여 유엔사에 병력을 공여한 국가들은 '자위권'행사가 아니라, 헌장 7장에서 규정하는 '안보리 강제행동'에 동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유엔사는 안보리가 창설한 유엔 보조기관이다. 안보리의 보조기관 설치와 관련된 헌장 규정은 제7조 2항과 제29조이다. 전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반면, 후자는 "그 기능(its functions)"의 수행에 필요한 보조기관으로 국한된다. 따라서 헌장상 범위 면에서 7조 2항이 29조보다 더 넓다. 냉전이 최고조에 달하던 1950년에 발생한 대규모 전면전 쟁인 한국전의 수행이 29조가 말하는 "안보리 기능 수행"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유엔사의 법적근거는 현장 7조 2항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유는 제7조 2항에 따라 창설되는 안보리 보조기관은 "안보리 자신이 수행할 수 없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안보리 결의안 84호에따라 탄생한 미국 주도의 통합군사령부(a unified command)가 '유엔사령부'이다. 유엔사는 출범 직후부터 안보리를 "대신하여" "대리인(agent) 또는 대리기관(agency)"의 자격으로 활동한다는점을 분명히 하였다.

셋째. 유엔사는 안보리 보조기관으로서. 안보리로부터 광범위 한 자율성과 독자성을 위임받았다. 제3장 1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정기관이 보조기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주요기 관으로부터, 주요기관의 권한과 통제범위를 넘어서는 자율성과 독자성을 위임받았는지 여부이다. 만일 자율성 · 독자성을 보유하 지 못한다면 그 기관은 보조기관이 아니라 주요기관의 일부에 불과하다. 따라서 유엔사가 안보리를 포함한 유엔 주요기관에게 정기적으로 직접 보고했는지, 유엔의 지시와 통제에 따랐는지, 유엔의 경비(보조금)를 지원받았는지, 유엔의 연감에 보조기관으 로 등재되었는지 여부와 같은 형식논리는 유엔사가 안보리 보조 기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 요인들이 아니다. 이는 안보리 (주요기관)-유엔사(보조기관) 간 존재하는 독특한(sui generis) 관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데서 비롯되는 오해의 산물이다. 안 보리 결의안 84호는 (미국에게) 사령관 임명 요청. 유엔의 깃발 사용 허용과 더불어. 광범위한 군사강제 행동의 수행에 관한 지 휘통제권을 위임하였고, 이 점을 유엔과 회원국들도 분명하게 인 식하고 있었다. 일레로, 그 단적인 증거가 유엔이나 회원국들 중 어느 누구도 미국이 임명한 유엔사령관에 대한 인준이나 인선에 이의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유엔사가 행사한 광범위한 재량권은 군사적 강제행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안보리로부터의 전략방향과 작전지침의 부재로 빚어질수도 있었을 혼란과 시행착오를 예방하는데 기여했다. 만일 북한불법침략의 희생자였던 남한을 되레 "침략자(aggressor)"로 규정한 소련이 안보리에 복귀하여 유엔사의 군사활동과 전투력 배치, 전략방향 등에 일일이 간섭하였더라면 한국전 수행은 애당초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넷째, 북한을 비롯한 국내의 일부 인사들은 1975년 11월 18일 비동맹국가와 공산국가들을 중심으로 통과된 총회 결의안이마치 "유엔사의 즉각 해체"를 요구한 것처럼 주장한다. 결의안의핵심은 "해체되어야 한다(should be dissolved)"가 아니라 일정여건이 충족되면 "해체될 '수'도(may be dissolved)" 있다는 것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 해당 결의안 제3항은 "정전체제 유지를 위한 약정(arrangements)과 함께 유엔사 해체가 가능해질 수있도록 하기 위한 대화가 가급적 조기에 개시"될 것을 촉구했다. 제4장은 "1976년 1월 1일 유엔사가 해체"될 수 있도록 쌍방 간협의가 종료되고 정전협정 유지를 위한 대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78) 여기서 2가지 추론이 가능하다. 첫째, "may

<sup>78)</sup> United National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3390A/3390B, "Question of Korea," 18 November 1975,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7737.pdf? v=26b1bb03faece2221fac2e8d6e4e20e4. "3, Urges all the parties directly concerned, as a first step, bearing in mind the need to ensure continued observation of the Armistice Agreement and the full maintenance of peace and security in the region, to embark on talks as soon as possible so that United Nations Command may be dissolved concurrently with arrangements for maintaining the Armistice Agreement; 4. Expresses the further hope that these discussions will be completed and alternative arrangements for the maintenance of the Armistice Agreement will be

be dissolved"란 표현은 "해체돼야 한다(should be dissolved)" 가 아니라 일정조건이 충족되면 "해체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둘째, 일정조건이란 정전협정을 대체할 수 있는 평화협정 같은 것을 가리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를 근거로 유엔 총회가 "무조건적 유엔사 즉각 해체"를 요구한 것이라는 과장·왜곡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 한미는 유엔사의 성격·위상을 언급하는 경우, "유엔 행정기관(executive agent)"이라는 표현보다는 "유엔 보조기관(subsidiary organ)"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사가 안보리 보조기관이라는 인식이 확산될수록 유엔사 해체를 위해서는 안보리 결의안이 필수적이라는 논리가 더욱 설득력을 갖게 될 것이다. 79) 둘째, 유엔사 기능과 역할의 종료시점을 밝힐 필요가 있다. 단지 유엔사가 중전선언 및 평화협정과 무관하다는 논리보다는 '종료시점'이라는 '최종상태(end state)'를 원론적 측면에서라도 언급하자는 것이다. 유엔사가 그 임무를 단지 정전협정 준수·관리의 수준으로 스스로 축소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다 넓은 의미에서 안보리 보조기관으로서의 유엔사 임무는 "국제평화와 안전의회복"이다. 따라서 그 임무가 완료되어야 유엔 보조기관인 유엔사의 기능과 역할이 종료될 수 있음을 반복적으로 밝혀야 한다. 80) 셋째, 우리 국방부와 유엔사는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서

made in order that the United Nations Command may be dissolved on 1 January 1976 so that by that date no armed forces under the United Nations Flag will remain in the South of Korea." (Emphasis added) (검색 일: 2020,9,11,)

<sup>79)</sup> 유엔사도 유엔사 해체방법을 (1) 안보리의 해체 결의안, (2) 미국의 정치적 결심이라고 밝혔다.

<sup>80)</sup> 일부 학자들은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정전체제가 종식되면 정전관리의 주체인 유 엔사령부의 해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유엔 안보리가 유엔사령부를 창설한 근본 목적은 '국제평회와 안전의 회복'이며, 이를 위한 당면과제가 "북한군에 대한

유엔사의 기능 및 역할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 유엔사 전력제공 국(force provider)의 역할과 문호를 기존 16개국으로 국한시키 는 폐쇄형이 아니라. 뜻을 같이하는(like-minded) 국가들의 자 발적 참여를 수용하는 개방형으로 전환하는 방향도 전향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국방부가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국가의 생명 을 구해준 유엔사와 관련하여 "규모 확대를 위해서는 한국의 동 의 필요"를 강조하며 유엔사의 역할 강화에 부정적인 것처럼 비 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미국의 2020 대선에서 정권교 체가 이뤄졌지만 신임 바이든 대통령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손에 쥘 수 있는 선택지는 지극히 제한적이다. 궁극적으로는 대 북제재 조치와 더불어. 북한 핵무기와 핵기술 · 핵물질의 확산 및 유출 방지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가 대 북제재 이행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면, 일본에 위치한 유엔사 후 방기지의 유용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또한 한반도에서 핵무기 의 독점체제를 구축한 김정은 정권은 남한에 대한 핵인질 전략 을 강도높게 추진할 것이다. 또한 북한이 대미(對美) 핵억제 전 력을 확보한 것으로 오판함에 따라 제2의 6 · 25전쟁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일례로 갈루치(Robert Gallucci)는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고 6·25전쟁이 사실상(de facto) 및 법률상 (de jure) 종료되더라도. "언제든지 수십년 간의 평화가 끝나고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81)

<sup>(</sup>against) 군사작전 수행"이다. 즉, 유엔사의 창설 목적이 정전관리는 아니다. 따라서 정전체제가 종결되었다고 '자동적으로' 유엔사 해체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것은 유엔사 창설 목적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기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다음 자료를 참고할 것. 박휘락,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에 관한 소망성과 위험, 그리고 과제," 「전략연구」, 제25권 2호(2018년), pp. 169-196; 장용석.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협정: 개념, 쟁점, 추진방향," 『통일문제연구』, 제22권 1호(2010년), pp. 134-145.

<sup>81)</sup> Robert Gallucci, "Why the Korean War Could End, or a Second Korean War Could Begin," *National Interest*, 2 July 2020.

북한에게 유엔사 해체는 미군철수라는 당면목표를 완수하고, 최종목표인 '전 한반도 공산화'를 위한 징검다리다. 많은 사람들은 "종전선언 → 북핵 묵인 → 평화협정 체결 → 유엔사 해체 → 미군철수 → 한미동맹 폐기"를 충분히 실현가능한 시나리오로 간주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유엔사는 '가장 약한 고리'다. 그러므로 '가장 약한 고리'를 보완하는 것 한미동맹이 해결해 나가야 할 최우선 과제이다. 북한은 유엔사를 "유령기관," "불법기관"으로 부르며 금방 없어져야 할 존재인 것처럼 폄훼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유엔사의 국제법적 근거와 정당성이 그들이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강력함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다.

(원고투고일: 2020, 10, 3, 심사수정일: 2020, 11, 6, 게재확정일: 2020, 12, 2,)

주제어: 유엔사령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주요기관, 보조기관, 북한, 유엔헌장 7장, 집단안보, 권한위임

# 〈참고문헌〉

- Bowett, Dereck W. United Nations Forces. Clar, NJ: Lawbook Exchange, 2008.
- Cox, David Cox (ed.). The Use of Force by the Security Council for Enforcement and Deterrent Purposes: A Conference Report. Toronto, Canada: Canadian Centre for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1990.
- Dinstein, Yoram. War, Aggression, and Self-Defen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 Gallucci, Robert. "Why the Korean War Could End, or a Second Korean War Could Begin," National Interest, 2 July 2020.
- Goodrich, Leland and Anne Simons. The United Nations and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s, 1962.
- Goodrich, Leland M. Korea: A Study of U.S. Policy in the United Nations. Westport, CT: Greenwood Press, 1956.
- ICJ, Effect Of Awards Of Compensation Made By The United Nations Administrative Tribunal Advisory Opinion (Administrative Tribunal Case), 13 July 195.
- Letter from the Permanent Representative of France to The United Nations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 S/25266, 10 February 1993.
- MacArthur, Douglas. "Military Situation in the Far East," Hearing before the Senate Committee on Armed Services and Foreign Relations, 82nd Congress, 1st Session Part 1. Washington, DC: GPO, 1951.
- Military Situation in the Far East, Hearings Before the Committee on Armed Services and th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 United States Senate, 82nd Congress, 1st Session, Part 5. Washington, DC: GPO, 1951.
- Reparation for Injuries Suffered in the Service of the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dvisory Opinion. 11 April 1949.
- Repertory of Practice of United Nations Organs (RPUNO), Vol. I, Article 1–22 of the Charter. New York: United Nations, 1955.
- Rosenne, Shabtai. The Perplexities of Modern International Law. Leiden, Netherlands: Brill-Nijhoff, 2003.
- Rosner, Gabriella. The United Nations Emergency Forc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1963.
- Sarooshi, Danesh. The United Nations and the Development of Collective Secur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 Seyersted, Finn. "Can the United Nations Establish Military Forces and Perform Other Acts without Specific Basis in the Character?" ÖzöR, Vol. 12, 1962.
-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3390A/3390B, "Question of Korea," 18 November 1975.
- UN Security Council Official Records, Fifth Year, 476th Meeting, 7 July 1950.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82, 25 June 1950.
83, 27 June 1950.
84, 7 July 1950.
678, 29 November 1990.
794, 3 December 1992.
808, 22 February 1993.
827, 25 May 1993.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836, 4 June 1993.
929, 22 June 1994.

\_\_\_\_ 940, 31 July 1994.

- 김대순. 『국제법론(17판)』. 서울: 삼영사, 2013. http://uci.or.kr/G901:A-0007968032
- 김명기. "국제법상 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 환수에 따라 제기되는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인도법논총」, 제34호 (2014년 12월), pp. 25-48. http://uci.kci.go.kr/G704-SER000 003935.2015.7.2.002
- 김선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유엔사 문제에 대한 소고," 「서울국제법연구」, 제12권 2호 (2005년 12월), pp. 85-105. http://uci.kci.go.kr/G704-001884,2005,12,2,003
- 김성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향과 평화협정의 내용," 「전략연구」, 제19호 (2000년 7월), pp. 120-144. http://uci.or.kr/G901:A-0001406516
- 박경규. "ICTY 판례에 의해 확립된 JCE이론의 법적 성격,"「서울법학」, 제23권 3호 (2016년 2월), pp. 297-332. https://doi.org/10.15821/slr.2016.23.3.010
- 박휘락,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에 관한 소망성과 위험, 그리고 과제," 「전략 연구」, 제25권 2호(2018년), pp. 169-196.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cleSearchBean artiId=ART002372020
- 송승종. 『유엔평화유지활동의 이해』. 서울: 연경출판사, 2006. http://uci.or.kr/G701:B-00099030546
- 유병화 등. 『국제법 II』. 서울: 법문사, 2000.
- 이기범. "유엔사령부의 법적 지위와 존속 및 해체 문제에 관한 소고," 「서울 국제법연구」, 제26집 2권 (2019년 12월), pp. 75-106. https://doi.org/10.18703/silj.2019.12.26.2.75
- 이진국. "독일 국제형법전의 실효성과 정책적 시사점," 「형사정책연구」, 제19권 3호 (2008년 가을호). http://uci\_or\_kr/G901:A-0002595760

#### 302 | 軍史 第117號(2020, 12.)

장용석.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협정: 개념, 쟁점, 추진방향," 『통일문제연 구』, 제22권 1호(2010년), pp. 134-145. http://uci.kci.go.kr/G704-000548,2010,22,1,009

정재욱.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동맹,"「JPI 정책포럼」, No. 2014-10, 2014.5.12.

http://uci.or.kr/I410-ECN-0102-2015-300-000330245



(Abstract)

# Reviewing the Status of United Nations Command (UNC) in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Law with Emphasis on the UN Charter

Song, Seong-jong

The underlying dilemma among the general public in South Korea is a gross mismatch between the economic superiority and security concern. especially military arena, in the context of inter-Korea relations. One the one hand, the South Korea's economy is more than 50 times as large as that of the North, while majority of South Korean have a disproportionately serious security concern from the North Korea's military threat. In its relentless quest for the occupation of Korean peninsula on its own terms, Pyongyang regards the United Nations Command (UNC) in Korea as an intermediate barrier in the path of the eventual elimination of the United States Forces in Korea (USFK) along with the ROK-U.S. alliance from the peninsula. In essence, from North Korea's viewpoint, the UNC is the weakest link in the triangle framework, which is consisted of UNC, USFK and the ROK-U.S. alliance, and that as such, its demise is just a matter of time when the declaration of the end of (Korean) war, peace treaty and/or the transfer of Operational Control (OPCON) are to be realized in the not so distant future. Against this backdrop, the crucial question to be raised is whether the UNC is a lawful subsidiary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 The implication and repercussion of the answer goes far beyond the level of binary "Yes, or No" reply. Rather, it will be directly related to the heart of such issues as the UNC's legal foundation and raison d'être, the lawfulness of its establishment, its international status and prominence, as well as its termination or existence in the future times to come.

The subject—matter of this study is exploring a substantive answer to the afore—mentioned question: "Is the UNC is a lawful subsidiary element of the United Nation?" To attain the research purpose, the Chapter II followed by the Introduction will focus on the nature of relations between the UN primary elements and subsidiary ones, including the delegation of powers to UN subsidiary organs in the context of the UN Charter. The Chapter III will undertake a case study of the UNC in Korea, with particular emphasis on the legally verified organs of Security Council in establishing the subsidiary organ, the delegation of its powers to UNC as well as to member states. Lastly, Chapter IV will include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long with policy implications to be taken into account in strengthening functions, roles and prominences of the UNC in the future.

Keywords: United Nations Command (UNC), Korean War, Security Council,
Principal Organs, Subsidiary Organs, North Korea, Chapter VII,
Collective Security, Delegation of Powers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0, No. 117, pp. 305-341 https://doi.org/10.29212/mh.2020..117.305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한국의 앙골라 PKO 부대 파병정책 결정과정 고찰

김정기\*

- 1. 서론
- 2. 기존 연구 검토 및 이론적 접근
- 3. 유엔의 요청에 따른 한국의 잠정합의 과정
- 4. 국회 동의와 후속 조치 과정에서 갈등 해소
- 5. 결론

# 1. 서론

한국은 1995년 2월 유엔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10월에 유엔 앙골라검증임무단(UNAVEM III: United Nation Angola Verification Mission III)의 일원으로 '앙골라 PKO 공병부대'<sup>1)</sup> 제1진을 파병하

<sup>\*</sup>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담당관(정치학박사)

<sup>1) 1995</sup>년 8월 7일 창설 당시 부대의 고유명칭은 제101야전공병대대, 통상명칭은 육군6767부대였으며 부대 애칭은 무지개부대, 오작교부대 등으로 검토되다 부

였다. 제2진이 다음 해인 1996년 4월에 전개하였고, 이어 제3진이 그해 10월에 교대한 후 약 2개월만인 12월에 철수하였다. 국가가 다른 나라에 군부대를 파병하는 것은 보통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다. 그러나 1945년 유엔이 창설된 이후에는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목적으로 평화유지활동(PKO: Peacekeeping operations)을 위해 다른 나라에 군부대를 파병하게 되었다. 한국도 1991년 유엔에 가입한 이후 여러 나라에 PKO를 위한 부대를 파병하였고, 지금도 레바논에서 동명부대가, 남수단에는 한빛부대가 활동하고 있다.

PKO 부대 파병은 '국제평화에 기여'라는 국군의 사명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어느 나라에 파병을 하던지 그 지향하는 바는 같을 것이다. 그런데 PKO 부대 파병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요인들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는 해당 사례를 구체적으로 고찰해야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 특히, 앙골라 파병은 국내외적으로 소말리아 파병의 후유증2)이 채 가시기 전에이뤄졌다는 점에서 특이한 사례이고, 유엔이 최초에 요청한 지뢰제거를 중심으로 한 전투공병 부대 파병을 거부하고 교량 복구를 주 임무로 하는 건설공병 부대를 파병한 특징이 있다. 게다가 국회 동의로 파병이 결정된 후 임무지역 선정에 대해 유엔과 이견과 갈등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해결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낸다.

여되지는 않았다. 앙골라에 유엔 평화유지활동을 위하여 파병되었던 공병부대로 서 일반적으로는 '앙골라 PKO 공병부대'로 칭한다.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앙골라 PKO파견관련 사료  $III_{
m J}$ , 1995, p. 506.

<sup>2) 1993</sup>년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슈(Mogadishu) 시가전에서 미군 헬리콥터 블랙 호크가 추락하여 부상자들이 옷이 벗겨진 채로 줄에 묶여 끌려다니는 장면이 CNN과 AP통신에서 전파를 탔으며, 그 직후 여론 악화로 미군이 소말리아에서 철수하였고, 한국군 소말리아 상록수부대도 1994년 3월 급하게 철수하는 후유 증을 겪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상록수부대 파병사』, 2012, pp. 171-173.

따라서 한국이 왜 상황과 여건이 여의치 않았는 데도 불구하고 앙골라에 교량복구 건설을 임무로 하는 공병부대의 파병을 결정하였고, 파병과정에서 임무지역 선정에 대한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였을까?라는 질문에 해답을 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앙골라에 한국군 PKO 공병부대가 파병된 지 벌써 25년이 지났는데도 이파병사례에 대한 정책적 결정과정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없었다는점도 본 연구를 하게 된 동기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이 앙골라 파병을 정책적으로 결정한 과정, 즉 유엔과의 잠정합의와 국회 동의 확보 과정, 그리고 후속 조치 과정에서 빚은 갈등의 해소를 고찰하는 데 집중하였다. 이를 통해 위 질문의 답을 찾아 사실의 전후 맥락과 주요요인을 규명하고 자 하였다. 이는 향후 PKO 파병정책의 결정과 후속 조치를 위해서 오류를 예방하고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는 유의미한 결과를 제공할 것이다. 나아가 다른 파병사례에 대한 미시적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범위는 시간상으로 앙골라 파병 논의가 시작된 1995년 2월부터 제1진이 전개되는 10월까지로 설정하였다. 공간적으로는 한국과 유엔, 그리고 앙골라이며 당시 파병정책을 결정하는데 참여한 기관들인 한국의 당시 외무부, 국방부, 대통령(청와대) 및 국회와 유엔의 사무국, 앙골라 현지 임무단, 사무총장 및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등을 행위자로 포함하였다.

연구는 먼저 2장에서 기존 연구와 이론적 검토를 선행하여 파병정책 결정과정을 고찰하는 데 필요한 분석 틀을 설정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3장에서는 한국과 유엔의 파병에 대한 잠정합의 과정을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국회 동의 과정과 후속 조치 과정에서 나타난 유엔과의 갈등해소 문제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5장 결론에서는 연구결과를 종합정리하고, 연구결과에 따른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 2. 기존 연구 검토 및 이론적 접근

#### 가, 기존 연구 검토

지금까지 한국의 앙골라 파병에 관한 학술적 연구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범위를 넓혀 한국의 평화유지활동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1990년대에 한국이 유엔에 가입하고 PKO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한 후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부침을 조명한 초기 연구가3) 있었다. 이어 2000년대에 한국의 평화유지활동이 10여년 전개되면서 이의 성과를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들4)이 이어졌다. 과거를 조망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의연구는 정부 예산에 의해 수요가 창출되고 비교적 연구 산물도많았다. 이런 연구 경향은 2019년부터 평화유지활동이 평화활동

<sup>3)</sup> 김열수, "UN 평화유지 활동의 부침: 구조적 원인과 행태적 원인," 『국제정치논 총』 제39집 제1호, 1999, pp. 435-454; 김열수, 『국제기구를 통한 분쟁관리』, 서울: 오름, 2000.

<sup>4)</sup> 강성학 편저, 『동아시아 안보와 유엔체제』, 서울: 집문당, 2003; 고성윤·부형욱, "신속 파병을 위한 시스템 발전방안: PKO 활성화 논의와 신속 파병시스템 발전방안의 연계," 『국방연구』제53권 제3호, 2010, pp. 71-95; 전제국, "한국군의 해외파병과 한반도 안보: 국제평화활동(PO)의 국익증진 효과," 『국가전략』제17권 제2호, 2011, pp. 33-68; 황진한·김건우, "21세기 한국군의 PKO 전략연구: 군사력의 소프크 파워적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군사학논집』제68권제3호, 2012, pp. 99-127; 이신화, "한국 국제평화활동의 양분화 고찰: 유엔 PKO vs. 다국적군 파병," 『아세아연구』제56권 제2호(2013), pp. 188-225; 박순향, "유엔 평화활동 분석과 한국 평화활동의 방향," 『군사』 제90호, 2014, pp. 181-219; Lee Shinwha, "Does Helmet Color Matter?: Discrepancy in Korea's International Peace Operation,"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48, No. 3, 2014, pp. 51-73.

(PO: Peace Operation)으로 포함된 후에도 PKO 연구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5) 그러나 구체적 사례나 분야별 연구로 나아가지 못한 채 비슷한 요지의 내용이 반복되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그동안 부족했던 전문분야를 한층 더 미시적으로 분석하거나6) 거시적으로 민주화 등 다른 요인과의 연관성을 탐구하고7) 거버넌스 속에서 평화 공공외교 등 국가의 역할을 모색하는 연구8)로 진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의 유엔 PKO 활동 연구의 미시적, 거시적 분야를 개척하면서 지평을 넓히고 있다.

그러나 거시적으로는 PKO 정책 결정에서 국가 또는 유엔 등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규명하는 구체적 연구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며, 미시적으로도 활동성과를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기존 방식을 답습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동안 학술적 연구가 미진했던 한국의 앙골라 PKO 부대 파병정책 결정과정을 유엔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좀 더 밀도 있게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유엔과의 협의와 국내 비준 과정 및 파병 결정 후 조치등을 규명하기 위해 정책 결정이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sup>5)</sup> Kyudok Hong, "South Korea' Future Strategies for Better Peace Operations,"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31, No. 1, 2019, pp. 21–42 <del>...</del> ...

<sup>6)</sup> 박순향, "PKO-C34를 통해 본 한국 평화활동의 발전 방안," 『전략연구』 제24 권 제1호, 2017, pp. 145-178; 박순향, "한국군 유엔 평화유지활동 평가와 과 제: 위임명령, 제도화, 주민만족도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35권 제4호, 2019, pp. 39-71.

<sup>7)</sup> Jai Kwan Jung, "Mission Impossible? Negotiated Settlement, UN PKO, and Post-Civil War Democracy Building,"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9, No. 1, 2017, pp. 151–173.

<sup>8)</sup> 이신화, "평화외교와 안보공공외교로서의 국제평화유지활동(PKO)에 관한 고찰," 『OUGHTOPIA』제34권 제1호, 2019, pp. 7-42; 박흥순·조한승·정우탁 편. 『유엔과 세계평화』, APCEIU, 2013; 정은숙, 『국제질서의 변화와 유엔의 평화·안보 거버넌스』, 서울: 선인, 2019.

## 나. 이론적 접근

그동안 한국의 PKO 연구 경향은 정책 결정보다는 그 활동의 성과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왔기 때문에 정책 결정이론을 적용한 사례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PKO를 포함하여 베트남전, 걸프전, 이라크전 등에 대한 해외파병정책 결정을 다룬 논문에서 그 이론들이 간간이 소개되었다. 처음에는 여러 개의 정책결정 이론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연구 분석 틀을 제시하는 경향을 보이다 가<sup>9)</sup> 점차 특정 이론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고 논의를 집중하는<sup>10)</sup> 경향으로 전개되었다.

이들이 다룬 정책 결정이론으로는 로즈노(James N. Roesnau) 의 예비이론(Pre-theory)과 엘리슨(Graham T. Allison)의 세 가지 모델인 합리적 행위자 모델(Rational actor model), 조직행태모델(Organizational behavior model), 정부정치 모델 (Governmental politics model) 등이 있고, 위트코프(Eugene Wittkopf)의 깔때기(Funnel) 이론과 푸트남(Robert D. Putnam) 의 양면게임(Two-level games) 이론 등이 있다.

이 이론들을 유엔 PKO 파병정책 결정을 분석하기 위한 차

<sup>9)</sup> 유병선, "한국군 파병결정에 관한 연구: 베트남전, 걸프전, PKO 파병 사례 분석," 충남대 박사학위 논문, 2002, pp. 14-29; 정도생, "한국의 해외파 병정책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pp. 10-25; 김열수, "해외파병 정책결정의 변수와 협상전략," 『전략연구』 제 13권 제1호, 2006, pp. 126-133; 김정두, "한국 군사외교정책 결정요인에 관한 비교 연구: 해외파병 부대 사례를 중심으로," 경남대 박사학위 논문, 2011, pp. 31-44.

<sup>10)</sup> 나용하, "양면게임 이론에 입각한 파병 정책 결정 연구: 이라크 파병 협상의 윈셋(win-set)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군사학논집』제70집 제1권, 2014, pp. 29-49; 이상욱, "한국 해외파병정책 결정요인의 상대적 영향력 평가: 로즈노의 예비이론을 중심으로," 경남대 박사학위 논문, 2015, pp. 16-32; 박동순, 『한국의 전투부대 파병정책』서울: 선인, 2016, pp. 34-43.

원에서 평가하고 장단점을 분석해 보면, 로즈노의 예비이론은 주요 독립변수로서 개인, 역할, 정부, 사회, 체제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정책 결정의 결과를 중요시한다. 따라서 장점으로 는 PKO 파병정책 결정에 대한 국가, 체제별 변수가 미치는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할 수 있지만11), 반면에 그 다섯 가지 외의 변수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단점을 지닌다. 앨리슨의 합 리적 선택, 조직행태 및 정부정치 모델은 사례의 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장점은 PKO 파병에 대한 국내적 정 책 결정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나 단점으로는 국내뿐만 아니라 유엔과의 협의 등 정책 결정과정을 동시에 설명하는 데에는 난점이 있다. 12) 위트코프의 깔때기 이론은 투입과 산출의 반 복과 화류 시스템을 중요하게 다룬다 13) 장점으로 반복적 협 의를 거치는 유엔 PKO 파병정책 결정과정과 결과를 추론하는 데 기본 틀을 제공할 수 있으나. 단점으로는 정확한 결과를 입증하기 위한 변수의 선별과 포착이 어려워 환류(feedback) 와 변환과정을 거치면서 나타나는 결과가 예상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

그런데 푸트남의 양면 게임이론은 국가 간 1수준(level-1) 게임으로 도출되는 잠정합의와 그 잠정합의에 대한 내부적 비준 과정인 2수준(level-2) 게임을 연계하여 중요하게 다룬다. 그리고 윈셋(Win-set)이라는 '주어진 상황에서 내부적 비준을 얻을 수

<sup>11)</sup> James N. Rosenau, *The Scientific of Foreign Policy*, The Free Press, 1971, p. 113을 이상욱, 앞의 논문, pp. 31에서 재인용.

<sup>12)</sup> Graham Allison and Philip Zelikow, Essence of Decision: Explaining the Cuban Missile Crisis 2ed, Addison Wesley Longman, 1999, pp. 401–405.

<sup>13)</sup> Charles Kegley, Jr. and Eugene Wittkopf, American Foreign Policy: Pattern and Process 4th ed, St. Martin's Press, 1991, p. 13을 김정두, 앞의 논문, p. 39에서 재인용.

있는 모든 합의의 집합' 개념을 활용하여 양자 간 협상과 양면 게임에서 오는 연계 현상을 동시에 설명한다. 14) 따라서 이 이론은 정책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국내정치와 국제적 협상의 복잡한 인과관계를 윈셋을 활용하여 규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PKO 파병정책 결정과정을 분석하는 데에 장점을 지닌다. 그리고 공여국은 국회의 동의를 이유로 유엔과 협의에서 윈셋 범위를 줄이려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양면 게임 적용이 유용하다. 즉, 윈셋을 수단으로 1수준 게임의 잠정합의와 2수준 게임인 내부적 비준을얻는 정책 결정과정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다만, 1수준 게임이 국가 간이 아닌 공여국과 유엔 간에 전개된다는 점에서 그 특성을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병력 공여국(供與國)은 자국 부대의 안전을 국익과 동일시할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유엔은 임무단이 수행하는 위임명령이 최우선 기준이기 때문이다.

다만, 1, 2수준 게임은 상당한 시간 속에서 여러 행위자에 의해 진행되는 만큼, 윈셋은 물론이고 행위자의 역할에 따른 양상과주요 행위자의 선호(Preference)와 영향력 및 내·외부 행위자간협력과 갈등해소 등에 대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검증이 동반되어야 신뢰도가 증가한다. 따라서 앞에서 기술한 로즈노의 예비이론, 앨리슨의 세 가지 모델 및 위트코프의 깔때기 이론 등이 주는 장점들을 보조적으로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sup>14)</sup> 푸트남은 '다른 것들은 동일(ceteris paribus)'하다는 조건으로 규칙을 정해 1차 국가간 잠정합의, 2차 국내 지지 확보라는 양면게임을 설정하여 '윈셋이 클수록 1차 합의가 용이하며, 2차 지지 확보가 가능한 윈셋의 범위가 국제협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명제를 도출함, Robert D. Putnam, "Diplomacy and domestic politics: the logic of two-level gam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2, No. 3, 1988, pp. 435-437; 윈셋의 개념 설명은 김열수, 앞의 논문, 2006, pp. 131-132 참조.

## 다. 연구 방법

한국의 앙골라 PKO 부대 파병정책 결정과정에서 1수준 게임의 행위자는 한국(외무부)과 유엔(사무국)이며, 2수준 행위자는 한국의 국회와 행정부이다. 그리고 윈셋은 전술한 것과 같이 내부적 비준을 얻을 수 있는, 즉 국제적 합의를 국내에서 수용할수 있는 기준과 범위의 조합이다. 특히 윈셋은 내부적 비준을 얻기 위해 핵심적으로 확보할 기준과 유엔과 협력을 위해 양보 가능한 융통성의 범위도 가져야 한다. 이를 고려하여 사전 연구를통해 한국과 유엔의 협의에 윈셋으로 작용한 기준과 범위를 설정하였다.

한국은 다른 병력 공여국들과 마찬가지로 부대를 파병할 때 안전(Security)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윈셋의 기준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15] 반면 유엔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한 임무단의 위임명령(Mandates)이 모든 활동에 우선한다는점에서 위임명령을 윈셋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 [16] 즉,한국의 윈셋에서 핵심적 확보 기준은 ② 파병부대의 안전이며,이를 위한 융통성의 범위는 ④ 비(非)전투부대 파병으로부터 ⑤ 비(非)지뢰제거작전 수행으로 상정[7]할 수 있다. 한편, 유엔의 윈셋은 임무단에 부여한 위임명령이 되며 그 중요도에 따라

<sup>15)</sup> 이신화, 앞의 논문, p. 213; 전제국 앞의 논문, p. 48; 유엔도 2008년 브라히 미(Brahimi) 보고서가 나온 이후 안전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나 그 이 전에는 공여국에 비해 관심도가 낮았다. Haidi Willmot, Scott Sheeran, and Lisa Sharland, Safety and Security Challenges, International Peace Institute, 2015, pp. 7-12.

<sup>16)</sup> 임무단의 위임명령과 병력공여국의 효율성 및 당사국의 만족도에 기반하여 PKO 활동을 평가한 박순향, 앞의 논문, 2019, pp. 54-61 참조.

<sup>17)</sup> 앙골라 파병결정 시 고려사항을 포함하여 연구 편찬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의 PKO파병사』, 2007, p. 111; 육군본부, 『해외파병 40년사』, 2008, pp. 416-417.

핵심적 확보 기준을 ⓐ 앙골라 평화회복 및 국가통합 지원으로 설정하고, 융통성 범위는 ⓑ 앙골라완전독립연맹(UNITA: National Union for the Total Independence of Angola)군 수용소(QA: Quartering Area)<sup>18)</sup> 설치지원과 ⓒ 광범위한 지뢰제거체계 구축<sup>19)</sup>으로 가정하였다.



〈그림 1〉 한국의 앙골라 PKO 부대 파병정책 결정과정 분석 틀20〉

이렇게 양면 게임에 참여하는 행위자들과 윈셋의 기준과 범위 그리고 보조적으로 적용할 예비이론과 세 가지 모델 및 깔때기 이론

<sup>18)</sup> 당시 루사카(Lusaka) 평화협정을 통해 반군인 UNITA군을 앙골라 정부군에 통합하기 위해 UNITA군을 임시 집결시켜 통합할 인원을 분리하고 나머지는 무장 및 동원 해제하도록 지역별로 수용소(QA) 설치를 추진하였다. "Lusaka Protocol," https://peacemaker.un.org/node/145, 검색일: 2020, 7, 1,

<sup>19)</sup> UNAVEM III의 창설과 위임명령을 결의한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976, February 8, 1995.

<sup>20)</sup> Robert D. Putnam, 앞의 논문, p. 441, 447; 이범준 외, 『미국외교정책』, 서울: 박영사, 2008, p. 51; Kyudok Hong, "The Impact of NGOs on South Korea's Decision to Dispatch Troops to Iraq,"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Vol 12, No. 2, 2005, p. 36 등을 참조 필자 작성.

까지 고려하여 한국의 앙골라 PKO 부대 파병정책 결정과정 분석 틀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실선으로 표시한 한국의 파병정책 결정과정에 집중하여 1수준 게임은 한국(외무부)와 유엔(사무국)을 핵심 행위자로 다루었고, 2수준 게임은 국회와 행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였다. 따라서 유엔의 2수준 게임과행위자의 역할은 논외로 하였으나, 유엔의 현지 임무단은 파병 실무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국방부와 함께 1수준 게임의 주요 행위자로 포함하였다.

이러한 분석 틀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일종의 잠정 가설로 논리적 전개의 줄거리를 구상하였다. "앙골라에 파병을 결정하는 2수준게임(내부적 지지 확보)을 위해 1수준 게임(잠정합의)에서 윈셋 범위를 줄이는 속성으로 유엔이 한국에 최초 ⓒ를 요청하자 한국은 파병은 수용하되 땀를 주장한다. 이 갈등 국면에서 한국은 땀를 활용하여 끊의 확보를 추구한다. 그리고 한국으로서는 국회 동의를 위한 2수준 게임에서도 가장 중요한 관건은 끊이며 국회 동의 후 후속 조치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잠정 가설을 검증해가는 논증 자료는 앙골라 파병정책의 결정과정과 관련된 수집된 각종 자료를 활용하였다. 보조적 수단인 로즈노의 예비이론, 앨리슨의 세 가지 모델, 위트코프의 깔때기 이론의 장점들도 행위자의 선호와 영향력, 내부 행위자간 경쟁과 협력을 설명하는 논리로 활용하였다. 즉, 당시 여당 총재인 한국의 대통령은 최상위 정책 결정 행위자라는 점에서 그 역할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또한,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선택과, 절차를 중시하는 조직행태 및 정부 부처의 이견조정과 최종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깔때기(수렴) 현상도 주목하였다.

# 3. 유엔의 요청에 따른 한국의 잠정합의 과정

#### 가. 유엔의 파병 요청

1975년 시작된 앙골라분쟁은 탈냉전 이후 해결되어가는 듯했다. 반군 UNITA를 지원하던 미국은 1993년 앙골라 정부를 공식적으로 승인한 후 행정명령(제12,865호)으로 UNITA를 '미국의 위협'으로 지목하였다. 21) 유엔도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864호를 통해 UNITA에 제재를 강화한 후 최후통첩으로 UNITA에 정전협정 참여를 압박하였다. 22) 1994년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만델라(Nelson Mandela)가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UNITA를 지원하던 백인 분리주의(Apartheid) 정부를 종식시켰다. 미국과남아공으로부터 지원이 끊기게 된 UNITA는 1994년 11월 20일루사카 평화협정(Lusaka Protocol)23)에 서명하였다.

이에 따라 1992년 9월 실시했으나 UNITA의 불복과 결선투표 불참으로 미완(未完) 상태인 총선거의 완료, 군과 경찰의 통합 및 권력 배분에 의한 통합정부의 수립이 추진되었다.<sup>24)</sup> 이를

<sup>21)</sup> George Wright, *The Destruction of a Nation: United State's Policy Toward Angola Since 1945*, Lundon: Pluto Press, 1997, pp. 175-178; "Angolan Civil War," https://en.wikipedia.org, 검색일: 2020. 7. 20.

<sup>22)</sup>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864, September 15, 1993.

<sup>23)</sup> 루사카는 앙골라 동쪽에 인접한 잠비아의 수도로서 당시 베예(Alioune Blondin Beye)가 유엔의 대표로 양자협상을 중재하였으며 1994년 11월 22일 부터 전면 휴전, UNITA군 해체 및 앙골라군에 편입, UNITA측에 부통령직과 11개의 장·차관, 7개의 공관장 등 주요직위 할당, 대통령 결선투표 실시 등을 합의함. Esref Aksu, *The United Nations, intra-state peacekeeping and normative change*,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03, pp. 166-167.

<sup>24)</sup> 김정기, "앙골라 분쟁 해결이 평화통일을 위하여 한반도에 주는 의미," 『한국 과 국제정치』제35집 제4권, 2019, pp. 84-86.

지원하기 위해서 유엔은 1995년 2월 8일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976호를 채택하고 UNAVEM II를 확대하여 UNAVEM III를 창설할 것을 결정하였다. 최대 7,000명의 군 병력과 군 옵서버 350명, 경찰 옵서버 260명을 편성토록 하였다. <sup>25)</sup> 이에 따라 유엔은 한국에도 공병부대의 파병을 요청하게 된다.

UNAVEM III 창설을 결의한 다음 날인 1995년 2월 9일에 뉴욕의 유엔본부 평화유지활동 사무국(DPKO: Department of Peacekeeping Operations)은 전문을 보내 한국의 UNAVEM III 참여 의사를 타진하였다. 실무자가 작성하여 사무차장을 대신한 군사고문단장 명의로 보낸 전문에서 지뢰제거, 정찰, 전술 교량 가설 등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200명 규모의 공병부대 파병 의향을 문의하였다. 비공식적인 파병 요청이지만 한국에 지뢰제거 임무를 포함한 독립공병부대의 파견에 관한 입장을 문의한 것으로<sup>26)</sup> 유엔의 윈셋 ⓒ광범위한 지뢰제거체계 구축 참여를 타진한 것이다. 외무부는 파병 실무를 담당하는 국방부에 의견을 요청하였다.

#### 나. 파병에 대한 이견과 절충

앙골라에 파병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초기에 이를 찬성하는 외무부 대(對) 반대하는 국방부의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외무부에서 유엔의 전문을 받고 공식적으로 국방부에 검토를 요

<sup>25)</sup>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976.

<sup>26)</sup> 그 내용은 "the Secretariat would like to make an informal inquiry as to whethe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ould be in a position to contribute an independent engineer squadron/company would have to be deployed to Angola by the end of March 1995"로 되어 있다.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앙골라 PKO 파견 관련 사료 I』, 1995, pp. 21-26.

청한 것은 2월 23일이었는데, 이때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에 기여 및 국가 위상 제고 방침에 비추어 합동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하였다. 동시에 유엔이 보낸 전문을 첨부하여 적극적인 (긍정적으로) 검토를 요청하였다. 그런데 국방부는 2월 25일 유엔이 보낸 첨부 자료를 바탕으로 '부대 성격, 시기, 절차 등을 고려 시 수용이 곤란'한 것으로 장관에게 보고하였다. 즉, 지뢰제거는 전투공병 과업으로서, 이는 안전 위해요소가 다대 (多大)하며 게다가 3월 말까지 현지에 전개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았다. 보고받은 국방부 장관도 명분이 충분하지 않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27)

3월 3일의 2차 보고에서도 외무부가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 사국 진출 여건 마련을 위해 '적극 참여' 입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안보 및 안전에 부담이 크다는 점 을 들어 파견은 부적절한 것으로 장관에게 보고하였다. 그 이유는 ① 지뢰제거를 주 임무로 하는 전투공병은 안전위해 요소가 다대하 고 ② 전투공병 인원 차출 시 안보에 영향을 미치며 ③ 장비준비와 경계부대 편성도 부담이 되며 ④ 3월 말 현지 전개는 절차를 고려 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앙골라 파병을 전제한 현지조 사에 참여하면 거절 명분이 없어질 것이라는 이유로 '불참 의견'으 로 3월 4일 외무부에 통보하였다. <sup>28</sup>

이때 문서로 봐서는 파병에 대한 국방부의 반대 의지가 확고 한 듯 보였다. 그러나 외무부는 청와대와 교감 하에 강한 파병 의지를 보인 바, 실무를 담당하는 국방부는 만약 파병이 되더라 도 미국의 소말리아 모가디슈 사태와 같은 최악의 상황은 사전

<sup>27)</sup>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앞의 사료 I, p. 39.

<sup>28)</sup>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위의 사료 I, pp. 41-43.

예방할 필요성이 있었다. 가장 전투적으로 판단할 것 같은 국방부이지만 전쟁이 아닌 경우 위험과 책임을 감수해야 하는 불확실한 성과보다는 안전을 우선 고려하는 조직행태 특성을 보인 것이다. 파병부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유엔에서 요청한 지뢰제거 임무를 포함한 전투공병 파병은 불가하고 따라서 현지조사도 불참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갔다.

그런데 국방부는 2주 뒤인 3월 17일에 '범국가적 노력으로 안 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 추진을 위해 PKO 파병 필요 성'이 있다는 추가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이와 함께 위험부 담 등을 고려하여 ① 지뢰제거를 주 임무로 하는 전투공병보다 비전투부대인 건설공병(130명 규모)을 파견하되. 7월 이후가 적 절하며 ② 4~5명의 군 옵서버 파견을 선 추진하고 ③ 유엔에는 현지조사 후 협의하자고 외무부에 통보하였다 29) 2주만에 국방 부 내부에서 이러한 반전이 나온 배경은 최초 의견 통보 시 외 무부뿐만 아니라 청와대의 '적극 참여' 의지를 과소평가했기 때 문이다. 특히, 3월 2일부터 15일까지 대통령의 유럽 해외 순방 에 외무장관과 함께 수행한 합동참모본부의장30)이 수행과정에서 대통령의 파병 의지를 확인하였고31) 복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 여 외무부의 요청에 동의하는 추가 검토 공문에 서명한 것이다. 이에 따라 외무부는 파병을 전제로 하는 현지조사단 파견 추진 을 결정하고, 3월 22일 국방부에 현지조사단 명단을 통보할 것 을 요청하였다.

결국, 한국의 앙골라 파병은 외무부에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통한 국제적 위상 제고 차원에서 필요하다

<sup>29)</sup>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앞의 사료 I, pp. 44-45.

<sup>30)</sup> 합동참모본부, 『합동참모본부사(1995년도사)』, 1997, pp. 690-692.

<sup>31) 6</sup>월 26일 정책회의에서 '대통령 유럽순방에서 논의'된 사실이 공지됨.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위의 사료 I, p. 107.

는 점을 대통령에게 인식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처음에는 반대하던 국방부가 이를 확인하면서 동의한 것이다. 일종의 국익차원의합리적 선택과 정부정치 과정이 작용한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국방부는 파병 시 부대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전투부대의 파병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즉, 유엔이 제시한 윈셋 ⓒ 광범위한 지뢰제거체계 구축에 참여할 경우안전문제로 인한 여론 악화와 2수준 게임인 국회 동의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국방부는 ⑤ 비지뢰제거작전 수행을 주장하면서 유엔으로부터 ⓒ에 대해서는 양보를 받되,대신 ② 파병부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⑥ 비전투부대 파병으로절충할 것을 외무부에 통보한 것이다.

#### 다. 유엔과 잠정합의

한국은 유엔의 요청에 대해 전투부대가 아닌 건설공병 파병으로 의견을 모은 가운데 외무부와 국방부 인원이 합동으로 편성된 현지조사단을 파견하였다. 청와대 행정관과 파병할 제1진 단장 등을 포함하여 총 8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4월 10일부터 20일까지 앙골라 현지와 유엔본부 DPKO를 방문하였다. 32) 4월 12일에는 루안다 현지에 도착하여 유엔앙골라검증임무단의 베예 (Alioune Beye) 유엔특사(SRSG: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 General)를 면담하였다. 이후 루방고(Lubango)소재 지역사령부와 나미베(Namibe)항을 방문하였으며 앙골라정부 기관과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을 방문하고 루안다 시내 등을 정찰하였다.

<sup>32)</sup> 이하 현지조사와 관련해서는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앞의 사료 I, pp. 46-74;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앙골라 PKO파견관련 사료 II』, 1995, pp. 313-385.

4월 17일부터는 뉴욕으로 이동하여 유엔본부 DPKO를 방문하여 협의하였다. 당일에는 사무차장보와 앙골라임무단 기획담당을 만났고, 다음날인 4월 18일에 사무차장(Kofi Annan)과 앙골라임무단 군사담당관(Mulkowski) 등을 면담하면서 한국 정부의입장을 전달하였다. 33) 귀국 후 4월 25일 국방부 장관에게 현지조사 결과보고를 하면서 현지 유엔 임무단(UNAVEM III)은 지뢰제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나, 유엔본부 DPKO는 한국의 참여 자체를 중시한다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가능한 지뢰제거를 수반하지 않는 교량 또는 수용소 건설 임무를 중심으로 한 건설공병부대의 파병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하였다.

이 보고를 바탕으로 국방부는 4월 28일 외무부에 통보한 공문에서 교량 건설 및 보수공사 등을 임무로 하는 200여 명의 공병부대 파견이 가능하며, 최소 4개월의 준비 기간이 소요된다고 명시하였다. 그리고 전제조건으로 ① 지뢰가 완료된 지역에 한하여 임무가 가능하므로 유엔의 사전 조치가 요구되며 ② 자재 및 물자는 유엔에서 지원되어야 하고 ③ 효율적 임무수행을 위해 UNAVEM III에 한국군 영관급 참모장교 파견을 요구하였다. 34)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방부의 앙골라 파병에 대한 최종 의견은 지뢰제거외 교량 건설 및 보수를 주 임무로 하는 건설공병 부대를 파병하는 것으로 정리된 것이다.

이후 국방부는 지뢰제거 외 교량복구 건설을 주 임무로 하는 공병부대 파병을 기본사항으로 외무부를 비롯하여 관계부처 협의 및 유관기관과 협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5월 4일에는 PKO 업무와 관련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군 및 연합사의 담당관 12명이 참석한 실무협조 회의를 하였고 앙골라 파병에 대

<sup>33)</sup>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앞의 사료 I, p. 380.

<sup>34)</sup>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앞의 사료 I, pp. 75-76.

비한 부대편성 안, 장비 및 물자 소요, 예산 판단 등을 점검하였다. 외무부는 5월 12일 국방부에 보낸 공문에서 유엔의 요청에따라 파병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6월 13일 유엔 사무국은 한국이 제안한 교량 건설 공병부대의 파병을 앙골라와 협의하였으며 동의한다고 알려왔다. 35) 결국유엔의 최초 요청인 지뢰제거를 주 임무로 한 전투공병 부대 파병을 거부한 한국의 역제안은 외무부를 거쳐 유엔 사무국에 통보되었으며 유엔 사무국은 이를 존중한다고 의견을 보내왔으므로 1수준게임, 즉 한국과 유엔의 잠정합의가 타결된 것이다.

1수준 게임과정을 종합해 보면 한국의 국방부가 파병 여부를 검토할 때 이미 윈셋의 확보기준인 ② 파병부대의 안전을 위해 ④ 비전투부대 파병이라는 절충안을 외무부에 제시하였다. 그리고 외무부, 국방부가 합동으로 현지를 조사한 후 ⑤ 비지뢰제거작전 수행을 유엔에 계속 요구하여 ⑤를 양보받는 데 성공한 것이다. 한편 유엔은 1수준 게임 과정에서 최초에는 윈셋 ⑥ 광범위한 지뢰제거체계 구축 참여를 위해 한국이 지뢰제거를 주 임무로 하는 공병부대의 파병 검토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한국이 거부하자 유엔은 한국이 제시한 공병부대 편성이면 ③ 앙골라 평화회복 및 국가통합 지원을 위해 최소한 ⑤ UNITA군 수용소 설치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수용한 것이다. 36 그리고 ⑥에 대해서는 강요는 하지 않되 대신 부대 안전을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자체 지뢰탐지 및 제거능력은 보유

<sup>35)</sup>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위의 사료 I, pp. 131-138.

<sup>36)</sup> 실제로 한국군 공병부대는 UNITA군 수용소 건설에 많은 공병 장비와 인원을 투입하였다. 제1진의 경우 응고베(N'gove) 수용소 건설('96.1.2, 2.2, 2.17~21, 3.4, 3.17~4.10) 및 병력수송('96.2.5~10), 빌라노바(Vila Nova) 수용소 병력수송('96.2.1~10), 치템보(Chitembo) 수용소 부지정리('96.3.27~4.10) 등을 실시하였다. 앙골라 PKO 공병대대, 『PKO 업무지침서』, 1996, p. 8-104-32.

하도록 하였다.<sup>37)</sup> 결국, 유엔은 위임명령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양보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정부 부처 및 유엔과의 갈등과 협력을 거쳐 1수준 게임인 잠정합의에 도달하였다. 이제 한국은 파병을 위한 최종관문인 국내적 지지를 확보하는 2수준 게임, 국회 동의 절차를 앞두게 되었다.

# 4. 국회 동의와 후속 조치 과정에서 갈등 해소

#### 가. 대통령 재가

한국은 외무부가 국방부와 협조하여 유엔과 잠정합의한 파병안에 대해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파병 결정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게 된다.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며 정부 예산 운영을 감독하고,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군의 외국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는 기관이다. 38) 그래서 파병에 대한 2수준 게임인 국내적 지지는 국회 동의로 결정된다. 국회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회에 동의 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전에 국무회의 의결을통해 대통령 재가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무회의

<sup>37)</sup> 잠정합의 직후 마련한 파병부대 편성(안)에 지뢰탐지기 10대, 폭파기구세트 4대가 반영되었다.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위의 사료 I, p, 96,

<sup>38)</sup> 헌법 제 60조 ②항은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로 되어 있다. 국회의 파병동의는 2010년 1월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파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동년 4월에 시행되면서 법률에도 반영되었으며, 현재는 법률 제13123호로 2015년 2월 3일 일부 개정되어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로 동년 8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및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중 참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검색일: 2020년 6월 1일.

의결을 위해서는 차관회의 의결이 필요하며 그전에 파병 실무부 처인 국방부의 정책회의와 통일안보 조정회의를 거쳐야 했다.

한국 외무부가 유엔 사무국과 건설 공병부대의 앙골라 파병을 잠정합의한 6월 13일 이후 국방부는 6월 20일 합동참모본부로부터 파견 가능한 부대 규모 및 능력을 세부적으로 판단한 결과를 보고 받았다. 그리고 6월 26일 국방부는 정책회의를 통해 장간조립교 건설 1개 중대를 기본으로 각종 공병 장비를 편제한 198명의 공병부대를 1년 파견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39) 이어 7월 1일에 청와대에서 열린 통일안보 조정회의에서 외무부가 제안한 앙골라 유엔평화유지단 파견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외무부는 자료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진출 기반조성, 국군의 현대화 및 국제화라는 기대효과를 들어 200명 수준의 교량건설 및 보수를 임무로하는 공병부대를 1년 기간으로 파견하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예산은 1995년 1차 연도 소요 예산 127억 원은 예비비에서 지출하며, 1996년부터 연간 4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았다.

7월 3일에는 외무부가 앙골라 파견 시기(국회 동의 후 3개월), 파견 인원(198명) 및 부대편성, 주요 장비 목록을 유엔에 통보하였다. 7월 5일부터 10일에는 국회 국방위원들과 통일 외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게 설명 및 협의를 진행하면서 7월 6일 차관회의 의결 후 7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40) 그리고

<sup>39)</sup> 당시 작전참모부장은 위험부담이 크고, 공병부대의 전투교훈 습득은 제한되며, 파견준비에 많은 소요 등을 들어 반대 의견을 표하였으나 보고자로 참석한 정책기획관이 대통령 유럽순방 때 논의된 사항이라고 설명하고, 차관이 PKO 적극 참여는 국가방침이란 점을 들어 군은 내부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짓고 의결하였다. "제8회 정책회의(95, 6, 26),"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앞의사료 I, pp. 98-107.

<sup>40)</sup> 외무부, "국무회의 의안처리전 제424호(국군 공병부대의 앙골라 유엔평화유지 단 참여안)," 1995.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을 〈자료 1〉과 같이 7월 11일 대통령이 재가하였다. 약 200명 규모의 건설공병 부대를 1년간 파견하며 '앙골라 평화유지단의 활동 지원을 위한 교량 건설 및 보수임무 수행'이라고 파견목적을 명시하였다.

분류기호 유엔정23210-문서번호 (전화 : 720-2334) 파견목적 : 앙골라 평화유지단의 활동지원을 위한 교량 외부부상관 국 구 총 리 영구,준영구 10.5.3.1 보존기간 건설 및 보수 임무 수행 보존기간 앙골라 평화유지단 개요 앙골라 정부군 및 반군간의 휴전감시, 인도적 구호활동 국방부장관 한 어행호 약 30여개국으로부터 7천여명의 인원 참여 계획 나. 서부사하라 평화유지단 앙골라 및 서부사하라 평화유지활동 참여 기본방침 : 94.9-95.8 파견된 우리 의료지원단(42명)의 과견기간 1년 연장 유엔은 「앙골라 평화유지단」(UNAVEM III)에 우리 공병부대의 소요경비 : 약 17억원 추산 (유엔규정에 의해 추후 보전) 파견을 요청하여 왔으며 또한 94.9월부터 「서부사하라 평화유지단」 과견목적 : 서부사하라 평화유지단의 활동지원을 위한 (MINURSO)에 파견되어 활동하고 있는 우리 의료지원단의 파견 연장을 의료지원 활동 요청하여 왔습니다. 정부는 유엔이 평화유지활동(PKO)에 적극 참여 ㅇ 서부사하라 평화유지단 개요 한다는 기본입장하에 아래와 같이 우리부대의 파견 및 연장을 추진 - 모로코와 플리사리오(서부사하라 해방전선)간 휴전감시 코자 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및 서부사하라 귀속문제를 결정할 주민투표 실시지원 가. 앙골라 평화유지단 - 95.5월 현재 25개국 288명 참여 기본방침 : 약 200명 규모의 건설공명부대를 1년간 파건 본건은 앞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후 헌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소요경비 : 약 150억원 추산 (유엔규정에 의해 추후 보전) 국회동의를 받아 시행 예정입니다. 끝.

〈자료 1〉 앙골라 파병 대통령 재가 문서41)

6월 13일 한국과 유엔이 잠정합의에 도달한 후 약 한 달만에 대통령이 재가하였다. 이는 유엔이 요구하는 일정에 맞추지는 못하더라도 가능한 국내적 지지 즉, 국회 동의를 빨리 마무리하고 파병을 앞당기려는 조치였다. 대통령이 재가를 결정한 요인은 파병실무를 담당하는 국방부에서 조기에 안전을 확보한 윈셋설정으로 외무부와 유엔 사무국 간에 건설공병 부대를 파병하는 것으로 잠정합의에 도달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외교적 목적에 부합한 합리적

<sup>41)</sup>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앞의 사료 I, pp. 136-137.

선택이며, 절차적으로도 국방부의 정책회의,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 모든 절차적 요건들이 갖추어졌기에 가능했다.

외교적 목적 부합, 안전 확보 및 실무부처의 정책회의를 바탕으로 통일안보 조정회의,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것이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표준운영절차(SOP: Standard Operation Procedure) 중시하는 정부 조직행태의 특성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유럽순방 중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외교적 포석으로 앙골라 파병 의지를 피력한 대통령 개인의 역할도 중요한 요인이었다.

### 나. 국회 파병동의안 의결

대통령이 재가한 다음 날인 7월 12일 외무부는 바로 국회에 「국군 공병부대의 앙골라 유엔평화유지단 참여동의안」을 제출하였다. 제안 이유는 '유엔회원국으로서 유엔의 국제평화유지 노력에 적극 기여하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군 공병부대를 앙골라 유엔평화유지단(UNAVEM III)에 파견코자함'이었다. 참여동의안은 8개 항으로 임무는 교량건설 및 보수로 명시하고 주둔 위치는 유엔측과 협의해서 정하되 부대 안전 및지원의 효율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작성되었다. 42)

<sup>42) 8</sup>개 항은 ② 공병부대는 유엔측 요청에 따라 1개 대대 규모(200명)로 편성 운용예정임 ① 공병부대의 파견기간은 1년으로 함(추후 유엔측 요청이 있을 경우 연장문제 검토 가능) ③ 공병부대의 임무는 앙골라 유엔평화유지단 활동에 필요한 교량건설 및 보수임 ② 공병부대가 앙골라 내에서 주둔할 위치는 유엔측과 협의해서 정하되 부대안전 및 지원효율성을 고려함 ⑩ 부대시설·장비, 보급 및 물자지원은 유엔측과 협의해서 정함 ⑪ 파견일자는 국회 동의 획득후 유엔측과 협의해서 정함 ④ 파견부대 및 요원의 지휘권, 법적지위에 관하여는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에 따르도록 함 ④ 파견경비는 우리 예산에서 먼저 지출하고 추후 유엔에서 보전 받을 예정임, 이하

7월 12일 제출된「앙골라 유엔평화유지단 참여 동의안」은「서부사하라 유엔평화유지단 파견연장동의안」과 함께 다음날인 13일에 제176회 국회 통일외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었다. 10시 22분에 개의하여 10시 32분에 외무부장관(공로명)이설명한 후 전문위원(강희복)의 검토보고가 이어진 후 토의에 들어갔다. 정재문(민자당), 이종찬(민주당), 안무혁(민자당), 박구일(자민련), 정몽준(무소속), 이부영(민주당), 류흥수(민자당), 임채정(민주당), 구창림(민자당) 의원 순으로 이어진 질의에서 국익차원의 실리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고, 안전보장이사회 진출에 들떠 성급하게 추진한다는 질책이 이어졌다. 이후회의는 11시 17분에 중단된 후 11시 37분에 속개되었지만 기타현안에 대한 외무부장관의 설명과 답변만 있었으며 앙골라 파병동의안은 다음 회의에서 추가 설명을 받기로 하였다. 43)

그리고 7월 14일 제2차 회의가 9시 21분에 개의되어 외무부 장관이 제1차 회의에서 지적받은 PKO 파견동의안을 서두른다는 것에 대해 세부적으로 추가 설명하였다. 2월부터 유엔의 요청에 따라 합동조사단을 현지에 보내 파악한 결과 현지 정세도 호전되어 상황이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한국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추천 및 지지를 받는 것도 그동안 소말리아, 서부사하라 등의 PKO 활동에 참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여타 중견 국가들의 파병 규모와 비교해가면서 한국이 앙골라에 파병해도 총 평화유지군 파병은 250명 규모로서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것이 아니라고 첨언하였다.

동의안 및 1일차 회의와 관련해서는 국회사무처, "제176회 국회 통일외무위원 회회의록 제1호 국군 공병부대의 '앙골라 유엔평화유지단' 참여 동의안," 1995. 7. 13.을 참조.

<sup>43) 2</sup>일차 회의는 국회사무처, "제176회 국회 통일외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군 공병부대의 '앙골라 유엔평화유지단' 참여 동의안(계속)," 1995. 7. 14.

이어 여야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안보 요소, 군사적 실리, 편성 및 안전문제 등 군사 분야 질문에 대해서는 국방부 정책기획관 이 답변하였다. 후방지역의 공병부대에서 병력을 차출하여 안보 에 지장이 없으며, 다양한 해외 군사작전을 체험함으로써 전문 인력이 양성되는 실리를 얻을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편성과 특 히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 지뢰제거 인력 및 장비를 자체 적으로 구비하되, 교량복구를 중심으로 한 부대로 편성하고 사 전 지뢰제거가 확인된 지역에서만 교량을 건설할 것임을 강조하 였다. 의결 직전 임채정 의원이 앞으로는 해외파병 시 국익과 안전문제 등에 관한 현지사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국회 에서도 현지조사를 한 후 의결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어서 위원장(오세용)이 다른 위원들의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참여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 이로써 국내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국회 동의 1차 관문인 통일외무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국내적 지지를 확보하는 2수준 게임은 1수준 게임 과정에서 국방부와 외무부의 이견이 정리된 만큼 국가정책을 수행하는 정부의 파병동의안에 대해 국민을 대표한 국회가 제동을 거느냐 동의하느냐의 문제였다. 해당 통일외무위원회에서 1일차에 국익차원 추가설명을 요구했지만 2일차에 안전 확보 등 국방부의 설명에 힘입어 수정 없이 파병동의안이 가결된 것이다.

그리고 다음날인 7월 15일 토요일 13시 12분에 개의된 제176회국회 본회의로 넘어온 「앙골라 유엔평화유지단 참여동의안」은 29개의 안건 중 마지막인 29번째로 처리되었다. 국회부의장(이한동)이 상정하고 통일외무위원장대리(유흥수)가 세계평화에 이바지한다는 헌법정신에 부합하고 국제적 위상 제고가 기대되어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어 부의장이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한 후 15시 20분에 곧바로 산회되었다. 44) 통일외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본회의에서도 가결됨으로써 국회 동의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국내적 지지를 결정하는 국회 동의라는 2수준 게임을 정리해 보면, 정부와 국회는 크게 두 가지 요인에 대해 통일외무위원회에서 논쟁을 거쳤다. 첫째는 파병 목적이고, 둘째는 안전문제였다. 파병 목적은 정부가 제시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중견 국가로서 위상에 맞는 PKO 기여에 국회가동의하였고, 부가적으로 설명한 해외 군사적전을 통한 경험축적과 인력 양성도 수긍하였다. 안전문제는 동의안에 파병부대의임무가 명시되었고, 주둔 위치도 부대안전 및 지원효율성을 고려유엔과 협의해서 정하는 것으로 포함되었다. 의결과정에서도현지조사 결과 앙골라 분쟁상황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점이설명되었으나, 국회도 현지조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확인하고 처리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여 통일외무위원회를 통해 국익에 부합하는지와 국민의 생명에 위해요소가 없는지를 점검하는 역할을수행하였고 본회의를 통해 동의안을 가결하였다. 동의안이 수정없이 통과된 된 것은 해당 정부부처인 국방부와 외무부가 사전에 국회 동의를 고려하여 건설공병 파병으로 유엔과 잠정합의를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그리고 해당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전에 개별적으로 의원들을 접촉하여 동의안과 배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한 것도<sup>45)</sup> 동의안이 수정 없이 통과하는데 주효했다고 볼 수 있다.

<sup>44)</sup> 국회사무처, "제176회 국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8호 국군 공병부대의 '앙골라 유엔평화유지단' 참여 동의안," 1995. 7. 15.

<sup>45)</sup>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앞의 사료 I, pp. 141-174.

이는 양면 게임이론의 2수준 게임, 즉 내부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종 결정권을 가진 국회를 행정부가 어떻게 설득하는가의 문제이다. 그리고 1수준 게임과정에서 국회 동의를 감안한 교량건설 공병부대 파병 협의가 결정적으로 안전 논리를 뒷받침한 것이다. 다만, 동의안에 부대주둔 위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안전과 효율성을 고려 유엔과 협의한다고 한 것은 이후 유엔과 갈등이 불거지는 단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국회 동의 과정에서 국익차원 종합적 설명과 안전문제에 관한 국회의 현지조사 참여 요구는 합리적 선택과예비이론에서 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 역할을 과소평가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 다. 후속 조치 과정에서 갈등 해소

앙골라 파병에 대한 국회 동의가 의결됨에 따라 그 결과는 외무부에서 유엔으로 통보되었다. 그리고 국방부는 파병될 부대를 창설하면서, 현지에 협조단을 파견하여 파병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였다. 7월 28일부터 8월 6일까지 합동참모본부 작전처장 등 7명이 현지협조단으로 활동하면서 전개 일정과 지휘관계 및 임무지역 등을 협조하였다. 46) 이때 한국 현지협조단은 활동과정에서 현지 정찰결과를 토대로 중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수도 루안다와 근접해 있어 현지 한국 수산업체인 인터불고와의 협력도 용이하다는 점을 들어 북부지역으로 임무지정과 그 중심지인 말란제(Malanje) 인근에 배치할 것을 유엔에 요청하였다. 47) 이는 국회 동의안에 안전과 효율성을 고려

<sup>46)</sup>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앞의 사료 III, pp. 386-434.

<sup>47)</sup>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앙골라 유엔평화유지단 대한민국 공병부대 증언록』, 2019, pp. 48-49.

하여 유엔과 주둔 위치를 협의한다는 조항에 대한 후속 조치 성격이었다.

그러나 UNAVEM III에서는 중부지역의 교량복구 우선순위가 높다는 점을 들어 우암보(Huambo) 배치를 검토 중이며, PKO에 대한 사항은 임무단에서 결정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현지협조단장은 북부지역 주둔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재차 강하게전달한 후 귀국길에 올랐으나 북부지역을 요구한 시점이 국회동의 이후, 즉 2수준 게임이 종료된 상태라 유엔이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였다. 이미 8월 7일에는 파병될 앙골라 PKO 공병부대가 창설되었으며, 8월 8일에 유엔 사무총장은 형식적 절차로서 공식서한을 한국에 보내 교량건설 공병부대를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서한에서도 한국이 요청한 북부지역으로 임무지역을 지정하겠다는 내용은 없었다.

이후에도 한국은 몇 차례 더 외교경로를 통해 유엔 사무국에 북부지역 배치를 요구하였으나 그 반응은 마찬가지였다. 48) 결국유엔은 최초 임무지역을 과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교량복구 소요가 많은 중부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즉, 최초 우암보에 배치하고, 차후 UNAVEM III 군사령관이 판단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9월 7일 이를 한국에 통보하였다. 49) 당시 앙골라 반군인 UNITA의 주요 활동지역이 우암보를 포함한 동남부 지역이었고 UNITA군을 수용할 QA의 건설 소요도 많았다. 이를 위해서도 중부지역의 파괴된 교량복구가 가장 긴요했고 그 주변에는 지뢰도 산재해 있었다. 그럼에도 한국은 유엔의 임무지역선정과 관련하여 일정부분 절충한 입장을 수용, 최초 임무지역만 중부 우암보로 지정하고 차후는 UNAVEM III 군사령관의

<sup>48) 8</sup>월 22일과 9월 2일 북부지역 임무부여와 말란제 인근 돈도(Dondo) 배치를 재차 요청함.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앞의 사료 II, p. 293, 295.

<sup>49)</sup>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앞의 사료 II, p. 299.

지시에 따를 것을 반영한 지령을 9월 18일 하달할 수밖에 없었다.50) 그리고 앙골라 파병부대 제1진이 10월 5일 전개하면서 부대 차원에서 임무를 북부지역으로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으나 변경은 불가능하였다.

유엔은 1수준 게임에서는 윈셋 ⓒ(지뢰제거체계 구축)에 대한 한국의 불참 의견에 반대는 하지 않았으나, 부대편성 협의에서 자연스럽게 제한적이지만 지뢰탐지 및 제거능력을 갖추게 하였다. 그리고 2수준 게임 이후에는 지뢰 제거가 필수적인 지역으로 한국군 공병부대의 임무를 부여함으로써 한국의 윈셋 ☞ 비지뢰제거작전 수행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를 고수하였다. 내전 당시 중부 우암보 일대는 UNITA가 철수하면서 교량을 파괴하고, 그 주변에 다량의 지뢰를 매설한 지역으로 한국은 교량복구 임무수행을 위해 ☞에 대해 일정 부분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우암보 현지에 파병된 후 한국군 공병부대는 파괴된 교량을 복구하면서 현저한 위험 지역은 지뢰제거 전문부대 또는 민간회사의 지원을 받았지만, 다수의 경우는 제한된 자체 능력으로 공사지역과 숙영지 일대에 대한 지뢰를 탐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51)

이는 한국과 유엔의 안전과 위임명령이라는 윈셋 기준이 2수준 게임인 국회 동의 이후에도 충돌한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이번에는 유엔이 ⓒ를 양보한 1수준 게임 때와 달리 한국이 때에 대한 한정적 역할을 현장에서 수용함으로써 일종의 양보를통해 갈등을 해소하였다. 결국, 한국군 공병부대는 UNAVEM III의 지시에 따라 앙골라 중부지역 우암보에 배치되었다. 그리고 우암보 남북의 지뢰가 산재한 파괴된 교량 8개를 조기에 복

<sup>50)</sup>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앞의 사료 II, pp. 302-305.

<sup>51)</sup>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증언록, pp. 125-126.

구 재건하고 파병된 지 약 15개월만인 1996년 12월 23일 제3진 을 끝으로 귀환하였다.

# 5. 결론

이상과 같이 한국의 앙골라 PKO 공병부대 파병정책 결정과정을 양면 게임이론의 윈셋 개념을 기초로 고찰하였다. 그 결과를 종합,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앙골라 파병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 등 외교적 목적과 배경이 있었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협의 과정에서 한국이 적용한 윈셋은 안전을 기준으로 범위를 설정하였다. 한국은 1수준 게임인 유엔과 잠정합의 과정에서 이미 국회 동의를 고려하여 ② 파병부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④ 비지뢰제거작전 수행을 주장하며 ⑤ 비전투부대 파병을 양보받았다. 이를 통해 교량건설 공병부대 파병 논리로 2수준 게임인 국회 동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

둘째, 병력 공여국인 한국과 달리 유엔은 위임명령을 윈셋의 기준으로 삼았다. 즉, 안전문제는 유엔도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우려하는 공여국의 요구는 수용하더라도 파병부대가 위임 명령 세 가지(③ 평화회복 및 국가통합 지원 ⑤ UNITA 수용소설치지원 ⓒ 지뢰제거체계 구축) 모두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였다. 그리고 그 세 가지는 어느 것도 양보하지 않고 2수준 게임 이후까지 파병부대에 대한 임무부여를통해 관철하였다.

셋째, 2수준 게임인 국회 동의가 끝난 후 특정 주둔 위치에

대한 한국의 요구는 사실상 협의가 불가능하였다. 유엔은 임무 단과업의 우선순위 선정과 PKO 임무에 대한 통제 권한을 근거 로 거부하였고 나아가 위임명령 ⓐ, ⓑ는 물론이고 한국이 불참 의사를 밝힌 ⓒ에 대해서도 부분적 참여를 형성시켰다.

넷째, 행위자의 역할 면에서 앙골라 파병정책 결정을 위해 한국은 외무부가, 유엔은 사무국이 협의했으나, 정책결정과 협의를 위해 윈셋 논리를 제공한 것은 국방부와 현지의 유엔 임무단이었다. 그리고 행정부(대통령)와 국회는 안전을 확보한 논리가 뒷받침된 잠정합의 결과를 토대로 큰 충돌 없이 2수준 게임을 처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 유엔과 상충 등이 있었으나 반복과 수렴 과정을 거쳐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어 동의안이 처리되었다.

이로써 2장에서 제시했던 잠정 가설 "유엔이 한국에 최초 ⓒ 를 요청하자 한국은 파병은 수용하되 ⓒ를 주장한다. 이 갈등 국 면에서 한국은 ⓒ를 활용하여 ⑰의 확보를 추구한다. 그리고 한 국으로서는 국회 동의를 위한 2수준 게임에서도 가장 중요한 관 건은 ⑰이며 국회 동의 후 후속 조치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검증되었다. 다만, 유엔의 윈셋에서 융통성의 범위일 것으로 가정했고, 한국 정부도 협의를 기대했던 유엔의 윈셋 ⓑ와 ⓒ는 ⓐ와 마찬가지로 양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임명령의 기준적 특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에도 파병정책에 대한 한국의 국가이익 관점에서 외교적 목적 달성을 위한 선택, 정부 부처별 경쟁과 협력, 절차를 준수 하는 조직문화를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 대통령의 의지는 정책결정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며, 유엔은 한번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좀처럼 변경하지 않으려 는(일관성 중시) 조직 특성을 엿볼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가 가지는 정책적 함의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국회 동의로 파병이 결정되기 이전, 즉 1수준 게임인 잠정합의 과정에서 부대의 안전에 문제가 되는 사항은 분명하게 정리해야 한다. 특히, 현지에서 임무수행은 유엔임무단의 권한 범위로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점에서 수행할 과업, 주둔 위치 등을 관철하면서 파병을 할 경우는 사전에 충분히 유엔과 협의하여 국회 동의안에도 포함하고 지령에도 반영해야 한다.

다음은 파병정책을 준비하고 결정할 때 유엔임무단의 위임명 령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위임명령은 유엔안보리 결의의 산 물로서 양보할 수 없는 속성이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파 병을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국익 차원에서 위임명령 수행으로 인해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경우는 안전에 대한 파병부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예를 들면, 지뢰 제거 장비와 인력의 충분한 편성 등) 을 강구하여 파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과 국회가 파병 결정의 정점에 있으나 최종 결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어떤 것이 국가이익과 파병 목적에 부합하는가에 좌우된다. 그러므로 공여국인 한국은 정책적으로 대다수 국민의 동의가 가능한 파병 논리를 발전시켜야 한다. 동 시에 유엔과 합의를 위해 윈셋을 적용한 모의 게임을 통해 미리 경합해 보고 확보할 것과 양보 및 수용할 사항을 도출, 유엔과 협의에서 상생(Win-win) 효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원고투고일 : 2020. 9. 30, 심사수정일 : 2020. 11. 10, 게재확정일 : 2020. 12. 2.)

주제어: 한국, 유엔(UN), 앙골라, 평화유지활동(PKO), 파병정책, 위셋(Win-set)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강성학 편저, 『동아시아 안보와 유엔체제』서울: 집문당, 2003. http://uci.or.kr/G701:B-00093215546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앙골라 유엔평화유지단 대한민국 공병부대 증 언록』, 2019.
- \_\_\_\_\_, 『상록수부대 파병사』, 2012. http://uci.or.kr/G901:A-0006439013
- 김열수, 『국제기구를 통한 분쟁관리』, 서울: 오름, 2000. http://uci.or.kr/G701:B-00093274973
- 박동순, 『한국의 전투부대 파병정책』, 서울: 선인, 2016. http://uci.or.kr/I410-ECN-0102-2018-300-000595722
- 박흥순·조한승·정우탁 편, 『유<mark>엔과</mark> 세계평화』, APCEIU, 2013.
- 육군본부, 『해외파병 40년사』, 2008.
- 이범준 외, 『미국외교정책』, 서울: 박영사, 2008.
- 정은숙, 『국제질서의 변화와 유엔의 평화·안보 거버넌스』, 서울: 선인, 2019.
- 합동참모본부,『합동참모본부사(제9집: 1995년도사)』, 1997.
- Esref Aksu, *The United Nations, intra-state peacekeeping and normative change*,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03. http://uci.or.kr/G901:A-0006664551
- George Wright, *The Destruction of a Nation: United State's Policy Toward Angola Since 1945*, Lundon: Pluto Press, 1997.
- Graham Allison and Philip Zelikow, Essence of Decision:

  Explaining the Cuban Missile Crisis 2ed, Addison Wesley
  Longman, 1999.
- Haidi Willmot, Scott Sheeran, and Lisa Sharland, Safety and

Security Challenges, New York: International Peace Institute, 2015.

#### 2. 논문

고성윤·부형욱, "신속 파병을 위한 시스템 발전방안: PKO 활성화 논의와 신속 파병 시스템 발전방안의 연계,"『국방연구』제53권제3호, 2010, pp. 71-95.

http://uci.or.kr/G704-001669.2010.53.3.004

김열수, "UN 평화유지 활동의 부침: 구조적 원인과 행태적 원인," 『국제정치논총』제39집 제1호, 1999, pp. 435-454.

http://uci.or.kr/G901:A-0001312824

\_\_\_\_\_\_\_, "해외파병 정책결정의 변수와 협상전략,"『전략연구』제13권 제1호, 2006, pp. 125-151.

http://uci.or.kr/G901:A-0002178092

- 김정두, "한국 군사외교정책 결정<mark>요인</mark>에 관한 비교 연구: 해외파병 부대 사례를 중심으로," 경남대 박사학위 논문, 2011.
- 김정기, "앙골라 분쟁 해결이 평화통일을 위하여 한반도에 주는 의미," 『한국과 국제정치』제35집 제4권, 2019, pp. 73-104. https://doi.org/10.17331/kwp. 2019.35.4.003
- 나웅하, "양면게임 이론에 입각한 파병 정책 결정 연구: 이라크 파병 협상의 윈셋(win-set) 변화를 중심으로,"『한국군사학논집』 제70집 제1권, 2014, pp. 29-49.

https://doi.org/10.31066/KJMAS.2014.70.1.002

박순향, "PKO-C34를 통해 본 한국 평화활동의 발전 방안,"『전략연구』 제24권 제1호, 2017, pp. 145-178.

http://uci.or.kr/G704-001467.2017.24.1.010

\_\_\_\_\_\_, "유엔 평화활동 분석과 한국 평화활동의 방향,"『군사』제90호, 2014, pp. 181-219. https://doi.org/10.29212/mh.2014..90.181

https://doi.org/10.17331/kwp. 2019.35.4.002

유병선, "한국군 파병결정에 관한 연구: 베트남전, 걸프전, PKO 파병 사례분석," 충남대 박사학위 논문, 2002. http://uci or kr/G901:A-0005015006

이상욱, "한국 해외파병정책 결정요인의 상대적 영향력 평가: 로즈노의 예비이론을 중심으로," 경남대 박사학위 논문, 2015. http://uci or kr/G901:A-0005946266

이신화, "한국 국제평화활동의 양분화 고찰: 유엔 PKO vs. 다국적군 파병," 『아세아연구』제56권 제2호, 2013, pp. 188-225. http://uci.or.kr/G704-000745 2013 56 2 005

- 전제국, "한국군의 해외파병과 한반도 안보: 국제평화활동(PO)의 국익 증진 효과," 『국가전략』 제17권 제2호, 2011, pp. 33-68. http://uci.or.kr/G901:A-0002912415
- 정도생, "한국의 해외파병정책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단국대 박사학위 논문, 2006.
  - http://uci.or.kr/G701:B-00092836124
- 황진한·김건우, "21세기 한국군의 PKO 전략 연구: 군사력의 소프크 파워적 활용을 중심으로,"『한국군사학논집』 제68권 제3호, 2012, pp. 99-127.

http://uci.or.kr/I410-ECN-0101-2018-039-001935477

Kyudok Hong, "The Impact of NGOs on South Korea's Decision to Dispatch Troops to Iraq,"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Vol 12, No. 2, 2005, pp. 31–46. http://uci.or.kr/G704-000686.2005.12.2.006

\_\_\_\_\_\_, "South Korea' Future Strategies for Better Peace Operations,"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31, No. 1, 2019, pp. 21–42.

http://uci.or.kr/I410-ECN-0102-2019-300-001167397

Jai Kwan Jung, "Mission Impossible? Negotiated Settlement, UN PKO, and Post-Civil War Democracy Building,"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9, No. 1, 2017, pp. 151–173.

http://uci.or.kr/I410-ECN-0102-2018-300-000437552

- Lee Shinwha, "Does Helmet Color Matter?: Discrepancy in Korea's International Peace Operation."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48, No. 3, 2014, pp. 51–73.
- Robert D. Putnam, "Diplomacy and domestic politics: the logic of two-level gam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2, No. 3, 1988, pp. 427-460.

#### 3. 1차 자료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앙골라 PKO 파견 관련 사료 I~III』, 1995. 국회사무처, "제176회 국회 통일외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군 공병 부대의 '앙골라 유엔평화유지단' 참여 동의안," 1995. 7. 13.

#### 340 | 軍史 第117號(2020, 12.)

외무부, "국무회의 의안처리전 제424호(국군 공병부대의 앙골라 유 엔평화유지단 참여안)," 1995.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864, September 15, 1993.

\_\_\_\_\_, Resolution 976, February 8, 1995.

#### 4. 기타

"대한민국헌법" 및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국가 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검색일: 2020년 6월 1일. "Angolan Civil War," https://en.wikipedia.org 검색일: 2020. 7. 20.



(Abstract)

# A Study for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n Dispatch Policy of the ROK's PKO Forces to Angola

Kim, Jeong-ki

Republic of Korea(ROK) sent the first group of Engineer forces on October, 1995 as a contingent of the United Nation Angola Verification Mission III(UNAVEM III) for Peacekeeping Operation(PKO) to Angola, Which was initiated by requesting of the UN on February, 1995. Dispatching to Angola is a unique case because it was decided during the period of aftereffect from dispatch to Somalia, And it was not the same engineer unit as others, which was to repair bridges and reconstruct in the area Angola, These facts stimulate this paper to be begun, What made the dispatch to Angola possible? To answer that questions is the goal of this study.

The Win-sets conception of two-levels game theory was used to study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the unit's deployment and to investigate solution of discords between ROK and UN. The result of this study is that the security issue was the main factor of win-sets for ROK to negotiate, whereas, the mandates for UN was the main one. With the win-sets, the process of decision to send a Engineer PKO unit had to follow two-levels game including the possible agreement between ROK and UN, and the final ratification of ROK's National Assembly. And the discords about for mission area and the post was also solved on the base of the win-sets of them as well.

Keywords: Republic of Korea(ROK), UN(United Nations), Angola, Peacekeeping Operation(PKO), Dispatch Policy, Win-sets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0, No. 117, pp. 343-354 https://doi.org/10.29212/mh.2020..117.343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서평] 대한민국임시정부 '광복군'의 국방사적 의미와 세계 군사강국으로서 대한민국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김승기/최정준 공저), 『국방 100년의 역사 1919-2018』-



본고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김승기/최정준 공저)가 2020년에 발간한 『국방 100년의 역사 1919—2018』에 대한 서평이다. 필자는 이 책이 대한민국임시정부 창설 '광복군'의 국방사적 가치를 확실하게 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현재 대한민국이 차지하고 있는 세계 군사강국으로서 의 자신감을 강조하고 있다.

# 1. '광복군'의 국방사적 의미와 국방 100년의 성과

가. 대한민국 건군으로서 광복군

『국방 100년의 역사 1919-2018』은 1919년 수립된 대한민국임시

<sup>\*</sup>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광복군을 대한민국 국방의 시작으로 삼고 있다. 2018년 현재까지 100년에 걸친 한국의 국방 관련 역사를 국군의 이념, 조직과 정책, 전력증강과 국방개혁, 전쟁 수행과 군사대비태세 그리고 국민·세계와 함께해 온 국방을 대주제로 하여 정리한 책이며, 대부분의 장에서 광복군을 한국 국방 분야의 시작으로 설정한 점이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자 주목할 부분이라 할수 있겠다.

헌법 전문에서 대한민국의 법통을 상해임시정부에 두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소위 '건국절'(建國節) 논쟁이 계속되고 있기에 『국방 100년의 역사 1919-2018』의 발간은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한국의 보수·진보 논쟁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국방부 발간 도서에서 이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다는 점은 무척이나 고무적인 일보(一步)로 평가할 수 있다.

1919년 상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망명정부로서 광복군을 창설하였고, 조선의 독립을 통해 한민족의 안녕과 번영을 추구했다는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갖는다. 1987년 9차 개헌 과정에서 보수와 진보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40년여 년의 사회과학적 역사논쟁 끝에 대한민국이 1919년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간다는 데 합의하고 이를 현행헌법 전문에서 천명하였다. 일제강점기에 영토는 빼앗겼지만 상해에서 망명정부를 건립해 대한민국의 주권을 간직하면서 영토를 회복하기 위한 항일투쟁의 역사를 확인하고 합의한 것이다. 건국절주장은 잘못된 역사인식 또는 정치적 목적에 의한 역사왜곡 중하나로 볼 수밖에 없다.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건국절로 삼자는 주장은 헌법전문의 법적 강제력으로 헌법에 위배됨을 알아야 한다.1) 특히 현

<sup>1)</sup> 헌법 전문(前文)도 규범력과 법적 강제력을 갖는다. 과거에 정당공천에서 탈락한

행헌법의 전문은 한국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야, 즉 보수·진보 간 합의로 작성되었기에 그 안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법통 계승"은 단순한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반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극단적 보수세력들이 1948년 8월 15일건국절 주장을 사회적 논쟁으로 확대시킨 것은 현재 자신들의정치적·이념적 입장을 강변하다가 대한민국의 법통을 무시하는결과로 전이된 셈이다. 2) 『국방 100년의 역사 1919-2018』은 이를 불식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 나. 1948. 8. 15 건국설의 두 가지 오류

1948. 8. 15 건국설 주장에 두 가지 중요한 오류를 지적할 수 있다. 하나는 건국설이 일제의 한국식민 지배론을 정당화시키는 논리의 핵심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주장은 1910년 한일 합방을 통해 조선이라는 나라는 패망하였고, 한반도는 35년간 일본이 식민지배했으며, 1945년 8월 15일 태평양전쟁의 패배로 한반도에서 퇴각하였다는 것이다. 이후 미군정 3년의 기간을 거친 후 한반도에 비로소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국가가 건국되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1948년 대한민국 건국설은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자 하는 일본의 역사왜곡에 동조하는 오류를 범하고

김상현 전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정당공천 출마자보다 무소속 출마자 가 선거 기탁금을 더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헌법소원한 적이 있었다. 이에 헌법재 판소는 헌법전문의 '…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를 근거로 정당공천 출마자와 무소속 출마자 간의 선거기탁금의 차 별성은 불균등하다고 위헌결정을 하였다.

<sup>2)</sup>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적 공과(功過)를 떠나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와 1948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기에 국부(國父) 지위는 인정하여 '건국 대통령'으로서 국부(國父) 지위는 인정할 수 있으나 이것을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의 근거로 삼는 것은 지나친 정치적 과장이며 종국적으로 현행헌법을 부정하는 정치이념적 오류라할 것이다.

있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남남갈등의 한국정치를 조장하는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1948. 8. 15 건국설이 기존의 대한민국 단독정부 수립 론에 대한 반론이라면 깊이 있는 토론을 해야겠지만 남남갈등의 정치적 목적에서 나온 정치적 시비이기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는 것이다. 정책과 이념의 대결은 정치영역에서 불가피하고, 오히려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8. 8. 15 건국설은 현 재의 보수ㆍ진보. 좌ㆍ우 대결의 뿌리를 이승만 전 대통령의 반 공 이데올로기를 해방정국 당시 김구 등의 남북협상에 대해 비 교우위에 두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김구 선생의 해방정국 당시 남북협상은 공산주의의 수용으로 보고 이승만 박사의 반공과 단독정부 수립 은 새로운 국가건설 즉 건국으로 보고 싶은 것이다. 이승만 대 통령을 지나치게 비하하려는 태도가 거북한 만큼 건국 대통령으 로 추앙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역사를 왜곡하는 우까지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보수 · 진보 간의 남남갈등 문제 는 그나마 지금의 상황에서 마무리단계가 되어야 하는데. '건국 설'은 정치적 · 이념적 갈등을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까지 끌고 가려는 태도로서 남남갈등의 역사적 뿌리를 한국현대사에 강제 적·인위적 이식, 즉 임플란트하려는 것이다.

#### 다. 대한민국 국방의 뿌리로서 광복군

『국방 100년의 역사 1919-2018』은 국방사의 핵심 영역이라 할 수 있는 국군의 창군과 이념, 국방조직과 국방정책의 변천, 전력의 증강, 전쟁수행, 군의 교육 훈련 분야에서 대한민국임시 정부의 '광복군'을 시작으로 미군정기의 국방사령부 산하 조직변

화에 이어 1948년 국군 창설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자료를 바탕으로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특히 1919년 4월에 설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같은 해 9월에 다른 지역 임시정부들과 통합하였고 지속적인 무장독립운동을 전개하면서 1940년 체계적인 군사조직으로서 광복군을 창설하게 되었다. 광복군은 독자적인 항일 무장독립운동 외에도 중국·영국·미국군과 연합작전을 전개함으로써 태평양전쟁에서 연합군이 승리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하였다.

또한, 광복 후 미군정 시기 국군 창설 준비과정에서도 광복군의 조직과 제도가 반영되었다. 국군 창설 과정에서 "광복군의 독립투쟁 정신을 계승한다."는 공통된 의식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광복군 출신들이 국군의 요직에 등용되면서 광복군이 국군창설의 요람 역할도 했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광복군의 국방사적 의미는 명실공히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현재 대한민국정통성의 시작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후 100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국방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에 이어 2020년 국방력 세계 6위의 군사강국으로 성장하기에이르렀다.3)

# 2. 국방력의 대북 우월적 지위와 한반도의 안정성

가. 한국 안보능력의 대북 우월성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출간된

<sup>3) 2020</sup> Military Strength Ranking. https://www.globalfirepower.com/countries-li sting.asp 참조. 이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세계 국방력 순위 25위에 있다.

『국방 100년의 역사 1919-2018』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제 I 부 전력증강과 국방개혁에 있다고 본다. 영토없이 해외 망명정부에서 창설된 광복군은 물론이고 한국전쟁 이후 지상의 모든 것들이 파괴되어 세계 최빈국이었던 상태에서 건설·진화되어 가는 한국 국방의 역사를 입체감 있게 서술한 점에서 이 책은 또한 평가받을 만하다. 2018년의 문재인 정부 시기까지 지속적인투자를 통한 전력증강과 동시에 자주국방을 완성하기 위한 국방개혁을 추진했던 대한민국 국방역사의 과정은 세계적인 모범이 되기에 충분함을 느끼게 해주고 있다. 그 결과로서 대한민국은 국방력의 대북 우월적 지위를 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자주국방 및 한미동맹 그리고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통해 스스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음을 입증해주었다.

특히 북한의 군사적 능력과 우리의 대북 안보력에 대한 정확하고도 명료한 분석과 평가가 필요할 때가 작금의 한국적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북핵의 파괴력을 실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세 가지의 문제를 검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방력과 한반도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는 '대한민국 국방력의 북한 무력도발 억지력'이고, 둘째는 '실제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가능성'이며, 셋째는 '미국의 국내 정치 불안정성에 의한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이다. 답을 먼저 하자면,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북한보다 훨씬 강력하며, 다양한 억제수단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북안보능력은 다양한 강점들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보다 강력할 수밖에 없다. 또한, 북한의 도발과 미국의 선제공격론 역시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의 특성으로 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할 것이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현재 대한민국의 국방력만으로도 북한을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지만일정 정도의 희생을 각오한다면 몇 달 내로 북한을 압도할 수있다라는 것이 대부분 군사전문가들의 예측이다. 미국의 글로벌파이어파워(Global fire power)의 순위에서도 6위와 25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GDP와 국방예산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팩트(fact)이다. 북한에 대한 자주국방의 상대적우위에 더해 강력한 한미군사동맹의 국방력이 엄청난 군사적·정치적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안보능력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확인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검토해 본다. 과연 김정은은 핵단추를 누를 수 있을까. 잦은 북한의 핵실험과 도발 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반도·동북아·세계평화의 제1의 위험요 소가 되고 있다. 특히 김정은의 개인적인 퍼스널리티와 강력한 내부단속 및 위협형 리더십은 즉흥적이고 도발적인 핵도발로 이 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걱정거리다. 김정은 위원장이 함 부로 핵단추를 누를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이는 참 으로 든든한 한반도 평화유지의 백데이터가 될 수 있다.

김정은 체제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체제유지와 핵보유국으로 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다. 다짜고짜 체제유지와 핵보유국 인정의 요구는 남북은 물론 관련 국가들과의 관계가 경직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핵단추를 누르는 순간 그의제1의 목표인 김정은 체제 유지와 핵보유국 인정은 완전 물거품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핵도발은 주저할 수밖에 없다. 김정은 위원장의 카드는 다양한 협상력을 상실해가는 데도 아이러니컬하게 국내의 강경보수의 목소리가 오히려 우리 정부를 대

북협상에서 양자택일의 딜레마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

세 번째 문제는 미국의 북핵 관련 선제타격 또는 핵무기 사용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4) 미국이 북한 핵에 관하여 선제타격을 하려면 중동지역에서의 정치·군사적 환경이 마련되어야한다. 아프간을 때리든, 이라크를 때리든, 이란을 때리든 적극적반대국가가 없어야 하고 NATO 연합과 같은 우호세력이 있었기때문에 미국의 중동지역에서의 선제타격이 가능했던 것이다. 동북아지역의 군사 및 정치·외교적 안보환경은 중동지역과는 정반대이다.

한마디로, 미국의 선제타격은 중국과 러시아의 합의 내지 묵인이 필요하고, 일본과 대한민국의 적극적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다. 과연 중국과 러시아가 합의와 묵인을 하며 일본은 아니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협조 내지 동의할 수 있을까. 현재의 국제정치적 상황에서는 제로퍼센트(zero percent)임에 분명하지만유비무환 차원의 안보태세는 든든한 국방력의 과시와 역설이며, 『국방 100년의 역사 1919-2018』이 이에 확증적 통계와 자료를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즉 한국 안보능력 수준을 제대로 소명한 양서(良書)이다.

#### 나. 우호적 한중관계와 한반도의 안정성

한중관계에 있어서 유의할 것 중의 하나로서 북중관계를 너무 가볍게 보지 말라는 것이다. 북중동맹은 어쩌면 한미동맹보다도

<sup>4)</sup> 미국의 동북아시아 정책은 한동안 중동에 올인했던 미국의 역할을 오바마 대통령 시절, 정확하게는 힐러리 국무장관 때 '동아시아로의 귀환'으로 그 가닥이 바뀌었 다. 세계 군사적 제패에 관한 한 소련 붕괴 후 안정궤도에 들어섰음을 확신했던 미 국이지만, 중국의 아시아 제패 및 중국과 미국의 세계균형 재편성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었다. 그 결과가 미국에 있어서는 미일동맹의 강 화이며 중국에 있어서는 한중관계의 긴밀화의 형태로 나타났었다.

더 강하고 무조건적일 수 있다.  $6 \cdot 25$  한국전쟁에서 그것이 입 증되었으며 북한 못지않게 중국에서 볼 때 북한과의 군사적 동 맹은 외교  $\cdot$  안보적으로 중국에게 더 중요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입장에서 북중동맹보다 한중관계의 정상화와 협력강화가 더 실용적일 수 있다. 북한과 중국의 공통 점은 공산당 지배체제라는 것이지만 두 국가의 공산당 정치체제 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북한과 중국의 더 큰 차이점은 중국에는 시장경제가 작동되고 있다는 것이고 북한은 겨우 사회주의 경제 에서 장마당이 비시장적으로 작동되고 있을 뿐이다. 현재의 북 한과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매우 이질적인 집단이 되어버렸다.

오히려 한국과 중국은 중국공산당과 대한민국의 복수정당제라는 이질적인 통치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같은 시장이다. 즉, 중국은 공산당 통치 외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즉 일반 공민(국민)들이 공식적인 시장경제 활동을 1978년부터 본격화하고 있다. 소련 동구권이 1990년대부터 개혁개방 정책을 추구했다면 중국은 훨씬 이전부터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도 시장경제가이미 작동되고 있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한국과 중국의 시장경제는 작동된지 이미 오래되었고 분야별로 협력과 경쟁을 매우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이에 중국과 북한과의 동질성보다는 한중 간의 체제 동질성이 더 긴밀하므로 일시적인 정치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한중관계는 고도화될 수밖에 없다 하겠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보수적 식자층에서 안보가 불안하다고 한다. 어쩌면 정치적으로 보수적 입장에 섰던 사람들에게는 호들갑 이상으로 심각한 걱정거리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을 얘기하자면, 안보와 관련된 대북정책은 보수든 진보든 어느 한쪽 편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가 구성원이라면 총력적으로 힘을 합치고 생각을 같이하여야 할 국가지대사(國家之大事)이다.

보수적 안보방식이 옳고 진보적 안보방식이 불안하다는 이분법 적 사고는 이데올로기적 대립의 산물에 불과하다. 정상적인 선 진국가는 국가안보에 관한 한 초당적 협력과 토론을 한다.

대북안보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수·진보를 통틀어 모든 국민의 힘과 지혜가 하나로 합쳐져야 한다. 진보가 주장하고 있는 자주국방은 진보의 전유물이 아니라 어쩌면 보수정치세력이 더욱 강조할 부분이다. 또한, 대북안보력에 있어서 한미동맹이 차지하는 위치는 절대적이며 이것 또한 어느 한켠의 주장 내지전유물일 수는 없는 것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자주국방 못지않게 한미동맹에 전력을 해야 하며, 이때 비로소 남북대치 관계에 있어서 북한이 동맹을 맺고 있는 중국과 우호적이고 협력적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대북안보력에 있어서 엄청난 힘을 배가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방 100년의 역사 1919-2018』 제10장 국방외교와 국제협력 활동 중 '국방교류협력'에 대한 보다 상세한 연구가 보충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 3.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 군사강국

『국방 100년의 역사 1919-2018』은 제1장 창군의 이념을 비롯해서 국방정책, 전력증강, 전쟁수행능력 그리고 국방외교와 국제협력에 이르기까지, 국방사의 관점에서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발전과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군의 기본적 이념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시기 광복군의 창설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안전과 국가주권을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일제강점기 다수의 무장 항일운동단체를 통합하여 체계적인 군대로 창설된 광복군은 일본에게 빼앗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영토와 주권을 회복하는 것을 최고의 임무로 하였다.

대한민국 국군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창설된 이래로 보편적인 군의 임무만을 수행해온 것은 아니었다. 이 책이 국방사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제 $\mathbb{N}$ 부 국민과 세계와 함께해 온 국방 부분에서 박정희 정권 시기 군의 정치개입에 대한 논의와 반성이 다루어졌다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5·16 군사쿠데타를 일으키고 군의 무력을 사용해서 국가권력을 장악했고, 결국 권력연장 의지의 산물로서 1인의 권력담당자를 위한 인격화된 권력구조, 입헌적 전제의 유신헌법5)을 만들어내기에 이른다. 유신체제에 동원된 국가 긴급권의 발동은 가상의 적과 상상적 비상사태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방어한다는 명분에 자유주의를 고사시키고 의회주의와 선거제도에 기반한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을 국민투표에 정통성을 부여·대체하는 방식으로, 집권자가 국민주권을 대의하는 방식으로 민주주의의 방향을 비틀고 왜곡시키는 것이었다.

유신헌법상 대통령은 입헌적 절대전제제의 절대군주와 같은 권한이 주어져 있어서 정부의 이원성은 상상할 수 없으며 입법 부와 사법부에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3권 통합권력 자였다. 박정희 정권의 독재는 군의 무력이 국민의 안전을 위하 고 체제를 수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어기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sup>5)</sup> 대부분의 헌법 교과서에서 유신헌법을 제4공화국 헌법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은 전두환 정권이 제5공화국이라고 공식화하면서 유신헌법은 제3공화국 이후로 소급되 어 제4공화국 헌법이 되고 말았다. 기실은 유신체제를 유신쿠데타의 결과로 규정 및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유신헌법으로 칭하였다.

하고 국가권력을 침회한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국방사에서도 객관적인 사회과학적 논의를 통해 명확히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군의 과거사에서 발생된 과오(過誤)에 대해 정확하게 평가하고 반성했을 때 현재 대한민국의 국력에 걸맞는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5공화국 전두환 정권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에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 100년의 역사 1919-2018』에 보충되었으면 좋겠다.

『국방 100년의 역사 1919-2018』은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 군사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다. 광복군의 항일무장독립전쟁, 1950년의 한국전쟁, 1960년대 베트남전쟁 파병, 그리고 1993년 UN 평화유지군 자격으로 소말리아에 공병부대를파견한 이후 대한민국 국군은 지속적으로 세계평화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국방력 6위라는 위상에 걸맞게 외국과의 국방교류협력, UN 평화유지활동, 다국적군 평화활동 등의 활동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넘어 안보·국방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기반 확보를 통해안보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군사교류·협력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세계평화유지군 활동은 전투목적이 아닌 의료지원단이나 공병부대 등으로 분쟁지역의 민간지원 기능을 수행하면서 대한민국의 세계평화 의지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국방 100년의 역사 1919-2018』은 국방역사를 대한 민국의 근현대사와 연계·일치시켰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해도 지나침이 없다 할 것이다. 특히 치밀한 자료수집과 저자들의 해석 및 설명능력은 이 책의 완성도를 높여 대한민국 미래 비전을 찾는 객관적 근거와 바로미터마저 제공하고 있다.

## 연구소 동정

## 1. 대외교류 및 주요 활동

- o 2020-3차 군사사연구포럼
  - 일자/장소: 2020. 10. 30(금) / 군사편찬연구소 회의실
  - 참석: 군 및 대외기관 20여 명
  - 세부진행 \* 사회: 김경록(군사편찬연구소)

13:30~13:40	개회 및 인사 말씀
	제1주제: 1909년 '남한대토벌작전' 이후 의병부대의
13:40~14:20	와해과정
	* 발표: 김헌주(연세대) 토론: 심철기(연세대)
	제2주제: 전쟁 영웅의 서사와 변주
14:20~15:00	- 일제의 육탄 3용사에서 한국전쟁의 백마고지 3용사까지 -
	* 발표: 공임 <mark>순(서</mark> 강대)   토론: 김은정 (한국외대)
	제3주제: 북한의 경제정책과 남한
15:20~16:00	<ul> <li>4 ⋅ 19와 5 ⋅ 16이 북한 제1차 7개년 계획에 미친 영향 -</li> </ul>
	* 발표: 조수룡(국사편찬위) 토론 : 김선호(군편소)
	제4주제 : 한국군 공병부대 앙골라 파병활동 사례
16:00~16:40	– 위임명령과 국익증진의 마찰과 조회를 중심으로 –
	* 발표: 김정기(군편소) 토론: 박순향(국방부)
16:40~17:30	만 찬



< 2020-3차 군사사연구포럼 >

O 국방사 연구편찬 발전방향 학술회의

- 일정/장소: 2020. 11. 12.(목) / 군사편찬연구소 회의실

- 참석: 연구소 및 관련기관 30여 명

\* 진행 : 김선호(군사편찬연구소)

14:00~14:20	개회, 연구소 소개	
14:20~15:40	* 사회 : 최현수 한국국방연구원 객원연구원 제1주제 : 1990년대 안보 이슈와 특징 * 이미숙 선임연구원(군사편찬연구소)	
	제2주제 : 1990년대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 * 심세현 교수(대전대)	
	* 토론 : 조은일 선임연구원(한국국방연구원), 김열수 안보전략실장(한국군사문제연구원)	
16:00~17:20	제3주제 : 1990년대 군사전략과 국방태세 * 정경영 교수(한양대)	
	제4주제 : 1990년대 군비통제와 한미군사협력 * 장철운 연구원(통일연구원)	
	* 토론 : 류제승 부원장(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한국국가전략연구원)	
17:20~17:40	종합토론	
18:00~19:00	만 찬	



〈 국방사 연구편찬 발전방향 학술회의 기념사진 〉

## O 전문가 초빙강연

- 주제/강사: 이사부 독도를 말하다 / 손승철(강원대 명예교수)
- 일자/장소: 2020. 11. 18(수) / 전쟁기념관 문화아카데미
- 참석: 연구소 및 전쟁기념관 직원 등 30여 명
- O 군사편찬연구소-한국보훈학회 공동세미나
  - 일자/장소: 2020. 11. 27(금) / 모임공간 코지(서울교대)
  - 참석: 연구소 및 한국보훈학회 50여 명(화상회의 병행)

14.00 14.40	-게=기 -리 -시 시 -리 22
14:00~14:10	개회 및 인사 말씀
	제1주제: 6.25전쟁 70주년과 호국안보의식 변화
	추이 및 대책 * 사회: 양정훈(수원대)
	- 호국안보의 의의와 과제: 이인배(협력안보연구원장)
14:10-15:40	* 토 <mark>론:</mark> 한지연(중앙대), 김성우(중부대)
14.10-15.40	- 국민들의 호 <mark>국안</mark> 보의식 함양 방안: 이진이(서울여대)
	* 토론: 황미 <mark>경(서울</mark> 기독대), 박균용(군사편찬연구소)
	<ul> <li>주요 외국의 국가보훈정책 : 신은숙(중부대)</li> </ul>
	* 토론: 남영희(남서울대), 한상용(원광대)
	제2주제 : 6.25전쟁과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
	* 사회: 유호근(청주대)
	- 6.25전쟁과 한국의 어제와 오늘: 박동순(한성대)
15:50-17:20	* 토론: 신승규(상명대), 김의식(용인대)
	- 6.25전쟁 지원국가와 보훈을 통한 외교: 이강수(한성대)
	* 토론: 허동욱(대덕대). 박종상(군사편찬연구소)
	- 6.25전쟁과 한국의 글로벌 네트워크: 박영민(대진대)
	* 토론: 서승현(동덕여대), 남광규(고려대)
17:30~18:00	• 종합토론 * 사회 : 선 <del>종</del> 률(한성대)
	* 토론 : 권영복, 김형석, 신종태, 안성호,
	이용자, 조윤기

## 2. 인 사

- ㅇ 퇴임
  - 조성훈(연구소장) : '20. 9. 30.부

## 자료 기증은 군사사 연구의 생명입니다.

## 〈정보자료실 제공〉

군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계신 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연구소는 최적의 자료 보존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여러분이 제공한 자료는 생생한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 〈자료기증안내〉

## ◇ 수집대상자료

- 전사자료: 한국전쟁, 월남전쟁에 관한 피아 작전관계 문서, 지도, 사진 등 전사자료와 참전증언 자료
- 군사사 자료: 군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군사문헌, 고증 사료

## ◇ 수집방법

- 소장자료를 아래 주소로 보내 주시거나, 전화 또는 서신으로 소장 자료 제공 의사를 알려 주시면 출장 방문하여 수령하겠습니다. (비제공 자료는 복제 후 반환)
- ※ 기증해 주신 자료는 영구 보존되며 장병 및 국민들에게 공개 활용 됩니다.

## ◇ 연락처

• 주 소: (04353)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용산동 1가 8번지) 국방부 군사편차연구소 정보자료실

• 전 화:(일반) 02)709-3188, 3199 (군) 900-1686, 1688

### 〈자료이용안내〉

## ◇ 공개자료 종류

• 장 서:역사, 군사도서 등

• 사 료: 한국전쟁, 월남전쟁, 국방, 군사사, 수기 등

• 기 타: 학술논문, 수기, 회고록, 간행물 등

## ◇ 장 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정보자료실(전쟁기념관 4층)

## ◇ 이용시간

• 평 일:09:30~17:30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 ◇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 주 소: www.imhc.mil.kr

• 주요내용: 소장도서목록, 연구소 역대발간서적 원문서비스, 거제도포로수용자/호국전몰용사공훈록 DB 검색 등

## 『軍史』誌 投稿案內

## 1. 원고 내용 및 범위

- 가. 국내외 군사정책/전략・군사제도・전쟁/전투에 관한 역사적 내용
- 나. 한국의 국방 및 안보와 유관한 정치사·외교사·軍事史 분야에 관 한 내용
- 다. 가·나항과 관련된 연구논문, 자료소개, 서평(102호부터 신설, 별도 이메일 접수). 연구동향 등
- 라. 기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활동과 부합되는 글<br/>※ 투고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함.

## 2. 원고 작성 요령

- 가. 원고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mark>원칙으로</mark> 하며, 한문과 원어는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첫 번에 한하여 괄호 안에 표기함.
- 나. 원고 분량은 각주를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
- 다. 註는 각주를 원칙으로 하고 각주 번호는 반괄호 안에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함. 각주의 표기는 저자, 「논문」, 『게재지 또는 저서』, 발행처, 발행연도, 페이지의 순서로 함.
  - 예 : 홍길동, 「00에 관한 연구」, 『군사』 제80호, 국방부 군사편찬 연구소, 2011, 99~101쪽.
- 라. 외국어로 된 경우 각주의 표기는 저자, 서명, 발행지,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의 순서로 하고 서명은 이탤릭체, 쪽수는 'p', 'pp'로 표기한다.
  - 예: Hong Gildong, "History of Republic of Korean Army", Military History, Vol. 82, (2012. 3), p.40.
    - Hong Gildong, *Korean Military History*(New York: Mcgrow-Hill, 2010), pp.100~110.

- 마.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정보 를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서 명시.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 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음.
- 바. 참고문헌은 인문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시카고 스타일을 적용
- 사. 참고문헌 중 전자출판된 학술지 논문은 저자명, 논문제목, 학술지 명 및 발행호수(발행연도): 페이지수, DOI 또는 UCI 표기
  - 예1 : UCI) 홍길동, "대한민국의 역사", 『군사』103호(2017):330-359, http:// uci.or.kr /G704-001528.2017..103.010
  - 예2 : DOI) 홍길동, "대한민국의 역사", 『군사』103호(2017):330-359, http://doi.org/10.12345 / imhmnd.2017.105..103.010
  - ※ DOI 정보는 해당논문에서 식별할 수 있으나 UCI 정보는 학국 연구재단의 한국연구자식별정보(KCI)에서 식별할 수 있음.
- 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존 『軍史』지 예규를 참고하기 바람.

## 3. 투고 요령

- 가. 원고는 그대로 게재할 수 있는 완성된 형태의 글 파일(000.hwp) 이어야 하며 원고 제출은 군사지투고시스템에 탑재하여야 함.
  - ※ 최초 투고시 저자 이름 삭제(파일명 포함), 이후 수정논문 탑재 시 저자이름을 포함
- 나. 군사지투고시스템은 인터넷에서 군사편찬연구소 홈페이지 우측상단에 바로가기로 접속할 수 있으며, 논문과 투고계획서(국문 및 영문초 록), 저작물이용동의서, 논문유사도 검사결과서를 탑재하여야 함.
  - 1) 투고계획서와 저작물이용동의서의 양식은 군사지투고시스템의 공지 사항에서 다운받아 사용
  - 2) 논문유사도검사결과서는 한국연구재단의 KCI의 논문유사도 기능을 활용하여 결과서를 다운받아 제출
- 다. 공동집필의 경우, 대표집필자 명의로 '투고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집필자는 각주에 표기함.

- 라. 심사가 끝난 후 수정논문을 작성하여 논문유사도를 검사결과서, 수정문 요약본과 함께 군사지투고시스템에 탑재
- 마. 세부사항은 군사지투고시스템의 공지사항에서 확인

#### 4. 원고 심사 및 고료

- 가. 워고의 게재 여부는 당 연구소에서 심의를 거친 후 결정함.
- 나. 접수된 원고는 게재 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 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함.
  - ※ 국방부 본부 및 산하기관의 공무원, 군인, 군무원에게는 소정의 격려품 (기념품)을 지급함.
- 라.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당 연구소에 귀속됨.

## 5. 발간시기 및 원고 접수기간

연간 4회 발간(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함. 따라서 1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3월에, 4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6월에, 7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9월에, 그리고 10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12월에 게재함.

## 6. 문의 / 연락처

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우편번호 : 0435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軍史』誌 편집위원회

• 전화: 02-748-1667(김태헌)

• FAX: 02-709-3111

• E-mail: imhc2@mnd.go.kr

나. 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

## www.imhc.mil.kr

내용: 연구소 소개, 소식, 신간안내, 회원모집, 정보자료실(소장도서, 인명DB검색 등)

# 연구윤리예규

	군연-예16
제정	2007. 7. 1
부분개정	2008. 12.1
부분개정	2009. 11.1
부분개정	2017 8 1

## 〈목 차〉

# 제1장 총 칙

	목 적	
제2조	적용대상	365
제3조	적용범위	365
제4조	용어의 정의	365
제5조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366
	제 2 장 연구자와 연구소의 역할과 책임	
제6조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367
제7조	연구소의 역할과 책임	368
제7조	연구소의 역할과 책임	368
제7조	연구소의 역할과 책임 ···································	368

## 364 | 軍史 第117號(2020. 12.)

제9조	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369			
제10조	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369			
제11조	본 조사 착수 및 기간	370			
제12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370			
제13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371			
제14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371			
제15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보장	372			
제16조	판 정	372			
제17조	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372			
제 4 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8조	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373			
제19조	결과에 대한 조치	373			
제20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374			
부 칙		374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이 예규는 본 연구소 내 연구편찬 활동과 직·간접 적으로 관련있는 모든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 의한다.

## 제 4 조(용어의 정의)

- 1. "연구 원자료"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실험,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을 말한다.
- 2. "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
- 3. "연구결과"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 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
- 4. "연구결과물"이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의 학술적 지식재산을 말한다.

#### 제 5 조(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 ①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ㆍ 변조ㆍ표절ㆍ부당한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사료,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는 연구 사료·사진·증언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기여를 한 연구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연구자와 동등하거나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 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6.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 하는 행위
-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연구소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연구소의 인지에 의하여 부 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

- 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 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 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 제2장 연구자와 연구소의 역할과 책임

- 제6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연구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공정한 대우를 한다.
  - ②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한다.
  - ③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를 진행한다.
  - ④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을 견지한다.
  - ⑤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한다.
  - ⑥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 ⑦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을 견지한다.
  - ⑧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

- 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를 명시한다.
- ⑨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를 진행한다.

#### 제 7조(연구소의 역할과 책임)

- ① 연구소는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 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연구소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예규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③ 연구소는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부정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분쟁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④ 연구소는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검증·판단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⑤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연 1회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한다.
- ⑥ 연구소는 교육부장관 또는 상급기관의 장이 연구윤리 실태 조사 등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⑦ 연구소는 인지하거나 제보 받은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 등으로부터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 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 3 장 연구진실성 검증

## 제 8 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① 제보자는 기획운영실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에 한하여 허용한다.
-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 9 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소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1. 제보내용이 제5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 ③ 예비조사는 기획운영실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 10 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소장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 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 제 11 조(본 조사 착수 및 기간)

- ① 본 조사는 소장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본 조사는 판정<mark>을 포</mark>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소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 제12조(조사위원회의 구성)

- ① 조사위원회는 소장이 임명(위촉)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조사위원회 위원(위원장)은 연구편찬분야 연구원으로 구성하고,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군사사(軍事史)분야 외부전문가 1인 이상 포함하여 위촉한다.
-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④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제13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소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 자에 대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 · 보관 등을 할 수 있다.

## 제14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② 소장은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5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 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 제16조(판정)

-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7조(본 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 ① 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본 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소장에게 보고한다.
-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4. 관련 증거 및 증인

-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 6. 조사위원 명단

## 제 4 장 검증 이후의 조치

## 제18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 ① 최종보고서는 소장 승인을 득한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 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선 조사과정 중에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제19조(결과에 대한 조치)

- 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조사위원회는 소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②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20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기획운영실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연구윤리 질의/응답〉

Q) 학위논문이 심사는 완료되었으나, 아직 출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처를 밝히고 학술지 논문으로 투고할 수 있는가? 이때 게재가 될 경우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다시 출판하는 것이 중복게재에 해당되지는 않는가?

A) 국내·외를 막론하고 학위논문을 활용하여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학위논문이 최종인쇄되기 전에 학위논문의 내용을 활용하여 학술지 논문에투고하면서 출처를 밝혔고 편집인이 논문게재를 승인하였다면 중복게재라고 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이전 저작물에서 활용되는 부분에 대한 출처를 표시하고 이를 이후저작물을 출판하는 관계자에게 미리 알려 최종적으로 게재여부 판단을 받는 것이다.

##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18. 7. 17. 개정)

제12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항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 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부정청탁**의 손길 나라가 **무너집니다**.

















# 본 『軍史』誌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학술지입니다. ('08년 선정)

## ☞ 편집위원장 심헌용(군사편찬연구소)

#### ☞ 편집위원(가나다순)

강창부(공군사관학교) 기세찬(국방대학교) 김강식(한국해양대학교) 김창석(강원대학교) 박걸순(충북대학교) 박상철(전남대학교) 박태균(서울대학교) 신명호(부경대학교) 심승구(한국체육대학교) 오영섭(경희대학교) 윤경진(경상대학교) 이상호(군사편찬연구소) 이한우(서강대학교) 전호수(군사편찬연구소) 홍석률(성신여자대학교)

### ☞ 편집간사

김태헌(군사편찬연구소)

## 重 史 2020/12(第117號)

2020년12월7일印刷2020년12월15일發行

#### 發行處\_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우편번호 : 04353)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TEL: 748-1667 FAX: 709-3111

**印刷處\_** 국군인쇄창 (M20111066)

本誌에 실린 論文内容은 當 研究所의 公式見解가 아님.



## Military History

Vol. 117. 2020, 12.

Lee, Kyung-boon Music of 'Geoje' POW Camp during the Korean War

Cho, Nam-joon A Study on the Fire employment of the 9th ROK Infantry

Division in the Battle of White Horse Hill

Bae, Eun-suk Analysis for the strategy of Cestius Gallus in the year of AD 66

Lee, Ki-chon The Motivation and Arguments of the Research in the History

of Military System of Tang Dynasty in Japanese Academia

Kang, Jae-gwang The Characters for the Implements of Island Protection

Tactics(海島入保策) in Seohaedo(西海道)·Bukkye(北界) of Goryo dynasty in the Period of the War against Mongol from

the Military Point of View

Kim, Min-sik Reconsideration of the Factors in Deploying Tactical Nuclear

Weapons on the Korean Peninsula in 1958

Song, Seong-jong Reviewing the Status of United Nations Command (UNC) in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Law with Emphasis

on the UN Charter

Kim, Jeong-ki A Study for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n Dispatch Policy of

the ROK's PKO Forces to Angola

Published by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eoul, Korea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mnd



ISSN 1598-317X